

외국의 비관세장벽 자료 체계화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 출 문

관세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외국의 비관세장벽 자료 체계화』
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2.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 기 영

연 구 진

<연구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안 소 영

<참여연구자>

연구원 김 설 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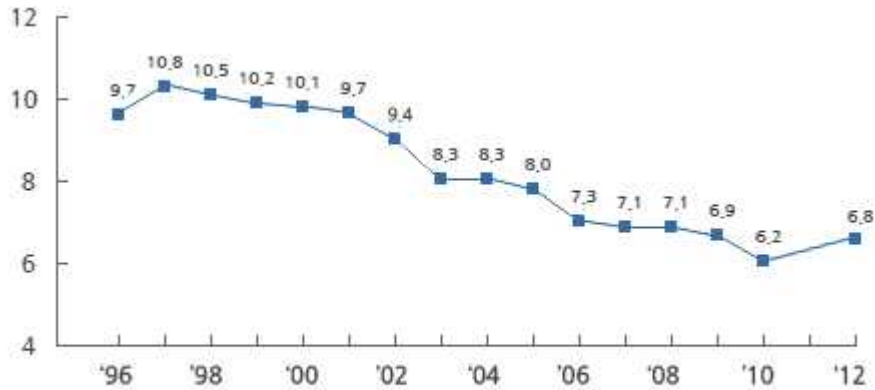
연구원 박 지 문

연구원 김 세 라

1 연구 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가중
 - 미국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출범한 이래 반덤핑과 상계관세 같은 수입규제 조사가 큰 폭으로 증가
 - 중국의 경우도 명시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 하에 수입규제(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결과 올해 반덤핑조사 착수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2건)보다 무려 350% 증가한 9건에 달함
- 보호무역주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관련 장벽으로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과거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 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
- FTA 체결 및 발효의 확대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관세장벽은 기술표준,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을 근거로 강화되어 FTA 활용을 저해
 - 1995년 WTO 출범 이후 2000년 중반까지 8,235건을 기록했던 전세계 비관세장벽은 2000년 7월~2004년 6월 기간 중에 7,407건으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매 4년 마다 다시 증가해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1,729건을 기록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 추이(단위%)



* 출처 : Worldbank(World Development Indicator)

세계 비관세장벽 발생추이(건수)

구분	위생 검역	기술 장벽	반덤 핑	상계 관세	수입 제한	긴급 수입제한	수량 제한	기타	전체
00년 7월 ~04년 6월	2,460	2,511	1,217	73	84	477	583	2	7,407
04년 7월 ~08년 6월	3,167	3,643	947	43	42	247	539	0	8,628
08년 7월 ~12년 6월	3,751	5,790	987	98	78	216	565	5	11,490
12년 7월 ~16년 6월	3,293	6,373	1,205	154	51	91	558	4	11,729

자료 :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대상상공회의소, 2016.12

□ 따라서 비관세장벽의 증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실익이 감소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요 협정상대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기업지원이 필요

2 주요 내용

□ 중국과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정보 분석

- 2016년 기준 한국의 수출 1순위 국가인 중국과 3순위 국가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최신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품목별 자료 체계화를 통해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해당국의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제공

2015~2016년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국

순위	한국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5년	2016년
1	중국	137,124	124,433
2	미국	69,832	66,462
3	홍콩	30,418	32,782
4	베트남	27,771	32,630
5	일본	25,577	24,355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주요자료 수집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SPS 및 TBT 관리 데이터베이스¹⁾,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TRAINS²⁾, 중국 및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및 법령정보 사이트, 유관기관의 既발행보고서 및 발표자료, 민간컨설팅기관, 기타 관세청의 품목별 수출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짐

1) Integrated Data Base (IDB)

2) Trade Analysis and Information System (TRAINS), UNCTAD의 비관세장벽 분류는 UNCTAD Trade Analysis and Information System (TRAINS)의 Trade Control Measures Classification에 나타나 있으며 각 국가들이 무역장벽에 관한 정보를 이 분류 코드에 맞추어 UNCTAD로 알린다.

□ 비관세장벽의 특징

- 비관세장벽은 그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품목 범위가 각각 다르며,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되거나 혹은 외부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적용되는 유형도 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무역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또는 개별 품목별로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려움
- 법률로 제정되는 유형이 있는 반면 상당수의 비관세장벽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을 없이 여러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정책에서 파생
- 수입국의 무역정책은 수출국에 아무런 통고 없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 큰 부담
-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에나 개도국에나 명목상으로는 무차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비관세장벽 분류

- 비관세장벽의 분류는 WTO 및 UNCTAD의 분류법과 몇몇 학자들(예를 들면 Baldwin, 1970; Deardorff and Stern, 1998)에 의한 분류법 그리고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정의 분류법들을 포괄
- WTO분류는 특정 장벽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분쟁 해결의 관점에서 사용³⁾
- UNCTAD의 분류는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에 집중하여 분류⁴⁾

3) 반덤핑 [ADP], 상계관세 [CV], 수량제한 [QR], 세이프가드 [SG], 위생 및 검역 [SPS], 특별 세이프가드[SSG], 무역기술장벽[TBT], 저울관세할당 [TRQ], 수출보조금 [XS]

4) 위생 및 검역 [SPS] [A], 무역기술장벽[TBT] [B], 선적전검사 등[INSP] [C], 임의적 보호조치 [CTPM] [D], 수량제한조치 [QC] [E], 가격제한조치[PC] [F], 금융조치[G],경쟁에 영향을 주는 조치[H], 무역관련투자조치[I], 유통제한[J], 우편판매서비스 제한[K], 수출보조 이외의 보조[L], 정부조달 제한[M], 지식재산권[N], 원산지[O], 수출관련조치 [EXP] [P]

□ 비관세장벽 범위

- 비관세장벽은 국경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국가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수입허가제,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통관, 원산지규정,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나 협의의 의미로는 TBT와 SPS를 가리킴
- (TBT)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
- (SPS) 인간 위생을 위한 보호조치 및 동 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 관련 국제 규범을 통칭

□ 한국과 협정상대국과의 교역현황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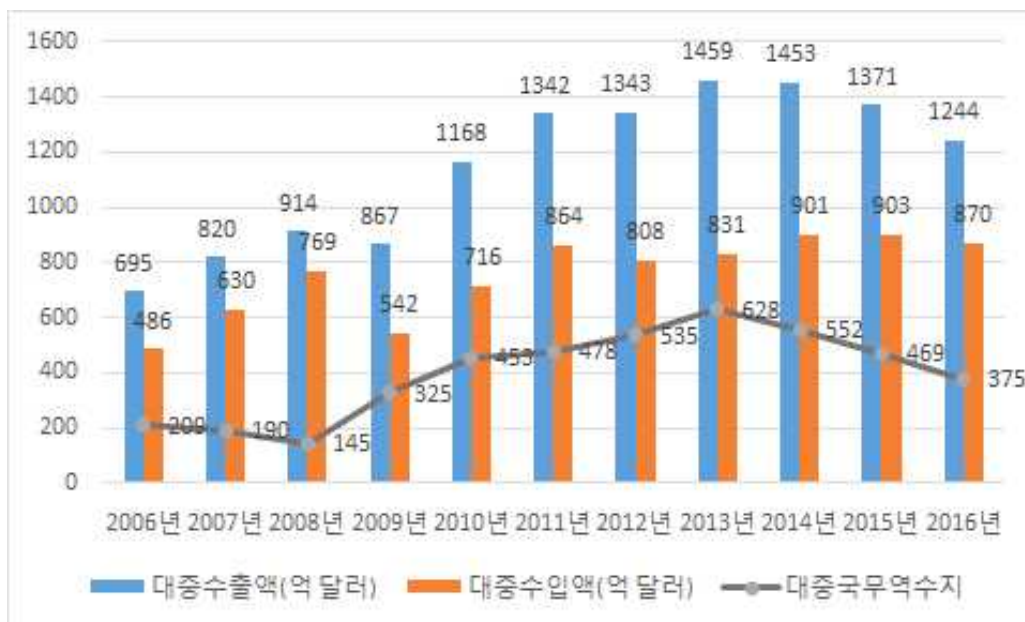
○ (한국과 중국의 교역현황)

- 2015년 12월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면서 1차로 관세가 인하된데 이어 2016년 1월 다시 관세가 인하되어 對중국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⁵⁾
- 또한 2017년 1월 AP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4라운드 협상 최종타결로 인하여 2017년 1월 관세가 인하. 중국의 경우 APTA로 2,191개 품목에 대해 종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33.1% 낮은 관세율을 적용. 對중국 수출기업의 경우 석유제품, 플라스틱제품, 편직물, 견직기 등 약 1,200개 품목에서 APTA 세율이 한·중 FTA 보다 세율이 낮아져 수출기업은 유리한 세율 선택이 가능해짐

5) 한·중 FTA는 발효 이후 20년 내 한국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92.2% 수입액 기준으로 91.2%를 양허하며 중국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90.7% 수입액 기준으로 85.0%를 양허하기로 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의 체결이 이루어짐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양국 간의 무역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 그러나 對중국 수출금액은 2014년을 기점으로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對중국 무역추이(2006~2016년)



자료: 무역협회 자료가공

- 무역총액을 기준으로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으며, 2016년 한국은 중국의 제4위의 무역상대국임

2016년 한·중 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비교

순위	한국		중국	
	국가	무역액 (백만 달러)	국가	무역액 (백만 달러)
1	중국	211,413	미국	521,010
2	미국	109,678	홍콩	298,733
3	일본	71,822	일본	274,743
4	베트남	45,125	한국	254,508
5	홍콩	34,397	대만	180,665

자료: 무역협회 자료가공

- [수출] 최대 수출 품목군은 반도체 · 평판디스플레이센서 · 무선통신 기기 등 휴대폰 관련 부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그리고 석유제품 등이나 2016년 기준 석유관련 제품을 제외하고는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남
- 對중국 비관세장벽 민감 품목인 식품 · 화장품의 경우 2016년 MTI 3단위 금액기준 각각 상위 19대, 50대 품목임. 그러나 두 품목모두 최근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對중국 수출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임
- [수입]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입 품목은 휴대폰, 컴퓨터, 철강, 산업용 전기기기, 의류 그리고 정밀 화학원료 등이며 2015년 이후에는 반도체 수입금액이 증가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26,156	20.7	27,822	6.4	24,236	△12.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2,538	△11.7	22,093	△2.0	18,584	△15.9
무선통신기기	6,362	23.2	7,715	21.3	6,303	△18.3
합성수지	7,564	△2.1	6,317	△16.5	6,092	△3.6
석유화학중간원료	6,727	8.3	5,789	△13.9	5,847	1.0
자동차부품	6,706	8.8	6,469	△3.5	5,673	△12.3
석유제품	7,000	△16.5	4,419	△36.9	4,593	3.9
컴퓨터	3,101	18.2	3,298	6.3	3,028	△8.2
기초유분	4,600	△3.7	2,782	△39.5	2,822	1.4
철강판	3,489	9.3	2,678	△23.2	2,818	5.2

자료: 무역협회 자료가공 (MTI 3단위 기준)

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8,115	24.5	11,381	40.2	11,279	△0.9
무선통신기기	6,757	113.5	8,396	24.3	6,663	△20.6
컴퓨터	5,785	7.1	5,384	△6.9	5,870	9.0
철강판	5,740	41.4	4,186	△27.1	4,027	△3.8
산업용 전기기기	3,515	4.6	3,353	△4.6	3,483	3.9
의류	3,623	3.5	3,551	△2.0	3,450	△2.8
정밀화학원료	3,192	13.3	3,133	△1.9	3,089	△1.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864	△5.0	3,415	△11.6	2,161	△36.7
기구부품	2,056	△5.2	1,655	△19.5	1,422	△14.1
자동차부품	1,325	△10.3	1,296	△2.2	1,372	5.9

자료: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기준)

○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현황)

- 베트남의 경우 2016년 기준 FDI 기업들의 수출입 실적이 전체 교역의 72.3%를 차지하며 베트남 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유지⁶⁾
- 2016년 베트남은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 8위 수입 대상국을 기록. 2016년 對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326억 달러, 수입은 27.4% 증가한 125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고, 20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보임. 이는 2015~2016년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전 세계 무역량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임

-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현지에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베트남 전체 수출량의 약 30%를 기여

6) FDI 기업의 수출 및 수입비중은 전체수출입 교역액의 각각 80.3%, 63.9% 차지

-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은 최근 몇 년 간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5년 한-베 FTA 체결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흑자 폭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2012~2016년 對베트남 수출입 실적(백만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15,954(18.5)	21,088(32.2)	22,352(6.0)	27,773(24.3)	32,779(17.6)
수입	5,718(12.5)	7,175(25.5)	7,990(11.4)	9,803(2.7)	12,495(27.4)
수지	10,236	13,912	14,367	17,971	20,155

자료: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괄호 안은 수출입증감률)

- **[수출]** 최대 수출 품목군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센서 등 휴대폰 관련 부품으로 對베트남 수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對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9.3%, 98.4% 증가하여 전체 수출실적을 크게 견인
- 자동차의 對베트남 수출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18.9% 감소한 9.2억 달러를 기록. 석유제품의 對베트남 수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231.2% 성장한 10.9억 달러를 기록
- **[수입]**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입품 목은 휴대폰, 의류, 신발 등 현지 한국투자(FDI)업체로부터의 완제품 수입이 수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목재, 영상기기, 기타 섬유제품, 기구부품 등이 뒤를 따르고 있음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2,270	45	4,249	87.1	5,192	22.2
반도체	2,789	△3.87	2,871	2.9	4,574	59.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97	△46.71	1,266	85.1	2,512	98.4
기구부품	937	0.93	1,233	31.7	1,722	39.6
합성수지	1,188	4.58	1,110	△6.5	1,203	8.4
석유제품	600	△23.7	328	△45.3	1,088	231.2
편직물	978	3.86	977	△0.1	1,077	10.3
자동차	713	63.12	1,137	59.4	921	△18.9
플라스틱제품	508	26.5	740	45.6	864	16.9
철강판	917	△4.76	839	△8.4	822	△2.1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MTI 3단위 기준)

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292	55.6	1,470	403.4	3,145	113.9
의류	2,160	28.39	2,220	2.8	2,426	9.2
신발	506	34.22	526	4	628	19.2
컴퓨터	174	141.8	400	130.1	552	38
목재류	350	51.24	348	△0.7	428	23.1
영상기기	83	31.9	150	80.7	340	126.7
기타섬유제품	252	15.92	272	7.8	298	9.6
기구부품	104	167.2	205	97.2	268	30.7
갑각류	206	64.34	165	△19.9	195	18.1
계측제어분석기	136	185.5	201	48.6	172	△14.4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MTI 3단위 기준)

□ 중국과 베트남의 최신비관세장벽 동향파악

○ (중국의 비관세장벽 최신동향)

-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으로 과거에는 직접제재⁷⁾나 무역구제조치⁸⁾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통관절차 등으로 큰 흐름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⁹⁾
- 중국의 경우 최근 한국을 대상으로 지도자나 당국 간 현안에 대한 비협조, 여론을 활용한 불매운동 개시, 여행제제 등의 비공식 수단을 활용한 직접제재¹⁰⁾의 방식 사용
- 주로 소비재나 식품 분야에서 중국이 對한국 수입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무역제재를 쉽게 가하는 경향이 있음. 소비재의 경우 정부나 언론 등 다양한 비공식적인 루트로 중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쉬움. 식품분야는 제품의 특성상 인증, 위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관과정에서 애로가 많이 발생
- 통관과 관련하여 중국해관은 전자신고를 통한 P/L통관을 2012년 8월 1일 시범 실시하여 2013년 5월 1일 일반신용(B)기업, 수출입검역대상 물품, 항공화물, 他지역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2017년 2월 6일에는 B류 이상의 신용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 또한 통관편리화, 수입자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및 성실신고 유도를 목표로 2016년 10월 29일자로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세수징수관리방식개혁 시범업무관련공고」를 마련
- 최근 해관 업무의 초점이 사전심사를 통한 과세에서 사후추징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와 관련 각별한

7)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한 무역통제

8) 세이프가드·상계관세·반덤핑 등

9) Unctad Trains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對세계 항목별 비관세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SPS)이 195건, 기술장벽 (TBT) 128건으로 각각 전체의 52%, 34%를 차지

10)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한 무역통제

주의를 요함¹¹⁾

- 2016년 11월 1일부터 사후심사제도 도입. 기존에 화물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¹²⁾를 심사하여 통관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대로 수리하고 사후에 납세관련 신고요소를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 사후조사는 화물 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 감면세화물의 경우 해관관리감독기한 내 및 그 후 3년 이내 관련 자료의 진실성 및 합법성 조사가 가능. 2017년 4월 1일부터 HS 72류~85류, 90류 물품을 대상으로 전국해관으로 확대 실시
- 2015년 7월 27일부터 관세 등 제세 집중납부제도를 시행. 집중납부제도는 종전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 납부하던 관세 및 증치세 등의 제세를 수입통관 후 익월 5일에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기업 납세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
- 중국정부는 2017년 6월 28일 「중국 해관총서 2017년 제25호 공고」를 발표해 2017년 7월 1일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전국해관 통관일체화 개혁을 실시. 지역통관 일체화를 실시할 때 통관서류심사를 담당했던 지역별 부서는 더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3곳의 리스크통제센터(海關風險防控中心)¹³⁾와 3곳의 징세관리센터(稅收征管中心)¹⁴⁾를 운영하여 관리

11) 先통관後심사의 도입으로 통관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으나 불성실신고로 인한 사후 추징 시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신고 등의 과정에서 주의해야함

12) 가격신고, 품목분류, 원산지 등

13) 칭다오 리스크통제센터, 상하이 리스크통제센터, 황푸(黃埔) 리스크통제센터

14) 상하이 징세관리센터, 광저우 징세관리센터, 베이징-톈진 징세관리센터

○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최신동향)

- 베트남의 對세계 비관세조치의 개수는 2006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유형별로는 SPS와 TBT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2014년 이후 최근 3년간 비관세장벽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베트남은 ‘수출관련조치’ 유형의 비관세조치가 총 63건으로 전체의 16.62%에 해당하며 베트남 비관세조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 이는 베트남이 최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한 가공무역 발달기지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베트남 현지 투자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함으로 사료됨

2015년 베트남의 對세계 비관세조치 개수(UNCTAD)

코드	유형	비관세조치 개수	%
A	SPS	142	37.47
B	TBT	142	37.47
C	선적전 검사 및 기타	5	1.32
E	라이선스, 쿼터, 수량제한 등	9	2.37
F	가격통제 조치	7	1.85
G	금융조치	2	0.53
H	경쟁에 영향을 주는 조치	8	2.11
J	유통제한	1	0.26
P	수출관련 조치	63	16.62
종합		379	100.00

자료: ERIA-UNCTAD (2016), “Non-Tariff Measures in ASEAN”

- 이전가격과세동향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는 2015년 7월 베트남 국세청¹⁵⁾ 내에 ‘이전가격전문조사부서’를 신설. 2016년 3월 에는 GDT 내에 ‘위험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는데, 이 부서에서는 각종 세무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이전가격전문조사부서의 조사를 돕는 역할을 수행

15)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

- 2016년 5월 베트남 정부는 월 정부회의에서 이전가격조사 강화 지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전가격조사가 강화된 상황.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과거에 비해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제시하는 정상이익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음
- 베트남 관세청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전자통관 시스템 사용을 개시하였고 2020년까지 전국적인 E-Custom시스템 보급이 완료될 예정. 베트남의 E-Custom 시스템 구축은 통관시스템 현대화, 절차 간소화, 투명화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함¹⁶⁾

□ 핵심사항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자료체계화를 위해 해당항목을 유형별(Type)·품목별(Product)·관련 규제기관별(Regulation Agency)로 분류하여 주요 내용들을 정리

○ (유형별 비관세장벽)

-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 SPS¹⁷⁾, TBT¹⁸⁾, 통관절차¹⁹⁾, 품목분류²⁰⁾, 지식재산권²¹⁾, 가격심사, 중고품 수입규제, 가공무역기업 세금추징, 원산지증명 등
-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유형: 베트남의 법령체계, 조세제도²²⁾, 통관절차²³⁾, 원산지증명²⁴⁾, 이전가격제도 등

16) 수출입통관 전산화와 관련 E-Customs 시스템은 크게 자동화물승인시스템(VNACCS: Vietnam Automated Cargo System)과 통관정보 DB시스템(NGS: Vietnam Customs Intelligent Database System) 두 가지로 분류

17) 관련정책 및 법령, 화장품·식품 안전, 관련 주요 쟁점(화장품 신원료규제, 화장품 라벨규제, 화학물질규제) 등

18) 관련정책 및 법령, 강제인증(CCC), 자율인증(CQC), 국가표준 (GB, GB/T 등), China RoHS, 인증 시 유의사항 등

19) P/L통관·사후심사제·집중납부제도·통관일체화 등 최신 통관개혁 조치, 통관서류 및 기타요건, SPS·TBT 관련 통관절차 등

20) 품목분류 결정 시기, 주요발생 애로사항 및 해관처리 방향, 품목분류 오류 방지방안 등

21) 지식재산권 분류 및 등록기관, 상표관련 유의사항, 지재권 분쟁 시 대응방안 등

22) 법인세·부가세·외국인 계약자세(FCT)·개인소득세(IIT), 최신 베트남 세정동향 등

23) 전자통관시스템, 통관절차, 관세 환급절차, 정산절차, 베트남 수출입 통관의 특수성(EP기업, 관세유예제도, HS 98류, 중고기계 수입, 임가공수출, 가공수출, AEO제도 등)

24) HS 코드 불일치, FTA 사후적용, 서명 진위여부 확인 등

○ (품목별 비관세장벽)

- 중국의 비관세장벽 주요품목: 화장품, 식품, 의약품
-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주요품목: 의료기기, 중고기계, 착색/도금 강판

○ (비관세장벽 관련 주요 규제기관)

- 중국의 비관세장벽 관련 규제기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中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국가위생및계획생산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관련 규제기관: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농업 및 농촌 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천연 자원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 위와 같은 분류방식은 향후 비관세장벽 관련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중국 및 베트남 이외에 다른 국가들로 비관세장벽 연구가 확장되더라도 관련형식을 표준으로 하여 수집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

3 연구 활용 및 시사점

- 최근의 비관세장벽 관련이슈는 국가 간 교역 및 그 교역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관세 외 여러 무역장벽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국외기관인 WTO, UNCTAD 및 국내기관인 무역협회, KOTRA 등 여러 유관기관들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여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국제기구 등 국외기관의 경우 조사의 범위가 넓고 체계적이지만 보통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고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규제의 내용이 공식적이고 피상적인 경우가 많음.²⁵⁾ 또한 본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WTO, UNCTAD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보고된 비관세장벽 데이터들에 상당수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됨.²⁶⁾ 따라서 해당 자료는 비관세장벽의 전 세계적 추세와 국가별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정확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니는 것으로 사료됨
- 국내 여러 유관기관들의 경우 對한국 무역장벽의 사례나 최신동향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한국의 기업들이 수출시 직접 해당정보를 찾아 활용이 가능. 그러나 보통 분석이 특정 국가의 일부산업이나 상품 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자료정리는 미흡한 실정
- FTA 체결 및 발효의 확대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반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은 강화되어 FTA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필수적임. 그러나 각 국의 비관세장벽은 포괄 범위가 방대하며 관련정보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개별기업 차원에서 해당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보고서의 가장 큰 공헌은, 중국과 베트남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HS 코드를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이를 상대국의 HS 코드와 연계하는 작업을 통해 **해당국의 비관세장벽을 HS 코드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對중국 및 베트남 수출기업과 수출관계자들이 해당품목 수출 시 일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점에 있음. 또한 FTA대상 품목의 경우 해당 세 번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을

25) 따라서 개별국의 기업들이 가공 없이 해당정보를 직접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6) 해당 법령이 이미 폐지가 되었거나 부적절한 HS CODE와의 매칭 등

제시하여 우리기업들이 수출시 FTA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아직 조사의 초기단계로서 조사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정확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지만, 해당품목 수출 시 상대국 규제와 관련된 필수적 고려요소들을 하나의 형식에 포괄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 해당품목에 대한 설명, 상대국 HS코드연계, FTA특혜 대상여부, 원산지결정기준, 관련세율 및 법령 등 종합적 정보제공

품목별 비관세장벽 분석 과정



- 본보고서의 활용방안으로써 HS 코드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관세청 FTA포털이나 관세정보법령포털에 게시하여 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 수출시 상대국의 수출품목별 비관세장벽 파악을 위한 일차적인 참고자료로 사용이 가능.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
- 또한 본보고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對중국·베트남 수출기업들에게 현재 상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정보의 미인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
- 마지막으로 관세청이나 유관기관 등의 담당자가 기업들의 중국 및 베트남 관련 비관세장벽 애로를 상담함에 있어 민원처리 지원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비관세장벽의 이해	7
제1절 비관세장벽의 특징	7
제2절 비관세장벽의 분류 및 범위	8
제3절 비관세장벽 이슈 및 측정방법	10
제3장 중국의 비관세장벽	13
제1절 도입	13
1. 중국의 교역 및 비관세장벽 현황	13
가. 중국의 교역 현황	13
나.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8
2. 한·중 교역 및 비관세장벽 현황	20
가. 한·중 교역현황	20
나. 한국의 對중국 수출동향 및 특징	25
다. 한·중 비관세장벽 현황	26
3. 중국의 최신 관세 및 비관세장벽 현황	27
가. 중국의 수출입 관세	27
나. 중국의 최신 비관세장벽 동향	28
제2절 유형(type)별 비관세 장벽	31
1. 분류기준 및 기준별 추이	31
2. SPS (위생 및 검역)	32
가. SPS 관련 정책 및 법령	32
나. SPS 조치 관련 현황	36
다. SPS 조치 주요 쟁점	37

3. TBT (기술 장벽)	41
가. TBT 관련 정책 및 법령	41
나. TBT의 구분	43
4. 통관절차	52
가. 최신 통관개혁조치 및 주요 애로사항	52
나. SPS 조치 관련 통관절차	57
다. TBT 조치 관련 통관절차	62
5. 품목분류	64
6. 지식재산권	69
7. 기타 비관세장벽	73
제3절 품목(product)별 비관세 장벽	78
1. 화장품	78
2. 식품	80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81
4. HS 코드별 비관세장벽	82
가. 중국의 비관세장벽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83
나. 품목별 비관세장벽 분석 과정	86
제4절 비관세 장벽 관련 규제기관(regulation agency)	215
1. 종합	215
2.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217
3.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220
4.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223
5. 국가위생및계획생산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225
6.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226
7.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227
8. 중국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228
 제4장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229
 제1절 도입	 229
1. 베트남의 교역 현황	229
가. 베트남의 교역 현황	229
나. 한-베트남 교역 현황	233

2. 한·베트남 관세행정조직 및 최신 비관세 장벽 현황	236
가. 베트남 관세행정 조직	236
나. 베트남의 최신 비관세장벽 이슈	240
3. 베트남의 법령 체계	242
제2절 유형(type)별 비관세 장벽	243
1. 분류기준 및 기준별 추이	243
2. 조세제도	245
가. 베트남 주요세목에 따른 접근	245
나. 최신 베트남 세정동향	248
3. 통관절차	250
가. 베트남의 통관절차	251
나. 베트남 수출입 통관의 특수성	257
4. 원산지증명	261
5. 이전가격제도	263
제3절 품목(product)별 비관세 장벽	265
1. 의료기기	265
2. 중고기계	269
3. 착색/도금 강판	271
4. HS 코드별 비관세장벽	273
제4절 비관세 장벽 관련 규제기관(regulation agency)	293
1. 종합	293
2.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295
3. 농업 및 농촌 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296
4.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297
5.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299
6. 천연 자원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300
7.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301
 제5장 결론	 303
 참고문헌	 307
 부록: 비관세장벽관련 국내지원제도	 310

표 목차

<표1-1> 세계 비관세장벽 발생추이(건수)	3
<표1-2> 2015~2016년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국	4
<표3-1> 2014~2016년 중국의 수출입 실적(억 달러, %)	14
<표3-2> 2015년~2017년 7월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억 달러, %)	14
<표3-3> 2015년~2017년 7월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실적(억 달러, %)	15
<표3-4>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억 달러, %)	16
<표3-5>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억 달러, %)	17
<표3-6> 2012~2016년 對중국 수출입 실적(백만 달러, %)	22
<표3-7> 2016년 한·중 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비교	23
<표3-8>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백만 달러, %)	23
<표3-9> 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백만 달러, %)	24
<표3-10> 중국의 對세계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	31
<표3-11> 중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 유형(2016.3~2017.3)	37
<표3-12> CCC 인증목록	45
<표3-13> CQC 자율인증 대상목록	48
<표3-14> 통관절차의 일관성 및 투명성 문제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54
<표3-15>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검사 소요비용	60
<표3-16>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68
<표3-17>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69
<표3-18> 원산지증명서 내용 불인정으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77
<표3-19>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수정내역	78
<표3-20> 품목별비관세장벽: 1. 곡실류 (MTI 3단위: 011)_감자	87
<표3-21> 품목별비관세장벽: 2. 산식물 (MTI 3단위: 012)_난초	88
<표3-22> 품목별비관세장벽: 3. 식물성물질 (MTI 3단위: 013)_사료첨가제	89
<표3-23> 품목별비관세장벽: 4. 식물성재료 (MTI 3단위: 014)_소스와 조미료	90
<표3-24> 품목별비관세장벽: 4. 식물성재료 (MTI 3단위: 014)_간장	91
<표3-25> 품목별비관세장벽: 4. 식물성재료 (MTI 3단위: 014)_글리세롤	92
<표3-26> 품목별비관세장벽: 5. 기호식품 (MTI 3단위: 015)_혼합주스	93
<표3-27> 품목별비관세장벽: 5. 기호식품 (MTI 3단위: 015)_설탕	94
<표3-28> 품목별비관세장벽: 5. 기호식품 (MTI 3단위: 015)_음료	96
<표3-29> 품목별비관세장벽: 6. 농산가공품 (MTI 3단위: 016)_과실견과류	97

<표3-30>	품목별비관세장벽: 6. 농산가공품 (MTI 3단위: 016)_곡물식료품	98
<표3-31>	품목별비관세장벽: 6. 농산가공품 (MTI 3단위: 016)_감귤류	100
<표3-32>	품목별비관세장벽: 7. 육류 (MTI 3단위: 022)_뼈없는 쇠고기	101
<표3-33>	품목별비관세장벽: 7. 육류 (MTI 3단위: 022)_가공 육류	102
<표3-34>	품목별비관세장벽: 8. 축산가공품 (MTI 3단위: 024)_조제분유	104
<표3-35>	품목별비관세장벽: 9. 모류 (MTI 3단위: 025)_솜털과 깃털	105
<표3-36>	품목별비관세장벽: 10. 어류 (MTI 3단위: 041)_가다랑어류	106
<표3-37>	품목별비관세장벽: 11. 갑각류 (MTI 3단위: 042)_게	107
<표3-38>	품목별비관세장벽: 12. 해조류 (MTI 3단위: 044)_김	108
<표3-39>	품목별비관세장벽: 13. 수산가공품 (MTI 3단위: 046)_생선조제품	109
<표3-40>	품목별비관세장벽: 13. 수산가공품 (MTI 3단위: 046)_다랑어류 조제품	110
<표3-41>	품목별비관세장벽: 14. 기타 비금속 광물(MTI 3단위: 129)_황	111
<표3-42>	품목별비관세장벽: 15. 석유제품 (MTI 3단위: 133)_그리스	112
<표3-43>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벤젠	113
<표3-44>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기타 혼합물	114
<표3-45>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톨루엔	115
<표3-46>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혼합크실렌이성체	116
<표3-47>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부타디엔과 이소프렌	117
<표3-48>	품목별비관세장벽: 17. 기타 석유화학 (MTI 3단위: 219)_노르말파라핀	118
<표3-49>	품목별비관세장벽: 18. 염료 및 안료 (MTI 3단위: 221)_루미노퍼	119
<표3-50>	품목별비관세장벽: 18. 염료 및 안료 (MTI 3단위: 221)_안료 조제품	120
<표3-51>	품목별비관세장벽: 19. 사진영화용 재료 (MTI 3단위: 225)_포토레지스트	121
<표3-52>	품목별비관세장벽: 20. 농약 및 의약품 (MTI 3단위: 226)_살균제	122
<표3-53>	품목별비관세장벽: 20. 농약 및 의약품 (MTI 3단위: 226)_살충제	123
<표3-54>	품목별비관세장벽: 21. 비누 치약 및 화장품 (MTI 3단위: 227)_파우더	124
<표3-55>	품목별비관세장벽: 21. 비누 치약 및 화장품 (MTI 3단위: 227)_목욕용 조제품	125
<표3-56>	품목별비관세장벽: 21. 비누 치약 및 화장품 (MTI 3단위: 227)_비누	126
<표3-57>	품목별비관세장벽: 22. 정밀화학원료 (MTI 3단위: 228)_산화아연	127
<표3-58>	품목별비관세장벽: 23. 유리제품 (MTI 3단위: 243)_평면유리	128
<표3-59>	품목별비관세장벽: 23. 유리제품 (MTI 3단위: 243)_안전유리	139
<표3-60>	품목별비관세장벽: 24. 플라스틱제품 (MTI 3단위: 310)_카보이류	130
<표3-61>	품목별비관세장벽: 25. 플라스틱제품 (MTI 3단위: 310)_뚜껑류	130
<표3-62>	품목별비관세장벽: 24. 플라스틱제품 (MTI 3단위: 310)_비데	131
<표3-63>	품목별비관세장벽: 25. 인조섬유 (MTI 3단위: 411)_합성스테이플사	132

<표3-64>	품목별비관세장벽: 26. 인조섬유 장섬유사 (MTI 3단위: 422)_합성필라멘트사	133
<표3-65>	품목별비관세장벽: 27. 모직물 (MTI 3단위: 432)_모직물	134
<표3-66>	품목별비관세장벽: 28. 면직물 (MTI 3단위: 433)_표백 면직물	135
<표3-67>	품목별비관세장벽: 29. 인조장섬유직물 (MTI 3단위: 434)_합성필라멘트사	136
<표3-68>	품목별비관세장벽: 30. 편직물 (MTI 3단위: 436)_메리야스 등	138
<표3-69>	품목별비관세장벽: 31. 의류 (MTI 3단위: 441)_코르슬렛	139
<표3-70>	품목별비관세장벽: 32. 신변잡화 (MTI 3단위: 511)_위생제품	140
<표3-71>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접착제	141
<표3-72>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필기용잉크	142
<표3-73>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인쇄용잉크	143
<표3-74>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제도용구	144
<표3-75>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자전거 등	145
<표3-76>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타자기용 리본	146
<표3-77>	품목별비관세장벽: 34. 주방용품 (MTI 3단위: 516)_식탁용품	147
<표3-78>	품목별비관세장벽: 35. 패션잡화 (MTI 3단위: 518)_액세서리	148
<표3-79>	품목별비관세장벽: 36. 신변잡화 (MTI 3단위: 521)_화장용분첩	149
<표3-80>	품목별비관세장벽: 36. 신변잡화 (MTI 3단위: 521)_머리핀	150
<표3-81>	품목별비관세장벽: 37. 철강재용기 및 체인 (MTI 3단위: 616)_철강용기	151
<표3-82>	품목별비관세장벽: 38. 주석제품 (MTI 3단위: 627)_주석봉 등	152
<표3-83>	품목별비관세장벽: 39. 컨테이너 (MTI 3단위: 643)_컨테이너	153
<표3-84>	품목별비관세장벽: 40. 기타 철강금속제품 (MTI 3단위: 690)_경첩	154
<표3-85>	품목별비관세장벽: 41. 원동기 및 펌프 (MTI 3단위: 711)_기체펌프	155
<표3-86>	품목별비관세장벽: 41. 원동기 및 펌프 (MTI 3단위: 711)_액압실린더	156
<표3-87>	품목별비관세장벽: 4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MTI 3단위: 713)_보일러	157
<표3-88>	품목별비관세장벽: 43. 광학기기 (MTI 3단위: 715)_대물렌즈	158
<표3-89>	품목별비관세장벽: 43. 광학기기 (MTI 3단위: 715)_편광재료	159
<표3-90>	품목별비관세장벽: 43. 광학기기 (MTI 3단위: 715)_프리즘 등	160
<표3-91>	품목별비관세장벽: 44. 섬유 및 화학기계 (MTI 3단위: 721)_증류기 등	161
<표3-92>	품목별비관세장벽: 44. 섬유 및 화학기계 (MTI 3단위: 721)_타이어 성형기 등	162
<표3-93>	품목별비관세장벽: 45. 금속공작기계 (MTI 3단위: 723)_머시닝센터	163
<표3-94>	품목별비관세장벽: 46.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MTI 3단위: 726)_금속용접기	164
<표3-95>	품목별비관세장벽: 47. 농기계 (MTI 3단위: 728)_파종기 등	165
<표3-96>	품목별비관세장벽: 48. 기타 산업기계 (MTI 3단위: 729)_소화기	166
<표3-97>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전동축, 크랭크	168

<표3-98>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클러치 등	169
<표3-99>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운전대 등	171
<표3-100>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소음기 등	172
<표3-101>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에어백 등	173
<표3-102>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안전벨트	174
<표3-103>	품목별비관세장벽: 50. 기계요소 (MTI 3단위: 751)_감압밸브	176
<표3-104>	품목별비관세장벽: 51. 무선통신기기 (MTI 3단위: 812)_안테나 등	177
<표3-105>	품목별비관세장벽: 51. 무선통신기기 (MTI 3단위: 812)_무선기기 등	179
<표3-106>	품목별비관세장벽: 51. 무선통신기기 (MTI 3단위: 812)_레이더기기 등	180
<표3-107>	품목별비관세장벽: 52. 전자응용기기 (MTI 3단위: 814)_방사선기기	182
<표3-108>	품목별비관세장벽: 53. 영상기기 (MTI 3단위: 821)_텔레비전 수신용기기	183
<표3-109>	품목별비관세장벽: 54. 음향기기 (MTI 3단위: 822)_라디오 수신용기기	185
<표3-110>	품목별비관세장벽: 55. 가전용 회전기기 (MTI 3단위: 824)_팬	187
<표3-111>	품목별비관세장벽: 55. 가전용 회전기기 (MTI 3단위: 824)_공기조절기	188
<표3-112>	품목별비관세장벽: 55. 가전용 회전기기 (MTI 3단위: 824)_진공청소기	190
<표3-113>	품목별비관세장벽: 56. 난방 및 전열기기 (MTI 3단위: 825)_전열용 저항체	192
<표3-114>	품목별비관세장벽: 57. 조명기기 (MTI 3단위: 825)_램프	194
<표3-115>	품목별비관세장벽: 57. 조명기기 (MTI 3단위: 825)_자동차용	195
<표3-116>	품목별비관세장벽: 58. 기타 가정용 전자 (MTI 3단위: 829)_고주파 증폭기	197
<표3-117>	품목별비관세장벽: 58. 기타 가정용 전자 (MTI 3단위: 829)_여과기 등	198
<표3-118>	품목별비관세장벽: 58. 기타 가정용 전자 (MTI 3단위: 829)_마사지 기기	200
<표3-119>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변압기	201
<표3-120>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유전체 변압기	202
<표3-121>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개폐기	203
<표3-122>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계전기	204
<표3-123>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자동차단기	206
<표3-124>	품목별비관세장벽: 60. 산업용 전기기기 (MTI 3단위: 842)_동축케이블 등	207
<표3-125>	품목별비관세장벽: 61. 전기부품 (MTI 3단위: 849)_변압기 등	209
<표3-126>	품목별비관세장벽: 61. 전기부품 (MTI 3단위: 849)_절연용 물품	210
<표3-127>	품목별비관세장벽: 61. 전기부품 (MTI 3단위: 849)_전동기 등	211
<표3-128>	품목별비관세장벽: 61. 전기부품 (MTI 3단위: 849)_개폐기 등	212
<표3-129>	품목별비관세장벽: 62. 의료위생용품 (MTI 3단위: 950)_조제드레싱 등	213
<표3-130>	품목별비관세장벽: 62. 의료위생용품 (MTI 3단위: 950)_시멘트	214
<표3-131>	식품 종류 별 규제기관	216

<표4-1> 2014~2016 베트남 수출입 실적(억 달러, %)	229
<표4-2> 주요품목별 수출실적(백만 달러, %)	230
<표4-3> 주요품목별 수입실적(백만 달러, %)	231
<표4-4> 2016년 주요국가별 수출입 실적(백만 달러)	232
<표4-5> 2012~2016년 對베트남 수출입 실적(백만 달러, %)	233
<표4-6>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백만 달러, %)	234
<표4-7> 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백만 달러, %)	235
<표4-8> 베트남 관세행정조직 변화 주요 내용	237
<표4-9> 「Doing Business 2017」에 따른 교역환경 평가 결과	240
<표4-10> 아시아 주요 비관세장벽 국가 현황(2017. 5월 기준)	241
<표4-11> 베트남의 對세계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2016~2016년)	243
<표4-12> 2015년 베트남의 對세계 비관세조치 개수(UNCTAD)	244
<표4-13> 외국인 계약자세(FTC) 납부 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247
<표4-14> 세무조사 및 가산세·지연이자 관련동향	249
<표4-15> EP기업 및 내수기업 간 거래에 있어 통관 진행여부	258
<표4-16> 베트남의 협정별 사후적용 규정	262
<표4-17> 품질 검사 대상 의료장비(신품) 목록	268
<표4-18> 베트남의 중고기계 수입요건 및 제출 서류	271
<표4-19> 베트남의 원산지별 수입할당량 배정	272
<표4-20> 품목별비관세장벽: 1. 곡실류 (MTI 3단위: 011)_배	274
<표4-21> 품목별비관세장벽: 2. 산식물 (MTI 3단위: 012)_채소(버섯)	276
<표4-22> 품목별비관세장벽: 3. 기호식품 (MTI 3단위: 015)_홍삼추출물	279
<표4-23> 품목별비관세장벽: 4. 농산가공품 (MTI 3단위: 016)_비스킷 등	281
<표4-24> 품목별비관세장벽: 5. 석유제품 (MTI 3단위: 133)_자동차 휘발유	283
<표4-25> 품목별비관세장벽: 6. 비누치약 및 화장품 (MTI 3단위: 227)_두발용 제품	284
<표4-26> 품목별비관세장벽: 7. 플라스틱 제품 (MTI 3단위: 310)_의약품 포장용기	285
<표4-27> 품목별비관세장벽: 7. 플라스틱 제품 (MTI 3단위: 310)_스크랩 등	286
<표4-28> 품목별비관세장벽: 8. 철강판 (MTI 3단위: 613)_평판압연제품	287
<표4-29> 품목별비관세장벽: 9. 레일 및 철 구조물 (MTI 3단위: 615)_받침기구	288
<표4-30> 품목별비관세장벽: 10. 자동차 (MTI 3단위: 741)_콘크리트 운반차	289
<표4-31> 품목별비관세장벽: 10. 자동차 (MTI 3단위: 741)_수송용 운반차	290
<표4-32> 품목별비관세장벽: 11. 영상기기 (MTI 3단위: 821)_TV 수신기	291
<표4-33> 베트남 비관세조치 규제기관	293

그림 목차

<그림1-1>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 추이(단위%)	2
<그림1-2> TBT 통보문 건수	3
<그림3-1>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변화추이	18
<그림3-2>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및 중국의 관세 양허수준	20
<그림3-3> 對중국 무역추이(2006~2016년)	22
<그림3-4> 중국의 연도별 수입 잠정 관세율 품목 수 변화	27
<그림3-5> 식품 및 화장품의 국가별 통관 불합격 건수 (2016년 3월 ~ 2017년3월) ..	29
<그림3-6> 최근 對한국 식품 및 화장품 수입통관 불합격 원별 추이(건)	29
<그림3-7> 수입허가 제한된 (수입불허가) 식품 및 화장품 목록 내 한국 상품 비율 ..	30
<그림3-8> 기술 장벽(인증)의 구분	43
<그림3-9> 중국의 안전표준 체계	49
<그림3-10>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신청절차	59
<그림3-11> 인증 취득절차	62
<그림3-12> 품목별 비관세장벽 분석 과정	86
<그림3-13> 품질관리관련 중국 정부기관 조직도	215
<그림3-14>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AQSIQ) 조직도	218
<그림3-15> 수입금지 식품·화장품 목록	219
<그림3-16>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222
<그림4-1> 2011~2017년 베트남 GDP 성장률(%)	232
<그림4-2> 베트남 관세행정조직 구조	239
<그림4-3> 「Doing Business 2017」에 따른 ‘수입’환경의 시간당 비용 비교 ..	241
<그림4-4> 베트남의 법령 체계	242
<그림4-5> 베트남 세무당국 조직구조	250
<그림4-6> VNACCS 전자통관시스템 2014.4.1.개통	251
<그림4-7> 관세 환급 절차	255
<그림4-8> 정산절차	256
<그림4-9> 베트남의 보건분야 지출 및 예상추이	26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가중시켰다.
- 미국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출범한 이래 반덤핑과 상계관세 같은 수입규제 조사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7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발간한 G20(주요 20개국) 무역·투자 조치 제18차 보고서에 따르면¹⁾ 2017년(올해) 상반기(1~6월) 미국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²⁾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건)보다 42% 늘었으며 작년 하반기(13건)보다는 161%나 급증하였다.³⁾
- 반덤핑과 함께 대표적인 자국 산업피해 구제조치의 하나인 상계관세 조사도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미국은 2017년 상반기 15건의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해 전년 동기(12건)보다 25%, 작년 하반기(4건) 대비 275%나 급증하였다.
- 중국의 경우도 명시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 하에 수입규제(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결과 올해 반덤핑조사 착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2건)보다 무려 350% 증가한 9건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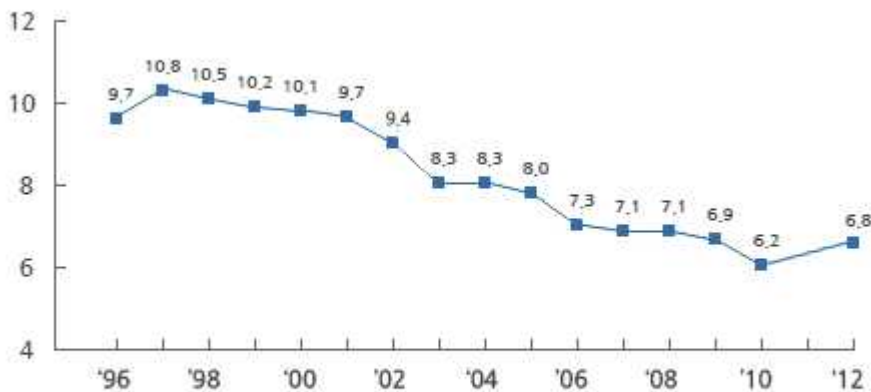
1) WTO 등은 G20 회원국들의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과 원상회복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 보통 반덤핑조사가 반드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개시 건수의 증가는 향후 반덤핑조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초기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3)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G20 국가 전체(미국 포함)의 3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다. G20 국가들은 올 상반기 총 123건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108건)보다 14% 늘었다.

- 보호무역주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⁴⁾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관련 장벽으로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현재 비관세장벽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 국가, 국제기구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과거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 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 FTA 체결 및 발효의 확대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은 기술표준,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을 근거로 강화되어 FTA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1-1> 세계 평균 실행관세를 추이(단위%)



* 출처 : Worldbank(World Development Indicator)

4)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과 비슷한 용어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가 있으며, 통상 비관세조치(NTMs)가 비관세장벽(NTBs)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나 실무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림1-2> TBT 통보문 건수



○ 보다 구체적으로, 1995년 WTO 출범 이후 2000년 중반까지 8,235건을 기록했던 전세계 비관세장벽은 2000년 7월~2004년 6월 기간 중에 7,407건으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매 4년 마다 다시 증가해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11,729건을 기록하였다.

- 유형별로 보면 무역기술장벽(TBT)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2000년 7월부터 2004년 6월 기간 중 총 2,511건에서 최근 4년 동안 6,373건으로 2.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세계 비관세장벽 발생추이(건수)

구분	위생 검역	기술 장벽	반덤 핑	상계 관세	수입 제한	긴급 수입제한	수량 제한	기타	전체
00년 7월 ~04년 6월	2,460	2,511	1,217	73	84	477	583	2	7,407
04년 7월 ~08년 6월	3,167	3,643	947	43	42	247	539	0	8,628
08년 7월 ~12년 6월	3,751	5,790	987	98	78	216	565	5	11,490
12년 7월 ~16년 6월	3,293	6,373	1,205	154	51	91	558	4	11,729

자료 :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대상상공회의소, 2016.12

- 따라서 비관세장벽의 증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실익이 감소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요 협정상대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기업지원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중국과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정보 분석

- 2016년 기준 한국의 수출 1순위 국가인 중국과 3순위 국가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최신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품목별 자료 체계화를 통해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해당국의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본 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 조사대상국인 중국과 베트남은 한국의 국가별 수출규모와 해당국의 비관세조치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표1-2> 2015~2016년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국

순위	한국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5년	2016년
1	중국	137,124	124,433
2	미국	69,832	66,462
3	홍콩	30,418	32,782
4	베트남	27,771	32,630
5	일본	25,577	24,355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상대국의 교역 및 비관세장벽 현황) 중국 및 베트남의 교역 및 비관세 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국의 최신 비관세장벽 이슈를 살펴본다.

□ 핵심사항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자료체계화를 위해 해당항목을 유형별(Type)·품목별(Product)·관련 규제기관별(Regulation Agency)로 분류하여 중요 내용들을 정리

○ (유형별 비관세장벽)

-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 SPS⁵⁾, TBT⁶⁾, 통관절차⁷⁾, 품목분류⁸⁾, 지식재산권⁹⁾, 가격심사, 중고품 수입규제, 가공무역기업 세금추징, 원산지증명 등
-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유형: 베트남의 법령체계, 조세제도¹⁰⁾, 통관절차¹¹⁾, 원산지증명¹²⁾, 이전가격제도 등

○ (품목별 비관세장벽)

- 중국의 비관세장벽 주요품목: 화장품, 식품, 의약품
-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주요품목: 의료기기, 중고기계, 착색/도금 강판
- 본 보고서의 가장 큰 차별 점은, 중국과 베트남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HS 코드를 선정하고 이를 상대국의 HS 코드와 연계하는 작업을 통해 해당국의 비관세장벽을 HS 코드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¹³⁾하여 對중국 및 베트남 수출기업과 수출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5) 관련정책 및 법령, 화장품·식품 안전, 관련 주요 쟁점(화장품 신원료규제, 화장품 라벨규제, 화학물질규제) 등

6) 관련정책 및 법령, 강제인증(CCC), 자율인증(CQC), 국가표준 (GB, GB/T 등), China RoHS, 인증 시 유의사항 등

7) P/L통관·사후심사제·집중납부제도·통관일체화 등 최신 통관개혁 조치, 통관서류 및 기타요건, SPS·TBT 관련 통관절차 등

8) 품목분류 결정 시기, 주요발생 애로사항 및 해관처리 방향, 품목분류 오류 방지방안 등

9) 지식재산권 분류 및 등록기관, 상표관련 유의사항, 지재권 분쟁 시 대응방안 등

10) 법인세·부가세·외국인 계약자세(FCT)·개인소득세(IIT), 최신 베트남 세정동향 등

11) 전자통관시스템, 통관절차, 관세 환급절차, 정산절차, 베트남 수출입 통관의 특수성(EP기업, 관세유예제도, HS 98류, 중고기계 수입, 임가공수출, 가공수출, AEO제도 등)

12) HS 코드 불일치, FTA 사후적용, 서명 진위여부 확인 등

13) 중국 및 베트남의 HS 품목별 데이터베이스 정리 양식은 활용가능 한 원자료(raw data)의 형태가 다른 이유로 동일한 양식으로 구성하지는 못하였다.

○ (비관세장벽 관련 주요 규제기관)

- 중국의 비관세장벽 관련 규제기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中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국가위생및계획생산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관련 규제기관: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농업 및 농촌 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천연 자원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 위와 같은 분류방식은 향후 비관세장벽 관련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중국 및 베트남 이외에 다른 국가들로 비관세장벽 연구가 확장되더라도 관련형식을 표준으로 하여 수집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자료 수집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SPS 및 TBT 관리 데이터베이스¹⁴⁾,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TRAINS¹⁵⁾, 중국 및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및 법령정보 사이트, 유관기관의 既발행보고서 및 발표자료, 민간건설팅기관, 기타 관세청의 품목별 수출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4) Integrated Data Base (IDB)

15) Trade Analysis and Information System (TRAINS), UNCTAD의 비관세장벽 분류는 UNCTAD Trade Analysis and Information System (TRAINS)의 Trade Control Measures Classification에 나타나 있으며 각 국가들이 무역장벽에 관한 정보를 이 분류 코드에 맞추어 UNCTAD로 알린다.

제2장 비관세장벽의 이해

제1절 비관세장벽의 특징

- 비관세장벽은 그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을 미치는 품목 범위가 각각 다르며,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되거나 혹은 외부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적용되는 유형도 있다.
 - 따라서 비관세장벽의 무역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또는 개별 품목별로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법률로 제정되는 유형이 있는 반면 상당수의 비관세장벽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을 없이 여러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정책에서 파생되므로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
- 수입국의 무역정책은 수출국에 아무런 통고 없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 정보 부족 및 변칙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다.
-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명목상으로는 무차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2절 비관세장벽의 분류 및 범위

□ 비관세장벽 분류

- 상술한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에 대한 각 국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의 범위나 종류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후생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해될 수 있다.
- 따라서 다자간 무역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규정된 조치나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정당화 할 수 있는 조치라 하더라도 각 국의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을 저해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면 비관세장벽으로 볼 수 있겠다.
- 그러나 비관세장벽의 다양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이 분류 역시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비관세장벽의 분류는 WTO 및 UNCTAD의 분류법과 몇몇 학자들(예를 들면 Baldwin, 1970; Deardorff and Stern, 1998)에 의한 분류법 그리고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정의 분류법들을 포괄한다.
- WTO분류는 특정 장벽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분쟁 해결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왔다 : 반덤핑 [ADP], 상계관세 [CV], 수량제한 [QR], 세이프가드 [SG], 위생 및 검역 [SPS], 특별 세이프가드 [SSG], 무역기술장벽[TBT], 저율관세할당 [TRQ], 수출보조금 [XS]
- UNCTAD의 분류는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에 집중하여 분류하고 있다 : 위생 및 검역 [SPS] [A], 무역기술장벽[TBT] [B], 선적전검사 등[INSP] [C], 임의적 보호조치[CTPM] [D], 수량제한조치 [QC] [E], 가격제한조치[PC] [F], 금융조치[G],경쟁에 영향을 주는 조치[H], 무역관련투자조치[I], 유통제한[J], 우편판매서비스 제한[K], 수

출보조 이외의 보조[L], 정부조달 제한[M], 지식재산권[N], 원산지[O], 수출관련조치 [EXP] [P]

- 몇몇 학자들의 경우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조치들 뿐만 아니라 수출과 관련된 조치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포괄하여 비관세장벽을 분류하였고,
-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정의 분류법들은 협정의 종류에 따라 분류형태가 달라 질 수 있다.

□ 비관세장벽 범위

- 비관세장벽은 국경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국가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수입허가제,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통관, 원산지규정,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나 협의의 의미로는 TBT와 SPS를 가리킨다.
- (TBT)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 (SPS) 인간 위생을 위한 보호조치 및 동 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 관련 국제 규범을 통칭한다.

제3절 비관세장벽 이슈 및 측정방법

□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분석

- 비관세장벽은 개별 국가의 후생이나 세계 무역에 관세보다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Bosworth, 1999). 관세의 경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 이후 다자간 혹은 양자 간 협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이를 대신하여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선진국들 사이에서 비관세장벽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관세장벽의 경우 종가세(ad valorem duties) 혹은 종량세(specific duty)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 강도를 측정하기가 쉬우며, 상대적으로 국가 간 협정에 의한 감세논의가 용이하다 볼 수 있다.
- 반면 비관세장벽의 경우 장벽에 의한 가격의 변화 정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고 종류 역시 다양하여 그 강도 측정이 어렵다.¹⁶⁾
- 따라서 비관세장벽을 모니터링하거나 컨트롤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정부나 기업입장에서는 비관세장벽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16)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약속된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관세 상당치(Tariff Equivalent)가 있으나 그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

□ 기존 비관세장벽의 측정방법 검토

- 현재까지 양국 간의 비관세장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음과 같은 4가지 접근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① (수입가격-내수가격)-관세율

- 첫 번째 방법은 각 제품의 수입가격 (import price)과 내수가격 (domestic price)의 차이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그 제품에 부과된 관세율을 뺀 결과를 비관세장벽으로 보는 것으로, 가격격차접근법 (price-differential approach)이라고 일컫는다.¹⁷⁾
- 이 방법은 비관세장벽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지만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입제품의 품질과 구성 부품 등이 국내 수요와 일치해야 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또 다른 단점은 국내 생산에 대한 보조가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이 감소될 수 있는데, 이 방식으로는 그러한 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② 국가 간 소매가격 격차

- 두 번째 방법은 동일 제품의 국가 간 소매가격 격차를 살펴보는 것으로 국내와 해외의 가격 격차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지표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 절대적 구매력평가(absolute purchasing power parity)에 기초한 이 방식은 주로 지출액 데이터에 기초하여 추정되나, 이 추정치들은 산업별로 데이터를 생성하기가 쉽지 않고 국가 간 유통마진과 무역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지닌다.

17) 이 방법은 Hufbauer and Elliott(1994)이 미국의 비관세장벽을 연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③ 중력모형의 잔차

- 세 번째 방법은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residual error)를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한다.¹⁸⁾
- 그러나 잔차에는 비관세장벽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정된 결과를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의 정확한 추정치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또한 중력모형은 매크로 수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형으로 개별 상품 단위에서 추정한 분석결과는 그 수가 많지 않아 제한적이다.

④ 케이스별 빈도

- 네 번째 방법은 비관세장벽을 개별 케이스별로 목록을 산출하고 그 빈도를 측정하여 국제비교를 하는 것이다.¹⁹⁾
- 그러나 이 방식은 비관세장벽을 정량적정보가 아닌 정성적정보에 기초한 접근으로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크기나 장벽 완화로 인한 후생효과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그 한계가 있다.

18) Sohn(2005)은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Harrigan and Vanjani(2003)는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추정하는 데 이 방식을 적용하였고, Wall(1999)은 미국이 수출 시 부딪히는 해외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19) OECD와 한국무역협회(KITA)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케이스별로 리스트를 추적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인교(2001)와 김양희·조병택(2002)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제3장 중국의 비관세장벽

제1절 도입

1. 중국의 교역 및 비관세장벽 현황

가. 중국의 교역 현황

- 중국은 2001년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이후 평균관세율이 15.8%에서 9.8%로 하향되었고, 전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제 2의 수입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2016년 중국의 수입관세 잠정 인하대상 품목은 총 822개 (HS 8단위)로 전체 수출입 품목 (세칙세목 기준) 8,547개의 9.62%를 차지하며 전년에 비해 35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 수출입 잠정관세는 매년 12월 중순 발표되며, ‘수입상품 잠정세율표’에 총 822개의 품목이 포함되어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시행되었다.
 - 대상 품목 중 가방류, 의류, 스카프류, 담요, 선글라스, 진공 보온컵 등은 일반세율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최혜국 세율)에 대비해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최근 다양한 관세 인하 조치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던 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고, 중국제품과 해외제품의 경쟁을 통한 자국물품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2016년 중국의 수출은 21,349억 달러, 수입은 15,229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6,12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였다.

- 2016년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6.4%, 수입은 4.9% 각각 감소하여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교역액이 감소하였다.²⁰⁾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모두 수입액의 감소폭이 커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3-1> 2014~2016년 중국의 수출입 실적(억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증감률)	23,432 (6.0)	22,804 (△2.7)	21,349 (△6.4)
수입(증감률)	19,631 (1.1)	16,016 (△18.4)	15,229 (△4.9)
수지	3,800	6,788	6,120

자료: 무역협회 자료가공

□ 중국의 주요 국가별 교역 현황

- <표3-2>와 <표3-3>은 각각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 및 수입실적을 보여준다.

<표3-2> 2015년~2017년 7월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억 달러, %)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7월)		
	국 가	금 액	비 중	국 가	금 액	비 중	국 가	금 액	비 중
1	미국	3,961	17.4	미국	3,886	18.2	미국	2,307	18.5
2	홍콩	3,609	15.8	홍콩	2,923	13.7	홍콩	1,463	11.8
3	일본	1,495	6.6	일본	1,295	6.1	일본	763	6.1
4	한국	1,004	4.4	한국	957	4.5	한국	577	4.6
5	독일	727	3.2	독일	660	3.1	독일	396	3.2
6	베트남	636	2.8	베트남	609	2.9	인도	383	3.1
7	네덜란드	649	2.8	인도	594	2.8	베트남	375	3.0
8	영국	571	2.5	네덜란드	580	2.7	네덜란드	357	2.9
9	인도	542	2.4	영국	565	2.7	영국	317	2.5
10	싱가포르	487	2.1	싱가포르	474	2.2	싱가포르	255	2.1
총괄	-	22,804	100	-	21,349	100	-	12,437	100

자료: 무역협회 자료가공

20) 2017년 01~04월은 2016년 동기대비 수출 수입액이 각각 4.2%, 20.6% 증가하였다.

<표3-3> 2015년~2017년 7월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실적(억 달러, %)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7월)		
	국 가	금 액	비 중	국 가	금 액	비 중	국 가	금 액	비 중
1	한국	1,903	11.9	한국	1,587	10.4	한국	946	9.7
2	일본	1,627	10.2	일본	1,452	9.5	일본	904	9.3
3	미국	1,531	9.6	대만	1,397	9.2	미국	837	8.6
4	대만	1,523	9.5	미국	1,323	8.7	대만	807	8.3
5	독일	1,048	6.5	독일	861	5.7	독일	526	5.4
6	호주	901	5.6	호주	635	4.2	호주	497	5.1
7	말레이시아	558	3.5	말레이시아	490	3.2	브라질	342	3.5
8	브라질	520	3.2	브라질	454	3.0	말레이시아	297	3.0
9	태국	382	2.4	태국	386	2.5	러시아	232	2.4
10	러시아	416	2.6	러시아	318	2.1	태국	231	2.4
총괄	-	16,016	100	-	15,229	100	-	9,770	100

자료: 무역협회 자료가공

- **[수출]** 2015~2017년 7월까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2016년 기준 미국(3,886억 달러), 홍콩(2,923억 달러), 일본(1,295억 달러), 한국(957억 달러) 순으로 홍콩을 제외하고는 對美 수출비중이 18.2%로 매우 높았다.
 - 중국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한국은 FTA 발효 이전인 2015년이나 발효 이후인 2016년~2017년 7월에 걸쳐 큰 변화 없이 4위를 점유하고 있다. 전체 수출 대비 對한국 수출비중도 2015년 4.4%, 2016년 4.5%, 2017년 4.6%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상승폭은 아니다.
- **[수입]** 2015~2017년 7월까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다. 2016년 기준 한국(1,587억 달러), 일본(1,452억 달러), 대만(1,397억 달러), 미국(1,323억 달러) 순으로 상위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10% 내외로 비슷했다.

- 중국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한국은 FTA 발효 이전인 2015년이나 발효 이후인 2016년~2017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1위를 점유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현재 중국시장에 있어서 한국제품²¹⁾의 위상은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수입 대비 중국의 對한국 수입비중은 2015년 11.9%, 2016년 10.4%, 2017년 9.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위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도 2015년 1.7%, 2016년 0.9%, 2017년 0.4%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표3-4>와 <표3-5>는 각각 2015년과 2016년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 및 수입실적을 보여준다.

<표3-4>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억 달러, %)

구 분	2015년	증감률	2016년	증감률
전자기기 및 부품	6,007.0	5.2	5,599.0	△6.8
원자로·보일러·기계류	3,646.0	△9.1	3,459.0	△5.1
가구 및 조명기구	987.0	5.7	909.0	△7.9
의류(편물)	838.0	△8.9	758.0	△9.6
의류(편물 제외)	785.0	△3.6	736.0	△6.2
광학·의료 정밀기기	738.0	△0.3	684.0	△7.3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658.0	△1.5	650.0	△1.2
철강제품	627.0	△2.5	607.0	△3.1
신발류	606.0	△0.1	542.0	△10.6

자료: 무역협회 자료가공 (MTI 3단위 기준)

21) 중간재 및 최종재를 포괄함

<표3-5>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억 달러, %)

구 분	2015년	증감률	2016년	증감률
전자기기 및 부품	4,319.0	1.6	4,159.0	△3.7
광물성 연료 에너지	1,984.0	△37.3	1,747.0	△11.9
원자로·보일러·기계류	1,572.0	△12.5	1,478.0	△6.0
광학·의료 정밀기기	997.0	△5.7	930.0	△6.8
광물·슬래그·회	952.0	△30.1	929.0	△2.5
일반차량	696.0	△22.2	715.0	2.6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656.0	△12.7	610.0	△7.0
유기화합물	479.0	△21.5	439.0	△8.3
채유용 종자·인삼	399.0	△13.3	383.0	△3.8
동 및 관련제품	384.0	△19.4	333.0	△13.4

자료: 무역협회 자료가공 (MTI 3단위 기준)

○ **[수출]** 전자기기 및 부품이 2016년 중국 수출 1위 품목 기록하였고, 그 다음은 원자로·보일러·기계류가 차지했다. 그 밖에 가구 및 조명기구, 의류·신발, 정밀기기, 플라스틱·철강 제품이 주요 수출품을 구성하였다.

- 보다 하위의 품목으로는 통신을 위한 전기장치,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자동차 부품, 여성용 의류, 액정 및 광학 장치, 텔레비전 수신기, 램프 및 조명기구, 반도체 장치 등이 있다.

- 2016년에는 모든 주요품목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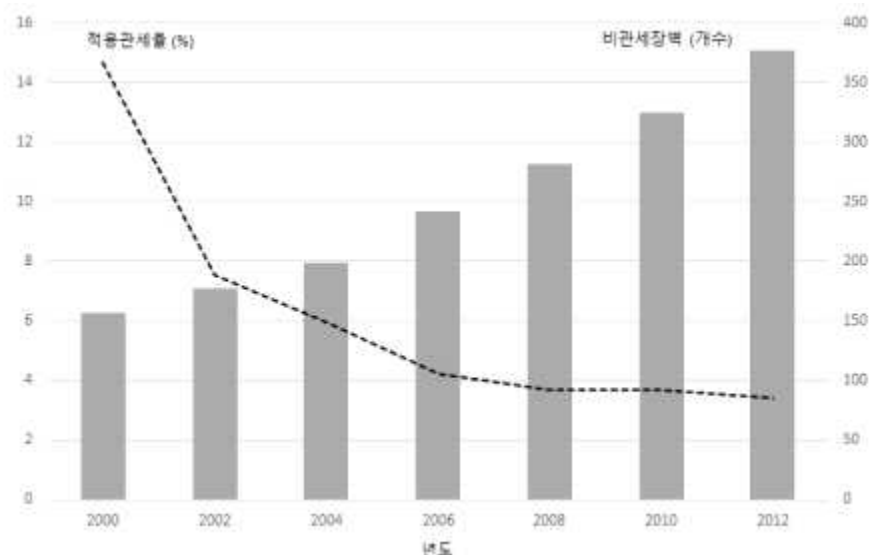
○ **[수입]** 수입에서도 전자기기 및 부품이 2016년 중국 수입 1위 품목 기록하였고, 그 다음은 광물성 연료 에너지 및 원자로·보일러·기계류가 차지했다. 그 밖에 정밀기기, 광물, 일반차량, 플라스틱·동 제품, 유기화합물, 채유용 종자·인삼이 주요 수입품을 구성하였다.

- 보다 하위의 품목으로는 전자집적회로, 석유 및 오일, 철광석, 통신을 위한 전기장치, 자동차, 액정 및 광학 장치, 콩, 반도체 장치,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 2016년에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주요품목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나.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관세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관세가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크게 줄어든 반면 각종 비관세 조치를 통한 수입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다음은 Unctad Trains에서 보고한 최근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변화추이이다.²²⁾

<그림3-1>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변화추이



자료: Unctad Trains자료가공

22) Unctad Trains의 경우 현재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가 2012년까지만 제공되고 있다.

- <그림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에 적용 된 평균관세율은 2000년 14.7%에서 2012년 3.4%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비관세장벽의 개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155개에서 2012년 377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Unctad에 보고된 비관세장벽의 경우 해당국이 시행한 비관세장벽을 자발적으로 통지한 공식적인 수치임을 감안할 때 행정절차 상 취해지는 비공식적인 비관세장벽은 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중국은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육성전략 추진함에 있어 각종 비관세 수입 장벽 및 산업지원정책 (보호무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결과로 중국은 현재 최대의 비관세장벽 피소국가로 되어 있다.

2. 한·중 교역 및 비관세장벽 현황

가. 한·중 교역현황

- 2015년 12월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면서 1차로 관세가 인하된데 이어 2016년 1월 다시 관세가 인하되어 對중국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3-2>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및 중국의 관세 양허수준



- 한·중 FTA는 발효 이후 20년 내 한국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92.2% 수입액 기준으로 91.2%를 양허하며 중국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90.7% 수입액 기준으로 85.0%를 양허하기로 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의 체결이 이루어졌다.²³⁾
- 보다 구체적으로, 2015년 對중국 수출 500대 품목을 기준으로 물품별 관세양허 유형을 확인해 보면 즉시철폐 물품이 전체의 27.6%인 138개로 가장 많고, 15년 내 철폐물품이 전체의 22.8%인 114개 물품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 또한 즉시철폐 품목 138개 중 71.7%에 해당하는 99개 품목이 기계류 등(HS 제84류 및 제85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화학공업

23) 국제원산지정보원(2015), 「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정, PSR 등 활용방안 연구」 참조

생산품(HS 제28류~제40류)이 15개 품목으로 10.9%를 차지했다.

- 對중국 수출 500대 품목을 기준으로 볼 때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관세인하효과가 발생하여 활용실익이 있는 물품은 미양허된 44개 품목을 제외하고 전체의 91.2%인 456개 품목에 달하였다.²⁴⁾

□ 또한 2017년 1월 APTA²⁵⁾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4라운드 협상 최종 타결로 인하여 2017년 1월 관세가 인하되었다.

- 중국의 경우 APTA로 2,191개 품목에 대해 종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33.1% 낮은 관세율을 적용시킨다. 對중국 수출기업의 경우 석유제품, 플라스틱제품, 편직물, 견직기 등 약 1,200개 품목에서 APTA 세율이 한·중 FTA 보다 세율이 낮아져 수출기업은 유리한 세율 선택이 가능해졌다.

□ 한·중 간 교역 현황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양국 간의 무역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2년 63억 8,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 간의 무역액은 연평균 20.5% 증가하여 2016년에 2,114억 달러로 확대됨으로써 무역규모가 약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 무역액의 증가와 함께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374억 5,000만 달러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對중국 수출금액은 2014년을 기점으로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4) 세율절감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양허현황만을 기준으로 보았고, 영세율 고려 때에는 즉시철폐 품목 중 37개의 품목에서 활용 실익이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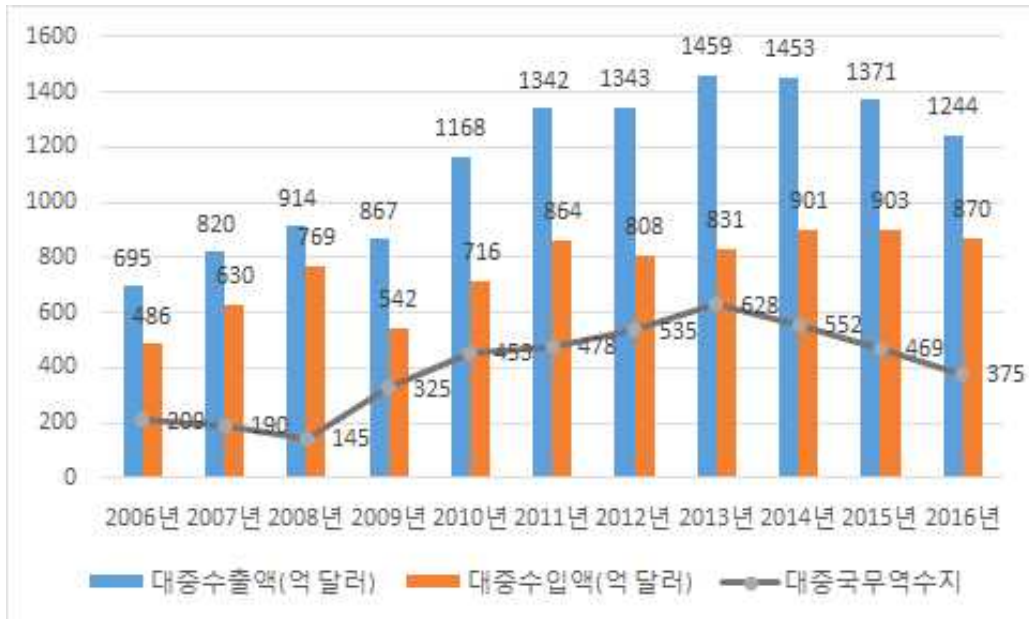
25)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란 2006년 9월에 시행한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 간의 무역협정을 말한다.

<표3-6> 2012~2016년 對중국 수출입 실적(백만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134,323(0.1)	145,869(8.6)	145,288(△0.4)	137,124(△5.6)	124,433(△9.3)
수입	80,785(△6.5)	83,053(2.8)	90,082(8.5)	90,250(0.2)	86,980(△3.6)
수지	53,538	62,816	55,206	46,874	37,453

자료: 무역협회 자료가공

<그림3-3> 對중국 무역추이(2006~2016년)



자료: 무역협회 자료가공

- 양국 간 빠른 무역규모 확대에 힘입어 상대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변화하였다. 중국은 2003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올라섰으며, 수입의 경우 2007년 이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입상대국이 되었다.

- 무역총액을 기준으로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으며, 2016년 한국은 중국의 제4위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표3-7> 2016년 한·중 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비교

순위	한국		중국	
	국가	무역액 (백만 달러)	국가	무역액 (백만 달러)
1	중국	211,413	미국	521,010
2	미국	109,678	홍콩	298,733
3	일본	71,822	일본	274,743
4	베트남	45,125	한국	254,508
5	홍콩	34,397	대만	180,665

자료: 무역협회 자료가공

□ 한·중 간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표3-8>와 <표3-9>는 2014년~2016년 對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 및 수입실적을 보여준다.

<표3-8>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26,156	20.7	27,822	6.4	24,236	△12.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2,538	△11.7	22,093	△2.0	18,584	△15.9
무선통신기기	6,362	23.2	7,715	21.3	6,303	△18.3
합성수지	7,564	△2.1	6,317	△16.5	6,092	△3.6
석유화학중간원료	6,727	8.3	5,789	△13.9	5,847	1.0
자동차부품	6,706	8.8	6,469	△3.5	5,673	△12.3
석유제품	7,000	△16.5	4,419	△36.9	4,593	3.9
컴퓨터	3,101	18.2	3,298	6.3	3,028	△8.2
기초유분	4,600	△3.7	2,782	△39.5	2,822	1.4
철강판	3,489	9.3	2,678	△23.2	2,818	5.2

자료: 무역협회 자료가공 (MTI 3단위 기준)

<표3-9> 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8,115	24.5	11,381	40.2	11,279	△0.9
무선통신기기	6,757	113.5	8,396	24.3	6,663	△20.6
컴퓨터	5,785	7.1	5,384	△6.9	5,870	9.0
철강판	5,740	41.4	4,186	△27.1	4,027	△3.8
산업용 전기기기	3,515	4.6	3,353	△4.6	3,483	3.9
의류	3,623	3.5	3,551	△2.0	3,450	△2.8
정밀화학원료	3,192	13.3	3,133	△1.9	3,089	△1.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864	△5.0	3,415	△11.6	2,161	△36.7
기구부품	2,056	△5.2	1,655	△19.5	1,422	△14.1
자동차부품	1,325	△10.3	1,296	△2.2	1,372	5.9

자료: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기준)

- [수출] 최대 수출 품목군은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센서·무선통신기기 등 휴대폰 관련 부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그리고 석유제품 등이나 2016년 기준 석유관련 제품을 제외하고는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난다.
- 對중국 비관세장벽 민감 품목인 식품·화장품의 경우 2016년 MTI 3단위 금액기준 각각 상위 19대, 50대 품목이다. 그러나 두 품목모두 최근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對중국 수출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수입]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입 품목은 휴대폰, 컴퓨터, 철강, 산업용 전기기기, 의류 그리고 정밀 화학원료 등이며 2015년 이후에는 반도체 수입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나. 한국의 對중국 수출동향 및 특징

- 2005년~2015년 동안에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증가세(2015년 기준 15.8%)로 경쟁국과 비교해 우위에 있으나,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감소세(2015년 기준 4.8%)를 보이며 다른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중국의 수입구조는 중간재가 53.4%를 차지하며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반제품(석유제품,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등)의 중국 현지생산 확대로 자체생산이 수입 산을 대체함에 따라 2000년 63.9%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 반면 중국의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2%로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중간재 수입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을 무역형태별·가공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5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첫째, 가공수출의 비중이 50.0%로 일본 34.1%, 미국 17.1%에 비해 크게 높다.
 - 둘째, 가공수출에서 유상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무상수출 비중은 줄고 있는데, 이는 한·중 가공무역 관계가 고부가 가치화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 셋째,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중간재 수출에 과도하게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넷째, 중간재에서 부품·부분품 수출 비중은 중국과의 투자 연계성에 따라 증가하고, 반제품 수출 비중은 현지대체율 확대로 감소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중국의 일반 소비재 시장에서 일본과 미국 등 다른 경쟁

국들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5.9%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 소비재에 대한 수출 확대 여지가 있다.

다. 한·중 비관세장벽 현황

□ 중국은 모든 FTA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포함시켜 오고 있다. 한·중 FTA에서도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이 분야별로 FTA 협정문에 반영되었다.

○ TBT와 SPS는 한중 FTA 협정문에서 독립챕터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상품챕터에는 수입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수량제한, 수출입허가제 관련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기타 통관·무역원활화,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언급도 있다.

- TBT와 관련하여 강제성제품인증(CCC),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독성 화학물질 리스트 지정, 의약품 수입규제, 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화장품 위생허가 및 非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허가의 국내수입 규정 이원화에 대한 내용이 있다.

- SPS와 관련하여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증명서 요구, 특정식품의 과도한 검역기준,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에 대한 내용이 있다.

- 통관과 관련하여 통관절차의 일관성·투명성, 항구별로 상이한 라벨·포장기준 적용, 통관항 지정에 대한 내용이 있다.

□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으로 과거에는 직접제재²⁶⁾나 무역구제²⁷⁾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통관절차 등으로 큰 흐름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 한국을 대상으로 지도자간 혹은 당국 간 현안에 대한 비협조 및 여론을 활용한 불매운동 개시 그리고 여행제제 등의 비공식 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26)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한 무역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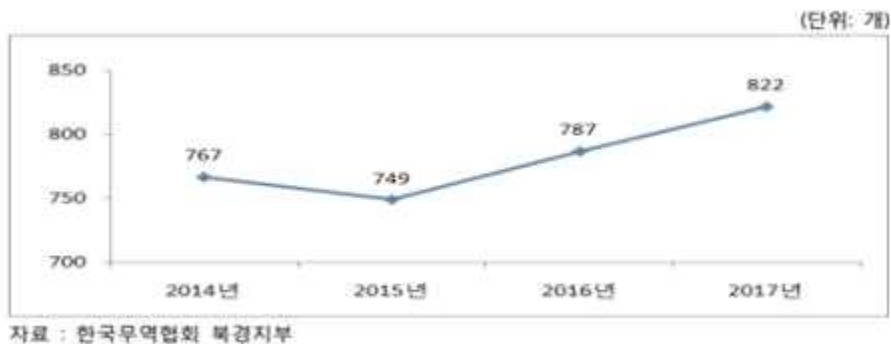
27) 세이프가드·상계관세·반덤핑 등

3. 중국의 최신 관세 및 비관세장벽 현황

가. 중국의 수출입 관세

- 2016년 12월 23일에 중국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关税税则委员会)는 소비 진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7년도 관세율 조정 방안’을 발표하여 2017년에 새롭게 적용될 수출입 세율을 공개하였다.
- 2017년 중국이 적용하는 수출입 세목(품목) 수는 총 8,547개로 2016년의 8,294개 대비 253개가 늘었다.
- 중국은 2017년 484개의 IT 관련 품목에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²⁸⁾에 따른 관세를 적용한다.
- 이번에 발표된 484개의 IT 관련 품목 중 186개 품목은 수입 세율이 0%이다. 나머지 298개 품목은 2017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수입 관세율이 한층 더 인하된다.
- 2015년 749개에 불과하던 중국의 잠정 관세율 (수입) 품목 수는 2017년에 822개로 크게 늘어났다.

<그림3-4> 중국의 연도별 수입 잠정 관세율 품목 수 변화



28) IT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낮추고 무역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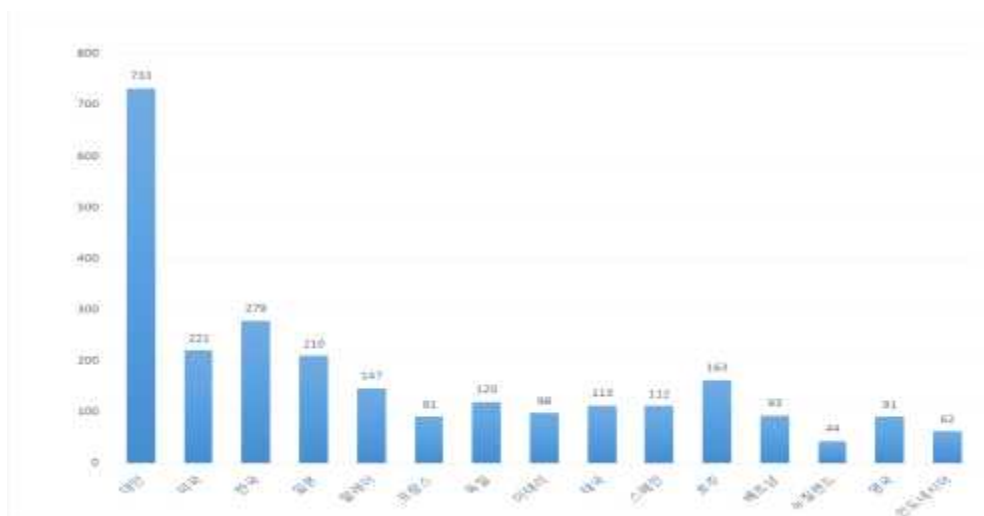
- 매니큐어용품 (원래 관세율 15% → 잠정관세율 10%), 스킨케어 (6.5% → 2%), 비누 (15% → 10%), 스카프 (14% → 8%) 등 소비재는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한·중 FTA에서 제외된 품목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FTA는 2017년에 3년차를 맞이하게 되면서 더욱 큰 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되었다.
- 중국의 수입 관세율은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품목이 적지 않은데다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 매년 변동되고, 어떤 관세율을 적용 받느냐에 따라 절차 (필요 서류)도 상이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기업들은 시장조사 단계에서 최소한 한·중 FTA세율과 중국의 잠정세율은 비교하여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문기관에 수시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
- 잠정세율과 ITA 세율은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만 한·중 FTA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 하고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중국의 최신 비관세장벽 동향

- 중국의 對세계 비관세 장벽은 주로 위생 및 검역 (SPS), 기술장벽 (TBT)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對세계 항목별 비관세 조치는 2016년 위생 및 식물위생 (SPS)이 195건, 기술장벽 (TBT) 128건으로 각각 전체의 52%, 34%를 차지한다.
- **(수입통관 불합격 동향)** 세계 국가들의 對중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거부는 주로 가공 식품 위주로 나타난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준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 및 화장품의 통관 거부 건수를 살펴보면 대만이 733건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한국이 279건을 통보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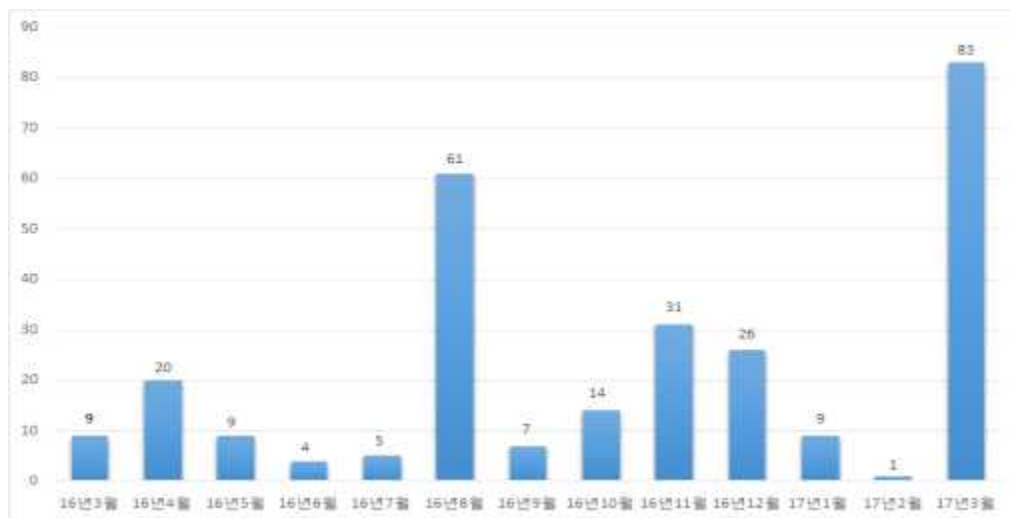
- 중국 질검총국에 보고된 중국의 최근 對한국 식품 및 화장품 수입통관 불합격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8월과 2017년 3월의 절대건수가 각각 61건과 83건으로 높으며 해당시기에 수입이 제한된 식품 및 화장품 목록 내 한국 상품의 비율도 각각 29%와 18%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3-5> 식품 및 화장품의 국가별 통관 불합격 건수
(2016년 3월 ~ 2017년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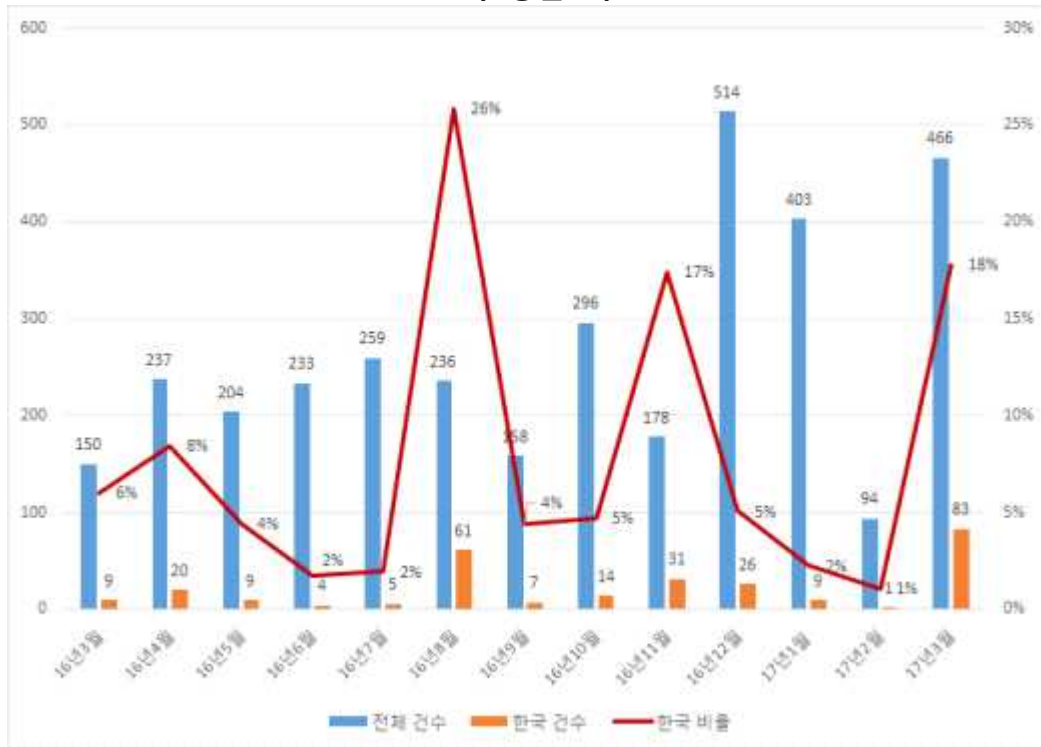
자료: 중국국가질량검역검험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2017) 저자 정리

<그림3-6> 최근 對한국 식품 및 화장품 수입통관 불합격 원별 추이(건)



자료: 중국국가질량검역검험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2017) 저자 정리

**<그림3-7> 수입허가 제한된 (수입불허가) 식품 및 화장품 목록 내
한국 상품 비율**



자료: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2017) 저자 정리

- 화장품 기업 관련하여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17년 2월 보고에 따르면 중국내 글로벌 상위 12개사의 시장점유율은 41% 수준이며 로컬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1위 기업의 점유율이 3% 미만이다. 따라서 중국의 화장품 규제 강화는 경제보복보다는 자국 산업 육성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이며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 중국이 對한국 수입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무역제재를 쉽게 가하는 분야는 주로 소비재²⁹⁾나 식품 분야이다.

- 소비재의 경우 정부나 언론 등 다양한 비공식적인 루트로 중국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쉽고 식품분야는 제품의 특성상 인증, 위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관과정에서 애로가 많이 발생한다.

²⁹⁾ 중국 소비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재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상위 수입품도 생활용(비내구성) 소비재가 주를 이룬다. 일반 소비재에서는 의약품, 화장품, 유아용 조제식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주요 수입품 5위 안에 포함된다.

제2절 유형(type)별 비관세 장벽

1. 분류기준 및 기준별 추이

□ 다음은 WTO에서 보고한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별 변화추이이다.

<표3-10> 중국의 對세계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

연도	SPS	TBT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 가드	수량 제한	저울관세 할당	계
2006	239	231	115		1	6	10	602
2007	243	320	108		1	6	10	688
2008	250	500	112		1	6	10	879
2009	340	701	121	3	1	10	10	1,186
2010	493	763	127	4	1	10	10	1,408
2011	659	852	117	4	1	12	10	1,655
2012	684	926	119	5	1	14	10	1,759
2013	774	1,006	128	6	1	14	10	1,939
2014	842	1,053	107	5	1	42	10	2,060
2015	1,180	1,150	101	4	1	42	10	2,488
2016	1,192	1,179	100	5	2	42	10	2,530

자료: WTO I-tip DB 자료가공. 수치는 발의 되거나 시행된 개수의 합계

- <표3-10>에 따르면 WTO에 보고된 중국의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의 개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크게 늘어난 특징을 보였다. 시행 혹은 발의 (initiated or in force)된 비관세 조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602건에서 2,530건으로 늘어났다.
- 對한국 비관세 장벽의 추이도 對세계추이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³⁰⁾, 2008년 이후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기술장벽(TBT)을 중심

으로 비관세장벽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SPS와 TBT의 개수가 여타 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對중국 수출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중 SPS와 TBT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러나 Unctad나 WTO에 보고된 비관세조치의 경우 해당국이 시행한 비관세장벽을 자발적으로 통제한 공식적인 수치임을 감안했을 때 행정절차나 관행상 취해지는 비공식적인 제재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수출기업들이 체감하는 비관세장벽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 수출 시 물품의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TBT, SPS 등을 포괄하는 법정검험검역조건(法定檢驗檢疫)³¹⁾의 충족은 물론 해관의 여러 감관조건(監管條件)³²⁾들도 만족시켜야 한다.

2. SPS (위생 및 검역)

가. SPS 관련 정책 및 법령

- 중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식품안전 사고가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안전을 국가정책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 SPS 조치와 관련된 중국 주요 법령에는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제조물책임법」, 「불법행위책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농산물품질안전법」 등 19개에 달한다.
- 이와 더불어 유제품, 영유아 조제식품, 육류·조류, 바이오식품 등 특

30) WTO I-tip DB의 검색조건을 對세계가 아닌 對한국으로 설정했을 경우이다.

31) 법정검험검역조건이란 중국으로 수출·입 통관 시 품목별로 부합되어야 하는 규제에 해당 규제들을 인증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는 주로 위생과 검역 그리고 기술 인증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출·입 식품위생 감독검사, 민용상품 입경검증(3C), 수입상품검사 등이 있다.

32) 해관감관조건이란 중국으로 수출·입 통관 시 품목별로 부합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해당 조건들을 인증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주로 수출입 허가증, 검역검사 수출입 화물 통관 신고서 등을 요한다. 이외에 전기·기계제품에 있어서는 전기기계제품 자동수입허가증, 폐전기기계제품수입금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수식품에 대해 별도의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규정(decree)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 2015년 10월 시행된 중국 신규 식품안전법은 중국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평가된다.

○ 이 신규 식품안전법은 기존 조항수정에 더해 50조항을 추가하며 식품기업의 책임 규정 강화,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수입식품 관리 규정강화, 특수식품에 대한 감독 강화, 전자상거래(E-commerce) 교역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신설 등을 명시하고 있다.

○ 최상위법인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중국령 제144호) 등 중국 식품위생 관리기관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과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으로부터 구체적인 시행령들이 발표된다.

□ 상기 언급한 법률과 규정들에 의거하여 중국 위생검역(SPS)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중국 국가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NHFPC), 농림부, 상무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및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등이 있다. 참고로 WTO SPS 위원회 중국 공식 문의처는 중국 상무부 소관이다.

□ 중국은 「식품안전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GB)을 충족해야 반입이 가능하다. 중국이 2012년에 발표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12.5 계획」은 2015년 말까지 식품 생산경영 전 과정의 식품안전통제표준체계를 갖추고 동 기간에 주요 식품의 안전 표준을 제·개정할 계획을 담고 있다. 계획과 같이 중국은 2014년에는 5천개 이상의 식품안전 위생기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WTO SPS위원회에 340여건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초안을 통보한 바 있다.

□ 2016년 11월에는 중국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ion, NHFPC)는 52개 식품 접촉 물질 규격을 포함한 53개 음식 안전 표준을 고시하였다.³³⁾

□ **(식품안전)** 관련 법규·제도 완비 가속화 및 법집행 강화 추세

- 2012년부터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 규정 및 감독 규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독 및 관리 시스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 개정된 식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생산-가공-판매'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관리감독은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수출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평가센터'를 개소(2015년 12월)하고,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였다.
- 2016년 11월부터 '수출입식품화장품안전리스크 경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불량제품 기록이 있는 수입상, 해외제조상, 해외수출상 명단 발표하고 있다.

□ **(화장품 안전)** '화장품 안전기술규범('15.12월 개정)'이 2016년 12월 1일 시행되었다.

-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위생규범(2007년 제정)의 개정판으로,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용 금지·제한·허가 성분이 수정되었다.
- 화장품 검사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됐으며, 60가지 사용 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이 새로 추가되었다.
- 현지 인증 관련 업체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시행된 2016년 12월부

33)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7341>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

터 우리 기업의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수입화장품 중국 내 접수자 등록, 수입 및 판매기록 관련 규정'이 2017년 3월 1일 시행되어 수입화장품 수입상, 판매기록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되었다.

□ 중국은 「수출입상품검사법(進出口商品檢驗法)」과 「동식물검역법(進出境動植物檢疫法)」에 따라 위생검역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를 시행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은 국가질량감독 검사검역총국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중국의 SPS 조치는 WTO 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위생 및 검역과 관련하여서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중국의 SPS 조치에 대해 미국은 농산물에 부당한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량을 조절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생명공학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 우선 미국에서 본 제품의 사용허가 심사를 거친 후 중국의 관련 기관에서 재차 사용허가 심사를 받게 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농산물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식품 안전과 관련해, 락토파민의 경우 미국 정부가 반복적으로 요청한 위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채 안전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락토파민 잔여물이 있는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및 다른 병원체가 포함된 육고기 및 가금류 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생고기는 병원체가 100% 제거될 수 없기에 미국은 이 조치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다.

- 동물성 사료의 경우 이중적이고 복잡한 제품별 등록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동물성 사료회사 제품들의 중국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

- 또한 중국은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PAI)가 발견된 아칸소, 미네소타, 버지니아 주의 가금류 고기 및 그 제품,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환적된 가금류 고기 및 그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국제검역사무국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중국은 과일의 검역에도 각종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데, 사과와 배의 경우 부란병, 박테리아 질병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사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딸기의 경우 베이징올림픽 때중국에 판매된 캘리포니아산 딸기가 당시 안전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시장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

나. SPS 조치 관련 현황

- 최근 들어 한국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증가가 눈에 띄게 급증한 것은 상대적으로 검역도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14년 9.8%에서 2016년 27%로 급증했으며, 2015년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 중국 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5년 (2012~2016년) 수입 화장품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화장품 수입 불허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화장품의 경우, 식품보다 검역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편이지만,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2016년에는 200여건을 상회하였다.
-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으로서는 ①제출서류 미비, ②포장, 라벨링 불합격 ③미생물수 초과로 확인되었다.
- 2016년 화장품 수입 불허 원인으로 제출서류 미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15년3월~2016년까지의 화장품 수입 불허유형을 살펴보면 통관서류 불합격³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특히 중국 검역 당국은 2016년 11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권서'를 검역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인증서, 등록증서 유무뿐만 아니라 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 시 필요한 등록증서는 취득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 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검역이 엄격해지고 있다.

<표3-11> 중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 유형(2016.3~2017.3)

유형	2016	2017
통관서류 불합격(货证不符, 未按要求提供证书或合格证明材料)	446	203
라벨불합격(标签不合格)	367	187
미생물기준치(菌)	413	88
포장 불합격(包装不合格)	111	70
유해성분 기준치 불합격	321	70
비허용물질 사용(检出未经批准的转基因成分)	34	23
유통기한(超过保质期, 保质期不合格)	110	62
식품첨가제사용범위초과(超范围使用食品添加剂)	312	119
식품첨가제사용함량초과(超限量使用食品添加剂)	124	38
혼합 (통관서류 및 유해성분)	51	10
부패, 변질	55	2
검역미통과(未获检验检疫准入)	56	33
기타(품질불합격, 냄새, 원인불명 가치상실 등)	66	58
총계	2466	963

자료: 중국국가질량검역검험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2017) 저자 정리

다. SPS 조치 주요 쟁점

- **(화장품 신원료규제)** 2016년 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2013년3월부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CFDA로 개정)은 2009년 12월, 화장품의 안전 확보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화장품행동허가신고수리규정」(이하 본 규정 이

34) CFDA관련 통관서류 불합격으로 추정

라함)을 공표하였다³⁵⁾. 이에 따라, 화장품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화장품신원료를 사용할 시 혹은 처음으로 수입 전에 CFDA에 허가신청을 시행하여, CFDA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CFDA는 2011년 5월, 화장품신원료의 신청 및 평가를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화장품신원료신청 및 평가지침」(이하, 「본 가이드라인」이라함)을 공표하였다³⁶⁾.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신원료의 정의, 준수사항, 신청수속, 평가 원칙 등이 일정 정도가 명확해졌다. 본 조치를 도입하고 5년이 경과되었는데, 신원료의 등록실적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신청이 4건을 넘지 않았고, 신원료를 포함한 화장품의 생산 및 수출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먼저 본가이드라인 제3조 (II)2(2)에 따르면, 신원료는 복합물질이면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단일물질로 신청하고, 안정성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식물 액기스 및 발효주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용매와 신물질에 단일물질로 분리가 곤란한 원료이거나, 반대로 단일물질로 분리를 해도 그 공정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실제로 화장품에 배합된 원료와 다른 물질이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의 적정평가하지 않는다. 일본·미국·유럽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과 동일하게 최종제품에 배합된 것과 같은 물질로 신청을 하는 것이, 신원료의 안전성확보의 관점으로부터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2015년 7월 미규정의 상위 법령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개정안이 공표되어 리스크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으로서 리스크가 낮은 물질에 대해서는 보고만하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 **(화장품 라벨규제)** 2016년 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1월 15일, 중국화장품표시규칙이 공표되어, 12월 12일 부로 중국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CFDA)으로부터 TBT가 통보되었다. 시행일은 2015년 7월 1이며, 이 법의 목적은 화장품시장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수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본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화

35) 시행은 2010년 4월, TBT 통보는 2010년 3월에 이루어짐

36) 시행은 2010년 7월, TBT 통보는 2010년 6월에 이루어짐

장품 라벨을 붙여내기, 잘라내기, 수정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면 안 된다.② 생산자명, 전 성분표시, 품질 보증기한 등의 기재사항을 라벨에 기재해야만 한다. 기재사항에 실제 생산가공자도 포함된다.③ 효과효능 시험의 결과를 제품에 표시할 경우, 해당시험이 상세하게 기재된 결과 보고서를 CFDA가 지정한 홈페이지 (웹상)에 공시하여, 감독 받아야한다.

- ②에 대해서는 라벨 생산자의 명칭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위법제품에 대한 취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되어있지만, 소비자에게 있어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품질책임을 법적으로 담보할 기업의 기재만으로 충분하며, 실제의 생산가공자의 기재까지 요구할 필요성은 설명되고 있지 않다. 이 조치의 목적을 비추어 볼 때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며, TBT협정 2.2조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③에 대해서는, 효과효능시험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에 대한 상품의 기술적인 내용의 향상을 충족시킨다는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효능시험의 보고서를 상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입할 경우에 적절히 판단하기에 방해 받는 것 등, 해당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는 필요성이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 볼 수 있으며, TBT 협정 2.2에 위반하는 가능성이 있다.

□ **(화학물질규제)** 2016년 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0월 15일, 「신규화학물질환경관리변법」이 실시되었다. 중국국내의 신규화학물질의 생산·수입의 관리이기 때문에, 생산 전·수입전의 신고를 의무 하는 것이다. 생산 전·수입시의 신고대상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중국현유화학물질명칭에 기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가리킨다.

- 본법에서는, 생분해성시험 (활성 오염 등의 생물원에 따라, 화학물질

이 일정기간에 분해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시험), 어류급성독성시험 (화학물질에 일정시간 폭로된 어류의 실사율을 측정하는 시험) 및 미끼용 벌레 급성독성시험 (화학물질에 일정기간 폭로된 미끼용벌레의 실사율을 측정하는 시험)의 3가지 생태독성시험은 중국내에서 사육 및 번식된 생물을 사용하여 중국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어졌다. 화학물질의 안전성시험에 대해서는 OECD가 결정한 테스트 가이드라인 (OECD 테스트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생태독성시험에 사용하는 생물종의 원산지 및 시험장소의 소재국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본 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가이드라인 (OECD 가이드라인)등에 따라 취득한 시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중국국내에 사육 번식된 생물종을 사용한 중국 국내 데이터를 재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활한 비즈니스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3. TBT (기술 장벽)

-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 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며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하여 배타적 수단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는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일치 혹은 조화시킴으로써 국가 간 표준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비차별적 규정이라도 중국자체 기술수준 발달함에 따라 이 부분이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³⁷⁾.

가. TBT 관련 정책 및 법령

- 중국 내 기술규제정책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AQSIQ) 산하 중국국가표준화관리국(SAC)의 중앙집권 체제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동 기관에서 표준화 관련 국가정책개발, 국가표준화 전략수립, 국가표준의 제·개정 등 중국의 국가표준화 통합 관리 및 전체 조정 등을 담당한다.
- 국가표준, 산업 및 분야별 표준, 지역표준 및 기업표준 등 네 가지 중국의 대표표준은 「표준화법」(1988)과 「표준화법 이행을 위한 규정」(1990) 아래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가표준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 및 채택된다.
- 중국의 국가표준(GB)은 타당성 조사, 연구, 프로젝트 설계, 제안된 표준의 초안 작성, 검토, 평가, 승인 및 공포 등의 8단계 과정을 거쳐 SAC에 의해 최종 공포된다.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총괄기관인 AQSIQ 총국 산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중국 내 대표 기술규제정책

37) 실제로 최근 보고 된 중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에서 보면 우리기업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나 차별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 단일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e)를 포함한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CCC 제도와 관련해서는 CNCA가 공식 지정한 13개의 국가지정인증기관과 지역별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에서 인증 신청 및 획득이 가능하다.

□ CNCA는 자발적인증제도와 강제인증제도를 모두 관리하며, 양 제도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강제 제품인증 대상품목은 ‘강제 제품 인증 카탈로그(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Catalogue)’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CCC 인증(마크)을 받지 않은 제품은 중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된다.

○ 강제표준은 대체로 의약품, 식품, 농약 등에 해당하며, 강제국가표준 코드는 ‘GB’, 강제지역표준은 ‘DB’와 중국 성별 코드와의 조합으로 구성된 문자(letter)로 시작(예: 상해의 강제 지역표준코드: DB14/51) 한다.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국가표준(GB)’과 ‘권고 국가표준(GB/T)’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건강이나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필수 표준 규격에 대해서는 강제국가표준을, 이 밖에는 대부분 권고국가표준 규격을 부여한다.

□ 중국은 강제인증제도 외에도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 인증기관 관리방법」을 공포하여 중국 내 자발적 인증 관련 규범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인증제도는 중국 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CCC제도를 제외한 모든 인증제도로 특히 해외인증(KS, KC, CE, UL 등)도 포함되나 중국 내 인증기관 설립 제한 및 자격 요건 강화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나. TBT의 구분

<그림3-8> 기술 장벽(인증)의 구분



참조: CCIC Korea

□ (CCC강제인증)



- 2001년 12월 발표한 「강제성제품 인증관리규정(強制性產品認證管理規定)」에 따라³⁸⁾ 중국 내에서 생산되거나³⁹⁾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강제인증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CCC인증⁴⁰⁾을 획득하여 CCC마크를 부착⁴¹⁾해야 한다.
- **관리기관**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및 그 산하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다.

38) 강제성제품 인증관리규정 제2조에 '국가에서 규정한 제품은 반드시 인증을 진행해야 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한 다음, 공장 출하, 판매, 수입 혹은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9) 중국 내 생산 내수 제품도 중국 현지에서 CCC 인증 획득이 필요하다.

40)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약어

41) 인증을 통과하고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라도 CCC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CCC라벨 규정에 따라 통관이 불가하다.

- **배경:**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와 수입품에 부여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를 CCC로 통합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어 왔다.
- **감독 관리와 관련,**
 - CCC대상제품은 일차적으로 수입 시에 제품명칭 및 HS 코드를 위주로 인증대상을 확인하고 이후 통관당국의 DB에서 인증서를 획득하여 유효성을 확인한다.
 - 판매 시에는 국가에서 3월 ‘소비자의 날’이나 9월 ‘품질관리의 날’ 등을 맞이하여 향후 품질관리 집중제품군을 공지하기도 하며, 그 외에도 무작위 시장 샘플링 검사가 실시되는데 이 때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제품의 품질이 동일한지 다시 테스트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시장 샘플링에 불합격 할 경우에 해당인증서의 정지를 명하는 정지통지서가 발행되고 정지 내용이 국가 사이트에 공지된다.
 - CCC대상제품임에도 인증 미취득 수출 시에는 통관 불가 및 벌금 처벌⁴²⁾이 내려지므로 수출 전에 해당 제품이 CCC대상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또한 품목분류 상이문제로 해당제품이 본래는 강제인증 대상이 아니었지만 강제인증 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중국 현지통관의 도움을 받아 강제인증을 풀거나 당해 제품이 강제인증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 해외인증정보시스템사이트(<http://www.certinfo.or.kr/index.do>)에서 CCC관련 중국 상세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CCC(건축자재), CCC(농기계), CCC(방법), CCC(소방용품), CCC(전기 안전), CCC(코팅제품) 등

42) 이 경우 패널티로 인해 향후 인증서 취득이나 통관이 어렵게 된다.

- **인증목록:** 다음 <표3-12>의 전기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전선 등 20개 분야 158여종 제품이 CCC인증대상에 해당한다.

<표3-12> CCC 인증목록⁴³⁾

대분류	제품군	대분류	제품군
1	전선 및 케이블	11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량 안전 부품
2	전기스위치 및 보호기기 또는 연결용 전기장치	12	자동차 타이어
3	저전압 제품	13	안전유리
4	소형 모터	14	농업 기기
5	전동 공구	15	통신 설비
6	전기 용접기	16	소방 제품
7	가정용 혹은 유사용도 설비	17	안전방법 제품
8	AV 설비	18	무선근거리통신망 제품
9	IT 설비	19	장식용 제품(도료 등)
10	조명 설비	20	영·유아용품(유아용차량, 완구)

참조: CCIC Korea

< 참고 - CCC 인증대상 여부확인 방법 >

- ①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제품이 CCC 강제인증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http://www.cqc.com.cn/www/english/ProductCertification/CCC/CertificationScope/>

- ② 인증 수행기관에 대상 여부 확인의뢰⁴⁴⁾

→ 제품 명칭, 정격 사양, 구조, 용도, 기능과 관련한 정보 제공

- ③ 추가적으로 Global인증과 호환이 되는지의 여부 확인

43) 의료용기기는 2013년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4) HS 코드는 참고하되 반드시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통해 인증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인증 신청절차:** 1단계(인증신청) → 2단계(샘플테스트) → 3단계(초기 공장심사) → 4단계(인증평가 및 인증서 발행) → 5단계(CCC마크신청) → 6단계(사후 감독관리)
 - 단, 2014년 하반기 발표된 新 버전 실시규칙에 따라 일부 제품에 한하여 先 인증서 발행 後 공장심사⁴⁵⁾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 체결 후 기업자체가 보유한 실험실의 시험 결과도 인정되는 등 정책이 개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 공장심사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는 제품 및 주요 부품의 불일치, 인증 모델의 생산라인가동 요구사항의 부족, 전수검사 계측기의 미 구비, 각종 검사기록⁴⁶⁾의 누락 등이 있다.
- **인증획득 소요시간:** 제품별로 상이하나 시험시작 후 약 90영업일이 소요된다.
 - 다만 별도의 부품 인증시험이 필요한 경우, 테스트 불합격이나 개선 조치 미흡 시, 공장 심사 일정이나 진행 여부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진다.
- CCC제도는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없으나 외국기업의 경우 인증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CCC인증 획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중국이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자국 심사기관에 의한 공장실사를 실시하고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의 공장실사 결과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45) 3개월 이내

46) 수입검사, 부품 정기 신뢰성검사, 완제품 전수검사 등

□ (CQC자율인증)



- CQC자율인증⁴⁷⁾은 강제성이 아닌 기업의 선택에 의한 취득이 가능한 자율성 인증제도로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제품품질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 중국정부는 2011년 상반기 「중화인민공화국 인증기관 관리 방법」(가칭)을 공포하여 중국 내 자발적 인증 관련 규범 강화를 시도하였다.
 - 여기서 ‘인증기관 관리방법’이란 중국 내 모든 인증 행위는 중국정부에서 허가한 인증기관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인증법인을 중국에 설립하여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인증범위:** 기계설비, 전력설비, 전기전자 제품, 방직물 등 500여종 이상으로 CCC강제인증보다 인증범위가 넓다.
- **인증추세:** 명목상 자율인증이나 인증이 없으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수입 조건으로 바이어가 인증을 요구하는 등 실제 자율인증 취득에 있어 강제성을 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 최근 잦은 통관문제가 발생하며 중국세관에서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 홈쇼핑 진출 및 중국 바이어 요청에 의한 자율인정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CCC인증과정을 진행 할 때 부품의 자율 인증서를 제출하면 부품의 추가시험을 생략해 주는 혜택이 있다.
- 해외인증정보시스템사이트(<http://www.certinfo.or.kr/index.do>)에서 CQC관련 중국 상세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7) China Quality Certification의 약어

- CQC, CQC(태양광) 등

- **인증목록:** 주요품목은 비데, 공기청정기, 가습기, 퓨즈, 스위치류, 모터 써멀프로텍트, 캐패시터, 전열부품, 비금속 재질(플라스틱 케이스, 커넥터, PCB 등), RoHS 등이며 다음 <표3-13>에서 CQC 자율인증 대상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표3-13> CQC 자율인증 대상목록

대분류	제품군	대분류	제품군
001	전자제품 및 부품	002	가전부품
003	전기부품	004	조명전기기기 부품
005	전동공구 및 부품	006	중소형모터 및 부품
007	의료측정기	008	가전제품
009	산업용기계	010	조명제품
011	전선케이블	012	저전압제품
013	자동차부품	014	오토바이 부품
015	타이어류	016	유리류
017	전력시스템 계전보호 및 자동화 장치	018	펌프
019	전기에너지 미터기	020	저전압세트설비 및 부품
021	고압설비 및 전기기기	022	발전기 세트
024	태양광(PV)류 제품	025	자동차제품
026	3C증서를 보유한 전선케이블 제품 CQC 품질마크인증	027	시험용 계측, 통제 측량 설비
028	토목 기계 및 부품	103	방직품
108	건축제품	109	위생도기
110	시멘트 제품	116	기계제품
118	사무설비(성능)	123	피뢰제품
125	음향영상제품(성능)	126	경전동차 및 부품
127	전동자동차 및 그 부품	129	베어링 제품
130	RoHS 인증	134	비금속재료 및 부품 성능 인증
135	납축전지	138	학생용품
140	PAHs 인증	160	금속용접, 절삭 및 열처리 설비

참조: CCIC Korea

- (GB-TEST)⁴⁸⁾ 추천성 품질기준 테스트로 GB는 국가표준⁴⁹⁾을 의미한다. CCC강제인증 제품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제품에 GB표준이 있어 그 표준을 근거로 시험 진행이 가능하다. 해당제품의 안정성 인증을 목표로 한다. GB표준의 시험 항목은 업체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인증이 아닌 시험이기 때문에 인증서가 발행되지 않고 해당 결과보고서⁵⁰⁾만 발행된다.
- 중국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국가 강제성 품질기준(GB)과 국가 추천성 품질기준(GB/T)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술 표준이나 포장, 라벨링, 안전규정 등에서 중국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그림3-9>는 중국의 안전표준 체계를 보여준다.

<그림3-9> 중국의 안전표준 체계



48) 여기서는 강제성 국가표준(GB)은 제외한다.

49) 중국은 2002년부터 국가표준을 제정해왔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6년의 경우 총 3,510건의 국가표준이 제정 또는 수정되었다. 이러한 국가표준은 전기전자제품, 섬유산업, 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50) Test Report

- GB-TEST 절차: 다음의 과정을 거쳐 보통 2~3주 적어도 1달 이내에 절차가 완료된다.
 - 1단계(제품표준 확인) → 2단계(샘플발송) → 3단계(Test) → 4단계(결과보고서 발행)
- 현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을 통해 GB Test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CCC와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 신청홈페이지→https://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korea_ktr/uss/guide/info.jsp

□ (China RoHS) 2016년 1월 6일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관리방법」 일명 China RoHS 2.0⁵¹⁾이 공식 발표되어 2016년 7월 1일 정식 시행되었다⁵²⁾.

- 실시배경: EU의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을 모태로 하여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를 위해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을 제정하였다.
- 관련부처: 공업정보화부(MIIT), AQSIQ 등 8개 부처
- 대상제품: 백색가전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⁵³⁾
- 규제내용: 전자정보제품은 6대 유해물질 함량에 따른 마킹 및 정보제공을 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법정 적합성평가가 요구된다.
 -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51) 8개 부처 공동령 제32호

52) 실질적인 시행은 2016년 10월 이후

53) 기존 전자정보제품에서 확대적용

6가크롬(Cr+6) 등 중금속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주요목표로 유해물질의 기준 값 초과는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마킹(표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참고 - 중국인증 시 유의사항 >

- ① 철저한 사전조사: 인증대상 여부, 절차, 해당표준, 제출서류 등 해당 인증에 대한 기본지식 갖추기
- ②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수행기관의 선택: 경험이 많고 공인된 기관 이용. 가격이 저렴한 곳은 위험 부담이 있음
- ③ 적극적인 인증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④ 인증 담당자 지정: 업체 내에 전담자가 인증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정보를 수집
- ⑤ 변화하는 중국인증시장 파악: 중국인증시장의 관련제도와 규정의 변화에 빠른 대응 필요

4. 통관절차

가. 최신 통관개혁조치 및 주요 애로사항

□ 해관의 최신 통관개혁조치 현황과 관련하여,

- 중국해관은 전자신고를 통한 **P/L통관**을 2012년 8월 1일 시범 실시하여 2013년 5월 1일 일반신용(B)기업, 수출입검역대상물품, 항공화물, 他지역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2017년 2월 6일에는 B류 이상의 신용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또한 통관편리화, 수입자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및 성실신고 유도**를 목표로 2016년 10월 29일자로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세수징수관리방식개혁 시범업무관련공고」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해관 업무의 초점이 사전심사를 통한 과세에서 **사후추징의 방향**으로 전환⁵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이와 관련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한편 2016년 11월 1일부터 **사후심사제도** 도입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 화물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⁵⁵⁾를 심사하여 통관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대로 수리하고 사후에 납세관련 신고요소를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 사후조사는 화물 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 감면세화물의 경우 해관관리감독기한 내 및 그 후 3년 이내 관련 자료의 진실성 및 합법성 조사가 가능하다.

54) 先통관後심사의 도입으로 통관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으나 불성실신고로 인한 사후 추징 시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신고 등의 과정에서 주의를 요한다.

55) 가격신고, 품목분류, 원산지 등

- 시행초기 HS 80,81,82류 물품은 전국해관에서 시행하고 HS 84,85,90 류 물품은 일부해관⁵⁶⁾에서만 시범 실시하다가 2017년 4월 1일부터 HS 72류~85류, 90류 물품을 대상으로 전국해관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 2015년 7월 27일부터 관세 등 제세 **집중납부제도**를 시행하였다.
 - 집중납부제도는 종전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 납부하던 관세 및 증치세 등의 제세를 수입통관 후 익월 5일에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기업 납세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수출입지해관에 집중납부제도 신청을 등록하며 신청지 해관에 보증금 또는 은행보증 등 일정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해당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1년에 2회 이상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 해당제도는 해관 전자납세시스템 이용업체로서 해관 기업신용분류방법에 의한 고급인증(AA)⁵⁷⁾ 및 일반인증(A)업체가 대상이며, 일반신용(B) 및 신용상실(C,D)업체는 이용이 불가하다.⁵⁸⁾

56) 북경, 상해, 닝보 해관

57) AEO기업 등

58) 중국에서는 신용등급 상승 시 담보제공, 통관편리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용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

□ 주요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통관절차의 일관성 및 투명성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가격 산정이 해관마다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통관절차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납품지연 및 계약파기가 발생한다.
- 동일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가 각 지방 해관마다 혹은 동일 해관이 라도 해관원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있다⁵⁹⁾.
- 동일한 성분이라도 해관마다 통관여부에 대한 처리기준이 다르다.
- 관할기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관 떠넘기기로 인해 해당상품 자체가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

**<표3-14> 통관절차의 일관성 및 투명성 문제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2016년~2017년 상반기)**

사 례	핵심문제
□ H社は 한·중 AEO-MRA를 적용받아 중국 수출통관시 신속화(안정화) 혜택을 부여받 고자 하였으나, 공인 이후에도 MRA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여 중국 수입검사 대응경비와 물류불안정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16.2)	중국 현지에서 상호약정 한 AEO-MRA 혜택을 받지 못해 물류 불안정 발생
□ 과거의 항공운송장(AWB)이 삭제되지 않아 항공운송장의 중복으로 인한 통관지연이 빈번히 발생 (16.8)	중국 해관 측에서 과거 2년 이상 경과된 항공운송장을 삭제하지 않아 중복으로 인한 통관 지연 발생
□ 한국에서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으로 전송한 원산지증명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세관에서 통관보류 빈번히 발생 (16.10)	중국의 지역 해관별로 한·중 원산지전 자자료교환시스템(EODES)의 구축 상태 가 매우 상이하여 전산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59) 해관원이 바뀔 경우 새로운 세번 적용으로 관세인상 등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

□ 상술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2017년 6월 28일 중국 해관총서 2017년 제25호 공고를 발표해 2017년 7월 1일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전국해관 통관일체화 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⁶⁰⁾

○ 추진과정

- 2014.7.1 : 경진(북경-천진-석가장) 해관 통관구역화 시도
- 2014.9.22 : 장강경제띠(상해, 남경, 항주, Ningbo, 합비) 해관 도입,
광둥지구(광주, 심천, 공북, 산두, 황포, 강문, 담강) 해관 도입
- 2014.12.1 : 남창, 우한, 창사, 중경, 청두, 귀양, 쿤밍 해관
장강경제대 구역일체화 도입
- 2015.5.1 : 동북지구(하얼빈, 대련, 심양, 장춘, 후허하오터(네이멍구), 만주리) 해관 도입
- 2015.7.1 : 실크로드경제띠(청도, 제남, 정주, 태원, 서안, 은천, 란주, 서닝, 우루무치, 라사해관) 해관 도입
- 2015.12.28 : 통관기업 1개 지역해관에 등록 → 전국해관에 통관 가능
- 2017.7.1. : 모든 품목에 대한 통관일체화 전면 시행

○ 지역통관 일체화를 실시할 때 통관서류심사를 담당했던 지역별 부서는 더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3곳의 리스크통제센터(海关风险防控中心)⁶¹⁾와 3곳의 징세관리센터(税收征管中心)⁶²⁾를 운영하여 관리한다.

○ 징세관리 방식의 개혁은 전국 모든 해관, 모든 운송루트를 통해 수입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에 기재된 모든 상품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60) Kotra 해외시장뉴스 참고

61) 칭다오 리스크통제센터, 상하이 리스크통제센터, 황푸(黄埔) 리스크통제센터

62) 상하이 징세관리센터, 광저우 징세관리센터, 베이징-톈진 징세관리센터

- 전국해관 통합제도는 크게 2개 센터⁶³⁾, 3개 제도⁶⁴⁾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 기존의 세관 통관 과정은 수입신고→서류심사(가격심사, 제품분류, 원산지심사 등)→현장검사→세금징수→통관의 순서로 진행 되었으나, 통관 일체화 개혁 후에는 기업의 (자진) 신고 및 세금납부→ 통관 현장에서 리스크통제 검사⁶⁵⁾→통관→세금징수요소심사⁶⁶⁾(가격심사, 제품분류, 원산지심사 등)의 순서로 진행
- 통관일체화 효과
 - 지역적 측면에서 해관 통합제도 실시 후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해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 납세 등 세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효율성 측면에서 수입통관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기업의 통관시간⁶⁷⁾ 및 통관비용⁶⁸⁾의 절약이 가능
 - 법률적 측면에서 통일된 형식규격과 표준을 통해 수입통관 정책을 관리하게 되어 수입통관절차의 안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증가

63) 리스크통제센터(海關風險防控中心)와 징세관리센터(稅收徵管中心)

64) '1회 신고, 단계별 처리(一次申報、分步處置)' 제도, 세금징수방식 개혁제도, 해관 감독기능 개혁제도

65) 세관 리스크통제센터에서 수입 물품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브랜드명, 규격, 수량 허위 신고 여부 등 안전 수입리스크를 분석해 조사지시를 내린 후 현장 검사원이 물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66) 징세관리센터는 물품 통관 후 리스트 심사대상을 선별해 무작위로 수입신고 서류심사, 관세평가 등 업무를 진행한다.

67) 과거 업무일 기준 5~6일→업무일 기준 2일 소요

68) 물류비용 약 30% 절약

나. SPS 조치 관련 통관절차

□ 물마크 위생허가 (MOH)

-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강제인증(CCC)대상이지만 동시에 물마크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다. 이처럼 물과 접촉이 되는 설비와 장치들을 위생허가를 취득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 대상 : 냉온정수기, 직수형정수기 등 필터가 있는 정수기류
- 한국에서는 모든 정수기를 같은 HS 코드로 분류하지만 중국 인증기관에서는 냉온 기능에 따라 다르게 분류한다. 또한 필터가 있는 정수기류는 모두 위생허가를 취득해야만 한다.
- CCC + MOH를 받아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CCC는 3개월에 종료되지만 MOH는 시험 + 신청 + 평가 + 증서발행에 최소 9개월 이상의 취득시간이 소요된다.
 - MOH의 경우는 위생허가 팀이 따로 있으며, 평가를 진행해주는 시기도 짝수·홀수 달로 나뉘어져 평가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 또한 물마크는 중국에 지정된 수입자가 없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정수기 업체인데 CCC인증은 받았지만 MOH를 진행하려고 보니 중국에 수입자가 없어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사례가 존재

□ 화장품 위생허가⁶⁹⁾

- 중국의 화장품⁷⁰⁾ 감독관리 주요 기관은 국가식품약품감독 관리총국(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수입화장품, 국산특수용도화장품과 신원료의 허가 접수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 중국 수출을 원하는 한국 화장품은 수입화장품 규정에 따라 중국 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독립법인 자격이 있는 중국 내 기업에게 대리하여 위생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 소재한 위생허가 신청 책임 회사인 ‘재 중국 신고 책임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 **(절차)** 위생허가 절차는 CFDA 인터넷에서 ID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면 (5일) 특수용도 화장품⁷¹⁾의 경우 약 4개월에서 8개월, 비특수용도 화장품⁷²⁾의 경우는 약 2개월간의 시험검사가 진행된다. 그 후 CFDA 행정접수 서비스센터의 허가접수 (5일)를 거쳐 CFDA 보건식품 심사평가센터로부터 특수용도는 심사 90일, 비준 20일, 비특수용도는 심사 20일의 기술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제작(10일) 후 발급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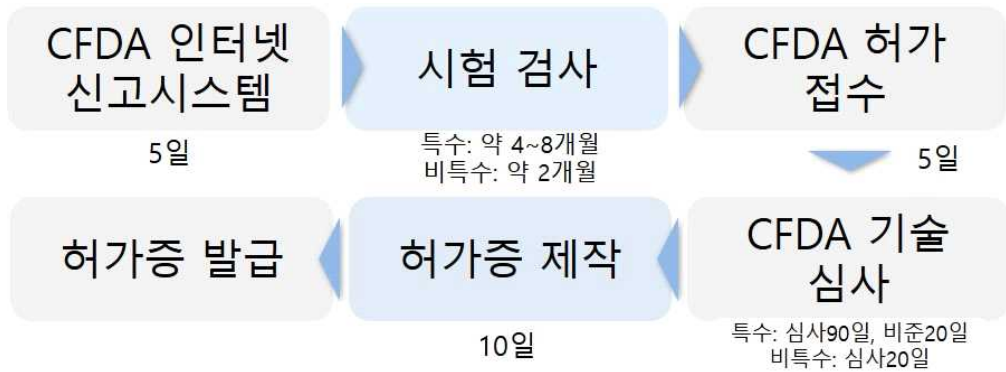
69) (사)대한화장품협회‘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기본교육’ 자료 참고

70)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에 따르면 중국에서 ‘화장품이란 인체 표면의 모든 부위(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에 도찰, 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청결, 악취제거, 피부보호, 미용 및 가꾸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상용 화학공업제품’을 가리킨다. 개정안에는 사용 부위에 ‘치아 및 구강점막’ (치약 등)을 추가했다.

71) 특수용도 화장품은 일종의 기능성 화장품으로 염색류, 퍼머류, 기미제거류(미백류 포함), 자외선 차단류, 헤어토닉류, 제모류, 버스트케어류, 바디컨투어링류, 제취류 등 9종이 해당된다.

72) 일반화장품

<그림3-10>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신청절차



출처: 국가식품약품감독 관리총국

- **(준비서류)** 신청에는 제품처방 (위생허가 신청회사, 영문 작성), 제품 포장 (중문번역), 실제품, 사업자등록증, 수권서 및 서명수권서 (한국 공증처 공증 요망), 접수수권서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재중국신고책임 회사 영업집조 (사업자등록 등) 등이 필요
- **(소요비용)** 위생허가 검사 소요비용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소요 비용에는 샘플 검사비, 공증비, 번역비가 포함되며 대행기관을 이용할 경우 대행서비스비 등이 요구된다.
 - 검사비용은 대략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5800~7800위안, 특수용도 화장품 9100위안~3만6800위안이다. 그러나 품목별로 다르며 제품 기능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대략적인 총 소요비용은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1만5000~1만8000위안, 특수용도 화장품은 3~6만위안 정도다.

<표3-15>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검사 소요비용

화폐 단위: 위안(RMB)

분류		검사비용
비특수용도	두발용 제품	6800
	스킨케어 제품	5800
	눈 주위 제품	7800
	메이크업 제품	5800
	눈 화장용 제품	7800
	립케어 제품(립글로스, 립밤, 립스틱)	5800
	방향용 제품	5800
특수용도	자외선차단용 제품	13600
	기미제거용 제품(미백용)	13700
	체취방지용 제품	9800
	탈모방지용 제품	9100
	두발염색용 제품	14000/7000
	퍼머넌트 제품	9100
	바디슬리밍용 제품	31800
	가슴용 제품	31800
	모발생장 제품	36800
위험물질	디옥산	1000
	에탄올	1000
	페놀	1000
	잔류농약	3000
	석면	1200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기본교육 자료

- **(유효기간)** 현재 등록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기 4~6개월 전에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추후에는 유효기간 5년에 만기 6개월 전 연장 신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 중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 있다. 이를 포함한 화장품은 중국 시장에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품기획 단계부터 CFDA 등록이 가능한 성분으로 제품을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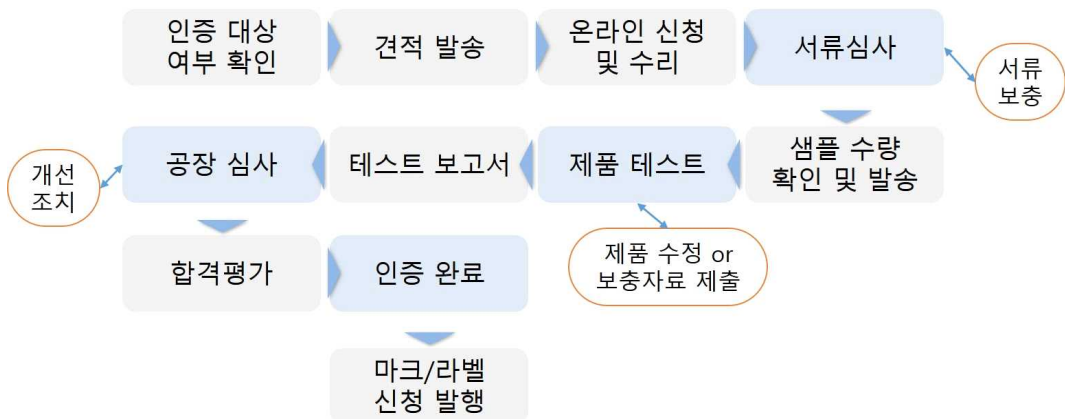
- 화장품 중 존재 가능한 안전성 위험물질(디옥산, 페놀, 에탄올, 석면, 잔류농약 등)에 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1000위안에서 3000위안의 검사 비용이 필요하다.
- 또한 위생허가 인증은 만기 6개월 전에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까다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인증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행업체 선정**이다. 대행업체의 노하우와 경험에 의해 위생허가증의 취득 여부가 결정된다.
 - 무역협회 관계자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허가증 업무를 진행한 업체들로부터 좋은 대행업체를 소개받고 해당 업체의 레퍼런스 목록 및 레퍼런스 업체의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 이와 함께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중국신고책임회사란 중국에 소재한 위생허가 신청 책임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위생허가를 신청하는데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한 책임과 상응하는 법률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 중국에서 판매한 제품의 법적인 문제(예를 들어 피부 트러블 발생으로 인한 소송 등)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 법적책임은 해당제품을 판매한 최종 대리상에게 있지만 최종적인 연대책임은 재중국신고책임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 책임질 수 있는 재중국신고책임회사가 지정되지 않으면 위생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⁷³⁾ CFDA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인증서갱신, 주소변경, 제품의 중문명칭을 변경 시 반드시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도장이 요구된다.

73) 제조판매업자가 위생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중국신고책임회사가 제조판매업자를 대신 위생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대행업체들은 의뢰업체를 다른 대행업체에 빼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재중국신고책임회사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럴 경우 재중국신고책임회사를 처음에 잘못 지정하면 추후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⁷⁴⁾
- 재중국신고책임회사는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업자의 중국 지사, 총대리상, 지인의 회사, 대리업체, 혹은 법률사무소 등을 지정한다.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선정 시 고려할 사항들은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비용, 허가증 관리능력 등이 있다. 대기업일 경우는 중국지사를 재중국신고책임회사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총대리상 혹은 대리업체를 선정하기도 한다.

다. TBT 조치 관련 통관절차

<그림3-11> 인증 취득절차



74) 예를 들어 의뢰업체가 위생허가를 이 회사를 통해 10개 정도를 받고 다른 10개 제품을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려고하면 기존 업체에서는 이미 발급한 허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제품을 등한시하게 되고 추후 허가증 갱신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 **(준비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신청서, 제조상, 생산공장), 기타 인증서 사본, 일치성 성명서(영문), 부품리스트(CCL), 회로도, 제품표사서(필요시), 조립도(필요시), 전기 원리도(필요시), 중문 제품 매뉴얼, 중문 명판, 계측기, 생산설비 리스트, 공장 심사 조사표(공장 심사 필요 시)
- CCC 인증마크의 취급
 - 반드시 인증제품의 외면 특정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 인증마크가 제품 몸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제품 포장에 표시되거나 부착된 기록(attached document)에 표시되어야 한다.
 - 인증마크 표시에 부적절한 특성을 지닌 제품인 경우, CCC의 특별양식임을 알리는 내용이 제품 또는 제품명판에 인쇄(print), 프레스(press), 몰드(mold), 스크린인쇄(screen-print), 페인트(paint), 식각(etch), 조각(carve), 스탬프(stamp) 또는 각인(seal)하여야 한다.
 -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수입되기 전에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5. 품목분류

- 품목분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 수출입금지품 및 수량제한, 무역관리 및 허가증 요구(강제인증 등), 상품검역, 무역통계 등 수출입 거래의 거의 모든 방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 특히, 가공무역에 있어서는 가공무역 금지나 제한류 목록 해당여부, 증치세·퇴세율, 수출관세율과 관련되어 있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품목분류는 모든 수출입 통관 시 적용되는 원칙이자 요구사항으로 수출입기업은 HS 코드를 포함하여 수출입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국에서는 품목분류 오류 등 법규를 미 준수 할 경우의 대가가 매우 크다.
 - 과거 한국의 對중국 수출기업과 중국 해관과의 품목분류 이견(異見)이 있을 때⁷⁵⁾에 화물통관 지연이 발생하여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판매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전국해관 통관일체화의 도입으로 통관이후에 품목분류심사가 이루어져 이와 같은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통관자체의 애로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품목분류 오기 시 부과되는 세금추징 등은 피할 수 없다.
- 중국은 HS 협약 가입국으로서 HS코드 분류 체계에 의거 10단위 상품분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은 수입신고 시 화물상태가 기준이 된다.
- 해관에 자료요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해관총서는 품목분류의 최종결정과 대외공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75)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

□ HS코드 분류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성(省)급해관 「상품분류중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분류가 가능하다. 이를 품목분류 사전회시라 하며, 신청 시 수출입 기업은 화물에 관한 정보 및 HS 코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해관에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성(省)급해관 상품분류중심에서는 신청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의문이 있거나 쟁의가 있어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해관총서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 사전분류신청이 수리되면 신청인에서 ‘수출입상품 사전분류 결정서’를 교부한다.
- 해관에서 품목분류 사전결정서를 발급받게 되면 수출입 기업은 해관이 인정한 HS코드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분류 결정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결정을 내린 해관에 이의신청 가능하다.
- 결정서는 신청인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1년)내에 수출입할 지역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성(省)급해관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품목분류 결정 시기)

- 통관 전: 수출입 기업은 화물 수출입신고 45일 전에 입항지 해관에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신청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 결정서」를 받을 수 있다.
- 통관 중: 화물을 이미 신고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경우 수출입 기업은 해관이 제시한 분류 의견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통관 후: 해관 주관 부서는 보통 품목분류에 대해 사후 심사를 실시하며 이때의 제척기간은 3년이다.

□ (품목분류 관련 주요발생 애로 및 해관의 처리방향)

- 실제와 다른 HS코드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출 시에 수출퇴세를 받을 수 없고 수입 시에는 사후추징의 대상이 된다.
- 해관과의 품목분류 이견이 발생했을 때에는 통관이 장기간 지체되는 데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일정 차질과 손실과다를 발생시킨다.
- 수출퇴세와 관련해서는 해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출품 품목분류를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신고를 감지한 경우라도 금액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추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HS 코드상 기타로 분류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재분류 조치된다.

□ (품목분류 오류방지 방안)

- 통관대리인에게 물품의 품목분류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해당기업이 직접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품목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 수출입관세율 및 수출퇴세율 등을 고려한 기업의 편법적인 품목분류를 금지해야한다.
- 수출입전 세관장사전품목분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품목분류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 제도적 구제절차⁷⁶⁾를 진행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구제절차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비용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등급이 우수한 통관기업을 통관대리인으로 선택 한다⁷⁷⁾.

76) 지역해관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에는 15일내 중급 법원에 제소 가능

77) 통관우수기업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全国优秀报关企业: <https://www.e-to-china.com.cn/ranking/>

□ (품목분류 오류사례 및 대응방안)

- 자율신고에 의한 관세 과다납부 시에는 중국해관으로부터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혜택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령 설비수입의 경우에 부품의 개별신고와 조립라인 일괄신고는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품목분류 확인을 통해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서 신고하도록 한다.
- 고의성이 없는 품목분류 오류로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지역해관별로 품목분류의 기준 및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관을 변경하여 신고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어서 퇴세율의 재분류 절차가 진행될 때는 필요시 벌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우선 통관시킨다. 마찬가지로 수입물품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분류로 인해 통관이 보류된 경우에는 차액관세를 납부하고 우선 통관시킨다.
- 한·중 FTA와 APTA 간 적용협정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관과 협상하여 차액을 납부한 후 우선 통관한다.

<표3-16>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2016년~2017년 상반기)

사 례	핵 심 문 제															
□ A社の 물품(VR)에 대한 국내와 중국의 상이한 품목분류로 인한 세율차이 (2016.4) - 한국 8543.70 (기타의 전자기기) - 중국 8528.59 (기타의 모니터)	중국은 수출 퇴세율 관련하여 수출품 품목분류를 엄격하게 심사함															
□ B社の 산업용 로봇에 대한 국내와 중국의 상이한 품목분류로 인한 세율차이 (2016.5) - 수출자는 해당물품이 단계철폐 대상으로 관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 해관에서 산업용 로봇이 아닌 미양허 품목인 일반 기계류로 판단하여 세율차이 발생																
□ C社の 물품 (자동화설비)에 대한 국내와 중국의 상이한 품목분류로 인한 세율차이 (2016.6) - 한국 8479.89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 - 중국 8515.80 (열과 압력으로 접착되는 전기 식의 기기)																
□ D社の 물품 (사출성형기)에 대한 국내와 중국의 상이한 품목분류로 인한 세율차이 (2016.6) - 한국 8477.90 (부분품 세번) - 중국 8477.10 (완제품 세번)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재분류 조치를 행하는 경향이 있음															
□ E社は 양국 간 품목 분류 상이 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특혜 세율 혜택 적용 어려움 (2016.7) - 중국과의 품목분류 상이로 FTA 활용이 어려움 <table><tr><td></td><td>한국</td><td>중국</td></tr><tr><td>HOUSING</td><td>8536.69</td><td>8538.90</td></tr><tr><td>SEAL</td><td>3926.90</td><td>4016.93</td></tr><tr><td>GROMMET</td><td>4016.99</td><td>4016.93</td></tr><tr><td>PROTECTOR</td><td>3926.90</td><td>8547.20</td></tr></table>		한국	중국	HOUSING	8536.69	8538.90	SEAL	3926.90	4016.93	GROMMET	4016.99	4016.93	PROTECTOR	3926.90	8547.20	한·중 양국의 품목분류 (HS코드) 6단위 상이로 인한 품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특혜 세율 혜택 적용 어려움
	한국	중국														
HOUSING	8536.69	8538.90														
SEAL	3926.90	4016.93														
GROMMET	4016.99	4016.93														
PROTECTOR	3926.90	8547.20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표3-17>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2016년~2017년 상반기)

사 례	핵심문제
□ F社가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 용기에 대해 上海해관의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관세추징 통보 (25.5억원) (2016.8) - 한국 3923.10 (플라스틱 포장용기) - 중국 4202.32 (분갑과 유사한것)	중국 측의 품목분류 착오로 인해 통관 보류 및 관세 추징됨
□ G社가 수출한 차량용 계기판 메인보드에 대해 품목분류 해석상이를 이유로 관세추징 예정 (12.6억) (2016.9) - 한국 9029.90 (속도계 부분품) - 중국 8708.29 (차량용 부분품)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6. 지식재산권

-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1980년대 초 제정한 「특허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저작권법(著作權法)」, 「지식재산권 해관보호조례(知識產權海關保護條例)」 등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규를 TRIPs 협정에 맞춰 개정하는 등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 그러나 실제 집행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여 여전히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중요한 교역 및 투자 장애로 지적되고 있으며, 주요한 통상 이슈가 되고 있다.
 - 일본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중국의 장벽으로 △모조품 및 해적판 문제 △상표 보호의 미흡 △특허 및 노하우 등 라이선스 규제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중국의 「수출입관리조례」에 포함된 각종 규제조치 및 강제적인 보증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일례로 일본 조례 제27조에서는 기술수입 계약의 양수인이 계약에 따라서 공급된 기술을 개조하였을 경우 개조된 기술의 소유권은 개조한 당사자에게 귀속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자기업의 기술공급을 저해하고 있다.

- 미국 역시 중국에서 모조품의 판매, 책과 잡지 및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인터넷 불법복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이 낮고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는 등 관련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영화, DVD, 음악, 서적, 신문, 잡지 등에 대한 수입권 제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된 상품들의 합법적이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막아 불법복제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본다.
- 한국 또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단속이 미흡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류의 유행으로 중국 내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패션 등이 유행하면서 문화 분야의 지재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적합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국 기업들이 겪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비관세장벽으로는 중국 당국의 상표 및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행정단속 불충분 및 경미한 처벌 경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특허심사 지연 경험들이 있었다.
- 이에 중국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각종 관련 법규를 수정하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⁷⁸⁾. 최근에는 혁신을 통한 지식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지재권 출원량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526,412건)이 처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였고 2014년에는 발명특허출원 및 상표출원이 건수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⁷⁹⁾.

78) 2005년 이후 중국정부 '국가지식재산 전략위원회'를 설치,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강요' 발표, 2011년 '국가 지재권 사업발전 12.5 계획(2011~2015년)을 수립, 2014년 북경·상해·광저우에 지식재산 전문 법원을 설립 등

79) 2016년 무역장벽보고서

- 그러나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리침해 현상도 대폭 증가하여 중국 전 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민사사건이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중국은 모조품이 시장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으며 신제품과 거의 동시에 출시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당국의 행정단속과 민사구제 및 형사제재가 불충분하고, 특허 심사가 지연되며, 도용된 특허에 대한 권리 귀속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지방보호주의가 잔존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상표와 관련하여 보호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증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
- **(지식재산권의 분류)** 지식재산권은 상표⁸⁰⁾, 디자인⁸¹⁾, 특허⁸²⁾, 도메인⁸³⁾, 저작권⁸⁴⁾, 부정경쟁방지⁸⁵⁾ 등과 관련이 있다. 지식재산권이 인정 되려면 새로운 창작물이면서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당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다.
- **(등록기관)** 중국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관련된 기관은 국가지식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판권국 크게 3곳으로 나누어진다. 국가지식산권국은 전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를 담당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를 담당하며, 국가판권국은 판권·저작권을 담당한다.
- 상표, 전리, 저작권의 해관 등록은 중국 해관총서에서 담당하며 이에 대한 침해 정보 신고는 각 지방해관에서 이루어진다.
- **(상표관련 유의사항)**
 - 중국 사업진출 계획이 있다면 바이어를 만나기 이전에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다.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통관 보류 및 단속

80) 상품 및 서비스의 식별표지

81) 물품의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물

82) 물건 또는 물건의 생산방법

83) 인터넷 주소, CN 도메인의 등록: 도메인 등록기관에 신청(.cn 또는 .com.cn)

84) 문학, 학술, 예술에 관한 창작물

85) 널리 알려진 상품 및 서비스의 식별표지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예정

요청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상표 출원 시에는 중국어 상호를 정해야 하며 이 때 자호가 영문 대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상표권 등록 시 외국어 원문 상표와 함께 중문 상표도 함께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동일상표, 연합상표⁸⁶⁾, 방어상표⁸⁷⁾도 함께 등록해 둘 수 있다.
- 2014년 5월 1일 「중국상표법」 제3차 개정에 따르면 상표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기간만료 12개월 전에는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先출원주의이며 특허심사에 일반적으로 9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 사업심사 9개월 이전에 상표를 출원 하고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 중국에서는 악의적인 先등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상표침해소송 방지를 위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의 「중국상표망 사이트」⁸⁸⁾에서 중문이나 영문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사전에 검색해 보아야 한다.

□ (지재권 분쟁 시 대응방안)

- 사전에 해관에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해관에 통관보류 요청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품의 판매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시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
- 또한 상표권 분쟁, 모조품 단속 시 중국의 북경(北京), 상해(上海), 청도(靑島), 선양(沈陽), 광주(廣州), 서안(西安) 6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IP-DESK⁸⁹⁾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IP-DESK는 Kotra에 의해 운영

86) 자체상표와 유사하여 헛갈리기 쉬운 상표

87) 향후 기업의 사업범위가 확대 되었을 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

88) <http://www.saic.gov.cn/>

89)

<http://www.ip-desk.or.kr/newhome/cmmn/main.do;jsessionid=B5B2C1270D6122A85868>

되는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으로 국가예산으로 지원된다.

7. 기타 비관세장벽

□ (가격심사 강화) 수입신고 가격이 중국내 동일물품 혹은 他기업 수입가격보다 낮을 때 해관에서 저가신고나 특수 관계 여부를 의심하여 통관 중지를 조치 취할 수 있다.

- 가격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수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관에서 입증불충분을 사유로 추정이 가능하다.

- 이와 같은 가격심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 수입신고 가격심사에 대비 거래가격 등 대응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보관하고,
- 해관이 제시가격을 불인정할 경우에 대비 과세가격결정방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요구하도록 한다.

- 가격심사 대응 시 주의 점으로,

- 신고가격과 무관한 기업의 영업비밀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하고,
- 빠른 통관 진행을 위해 선불리 신고가격을 높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⁹⁰⁾.

- 따라서 先담보 후 통관을 우선 진행하고 시간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격협상을 진행하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undervalue하는 현지 업체들의 관행

9BFB64FC667D

90) 신고가격을 높이면 추후 신고 시 해당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적용됨

에 편승할 경우 일시에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사전 주의를 요한다.

□ **(라벨링)** 표준 충족여부의 일차적 참고자료로서, 통관 시 제품 라벨 확인을 통해 표준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또한 현지 시장조사 시 현장에서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라벨 확인을 통해 제품의 표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 예포장식품 라벨통칙에 따르면 라벨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이름, 규격, 함량, 생산일, (2) 성분 혹은 원재료표, (3) 생산자 이름, 주소, 연락처 (예포장 수입식품은 수입업체 혹은 대리업체가 표기되어야 하며, 생산자의 정보는 표기하지 않음. 단 생산국 혹은 생산지역명은 반드시 표기해야함), (4) 유통기한, (5) 상품 바코드(예포장 수입식품 제외), (6) 보관조건, (7) 국가표준에서 쓰는 명칭으로 식품첨가제 표기, (8) 생산허가증 일련번호(예포장 수입식품 제외), (9) 법률, 법규 혹은 식품안전표준에서 규정된 기타사항 역시 표기(전문 영유아 및 기타 특정인 대상의 주·부식품의 영양성분과 그 함량 표기)

- 수입제품의 경우 제품의 원산지, 수입자 혹은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제품의 세부규격, 주재료 및 혼합비율⁹¹⁾ 등의 정보가 중국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있는 상품은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도 분명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 위반 시에는 1만 위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종이라벨이 아닌 경우에는 상품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식품 예비포장의 라벨 등 제품표기 비안(備案)기준이 항구 상검국마다 달라 통용이 안 되는 애로가 있다.

91)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기한다.

- 라벨링 표시기준의 예로는 화장품 라벨에 모든 함유성분을 함유량 순으로 표기할 것을 의무화한 것과 수입식품에 반드시 중문 라벨을 부착하도록 강제 규정한 것이 있다.

□ **(중고품 수입규제)** 중고 기계 및 중고 전자제품은 수입금지대상 품목으로 제한적으로만 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수입승인절차가 복잡하며 제출서류가 많을 뿐 아니라 중고품에 대한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애로가 있다.

- 설비 사용가능 정도가 80% 초과인 경우는 중고로 80% 이하인 경우는 폐품으로 분류하나 해당 설비의 정확한 사용가능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 일부해관에서는 5년 이상의 설비는 모두 폐품으로 간주하기도 하며, 중고 설비 수입과세 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이 자의적인 경우도 있다.
- 중고기계설비 수출 시에는 비안(備案)후 비안서를 근거로 선적 전 중국 질검국의 사전승인⁹²⁾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상무부의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 심사서류 처리 7일, 질검국 심사 30일, 중고설비허가발급증 35일, 해관상품분류·가격심사·EDI신고 5일, 해관수입신고 5일 정도 소요되며 따라서 적어도 근무일 기준 82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중고기계의 수입통관을 준비해야 한다.

92) 수출국내에서의 사전검사는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른 공공의 안전, 위생, 환경보호 관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 **(가공무역기업 세금추징관련)** 중국 내 한국의 가공기업들이 수책 및 재고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관 실사에 의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재고 불일치의 문제로 내수판매로 간주 될 경우 큰 금액의 관세 추징은 물론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밀수입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해당기업의 가공무역업 자체가 정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불시에 행해지는 임의조사 이외에도 3~5년 마다 정기조사가 시행된다. 따라서 기업은 수책 및 재고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물품의 중간정산 및 과부족분 조정 작업⁹³⁾ 등을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 **(원산지증명)**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중국은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進出口貨物原產地條例)」, 「원산지표시 관리규정(原產地標記管理規定)」 및 그 「실시방법(原產地標記管理規定實施辦法)」이 있다.

○ 기존에는 중국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기재나 인장관련 형식적인 오류가 많이 발생했으나 2016년 12월 20일부터 한국과 중국 간 전자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인 EODES가 시행되면서 형식적 오류 문제는 상당수 감소하였다.

93) 변각자재, 불량품, 부산물, 재해 발생분 등

**<표3-18> 원산지증명서 내용 불인정으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2016년~2017년 상반기)**

사 례	핵심문제
□ 원산지증명서 샘플을 중국 수입자에 송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중국세관 측에서 원산지 증명서상에 물품의 금액과 순중량 기재를 요구받아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수출을 못함	원산지증명서에 금액 기재 불필요 *금액은 수입신고와 인보이스 제출을 통해 확인
□ 반도체 와이어 본딩 공정에 사용되는 CAPILLARY 1,075개를 수입하면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류에 경유지 미표시를 이유로 특혜적용 거부	한-중 FTA 직접운송 규정은 APTA와 달리 선적항, 환적항, 도착항이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이 필수구비서류가 아님 홍콩에서 7일 이내 경유한 경우가 아니면 비가공증명서도 불필요하므로 통관 가능
□ APTA 협정 원산지증명서 HS표시변경 (6단위→4단위)으로 중국측에서 특혜적용 불가 통보	APTA 협정문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변경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고 기 발급된 APTA 원산지증명서(HS4단위 기재)로 특혜세율을 적용가능
□ 선적일 이후 발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선적일자 : 2016년 12월 14일, 원산지증명서 발행일자: 2016년 12월 20일 중국 측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물품 선적일 이전 날짜로 재발행 해줄 것을 요구	다음 규정에 따라 통관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한-중FTA 협정문 제3.15조 제3항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상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 발급된다.'

제3절 품목(product)별 비관세 장벽

1. 화장품

-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CFDA)은 위생부에 의해 제정됐던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2015)」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다. 동 규범은 화장품의 위해 물질 안전관리, 화장품 안전 감독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대만 등)의 화장품 법규 및 기준을 참고 하여 수정되었다.
- 규제가 강화된 부분은 화장품의 위해물질 관리에 있어서 중금속 함유량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 전의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2007)」에 비해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을 270개 추가하거나 수정했다. 또한, 사용 금지, 제한 성분 및 허가 성분표가 수정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 업체의 CFDA 위생허가 변경 신청, 포기 사례가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19>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수정내역

(단위 : 개)

	총합	추가	수정	삭제
사용금지 성분	1388	133	137	-
제한 성분	47	1	31	27
허가 방부제	51	-	14	5
허가 자외선 차단제	27		6	1
허가 착색제	157	1	69	
허가 염색제	75		63	21

자료: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행정허가’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위생행정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며 검사 및 위생행정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 중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목록」의 발표하고, 2017년 5월부터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화장품에도 CFDA 위생허가가 의무화하여 통관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 해외 직구 상품들은 원래 통관신고서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상품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통관이 되고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 중국은 2017년 3월부터 수입화장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수입화장품의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서 수입화장품 수입, 판매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중국 내 모든 수입화장품에 관한 법률이다.
 - 해당 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 14조의 ‘수입화장품 판매기록은 판매경로 및 회수 기록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와 제 19조의 ‘사검역기관은 수령인이 수입한 화장품 및 판매기록을 수시로 검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이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화인은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템 (<http://ire.eciq.cn>)을 통해 등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중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에 따라 화장품 이외에도 기타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관리가 더욱 더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식품

□ 중국은 「식품안전법」의 시행 하에 식품안전 관리감독이 엄격해졌으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CFDA)이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해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최근 수입식품 관련 주요 비관세장벽이 근간이 되는 위생 및 검역 검사제도 관련 법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국의 수입상품검사제도)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는 관할 지역의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를 관리하도록 중국 각지에 설치하여 검사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검사검역상품목록표」에 포함된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통관 수속전에 반드시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 (중국의 수입식품위생검역제도)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은 반드시 중국 식품안전표준기준에 부합해야하면, 수입하는 식품, 식품 첨가물은 반드시 출입국검사검역기구를 통해 수출입 상품 검사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 중국은 「수입식품표시관리방법」이 시행되면서 수입식품과 관련된 표시규정이 일원화되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전국의 수출입식품표시관리업무를 주관하며 식품표시의 심사, 허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수입식품표시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심사를 통해 「수출입식품표시심사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며 식품을 수입할 때 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한다.

- 수입식품표시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제품의 표지에 표기내용이 실제 제품의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반드시 원제조국의 언어를 중문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 수입식품이 중국의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정도에 따라 반송, 폐기, 식용 외의 용도로 전용, 재처리하여야 한다.
-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최근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CFDA)이 자국의 의약품 안정성제고를 위해 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GMP)의 강제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의약품 시장진입에 장벽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재개정하여 공포하고 있다.
- 중국은 의약품 등록 심사 시 요구하는 규격이 타국가의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중국의 자체적인 규격, 중국약전 (中國藥典)을 적용한다.
-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 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임상실험 결과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최대 1년 정도 소요된다.
- 중국의 수입약품에 대한 심사 및 허가에 관련된 주요 규정은 「수입약품관리방법」인데, 이 규정은 수입약품은 반드시 C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

- 「수입의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고, 해당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CFDA에 재신청해야한다.
 - 의약품 수입 시마다 C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 의약품검사소로부터 「수입약품통관증」과 기타 증명서류를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해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CFDA는 수입관련 규정에 적합한 수입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중국 내의 의약품 시장에서 동일한 의약품의 판매 현황에 따라 약품 수입 허가를 결정하기도 한다.
- CFDA는 의료기기 수입허가 시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2014.6.1.일 시행) 제2장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임상평가자료 및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 요구대상을 규정한다.
- 중국 내 CFDA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며, 국제 공인시험 성적서를 불인정하고 있어 중복 시험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4. HS 코드별 비관세장벽

- 각 국의 비관세장벽은 포괄범위가 방대하며 관련정보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개별기업 차원에서 해당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① 산업별(MTI 3단위 기준) ② 2016년 기준 우리기업의 對중 수출실적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③ 인증이 요구되는 품목』에 부합하는 110여 가지 물품을 선정하여 해당품목들을 HS코드 별로 분류한 뒤 이와 관련된 품목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정리·체계화 하였다. 한·중 FTA대상 품목의 경우 해당 세 번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 : Products Specific Rules)을 제시하여 우리기업들이 수출시 FTA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가. 중국의 비관세장벽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1) 해관감관조건(海關監管條件)

해관감관조건이란 중국으로 수출·입 통관 시 품목별로 부합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해당 조건들을 인증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주로 수출입 허가증, 검역검사 수출입 화물 통관 신고서 등을 요한다. 이외에 전기·기계제품에 있어서는 전기기계제품 자동수입허가증, 폐전기기계제품수입 금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2) 검역조건(檢驗條件)

검역조건이란 중국으로 수출·입 통관 시 품목별로 부합되어야 하는 규제로 해당 규제들을 인증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는 주로 위생과 검역 그리고 기술 인증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출·입 식품위생 감독검사, 민용상품 입경검증(3C), 수입상품검사 등이 있다.

(3) 제도 및 관련규정

수출입 품목에 해당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결정된다. 해당 법령 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세부 규정(표준)들이 정해지는데 해당 제품에 대해 요구되는 표준이 모두 부합될 경우 통관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인증관련 제도로는 중국제품강제인증⁹⁴⁾(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CQC : China Quality Certificate), CFDA 화장품 행정허가, CFDA 의료기기 위생행정허가,

94) 전기전자 및 자동차류, 페인트, 완구류 등

CFDA 보건식품 위생행정허가, 중국유해물질처리지침⁹⁵⁾(China RoHS : China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CQC 환경보호제품인증 (China Ecolabelling), CCCF⁹⁶⁾(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Fire Products) 등이 있다.

중국의 표준은 국가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으로 분류되고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은 다시 강제표준과 자율표준으로 나누어진다.⁹⁷⁾ 對중국 수출을 위해서 한국수출기업들은 생산단계부터 수출품목의 국가표준 (GB, GB/T)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도록 생산하여 수출까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4) HS 코드 및 원산지 결정기준

HS코드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상품분류코드로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10단위 중국은 8단위 혹은 10단위의 HS를 적용한다.

원산지결정기준(PSR : Products Specific Rules)은 원산지상품 유형 중 불완전생산품⁹⁸⁾에 대하여 원산지충족여부⁹⁹⁾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①공통기준과 ②개별기준으로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다.

PSR은 FTA 특혜 적용 시에 필수적으로 고려 할 요소이며 주요 개별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있다.

95) 통신설비, 컴퓨터 등 전기전자설비

96) 불꽃탐지기, 소화기, 소화약제 등 소방제품류

97) 국가표준은 국가 강제성 품질기준 (GB)과 국가 추천성 품질기준 (GB/T)으로 분류된다. 중국 산업별 표준으로는 기계 분야 표준인 JB/T, 식품 첨가물 관련 표준인 QB/T, 공산품 표준인 QC/T, 전자표준인 SJ/T 등이 있다. 여기서 T는 강제성표준이 아닌 추천표준을 의미한다.

98)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조되거나 역외산 재료와 혼합해서 제조되는 물품

99) 원산지 지위를 얻을 만큼의 충분한 가공을 거쳤는지의 여부

* <세번변경기준> *

CC (HS 2단위):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HS 4단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S (HS 6단위)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부가가치기준> *

RVC 40: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50: 5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 증치세

중국은 수입 시 관세 이외에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증치세라 하며 중국의 증치세 세율을 다음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17%, 13%(일부 농산물 등), 그리고 0%의 증치세가 부과된다. 원칙적으로는 17%를 부과하며, 수출품의 경우 세무국에 퇴세신청을 통해 납부한 수출증치세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6) 퇴세율

퇴세율이란 HS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증치세 환급율을 말한다.

(7) 신청요소

신청요소는 물품에 따라 요구사항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상품명, 제작(보존방법), 포장규격, 브랜드, 성분함량 등을 요구하며 제품의 특징에 따라 요구사항이 추가된다.

나. 품목별 비관세장벽 분석 과정

<그림3-12> 품목별 비관세장벽 분석 과정



i) FTA 특혜수출대상 확인을 위한 한국의 HS코드와 중국의 HS코드연계 및 HS코드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ii) 62개 산업에 대한 물품조사 및 관련법규정의 파악¹⁰⁰⁾

iii) 증치세, 퇴세율 등 관세 이외의 세율 확인

iv) 신청요소 조사

v) 감관조건 및 검역조건의 동시고려

vi) 인증제도의 파악 및 강제성 검토

vii) 적용 가능한 국가표준의 확인 등

□ 본 보고서의 HS코드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는 수출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하나의 형식에 포괄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조사 품목들이 확대되면 수출기업들의 對중국 수출 시 해당 품목의 중국의 비관세장벽 파악을 위한 1차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¹⁰¹⁾ 다음은 산업별·품목별 비관세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다.

100) 「동일산업 내 유사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조사를 동일산업 내 유사품목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1) 품목별 제도와 근거규정을 파악함에 있어서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 한국지사)의 자문과 KOTRA의 「중소기업 8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2015)」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였다. 해당조사는 여러 정보를 조사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HS연계 등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근거규정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표3-20> 품목별비관세장벽: 1. 곡실류 (MTI 3단위: 011)_감자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11 곡실류	감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냉동하지 않은 것)	200520	20052000.00	非用醋制作的未冷冻马铃薯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258			2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5/15	1:상품명 2:제작 또는 보존방법 (미 냉동 등) 3:포장규격 4: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矣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矣单)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입경 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 (卫检))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출경 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 (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시실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공시입경동식물검역심사목록(公布进境动植物检疫审批名录)				
		입경식물 및 식물제품 위험분석관리규정(进境植物和植物产品风险分析管理规定) 입경동물식물검역심사관리방법(进境动植物检疫审批管理办法)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 식품수출입기록 및 판매기록관리규정(食品进口记录和销路记录管理规定)				
인증구분						
임의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GB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 (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 (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 (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T 31784-2015 감자제품등급분류 및 검사 규칙 (马铃薯商品薯分级与检验规程)				
		20059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80 (스위트콘: 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20055 (팔)				

<표3-21> 품목별비관세장벽: 2. 산식물 (MTI 3단위: 012)_난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12 산식물	난초	살아 있는 식물	060290	06029091.10	其他兰花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06029092.00	其他兰花(种用除外)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6,500			완전생산기 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3	5	1:상품명 2: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멸종위기종 수입동의 증명서 (濒危物种允许进口证 明书) 멸종위기종 수출동의 증명서 (濒危物种允许出口证 明书)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입경 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출경 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 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 检验法实施条例)			
멸종위기종수입 허락증명서 (濒危物种允许进口证 明书)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시실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 检疫法实施条例)			
인증구분			입경식물 및 식물제품 위험분석관리규정(进境植物和植物产品风险分析管 理规定)			
강제			입경재배매개체검역관리방법(进境栽培介质检疫管理办法) 입경동물식물검역심사관리방법(进境动植物检疫审批管理办法) 수출입야생동식물상품목록(进出口野生动植物种商品目录)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06029010 (화훼류:선인장, 안개초 등) 06029090 (기타:동백 등) 060220 (수목과 관목: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등)			

<표3-22> 품목별비관세장벽: 3. 식물성물질 (MTI 3단위: 013)_사료첨가제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13 식물성 물질	동물용 사료 첨가제	사료용 조제품 (항생물질, 비타민, 미량 광물질 등)	230990	23099010.00	制成的饲料添加剂	대상/비대 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23099090.00	其他配制的动物饲料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3/15 0/13/15	1:상품명 2:성분함량 3:가공방법(배 합의) 4:포장규격 5:브랜드 6:중국농업부 수입사료허가증 번호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 (商检))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입경 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출경 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제도명		근거규정				
중국농업부수입사료허 가증 (中国农业部进口饲料许 可证)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 验法实施条例)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시실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 检疫法实施条例) 수입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록관리방법(进口饲料和饲料添加剂登记管理办法) 수출입사료 및 사료 첨가제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进出口饲料和饲料添加 剂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인증구분						
강제		사료에 관련 국가표준 (饲料有关国家标准) 농업부 1029, 1468, 1862, 2086, 2349, 2483 호 공고 (农业部 1029, 1468, 1862, 2086, 2349, 2483 公告) GB 10648-2013 사료 라벨 (饲料标签) GB/T 10647 사료 공업 기술 용어 (饲料工业术语) 농업부 <사료 첨가제 목록> (农业部《饲料添加剂品种目录》) 농업부 <사료 원료 목록> (农业部《饲料原料目录》)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23099010(배합사료:양돈용, 양계용, 어류용, 축우용 등) 23099020(보조사료:무기물 또는 광물질, 향미제를 주로한 것) 230910(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				

<표3-23> 품목별비관세장벽: 4. 식물성재료 (MTI 3단위: 014)_소스와 조미료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14 식물성 재료	기타 소스와 조미료	고추장, 인스턴트카레, 마요네즈, 된장, 혼합조미료, 춘장 등	210390	21039090.00	其他调味品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27,261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5/15	1:품명 2:성분 3:포장규격 4: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 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 检验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 管理规定)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14880-2012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표준(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인증구분			GB 10133-2014 수산물 조미품(水产调味品)			
강제			GB 2761-2017 식품에서 진균독소 제한량(食品中真菌毒素限量) GB/T 18526.4-2001 향료 및 조미료 방사살균 공정(香料和调味品辐照 杀菌工艺) GB/T 4789.22-2003 식품 위생 미생물학 검사 조미품검사(食品卫生微生物 学检验调味品检验) GB/T 20903-2007 조미품 분류(调味品分类) GB/T 15691-2008 향신료 조미품 통용 기술 조건(香辛料调味品通用技术条件) GB/T 12729.1~12729.13-2008 향신료 및 조미품(시리즈취합)(香辛料和 调味品(系列汇总)) GB/T 30385-2013 향신료 및 조미품에서 휘발유 함량측정(香辛料和 调味品挥发油含量的测定)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24> 품목별비관세장벽: 4. 식물성재료 (MTI 3단위: 014)_간장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14 식물성 재료	간장	간장	210310	21031000.00	醬油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1,667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품명 2:성분 3:포장규격 4: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수출식품위생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 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 检验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 管理规定)				
		GB 8953-1988 간장 공장 위생 규범(酱油厂卫生规范) GB 2717-2003 간장 위생 표준(酱油卫生标准)				
인증구분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강제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14880-2012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표준(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 5009.249-2016 철분 강화 간장에서 EDTA Ferric Sodium 측정 (铁强化酱油中乙二胺四乙酸铁钠的测定)				
		GB 5009.215-2016 식품에서 유기 주석 함량 측정(食品中有机锡含量的测定)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GB 2761-2017 식품에서 진균독소 제한량(食品中真菌毒素限量)				
		GB/T 18186-2000 양조 간장(1 호 및 2 호 변경서 포함)(酿造酱油(含第 1 号和第 2 号修改单)) GB/T 5009.39-2003 간장 위생 표준 분석법(酱油卫生标准的分析方法)				

<표3-25> 품목별비관세장벽: 4. 식물성재료 (MTI 3단위: 014)_글리세롤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14 식물성 재료	글리세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 液)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152000	15200000.00	粗甘油,甘油水及甘 油碱液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2,534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품명 2:글리세린함량 3: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수출식품위생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 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 检验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인증구분		GB 29924-2013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표시통칙(食品安全国家 标准 食品添加剂标识通则)				
강제		GB 29950-2013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글리세린 (食品安全 国家标准 甘油) GB/T 13206-2011 글리세린 (甘油) * 해당 hs 코드는 수입식품위생감독검험(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근거에 따라 수입통관 검사를 진행한다. 단, 본 원료는 화장품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화장품으로 수입통관을 할 경우 다른 규정에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26> 품목별비관세장벽: 5. 기호식품 (MTI 3단위: 015)_혼합주스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15 기호식품	과실이나 채소로 만든 혼합주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이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200990	20099010.00	混合水果汁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20099090.00	混合蔬菜汁、水果与蔬菜的混合汁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3,088			2 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0805.20 호제08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5 15	1:상품명 2:성분함량 3:Brix당도 4:농축과즙인 경우 농축배수 명시 5:제작 또는 보존방법(발효, 주당첨가, 냉동, 비냉동 혼합 등) 6:저장온도 7:포장규격 8: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입경 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출경 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 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 检验法实施条例)				
인증구분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 规定) 식품수출입기록 및 판매기록관리규정(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 规定)				
강제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 23200.7-2016 벌꿀,주스,과일주 중 497 중 농약 및 관련 화학물질 잔량의 측정 GC-MASS 법(蜂蜜、果汁和果酒中 497 种农药及相关化学品残留量的测定气相色谱-质谱法) GB/T 19416-2003 산사즙 및 그 음료제품중 과즙함량의 측정(山楂汁及 其饮料中果汁含量的测定) GB/T 27305-2008 식품안전관리체계 주스 및 야채즙 제조기업요구(食品 安全管理体系 果汁和蔬菜汁类生产企业要求) GB/T 23585-2009 사과즙 및 그 제품 사과즙원료 중 파툴린 오염 예방 및 낮추는 방법(预防和降低苹果汁及其他饮料的苹果汁配料中展青霉素污 染的操作规范) GB/T 18963-2012 농축사과즙(浓缩苹果汁)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2009(과실주스:오렌지, 그레이프프루트, 레몬, 라임, 토마토, 포도, 사과, 복숭아, 딸기 등)

<표3-27> 품목별비관세장벽: 5. 기호식품 (MTI 3단위: 015)_설탕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15 기호식 품	과립설탕, 기타정제 설탕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	170199	17019990.90 (非쿼터)	砂糖(配额外) 砂糖(配额内)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17019910.10 (쿼터)	其他精制糖(配额外) 其他精制糖(配额内)	
				17019990.90 (非쿼터)		
				87,819	17019990.01 (쿼터)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품명 2:브랜드 3:선광도 4:색상 값 5:회분 6:수분 7:포장규격 8:계약일시	중요공업품 혹은 외국상인 혹은 자동등기증명 (重要工业品或外商或 自动登记证明(自动进 口许可证))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卫检)) 수출식품위생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查(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 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
인증구분	중국상무부 2017 년 제 26 호 공고 수입 설탕에 대한 보장조치 실시 공고(商务部公告 2017 年第 26 号 关于对进口食糖采取保障措施的公告)
강제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14880-2012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표준(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B/T 317-2006 백설탕(白砂糖) QB/T 5009-2016 백설탕에서 아황산염 측정(白砂糖中亚硫酸盐的测定) QB/T 5008-2016 백설탕에서 진드기 측정(白砂糖中螨的测定) QB/T 5007-2016 백설탕에서 불용잔분 측정(白砂糖中不溶水杂质的测定) QB/T 2343.2-2013 흑설탕 시험방법(赤砂糖试验方法) QB/T 4564-2013 정제설탕(精幼砂糖) QB/T 4563-2013 금설탕(金砂糖) QB/T 4095-2010 황설탕(黄砂糖) QB/T 2343.1-1997 흑설탕(赤砂糖)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28> 품목별비관세장벽: 5. 기호식품 (MTI 3단위: 015)_음료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15 기호식품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	220210	22021000.90	其他加味、加糖或其他甜物质的水(碳酸饮料)	대상
			수출량 (2016년, 단위: 천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6,03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가공정도 (가당, 가미 혹은 기타감미료) 3:포장규격 4: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 수출식품위생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 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 检验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 理规定)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14880-2012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표준(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				
인증구분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강제		GB 7101-2015 음료(饮料) GB 23200.40-2016 콜라음료중 유기인 , 염소계 농약 잔량 측정 GC 법 (可乐饮料中有机磷、有机氯农药残留量的测定 气相色谱法) GB 12695-2016 음료 생산 위생 규범(饮料生产卫生规范) GB/T 5009.140-2003 음료에서 아세트알파칼륨 측정(饮料中乙酰磺胺酸钾 的测定) GB/T 4789.21-2003 식품 위생 미생물학 검사 냉동음료, 음료 검사 (食品卫生微生物学检验 冷冻饮品、饮料检验) GB/T 12143-2008 음료 통용 분석법(饮料通用分析方法) GB/T 10792-2008 탄산음료 碳酸饮料(汽水) GB/T 10789-2015 음료 통칙(饮料通则)				
		220299(인삼음료, 과실주스 음료, 식혜 등)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220299(인삼음료, 과실주스 음료, 식혜 등)				

<표3-29> 품목별비관세장벽: 6. 농산가공품 (MTI 3단위: 016)_과실견과류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16 농산가공품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 (팥콘, 피넛버터, 사과, 코코넛, 밤, 파인애플, 포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200899	20089990.00	未列名制作或保藏的水果、坚果 调味紫菜 海藻及其他藻类制品 盐腌裙带菜 荔枝罐头 龙眼罐头 盐腌海带 清水荸荠(马蹄)罐头	대상/비대상
		수출량 (2016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4,592	2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5/15	1:상품명 2:제작 또는 보존방법 3:포장규격 4:브랜드 5:성분 6:건조비나니는 가공기술명 시(삼투압건조, 썰기, 튀김, 담금)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关单)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입경 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출경 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인증구분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시실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강제		공시입경동식물검역심사목록(公布进境动植物检疫审批名录)				
		입경식물 및 식물제품 위험분석관리규정(进境植物和植物产品风险分析管理规定)				
		입경동물식물검역심사관리방법(进境动植物检疫审批管理办法)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				
		식품수출입기록 및 판매기록관리규정(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				

	GB 12308-1990 깡통 통조림 식품 포장지박스의 기술 조건(金属罐食品罐包装纸箱技术条件)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14880-2012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표준(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 19300-2014 견과 및 씨앗 제품(坚果与籽类食品) GB 7098-2015 통조림 식품(罐头食品) GB 23200.22-2016 견과 및 견과 제품 중 maleic hydrazide 잔량의 측정 HPLC 법 GB 8950-2016 통조림 식품 생산 위생 규범(罐头食品生产卫生规范) GB 2761-2017 식품에서 진균독소 제한량(食品中真菌毒素限量) 조림에서 합성 착색제 측정 HPLC 법(水果罐头中合成着色剂的测定 高效液相色谱法) GB/T 14251-1993 주석 도금 강판 원형 통조림 캔용기 기술 조건(镀锡薄钢板圆形罐头容器技术条件) GB/T 10784-2006 통조림 식품 분류(罐头食品分类) GB/T 10786-2006 통조림 식품 검사 방법(罐头食品的检验方法) GB/T 22165-2008 볶음 견과 식품 통칙(坚果炒货食品通则) GB/T 27303-2008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통조림 식품 생산 기업 요구(食品安全管理体系 罐头食品生产企业要求) GB/T 29647-2013 견과 및 씨앗제품 GMP(坚果与籽类炒货食品良好生产规范)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30> 품목별비관세장벽: 6. 농산가공품 (MTI 3단위: 016)_곡물식료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16 농산가공품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콘플레이크 (corn flake), 콘칩, 튀긴쌀 등	190410	19041000.00	膨化或烘炒谷物制成的食品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5,44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제작 또는 보존방법 (팽창 또는 구운 것) 3:포장규격 4: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关单)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 수출식품위생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수입 가능한 동식물 식품 목록(符合评估审查要求及有传统贸易的国家或地区输华食品目录) 공시입경동식물검역심사목록(公布进境动植物检疫审批名录) 입경식물 및 식물제품 위험분석관리규정(进境植物和植物产品风险分析管理规定) 입경동물식물검역심사관리방법(进境动植物检疫审批管理办法)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인증구분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 식품수출입기록 및 판매기록관리규정(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
강제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14880-2012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표준(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 17401-2014 팽화식품(膨化食品) GB 17404-2016 팽화식품 생산 위생 규범(膨化食品生产卫生规范) GB 19640-2016 타먹은 곡물류 제품(冲调谷物制品)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190490(찌거나 삶은쌀 등) 190420(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 등)

<표3-31> 품목별비관세장벽: 6. 농산가공품 (MTI 3단위: 016)_감귤류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16 농산가공 품	유자 등 감귤류 과실	밀폐된 용기에 보존처리한 과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음)	200830	20083010.00	柑橘属水果罐头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2,38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 (제0805.20 호 및 제 0805.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제작 또는 보존방법 3:포장규격 4:브랜드 5:성분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查)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 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입식품 수출입상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 检验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 理规定)			
			GB 12308-1990 강통 통조림 식품 포장 지박스의 기술 조건(金属罐食品 罐头包装纸箱技术条件)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14880-2012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표준(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 7098-2015 통조림 식품(罐头食品) GB 8950-2016 통조림 식품 생산 위생 규범(罐头食品生产卫生规范)			
인증구분			GB 2761-2017 식품에서 진균독소 제한량(食品中真菌毒素限量) GB/T 14251-1993 주석 도금 강판 원형 통조림 캔용기 기술 조건(镀锡 薄钢板圆形罐头容器技术条件) GB/T 10784-2006 통조림 식품 분류(罐头食品分类)			
강제						

	GB/T 10786-2006 통조림 식품 검사 방법(罐头食品的检验方法) GB/T 27303-2008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통조림 식품 생산 기업 요구 (食品安全管理体系 罐头食品生产企业要求) GB/T 21916-2008 과일 통조림에서 합성 착색제 측정 HPLC 법(水果罐 头中合成着色剂的测定 高效液相色谱法) GB/T 13210-2014 감귤 통조림(柑橘罐头)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32> 품목별비관세장벽: 7. 육류 (MTI 3단위: 022)_뼈없는 쇠고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22 육류	뼈없는 쇠고기	냉동한 것으로 한정	020230	02023000.90	其他冻藏的去骨牛肉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5,559			완전생산기 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3	13	1:상품명 2:제작 또는 보존방법(냉동) 3:가공방법 (한마리 반마리, 뼈 유무 등) 4:우육부위 (채끝,다리살 등) 5:포장규격 6:영문상품명 7:브랜드 8:공장번호 9:종류(앵거 스, 화우 등) 10:연령 11:등급(A급,B 급 등) 12:사육방식 (채식,곡식 등) 13:계약일시 14:가공정도 (정교하게, 거칠게 등)	수출허가증 (出口许可证) 중요공업품 혹은 외국상인 혹은 자동등기증명 (重要工业品或外商或 自动登记证明(自动进 口许可证))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 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 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출허가증(위탁가공, 입찰공고,화학무기등) (出口许可证(来料加工, 招标,化武等))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입경 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출경 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자동수입허가증 (自动进口许可证)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시실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수입 가능한 동식물 식품 목록(符合评估审查要求及有传统贸易的国家或地区输华食品目录)
인증구분	공시입경동식물검역심사목록(公布进境动植物检疫审批名录) 입경식물 및 식물제품 위험분석관리규정(进境植物和植物产品风险分析管理规定) 입경동물식물검역심사관리방법(进境动植物检疫审批管理办法)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식품수출입기록 및 판매기록관리규정(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 수출입육류제품검역검역관리방법(进出境肉类产品检验检疫管理办法)
강제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T 17238-2008 신선, 냉동 분할 소고기(鲜、冻分割牛肉) GB/T 9960-2008 신선, 냉동 4 분체 소고기(鲜、冻四分体牛肉)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020220(갈비)

<표3-33> 품목별비관세장벽: 7. 육류 (MTI 3단위: 022)_가공 육류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22 육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고기	밀폐용기에 넣거나 넣지않은 것 (혼합물을 포함한 기타 고기로 만든것)	160249	16024990.90	制作或保藏的其他猪肉,杂碎,血	대상
			수출량 (2016년, 단위: 천불)	16024910.90	其他猪肉及杂碎的罐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6024990.10		
				1,823		
					其他含鹿豚、姬猪肉及杂碎的罐头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제작 또는 보존방법 (삶기, 찌기, 굽기, 지지기, 튀	9090,1090: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입경 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기기, 복기 등) 3:포장규격 4:브랜드 5:성분함량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9010,1010: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멸종위기종 수입동의 증명서 (濒危物种允许进口证 明书) 멸종위기종 수출동의 증명서 (濒危物种允许出口证 明书)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출경 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 (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 명 (入境货物检验检疫 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 检验法实施条例)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 检疫法实施条例) 수입 가능한 동식물 식품 목록(符合评估审查要求及有传统贸易的国家或 地区输华食品目录)	
인증구분			
강제		공시입경동식물검역심사목록(公布进境动植物检疫审批名录) 입경식물 및 식물제품 위험분석관리규정(进境植物和植物产品风险分析 管理规定) 입경동물식물검역심사관리방법(进境动植物检疫审批管理办法)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식품수출입기록 및 판매기록관리규정(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T 20711-2006 훈제/삶은 햄(熏煮火腿) GB/T 13515-2008 캔햄(火腿罐头)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160232(조제하거나 보존처리된 고기:닭으로 만든것) 160250(조제하거나 보존처리된 고기:소로 만든것) 160241(조제하거나 보존처리된 고기:돼지로 만든것) 160239(조제하거나 보존처리된 고기:기타고기로 만든것) 160290(조제하거나 보존처리된 고기: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	

<표3-34> 품목별비관세장벽: 8. 축산가공품 (MTI 3단위: 024)_조제분유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24 축산가공품	유아용 조제분유	소매용으로 한정	190110	19011010.00	供婴幼儿食用的零售 包装配方奶粉(按重量计全脱脂可可含量< 5%乳品制)	비대상
			수출량 (2016년, 단위: 천볼)			
			95,745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품명 2:성분함량 3:용도 (유아 식용) 4:포장규격 5:브랜드	중요공예품혹은 외국상인혹은 자동등기증명 (重要工业品或外商或自动登记证明(自动进口许可证))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关单)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卫检))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查(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영유아분유제품관리강화에 대한 공고(关于加强进口婴幼儿配方乳粉管理的公告) 중화인민공화국 유제품질량안전감독관리조례(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			
인증구분						
강제			GB 12693-2010 유제품 GMP(乳制品良好生产规范) GB 23790-2010 영유아 조제 분유 GMP(粉状婴幼儿配方食品良好生产规范) GB 28050- 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14880-2012 식품영양 강화제 사용 표준(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 GB 13432-2013 포장 특수선식 식품 라벨(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标签)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 5413.30-2016 유 및 유제품에서 불순물 측정(乳和乳制品杂质度的测定)			

	GB 2761-2017 식품에서 진균독소 제한량(食品中真菌毒素限量) GB 2762-2017 식품에서 오염물질 제한량(食品中污染物限量)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35> 품목별비관세장벽: 9. 모류 (MTI 3단위: 025)_솜털과 깃털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25 모류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청정·소독 ·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050510	05051000.90	其他填充用羽毛;羽 绒 填充用濒危野生禽类 羽毛、羽绒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05051000.1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6,841			완전생산기 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3 13	5/15 0	1:상품명 2:용도 3:제작 또는 보존방법 (세척,소독만 했는지, 보관 위한 처리했는지) 4:털 종류 5:털 길이 6:브랜드	05051000.90: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05051000.10 :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멸종위기종 수입 동의증명서 (濒危物种允许进口证 明书) 멸종위기종 수출 동의증명서 (濒危物种允许出口证 明书)		동식물 및 동식물상품 입경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수출상품검사 (出口商品检验(商检)) 동식물 및 동식물상품 출경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제도명		근거규정				
CQ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인증구분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임의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생태 섬유 인증 규정/CQC 22-026780-2010/生态纺织品认证规则 GB/T 18885-2009 생태 섬유 기술요구(生态纺织品技术要求)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36> 품목별비관세장벽: 10. 어류 (MTI 3단위: 041)_가다랑어류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41 어류	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	냉동어류 (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	030343	03034300.00	冻鲑鱼或狐鲣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5,144			완전생산지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3	13	1:상품명 2:제작 또는 보존방법 (냉동) 3:라틴어명칭 4: 개 체 중 량 [1000-2000g /마리 등] 5: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关单)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입경 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출경 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시실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수입 가능한 동식물 식품 목록(符合评估审查要求及有传统贸易的国家或地区输华食品目录) 공시입경동식물검역심사목록(公布进境动植物检疫审批名录) 입경식물 및 식물제품 위험분석관리규정(进境植物和植物产品风险分析管理规定) 입경동물식물검역심사관리방법(进境动植物检疫审批管理办法)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인증구분						
강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식품수출입기록 및 판매기록관리규정(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 2733-2015 식품안전국가표준 신선, 냉동 동물성 수산물 (食品安全国家标准 鲜、冻动物性水产品) GB 10136-2015 식품안전국가표준 동물성 수산제품 (食品安全国家标准 动物性水产制品)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0303(냉동어류:삼치, 대구, 명치, 넙태, 황다랑어, 임연수어, 갈치, 고등어 등)

<표3-37> 품목별비관세장벽: 11. 갑각류 (MTI 3단위: 042)_게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42 갑각류	게	냉동한 것	030614	03061490.90	其他冻蟹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6,794			완전생산기 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3	13	1:상품명 2:제작 또는 보존방법 (냉동) 3:상태 (껍질유무) 4:라틴어명칭 (入境货物检验检疫 证明) 5:개체중량 6:포장규격 7:브랜드	검역검사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화물 수출화물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입경 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출경 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 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 检验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입 가능한 동식물 식품 목록(符合评估审查要求及有传统贸易的国家或 地区输华食品目录)				

인증구분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
강제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 2733-2015 식품안전국가표준 신선, 냉동 동물성 수산물(食品安全国家标准 鲜、冻动物性水产品) GB 10136-2015 식품안전국가표준 동물성 수산제품(食品安全国家标准 动物性水产制品) GB/T 30947-2014 통조림냉장게살 (罐装冷藏蟹肉)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030633(게:냉동하지 않은것) 030611(닭새우류:냉동한것) 030617(그밖의새우류:냉동한것) 030612(바닷가재:냉동한것) 030616(냉수성(冷水性) 새우류:냉동한것) 030615(노르웨이 바닷가재:냉동한것) 030636(그밖의새우류:냉동하지 않은것)

<표3-38> 품목별비관세장벽: 12. 해조류 (MTI 3단위: 044)_김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44 해조류	기타 가공식품 (김)	식용, 조미식품, 반찬	210690	21069090.90	其他编号未列名的食品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97,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5/15	1:상품명 2:성분함량 3:포장규격 4: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查)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위생 증서 (出入境檢驗檢疫衛生 證書)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實施條例)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進口食品境外生產企業注冊管理規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中華人民共和國進出境動植物檢疫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境動 植物檢疫法實施條例)			
인증구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역법(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			
강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역법 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實施條例)
	GB 7718-2016 예포장식품라벨통칙(預包裝食品標籤通則)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21069040(조제한 식용 해초류)

<표3-39> 품목별비관세장벽: 13. 수산가공품 (MTI 3단위: 046)_생선조제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46 수산가공 품	생선소시지, 생선묵 등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160420	16042099.90	其他制作或保藏的鱼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4,079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제작 또는 보존방법 (온전한 상태 혹은 토막낸 것 온전하지 않은 상태 혹은 토막낸 것 굵기 지 자기 튀김 등) 3:포장규격 4:브랜드 5:성분함량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关单)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입경 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출경 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查 (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입 가능한 동식물 식품 목록(符合评估审查要求及有传统贸易的国家或地区输华食品目录)				
인증구분						
강제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 2733-2015 식품안전국가표준 신선, 냉동 동물성 수산물 (食品安全国家标准 鲜、冻动物性水产品) GB 10136-2015 식품안전국가표준 동물성 수산제품 (食品安全国家标准 动物性水产制品)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40> 품목별비관세장벽: 13. 수산가공품 (MTI 3단위: 046)_다랑어류 조제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046 수산가공 품	다랑어· 가다랑 어·버니 토 조제품	밀폐용기에 담은것(기름 에 담근것, 삶은것 등)	160414	16041400.00	制作或保藏的金枪鱼 、鲣鱼及狐鲣(狐鲣属)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5,556			체약 당사국내 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제작 또는 보존방법 (온전한 상태 혹은 토막낸 것 온전하지 않은 상태 혹은 토막 낸 것 굵기 지 자기 튀김 등) 3:포장규격 4:브랜드 5:성분함량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입경 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查(卫检))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출경 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物检))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查(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 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수입식품수출입상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 检验法实施条例)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수입 가능한 동식물 식품 목록(符合评估审查要求及有传统贸易的国家或 地区输华食品目录)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 管理规定)				
		인증구분				
		강제				

	GB 7718-2011 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28050-2011 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 14880-2012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표준(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 GB 2760-2014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食品添加剂使用标准) GB/T 24403-2009 참치 통조림 (金枪鱼罐头)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41> 품목별비관세장벽: 14. 기타 비금속 광물(MTI 3단위: 129)_황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129 기타 비금속 광물	황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	250300	25030000.00	各种硫磺(升华硫磺、沉淀硫磺及胶态硫磺除外)	대상
			수출량 (2016년, 단위: 천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98,407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0	1:상품명 2:포장 3:가공방법 4:상태(액체, 고체, 분말, 토막) 5:성분함량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수출상품검사 (出口商品检验(商检)) 수출식품위생 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GB/T 2449.1-2014 공업유황 제 1 부분: 고체제품(工业硫磺 第1部分: 固体产品)				
인증구분						
임의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280200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 GB/T 2449.2-2015 공업유황 제 2 부분: 액상제품(工业硫磺 第2部分: 液体产品)				

<표3-42> 품목별비관세장벽: 15. 석유제품 (MTI 3단위: 133)_그리스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133 석유제 품	그리스 (리튬을 첨가한 것 등)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	27101980	2710199200	潤滑脂,不含有生物柴油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2,065			6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0	1:상품명 2:용도 3:석유 또는 아스팔트에서 추출한 광유의 함량비 4:브랜드 5:모델명 6:포장규격	수출허가증 (出口许可证)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수출허가증(위탁가공, 입찰공고,화학무기등) (出口许可证(来料加工, 招标,化武等)) 수출허가증(모든감관 방식) (出口许可证(所有监管方式))		수입상품검사(进口商品检验(商检))	
제도명		근거규정				
		GB/T 7324-2010 통용 리튬베이스 그리스(通用锂基潤滑脂)				
인증구분						
임의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GB 253-2008 煤油(석유) GB 11121-2006 가솔린 엔진 오일(汽油机油) GB 11122-2006 디젤 엔진 오일(柴油机油) GB 19147-2013 디젤 국가 표준(柴油国标) GB 252-2015 일반 디젤(普通柴油) GB 17411-2015 해양 연료유(船用燃料油)				

	GB/T 3141-1994 산업용 액체 윤활제 ISO 점도 분류(工业液体润滑油 ISO 粘度分类) GB/T 28298-2012 코크스 중유(焦化重油) GB/T 11079-2015 백색 오일 간편한 탄화 시험방법(白油易炭化物试验法) GB 1886.215-2016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식품 첨가물 백색 오일 (액체 파라핀)(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添加剂 白油(又名液体石蜡))
--	--

<표3-43>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벤젠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11 기초유분	벤젠	환식탄화수소	290220	29022000.00	苯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412,038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0	1.품명 2.성분함량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수출상품검사 (出口商品检验(商检))	
제도명		근거규정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危险化学品安全管理 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 验法实施条例) 위험화학물질목록(危险化学品名录)				
인증구분		GB 13690-2009 화학품분류 및 위험성공시통칙(化学品分类和危险性公示通则)				
강제		GB 50325-2010 벤젠 시험(苯检测) GB/T 690-2008 벤젠 화학 시약(化学试剂 苯) GB/T 3405-2011 석유 벤젠(石油苯)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위험화학물질목록				

<표3-44>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기타 혼합물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11 기초유분	그 밖의 방향족 (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	섭씨 250 도에서 ASTM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 (손실분을포함)인것으로 한정	270750	27075000.00	其他芳烃混合物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03,904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0	1:품명 2:성분함량 3:250°C에서 증발하는 방향족 부피함량 4:증류범위				
제도명		근거규정				
인증구분		GB 13690-2009 화학품분류 및 위험성 공시 통칙(化学品分类和危险性公示 通则) GB/T 262-2010 석유 제품 및 탄화수소 용매 - 아닐린 점 및 혼합 된 아닐린 점 측정(石油产品和烃类溶剂苯胺点和混合苯胺点测定法)				
		GB/T 29616-2013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측정 (热塑性弹性体 多环芳烃的测定)				
임의		GB/T 30519-2014 경질 석유 증류 액 및 생성물에서의 탄화수소 조성 및 벤젠 결정(轻质石油馏分和产品中烃族组成和苯的测定)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45>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톨루엔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11 기초유분	톨루엔	환식탄화수소	290230	29023000.00	甲苯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70,756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품명 2:성분함량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입라이센스 (이중용도품목<전략 물자> 및기술에대한수 출입라이센스관리목 록) 两用物项和技术进口 许可证(《两用物项和 技术进出口许可证管 理目录》)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라이센스 (이중용도품목<전략 물자> 및기술에대한수 출입라이센스관리목 록) 两用物项和技术出口 许可证(《两用物项和 技术进出口许可证管 理目录》)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수출상품검사 (出口商品检验(商检))	
제도명		근거규정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危险化学品安全管理 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 验法实施条例) 위험화학물질목록(危险化学品名录)				
인증구분						

강제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전략물자) 수입허가관리목록(两用物项和技术进口许可证管理目录)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관리방법(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办法) GB 13690-2009 화학품분류 및 위험성 공시 통칙(化学品分类和危险性公示 通则) GB/T 3406-2010 석유 톨루엔(石油甲苯)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위험화학물질목록

<표3-46>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혼합크실렌이성체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11 기초유분	혼합크실렌이성체	환식탄화수소	290244	29024400.00	混合二甲苯异构体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66,034			4 단위 세 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품명 2:성분함량				
제도명			근거규정			
			GB 13690-2009 화학품분류 및 위험성 공시 통칙(化学品分类和危险性公示 通则)			
인증구분			GB/T 3407-2010 석유 혼합 크실렌(石油混合二甲苯)			
임의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47>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부타디엔과 이소프렌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11 기초유분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비환식탄화 수소	290124	29012410.00	1,3-丁二烯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29012420.00	异戊二烯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79,712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상품명 2:성분함량 3:용도 4:가스연료로 사용시 포장용기면 적 명시 5:소포장화물 인 경우 명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1,3-부타디엔만 해당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수출상품검사 (出口商品检验(商检)) 1,3-부타디엔만 해당	
제도명		근거규정				
인증구분		GB/T 13291-2008 공업용 부타디엔(工业用丁二烯)				
		GB/T 12672-2009 아크릴로 니트릴 - 부타디엔 - 스티렌 (ABS) 수지(丙烯腈-丁二烯-苯乙烯(ABS)树脂)				
임의		GB/T 13290-2014 산업용 프로필렌 및 부타디엔 액 시료 채취 방법(工业用丙烯和丁二烯液态采样法)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48> 품목별비관세장벽: 17. 기타 석유화학 (MTI 3단위: 219)_노르말파라핀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19 기타 석유화 학	노르말 파라핀	석유나 역청유(瀝青 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 油)인 것으로 한정 (원유,바이오 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	27101920 30	27101919.10	正构烷烃(C9-C13),不 含生物柴油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4,844			6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0	1:상품명 2:증류 범위	수출허가증 (出口许可证) 수출허가증(모든감관 방식) (出口许可证(所有监管 方式))			
제도명		근거규정				
MSDS		중국 세관통관요소 관세법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화 인민 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인증구분		GB 16483-2008 화학 물질 안전 기술 설명서 작성 규정(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编写规定)				
강제		GB 13690-2009 화학 물질의 분류 및 위해성 공지 통상 규칙(化学品分类和危险性公示通则) GB 15258-2009 화학 안전 표지 작성 규정(化学品安全标签编写规定) GB 7189-2010 식품용 파라핀(食品级石蜡) GB/T 254-2010 반 정제 파라핀(半精炼石蜡) GB/T 446-2010 완전히 정제된 파라핀(全精炼石蜡)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49> 품목별비관세장벽: 18. 염료 및 안료 (MTI 3단위: 221)_루미노퍼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21 염료 및 안료	루미노퍼 (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320650	32065000.00	用作发光体的无机产品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41,894			4 단위 세 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0	1:상품명 2:성분함량 3:용도 4:포장규격 5:모델명 6:브랜드 7:방사성 염을 첨가하는 경우, 방사능비 명시 8:희토류 원소의 중량 %는 [A]로 표시 9:소매형태 혹은 소매포장 여부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 II 형 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51-020304-2014 중국환보제품(II 형)인증규칙(中国环保产品 (II 型) 认证规则)				
인증구분		시험규격 신청 업체에서 선택 가능				
임의		GB 19601-2013 염료 제품에서 23 가지 유해 방향족 아민의 제한 및 결정(染料产品中 23 种有害芳香胺的限量及测定) GB/T 13217.6-2008 액체 잉크 - 착색력의결정(液体油墨着色力检验方法)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50> 품목별비관세장벽: 18. 염료 및 안료 (MTI 3단위: 221)_안료 조제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21 염료 및 안료	안료 및 이에 기초한 조제품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320417	32041700.00	顔料及其为基本成分的制品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8,645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0	1:상품명 2:성분함량 3:용도 4:염료종류 명시 5:포장규격 6:브랜드 7:모델명 8:소매형태 또는 소매포장 여부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 II 형 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51-020304-2014 중국환보제품(II 형)인증규칙(中国环保产品 (II 型) 认证规则)				
인증구분						
임의		시험규격 신청 업체에서 선택 가능 GB/T 1706-2006 이산화티탄안료(二氧化钛顔料) GB/T 1863-2008 산화철안료(氧化铁顔料) GB/T 1864-2012 안료 및 증량제의 일반적인 시험 방법 - 안료 색상 비교(顔料和体质顔料通用试验方法 顔料颜色的比较) GB/T 5211.18-2015 안료 및 증량제에 대한 일반적인 시험 방법 - 제 18 부 : 검열 결정(顔料和体质顔料通用试验方法 第18部分:筛余物的测定)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51> 품목별비관세장벽: 19. 사진영화용 재료 (MTI 3단위: 225)_포토레지스트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25 사진영화 용 재료	포토레 지스트	기타 사진용 화학 물질	37079010	37079090.00	其他摄影用化学制剂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37079010.00	冲洗胶卷及相片用化学制剂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97,513	37079020.00	复印机用化学制剂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상품명 2:용도 3:포장 4:성분 5:은 포함여부 6:브랜드 7: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MSDS		중국 세관통관요소 관세법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화 인민 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인증구분		GB 16483-2008 화학 물질 안전 기술 설명서 작성 규정(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编写规定)				
강제		GB 13690-2009 화학 물질의 분류 및 위해성 공지 통상 규칙(化学品 分类和危险性公示通则) GB 15258-2009 화학 안전 표지 작성 규정(化学品安全标签编写规定) GB/T 21199-2007 레이저프린트건식조제품(激光打印机干式单组分显影剂)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3707909200(조색제)Toners 3707909300(세정제) Clearing agents 3707902(현상제) Developers				

<표3-52> 품목별비관세장벽: 20. 농약 및 의약품 (MTI 3단위: 226)_살균제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26 농약 및 의약품	살균제		380892	3808929029	非零售包装的其他农用杀菌剂成药 非零售包装的非农用杀菌剂成药 非零售包装的医用杀菌剂 经农药杀菌剂浸渍的纸质水果套袋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3808929090 3808929010 380892902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49,153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3 13 17 17	5 5 5 5	1:품명 2:용도 3:성분함량 4:포장 5:브랜드 6:모델명	29,21: 수약수입검사신청증명 (兽药进口报验证明)			
제도명		근거규정				
농약정식등록 (农药正式登记) 신농약, 신제제농약 논발시험심사 (新农药、新制剂农药田间试验审批) 농약수출입통지서 (农药进出口通知单) 수출입농약등록증명 (进出口农药登记证明)		농약관리조례(农药管理条例) 농약관리조례실시방법(农药管理条例实施办法) 농약등록자료규정(农药登记资料规定) 중화인민공화국농업부,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제 1452 호 공고 (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第 1452 号公告) GB 20813-2006 농약제품라벨통칙 (农药产品标签通则) GB 3796-2006 농약포장통칙 (农药包装通则) GB 4839-2009 농약중문통용명칭 (农药中文通用名称)				
인증구분						
강제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53> 품목별비관세장벽: 20. 농약 및 의약품 (MTI 3단위: 226)_살충제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26 농약 및 의약품	살충제		380891	38089119.00	非零售包装杀虫剂成药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31,078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3	5	1:품명 2:용도 3:성분함량 4:포장 5:브랜드 6:모델명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농약 수출입 등기증명 (进出口农药登记证明)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제도명			근거규정			
농약정식등록 (农药正式登记)			농약관리조례(农药管理条例) 농약관리조례실시방법(农药管理条例实施办法) 농약등록자료규정(农药登记资料规定)			
신농약, 신제제농약 논밭시험심사 (新农药、新制剂农 药田间试验审批)			중화인민공화국농업부,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제 1452 호 공고 (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第 1452 号公告)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농약수출입통지서 (农药进出口通知单)			GB 20813-2006 농약제품라벨통칙 (农药产品标签通则) GB 3796-2006 농약포장통칙 (农药包装通则) GB 4839-2009 농약중문통용명칭 (农药中文通用名称)			
수출입농약등록증명 (进出口农药登记证 明)						
인증구분						
강제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54> 품목별비관세장벽: 21. 비누 치약 및 화장품 (MTI 3단위: 227)_파우다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27 비누 치약 및 화장품	파우다 (페이스 파우다, 베이비 파우다 등)	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330491	33049100.00	粉,不论是否压紧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8,068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품명 2:용도 3:포장 4: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수출식품위생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CFDA 화장품 행정허가 (CFDA 化妆品行政 许可)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실행세칙(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화장품 안전 기술규범(化妆品安全规范) 화장품 행정허가 수리규정 (化妆品行政许可申报受理规定) 화장품행정허가수리검사요점 (化妆品行政许可受理审查要点) 화장품기술심사요점 및 화장품 기술심사지침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化妆品技术审评要点和化妆品技术审评指南的通知)			
인증구분						
강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GB 5296.3-2008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 라벨 (消费者使用说明化妆品通用标签)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단, 치약은 현재(2017 년 9 월) CFDA 화장품 행정허가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CFDA 행정허가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수입통관 시 상기 법규를 근거로 검사함			

<표3-55> 품목별비관세장벽 21. 비누 치약 및 화장품 (MTI 3단위: 227)_목욕용 조제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27 비누 치약 및 화장품	목욕용 조제품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330730	33073000.00	香浴盐及其他沐浴用 制剂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0,1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상품명 2:용도 3:포장 4: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 수출식품위생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CFDA 화장품 행정허가 (CFDA 化妆品行政 许可) (실내용 조제 탈취제는 제외)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실행세칙(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화장품 위생행정허가신고, 접수규정 및 신청서류의 요구사항 (2010.4.1. 시행) 화장품 안전 기술규범(化妆品安全规范) 화장품 행정허가 수리규정 (化妆品行政许可申报受理规定) 화장품행정허가수리검사요점 (化妆品行政许可受理审查要点)				
인증구분		화장품기술심사요점 및 화장품 기술심사지침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化 妆品技术审评要点和化妆品技术审评指南的通知)				
강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 验法实施条例)				
		GB 5296.3-2008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 라벨(消费者使用说明化妆品通用标签)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3307(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 등)				

<표3-56> 품목별비관세장벽: 21. 비누 치약 및 화장품 (MTI 3단위: 227)_비누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27 비누 치약 및 화장품	비누	피부세정용 인체표면의 모든 부위를 청결, 단장 또는 냄새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장용 비누(약용 비누 포함)	340111	34011100.00	盥洗用皂及有机表面 活性产品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7,7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상품 2:성분함량 3:외관 4:포장 5:브랜드 6:모델명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상품검사(进口商品检验) 수출상품검사(出口商品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CFDA 화장품 행정허가 (CFDA 化妆品行政 许可)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 에만 해당(세탁비누 제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 检验法实施条例) 화장품 안전 기술규범(化妆品安全规范) 화장품행정허가수리규정 (化妆品行政许可申报受理规定) 화장품행정허가수리검사요점 (化妆品行政许可受理审查要点) 수출입화장품감독검사관방법(위생부령 제 21 호, 2004.4.1 시행) 화장품기술심사요점 및 화장품 기술심사지침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化 妆品技术审评要点和化妆品技术审评指南的通知)				
인증구분		GB 5296.3-2008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 라벨(消费者使用说明化妆品通用标签)				
강제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340130(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표3-57> 품목별비관세장벽: 22. 정밀화학원료 (MTI 3단위: 228)_산화아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28 정밀화학 원료	산화아연	산화아연	281700	28170010.00	氧化鋅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9,576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0	1:상품명 2:용도 3:천연인 경우 명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수출식품위생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GB/T 3185-2016 산화아연(氧化鋅)				
인증구분						
임의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58> 품목별비관세장벽: 23. 유리제품 (MTI 3단위: 243)_평면유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43 유리제품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음)	70052	70052000.90	其他非夹丝浮法玻璃板、片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38,253			4 단위 세 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0	1:상품명 2:용도 3:상태(와이어 클립인지) 4:형상(플레이트, 슬라이스) 5:기술(플로팅, 표면연삭, 연마) 6:규격(두께*너비*길이);				
제도명		근거규정				
CQ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인증구분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임의		인증실시규칙 CQC16-371131-2009 평면유리성능 인증규칙(平板玻璃性能认证规则) GB 11614-2009 판유리 규격(平板玻璃) GB/T 20314-2006 LCD 용 얇은 유리 플로트 유리(液晶显示器用薄浮法玻璃)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700529(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용, 맑은유리,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용, 유기발광디스플레이패널용 등)				

<표3-59> 품목별비관세장벽: 23. 유리제품 (MTI 3단위: 243)_안전유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243 유리제품	안전유리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	700719	70071900.00	其他钢化安全玻璃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5,878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상품명 2:용도(차량, 항공기, 우주선, 선박) 3:가공방법 (스틸,라미네이션) 4:브랜드 5:테두리포함 여부				
제도명		근거규정				
CCC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方法)				
인증구분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강제		안전 유리 제품 강제인증실시규칙(CNCA-C13-01 : 2014 强制性产品 认证实施规则 安全玻璃) 안전 유리 제품 강제인증실시세칙(CQC-C1301-2014 强制性产品认证 实施细则 安全玻璃) GB 15763.2-2005 건축용 안전 유리 - 제 2 부: 강화유리(建筑用安全 玻璃 第 2 部分:钢化玻璃) GB 15763.3-2009 건축용 안전 유리 - 제 3 부: 접합유리(建筑用安全 玻璃 第 3 部分 夹层玻璃) GB/T 11944-2012 보온유리(中空玻璃) GB/T 29551-2013 빌딩 태양광 접합유리(建筑用太阳能光伏夹层玻璃)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60> 품목별비관세장벽: 24. 플라스틱제품 (MTI 3단위: 310)_카보이류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310 플라스틱 제품	카보이 (carboy) · 병 · 플라스크 (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330	39233000.00	塑料制坛,瓶及类似品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3,987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품명 2:용도 3:재질 4:브랜드 5: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GB 4806.1-2016 식품접촉재질과 제품 통합 안전 요구(食品接触材料及制品通用安全要求)				
인증구분						
강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GB 4806.7-2016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그 완제품(食品接触用塑料材料及制品)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61> 품목별비관세장벽: 25. 플라스틱제품 (MTI 3단위: 310)_뚜껑류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310 플라스틱 제품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플라스틱으 로 만든 것	392350	39235000.00	塑料制塞子,盖子及 类似品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1,948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품명 2.용도 3.재질 4.브랜드 5.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인증구분	GB 4806.1-2016 식품접촉재질과 제품 통합 안전 요구(食品接触材料及制品通用安全要求) GB 4806.7-2016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그 완제품(食品接触用塑料材料及制品)
강제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62> 품목별비관세장벽: 24. 플라스틱제품 (MTI 3단위: 310)_비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310 플라스틱 제품	비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290	39229000.00	塑料便盆,抽水箱等 类似卫生洁具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9,960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품명 2:용도 3:재질 4:브랜드 5: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QC		전기비데 제품: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인증구분		CQC12-448142-2009 비데 안전과 전자파 인증 규칙(坐便器安全与电磁兼容认证规则)				
임의		GB 4706.1-2005 가정용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 1 부분 통용안전 (家用和类似用途电器的安全 第一部分：通用安全) GB 4706.53-2008 가정용 및 유사기기의 안전 비데의 특수요구 (家用和类似用途电器的安全 坐便器的特殊要求) JC/T 2353-2016 플라스틱 위생제품 안전생산 규범 (塑料卫生洁具安全生产规范)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392210(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대) 392220(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표3-63> 품목별비관세장벽: 25. 인조섬유 (MTI 3단위: 411)_합성스테이플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411 인조섬유	합성스 테이플 섬유 (폴리에 스테르 의 것)	카드(card) · 코움(comb) 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	550320	55032000.00	未梳的聚酯短纤(包括未经其他纺前加工的)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73,176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401 호 내지 제 54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가공정도 (빗질하지 않고, 방적하지 않은 전가공) 3:섬유성분 4:길이 5:세도(细度)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 II 형 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인증구분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임의		CQC22-026780-2010 국가방직품 인증규정(生态纺织品认证规则) 국가방직제품질량감독검험중심(國家紡織產品質量監督檢驗中心) GB 18401-2010 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國家紡織產品基本安全技術規範) GB/T 18885-2009 국가방직품 기술요구사항(生态纺织品技术要求)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64> 품목별비관세장벽: 26. 인조섬유 장섬유사 (MTI 3단위: 422)_합성필라멘트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422 인조섬유 장섬유사	합성필라멘트사 (폴리에스테르 강력사)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 라멘트를 포함 텍스처화한 (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음	540220	54022000.10	非零售聚酯高强度力纱 (单丝/未捻或捻度< 5 转/米的复丝单纱) 非零售聚酯高强度力多 股纱 非零售聚酯高强度力纱 (捻度≥5 转/米的复 丝单纱)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54022000.9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3,515	54022000.20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종류 (고강도 안 또는 변형 안 등) 3:원사형태 (단사, 스트랜드 또는 케이블) 4:소매용인지 여부 5:섬유성분 (폴리에스터등) 6:원사세도(细度) 7:전단강도 (Cn/tex)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 II 형 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인증구분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임의			CQC22-026780-2010 국가방직품 인증규정(生态纺织品认证规则) 국가방직제품질량감독검험중심(國家紡織產品質量監督檢驗中心)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GB 18401-2010 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國家紡織產品基本安全技術規範) GB/T 18885-2009 국가방직품 기술요구사항(生态纺织品技术要求)			

<표3-65> 품목별비관세장벽: 27. 모직물 (MTI 3단위: 432)_모직물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432 모직물	카드 (card) 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직물	주로 인조필라멘 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	511120	51112000.00	其他主要或仅与化学 纤维长丝混纺的粗梳 羊毛或粗梳动物细毛 的机织物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5,332			4 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5106 호 내지 제 5113 호, 제 5205 호 내지 제 5212 호, 제 54 류, 제 5509 호 내지 5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 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종류 (양모,낙마모, 아메리칸 낙마모 등) 3:직조방식 (기계식) 4:카딩방법 5:성분함량 6:폭 7:g/m2 8:브랜드 9:생산공장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 II 형 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인증구분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임의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22-026780-2010 국가방직품 인증규정(生态纺织品认证规则) 국가방직제품질량감독검험중심(國家紡織產品質量監督檢驗中心) GB 18401-2010 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國家紡織產品基本安全技術規範) GB/T 18885-2009 국가방직품 기술요구사항(生态纺织品技术要求)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66> 품목별비관세장벽: 28. 면직물 (MTI 3단위: 433)_표백 면직물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433 면직물	표백한 면직물	그 밖의 면직물	521222	52122200.00	漂白的其他混纺棉机 织物(漂白的其他混 纺棉机织物每平米重 >200 克)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6,821			4 단위 세번변경기 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직조방법 (직물) 3:인염방법 (표백,미표백, 선염,염색,인 화 등) 4:조직구조 (평직,능직등) 5:성분함량 6:너비 7:평방미터당 무게 8:브랜드 9:생산공장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 II 형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인증 CTTC (Chinatesta Textile Testing & Certification)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22-026780-2010 국가방직품 인증규정(生态纺织品认证规则) 국가방직제품질량감독검험중심(國家紡織產品質量監督檢驗中心)
인증구분	GB 18401-2010 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國家紡織產品基本安全技術規範)
임의	GB/T 18885-2009 국가방직품 기술요구사항(生态纺织品技术要求)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67> 품목별비관세장벽: 29. 인조장섬유직물 (MTI 3단위: 434)_합성필라멘트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434 인조장섬유 직물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비(非) 텍스처드 폴리 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 인 것)	제 5404 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 (염색한 것, 날염한 것,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서로 다른 색 실로 된 것)	540761	54076100.00	聚酯非变形长丝机织物(聚酯非变形长丝机织物聚酯非变形长丝含量≥85%)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87,289			4 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106 호 내지 제 5110 호, 제 5205 호 내지 제 5206 호, 제 5401 호 내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 내지 55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직조방법 (직물) 3:인염방법 (표백,미표백, 선염,염색,인 화 등) 4:조직구조 (평직,능직등) 5:성분함량 6:너비 7:평방미터당 무게 8:브랜드 9:생산공장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 II 형 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CTTC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Chinatesta Textile Testing & Cetification)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인증구분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 验法实施条例)			
임의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22-026780-2010 국가방직품 인증규정(生态纺织品认证规则)			
		국가방직제품품질감감독검험중심(國家紡織產品質量監督檢驗中心)			
		GB 18401-2010 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國家紡織產品基本安全技術規範)			
		GB/T 18885-2009 국가방직품 기술요구사항(生态纺织品技术要求)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68> 품목별비관세장벽: 30. 편직물 (MTI 3단위: 436)_메리야스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436 편직물	메리야스/ 뜨개질 편직물	의류용, 편직용 탄력성 있는 성질을 가지며 주로 옷감으로 쓰임(폭이 30 센티미터 를 초과,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600410	60041030.00 60041010.00 60041040.00 60041090.00 60041020.00	合成纤维制宽 棉制宽 人造纤维制宽 其他纺材宽 丝及绢丝宽 >30cm 针织或钩编 织物(按重量计弹性 纱线含量在 5%及以 上且不含橡胶线)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18,83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 (제5401 호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407 호, 제 5408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및 제 5506 호 부터 제 5516 호 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직조방법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3:성분함량 4:너비 5:브랜드 6:제조사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 II 형 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CTTC (Chinatesta Textile Testing & Certification)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22-026780-2010 국가방직품 인증규정(生态纺织品认证规则)
인증구분	국가방직제품질량감독검험중심(國家紡織產品質量監督檢驗中心)
임의	GB 18401-2010 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國家紡織產品基本安全技術規範) GB/T 18885-2009 국가방직품 기술요구사항(生态纺织品技术要求)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69> 품목별비관세장벽: 31. 의류 (MTI 3단위: 441)_코르슬렛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441 의류	코르슬렛 (corselette)	코르슬렛 (corselette)	621230	62123010.00	化纤制紧身胸衣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2,781	62123090.20	棉制紧身胸衣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 단위 세번변경기 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 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3090.31	丝制紧身胸衣	
				62123090.90	其他材料制紧身胸衣	
				62123090.39	丝制其他紧身胸衣	
62123090.10	毛制紧身胸衣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종류 (브래지어, 벨트, 코르셋, 타이즈, 멜빵 등) 3:성분함량 4:브랜드 5:물건번호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 II 형 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인증구분						

임의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22-026780-2010 국가방직품 인증규정(生态纺织品认证规则) 국가방직제품질량감독검험중심(國家紡織產品質量監督檢驗中心) GB 18401-2010 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國家紡織產品基本安全技術規範) GB/T 18885-2009 국가방직품 기술요구사항(生态纺织品技术要求)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70> 품목별비관세장벽: 32. 신변잡화 (MTI 3단위: 511)_위생제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511 신변잡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	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 (단, 치약, 치실은 다른 세번에 분류)	330690	33069000.00	其他口腔及牙齿清洁剂(包括假牙模膏及粉)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554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9	1:품명 2:용도 3:포장 4: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식품 위생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수출식품 위생감독검사 (出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출입국검험검역증명 (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검험검역이 필요한 수출입상품목록 (出入境检验检疫机构实施检验检疫的进出境商品目录)				
인증구분		GB 4706.59-2008 가정용 및 유사용도전자제품의 안전, 구강위생기구의 특수요구(家用和类似用途电器的安全 口腔卫生器具的特殊要求)				
강제		GB 29337-2012 구강청결케어용품통용라벨(口腔清洁护理用品通用标签) GB/T 9938-2013 牙科学 牙位和口腔区域的标示法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71>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접착제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515 문구 및 완구	접착제	소매용 플라스틱 (인조수지를 포함), 고무 등을 기본 재료로 한 것	350610	35061000.90	其他适于作胶或粘合剂的零售产品(零售包装每件净重不超过 1 千克)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35061000.1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38,863		硅酮结构密封胶(零售包装每件净重不超过 1 千克)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상품명 2:용도 3:포장 4:성분함량 5:브랜드 6: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제품인증 (china ecolabelling)		CQC51-348401-2009 접착제환경보호인증규칙(粘合剂环保认证规则)				
인증구분						
임의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GB 30982-2014 건물접착제 유해물질 한도(建筑胶粘剂有害物质限量) GB 18583-2008 실내 장식재 접착제 유해 물질 한도(室内装饰装修材料胶粘剂中有害物质限量) GB / T 33799-2017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용 접착제 - 접착 강도 측정(工程塑料用胶粘剂对接强度的测定)				

<표3-72>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필기용잉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515 문구 및 완구	필기용 잉크 · 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 (수성, 금속성, 유성, 필기용, 제도용, 복사용 잉크 등)	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321590	32159090.00 32159020.00 32159010.00	其他绘图墨水及其他墨类 水性喷墨墨水 书写墨水 (不论是否固体或浓缩)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4,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상품명 2:용도 3:포장 4:성분함량 5:색깔 (6.수성/유성)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 II 형 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인증구분		CQC51-020304-2014 중국환보제품(II 형)인증규칙(中国环保产品(II 型)认证规则)				
임의		시험규격 신청 업체에서 선택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GB/T 26714-2011 유성잉크 볼펜 및 리필(油墨圆珠笔和笔芯) GB/T 32017-2015 수성잉크 볼펜 및 리필(水性墨水圆珠笔和笔芯) QB/T 2625-2011 중성잉크 볼펜 및 리필(中性墨水圆珠笔和笔芯)				

<표3-73>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인쇄용잉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515 문구 및 완구	인쇄용잉크	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32151	32151900.90	其他印刷油墨 (不论是否固体或浓缩)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2,2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0	1:상품명 2:용도 (8443.31,8443.32 또는 8443.39 설비용 등) 3:포장 4:색깔 5:성분함량 6:노출현상기 능 여부 7:공정양식 있다면 명시 8:고체여부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 II 형 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51-020304-2014 중국환보제품(II 형)인증규칙(中国环保产品(II 型)认证规则) 시험규격 신청 업체에서 선택				
인증구분		GB/T 18724-2008 인쇄 기술 - 인쇄 및 인쇄 잉크 - 다양한 시약에 대한 내성 측정(印刷技术 印刷品与印刷油墨耐各种试剂性的测定)				
임의		GB/T 13217.3-2008 액체 잉크 정밀도 시험 방법(液体油墨细度检验方法) GB/T 14624.2-2008 오프셋인쇄 잉크착색 시험방법(胶印油墨着色力检验方法) GB/T 14624.3-2008 오프셋인쇄 잉크유동성 시험방법(胶印油墨流动度检验方法) GB/T 14624.4-2008 오프셋인쇄 잉크결막건조 시험방법(胶印油墨结膜干燥检验方法) GB/T 13217.1-2009 액체 잉크 색상 검사 방법(液体油墨颜色检验方法) GB/T 13217.7-2009 액체 잉크 접착 견뢰도 시험 방법(液体油墨附着牢度检验方法) GB/T 14624.1-2009 오프셋인쇄 잉크색상 시험방법(胶印油墨颜色检验方法)				

	GB/T 30329.1-2013 인쇄 기술 - 4 색 인쇄 잉크 - 색 및 투명성 - 1 부 : 날장 인쇄 및 열 경화 웹 오프셋 인쇄(印刷技术 四色印刷油墨颜色 和透明度 第1部分:单张纸和热固型卷筒纸胶印)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흑색 인쇄용잉크(321011) 기타 인쇄용잉크(321019)

<표3-74>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제도용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515 문구 및 완구	제도용구 (마이크 로미터· 캘리퍼스 · 분도기 · 줄자)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	901780	90178000.00	其他用手测量长度的 器具(仅指第 90 章其 他品目未列名的)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7,5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용도 3:기능 4:브랜드 5: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계측기 비안 (计量器具备案) 계측기 형식 승인 (计量器具型式批准)		중화인민공화국수입계측기구검정관리방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进口 计量器具监督管理办法实施细则) 중화인민공화국 법적관리 대상 계측기 목록(中华人民共和国依法管理的 计量器具目录) 중화인민공화국수입계측기 형식승인 목록(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 型式审查目录)				
인증구분		계측기 강제검정 관리방법(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检定管理办法)				
강제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 GB/T-21389-2008 游标、数显、带表卡尺 제도기: JB/T 12640-2016 (游标划线圆规) 분도기: QB/T 1474.5-2005 (绘图仪尺 直尺) 줄자: QB/T 2443-2011 (钢卷尺)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75>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자전거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515 문구 및 완구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음), 각종 퍼즐	완구류	950300	950300	三轮车、踏板车、踏板汽车和类似的带轮玩具；玩偶车；玩偶；其他玩具；缩小(按比例缩小)的模型及类似的娱乐用模型，不论是否活动；各种智力玩具：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22,322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품명 2:용도 3:종류 4:브랜드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민용상품입경검증(3C) (民用商品入境验证(3C))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제도명		근거규정				
CCC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办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CNCA-13C-068-2010 완구류제품 강제인증실시규칙				
인증구분						
강제		GB 6675.1-2014 장난감의 안전성 제 1 부 기본규범(玩具安全 第 1 部分 基本规范) GB 6675.2-2014 장난감의 안전성 제 2 부 기계적 물성(玩具安全 第 2 部分 机械与物理性能) GB 6675.3-2014 장난감의 안전성 제 3 부 가연성(玩具安全 第 3 部分: 易燃性能) GB 6675.4-2014 장난감의 안전성 제 4 부 특정 요소의 이동(玩具安全 第 4 部分:特定元素的迁移)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76>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타자기용 리본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515 문구 및 완구	타자기용 리본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음)	961210	96121000.00	打字机色带或类似色带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7,17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상품명 2:재질 3:브랜드 4:모델명 5:채색 여부 표시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 II 인증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인증구분						
임의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51-020304-2014 중국환보제품(II 형)인증규칙(CQC51-020304-2014 中国环保产品(II 型)认证规则) 시험규격 신청 업체에서 선택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77> 품목별비관세장벽: 34. 주방용품 (MTI 3단위: 516)_식탁용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516 주방용품	식탁용품 과 주방용품	가정용 플라스틱 용기류	392410	39241000.00	塑料制餐具及厨房用具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9,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상품명 2:용도 3:재질 4:브랜드 5:모델명	검역검사 수입 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수입식품 위생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CQC 환경보호제품인증 (china ecolabelling)		CQC51-036419-2009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환경보호인증규칙(塑料食品 包装容器環保認證規則)				
인증구분		국가표준은 제품 재질 마다 상이함				
임의		GB 9681-1988 폴리염화 비닐.PVC(食品包装用聚氯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7-1988 폴리 에틸렌(食品包装用聚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8-1988 폴리프로필렌(食品包装用聚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9-1988 폴리스티렌(食品包装用聚苯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90-2009 멜라민(食品容器、包装材料用三聚氰胺-甲醛成型品衛生標準)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78> 품목별비관세장벽: 35. 패션잡화 (MTI 3단위: 518)_엑세서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518 패션잡화	비금속기 반 모조 악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신변장식용 체인, 브로치 등	711719	71171900.00	其他贱金属制仿首饰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6,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9	1:상품명 2:종류 (커프스단추, 버클, 팔찌 등) 3:재질 4:브랜드 5:귀금속 도금 여부	검역검사 수입 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수입상품검사(进口商品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국가질량감독검험 검역총국 (國家質量監督檢驗 檢疫總局)		GB 28480-2012 주얼리 유해 요소 조항의 제한 요소 (饰品 有害元素限量的规定) 1. Nickel release(니켈용출) 2. Heavy metals content(중금속함량) 3. Soluble heavy metals(children's jewelries only)(아동용일 경우)				
인증구분						
강제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79> 품목별비관세장벽: 36. 신변잡화 (MTI 3단위: 521)_화장용분첩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521 신변잡화	화장용 분첩과 패드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20	96162000.00	施敷脂粉或化妆品用粉扑及粉拍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8,801	4 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품명 2:용도				
제도명		근거규정				
1. 화장용 분첩과 패드: 생태방직물인증규칙 <生态纺织品环保认规则>		1. 화장용 분첩과 패드: GB/T 18885-2009 생태방직물제품기술요구(生态纺织品技术要求)				
인증구분						
임의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80> 품목별비관세장벽: 36. 신변잡화 (MTI 3단위: 521)_머리핀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521 신변잡화	머리핀	머리핀	961590	96159000.00	其他发夹、卷发器等及其零件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3,858			4 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 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품명 2:재질				
제도명		근거규정				
		QB/T 1814-1993 철 헤어슬라이드(钢丝发夹)				
인증구분						
임의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81> 품목별비관세장벽: 37. 철강재용기 및 체인 (MTI 3단위: 616)_철강용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616 철강재 용기 및 체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	731100	73110090.00	其他装压缩或液化气的容器 装压缩或液化气的钢铁容器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73110010.0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51,671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상품명 2:용도 (기체압축 혹은 기체액화용, 소매포장용 등) 3:재질(철강) 4:종류 (캔, 통 등) 5:신구상태 6:설치위치 (단독,설비상, 운송도구상) 7:용적	폐전기기계제품 수입 금지 (旧机电产品禁止进口)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제도명		근거규정				
CSEL(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증검역총국,公安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부분 소비상품 강제인증 시행 보고'(본 국가질검총국 제 2011-55 호 공고문) 중화인민공화국특종설비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 제 549 호령·특종설비안전감독조례(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 549 号(特种设备安全监察条例))				
인증구분		보일러 압력 용기 제조 허가 조건 (锅炉压力容器制造许可条件) TSG 21-2016 압력 용기 안전 기술 감독 규정(固定式压力容器安全技术监察规程)				
강제		GB 150.1-2011 압력용기 - 제 1 부 : 일반 요구 사항(压力容器 第 1 部分:通用要求) GB 150.2-2011 압력용기 - 제 2 부 : 재료 표준(压力容器 第 2 部分_材料 标准) GB 150.3-2011 압력용기 - 제 3 부 : 디자인(压办容器 第 3 分部分_设计) GB 150.4-2011 압력용기 - 제 4 부 : 제조, 시험 및 승인(压力容器 第 4 部分:制造、检验和验收)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82> 품목별비관세장벽: 38. 주석제품 (MTI 3단위: 627)_주석봉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627 주석제품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800300	80030000.00	锡及锡合金条、杆、型材、丝	대상
			수출량 (2016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4,087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0	1:상품명 2:모양 (막대, 프로파일, 실크) 3:재질(주석) 4:상태 (플렉스 포함 여부)	수출허가증 (出口许可证) 수출허가증(위탁가공, 입찰공고, 화학무기등) (出口许可证(来料加工, 招标, 化武等)) 수출허가증(모든감관 방식) (出口许可证(所有监管方式))			
제도명		근거규정				
인증구분		GBT 3131-2001 주석 납 솔더(锡铅钎料)				
		GB/T 21180-2007 주석 및 주석 합금 스크랩 (锡及锡合金废料)				
임의		GB/T 15924-2010 주석 광석의 화학 분석 방법 - 주석 함량 측정(锡矿石化学分析方法 锡量测定)				
		SJ/T 11168-1998 무세척 용접용 땀납(免清洗焊接用焊锡丝)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83> 품목별비관세장벽: 39. 컨테이너 (MTI 3단위: 643)_컨테이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643 컨테이너	컨테이너 (액체운반용, 압축가스 운반용, 일반화물 운반용, 동물운반용 등)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	860900	860900	集装箱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4,914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유형 (공공도로용) 3:규격 4:브랜드	검역검사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검역검사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出境货物通 关单)	수입화물 수출화물	동식물 및 동식물상품 입경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동식물 및 동식물상품 출경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动植检))	
제도명		근거규정				
		GB/T 15846-2006 컨테이너 도어 잠금장치(集装箱门框密封条) GB/T 1413-2008 시리즈 1 컨테이너 분류, 사이즈 및 정격무게 (系列1 集装箱 分类、尺寸和额定质量)				
인증구분		GB/T 23679-2009 컨테이너 기계박스 잠금장치(集装箱 机械箱封) GB/T 11577-2010 선박용 컨테이너 패스너(船用集装箱紧固件)				
임의		GB/T 29752-2013 컨테이너 보안 Smart Lock 일반 사양(集装箱安全智能锁通用技术规范) GB/T 32570-2016 컨테이너 강판 및 스트립(集装箱用钢板及钢带)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84> 품목별비관세장벽: 40. 기타 철강금속제품 (MTI 3단위: 690)_경첩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690 기타 철강금속 제품	경첩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30210	83021000.00	铰链(折叶)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7,500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5	1:품명 2:용도 (자 동 차 용 , 가구용 등) 3: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등) 4:브랜드				
제도명		근거규정				
CCC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办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인증구분		자동차 도어 래치 도어 힌지 강제인증실시규칙(CNCA-C11-10 : 2014 汽车门锁及门保持件)				
강제		자동차 도어 래치 도어 힌지 강제인증실시세칙(CQC-C1110-2014 汽车门锁及门保持件实施细则) GB 15086-2013 도어락 및 도어홀더의 성능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방법 (汽车门锁及车门保持件的性能要求和试验方法) GB/T 31844-2015 전기 및 전자 장비 캐비닛 경첩(电工电子设备机柜 铰链) JB/T 9162.23-1999 경첩크기(铰链尺寸)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85> 품목별비관세장벽: 41. 원동기 및 펌프 (MTI 3단위: 711)_기체펌프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11 원동기 및 펌프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음	8414	8414	空气泵或真空泵、空气及其他气体压缩机、风机、风扇；装有风扇的通风罩或循环气罩，不论是否装有过滤器	대상/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612,328			4 단위 세 번 변경 기준 등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용도 (적용모델) 3:브랜드 4:모델명 5:재질				
제도명		근거규정				
인증구분		GB 22360-2008 진공펌프 안전요구 사항(真空泵 安全要求) GB/T 21360-2008 자동차 에어컨용 냉매 압축기(汽车空调用制冷剂压缩机) GB/T 13929-2010 워터링 진공펌프 및 물링 압축기 시험방법 (水环真空泵和水环压缩机试验方法)				
		GB/T 17713-2011 레인지 후드 표준(吸油烟机 标准) GB/T 13928-2015 미형왕복피스톤공기압축기(微型往复活塞空气压缩机) GB/T 15487-2015 용적형 압축기 유량 측정방법(容积式压缩机流量测量方法) GB/T 2658-2015 소형 AC 팬 일반기술 조건(小型交流风机通用技术条件) GB/T 4976-2017 압축기분류(压缩机分类) JB/T 7675-2016 왕복진공펌프(往复真空泵)				
임의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86> 품목별비관세장벽: 41. 원동기 및 펌프 (MTI 3단위: 711)_액압실린더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11 원동기 및 펌프	리니어 액팅식 실린더	액압실린더 등	841221	84122100.00	直线作用的液压动力 装置(液压缸)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7,567			6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원리 3:용도 4:브랜드 5: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GB/T 15622-2005 유압실린더 시험 방법(液压缸试验方法) GB/T 6578-2008 그루브홈형 유압실린더 피스톤로드(液压缸活塞杆用防尘圈沟槽型)				
인증구분		GB/T 32216-2015 유압실린더 시험 방법(液压传动 比例伺服控制液压缸的试验方法)				
임의		JB/T 10205-2010 실린더(液压缸) JB/T 11718-2013 유압실린더 기계 및 장비 산업표준(液压缸 缸筒技术标准 机械行业标准)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87> 품목별비관세장벽: 4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MTI 3단위: 713)_보일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1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보일러 (가스, 유류 등 사용)	중앙난방용 보일러 (제 8402 호 의 것은 제외)	840310	84031010.00	家用型热水锅炉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84031090.00	其他集中供暖用的热水锅炉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54,280			6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0: 1:상품명 2:용도 3:브랜드 4:모델명 5:순환설비포함여부 6:출력 7:온도 8:용적 9:직접난방가능여부 10:순환펌프, 압력, 안전장치 및 기타장치 가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 90: 1:상품명 2:용도 3:브랜드 4:모델명 5:온도	폐전기 기계제품 수입금지 (旧机电产品禁止进口)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제도명		근거규정				
CHINA ENERGY LABEL		에너지효율라벨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질량검역총국 제 35 호령(能源效率标识管理办法 国家发展改革委和国家质检总局第 35 号令) 가정용순간가열식보일러(가스) 및 가스보일러 에너지효율라벨실시규칙 (家用燃气快速热水器和燃气采暖热水炉 能源效率标识实施规则)				
인증구분						
강제		GB 20665-2015 가정용 순간가열식 보일러(가스) 및 가스보일러 에너지 효율 제한값 및 에너지 효율등급(家用燃气快速热水器和燃气采暖热水炉 能效限定值及能效等级)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88> 품목별비관세장벽: 43. 광학기기 (MTI 3단위: 715)_대물렌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15 광학기기	대물렌즈	카메라용 · 영사기용 · 사진 확대기용 · 사진 축소기용	900211	90021190.90	其他照相机,投影仪 等用物镜 彩色投影机和数字光 处理器的镜头及镜头 组件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90021190.1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97,894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용도 (적용모델) 3:조립 여부 4:브랜드 5: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HINA RoHS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인증구분		GB/T 9917.1-2002 사진렌즈 제1부분-변동초점렌즈(照相镜头 第1部分_变焦距镜头) GB/T 9917.2-2008 사진렌즈 제2부분-고정초점렌즈(照相镜头 第2部分_定焦距镜头)				
강제		GB/T 22055.1-2008 현미경 대물렌즈 나사산 제1부분: RMS형 대물렌즈 나사산(显微镜 物镜螺纹 第1部分: RMS型物镜螺纹) GB/T 22055.2-2008 현미경 대물렌즈 나사산 제2부분: M25×0.75mm형 대물렌즈 나사산(显微镜 物镜螺纹 第2部分: M25×0.75mm型物镜螺纹) GB/T 22056-2008 현미경 대물렌즈와 접안렌즈의 표지(显微镜 物镜和目镜的标志) GB/T 22064-2008 현미경 35mm DSLR렌즈의 연결(显微镜 35mm单反照相机镜头的接)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 (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종 사용제한물질(납,수은,카드뮴,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에 대한 측정(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GB/T 2609-2015 현미경 대물렌즈(显微镜 物镜) JB/T 9426.4-2011 영화촬영용 대물렌즈 제4부분: 35mm 영화촬영용 대물렌즈 I형 연결부위 대물렌즈받침(电影摄影物镜第4部分: 35mm电影摄影物镜I型卡口物镜座)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89> 품목별비관세장벽: 43. 광학기기 (MTI 3단위: 715)_편광재료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15 광학기기	편광재료 (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편광재료 (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900120	90012000.90	其他偏振材料制的片及板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90012000.10	液晶投影仪用偏光板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992,194	90012000.20	数字电影放映机用偏光板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품명 2:용도 3:재질 4:형상 (플레이트, 슬라이스 등) 5:규격사이즈 6:브랜드 7: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인증구분		GB/T 31378-2015 평판 디스플레이(FPD) 편광필름 표면경도 시험 방법 (平板显示器(FPD)偏光膜表面硬度的测试方法)				
		GB/T 31379-2015 평판 디스플레이(FPD) 편광필름 검사 방법(平板显示器(FPD)偏光膜试验方法)				
임의		GB/T 33048-2016 편광판 광학보상값측정(偏振片 光学补偿值的测定) GB/T 33049-2016 광학필름 코팅접착 방식의 편광판(偏光片用光学薄膜涂层附着力的测定方法)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90> 품목별비관세장벽: 43. 광학기기 (MTI 3단위: 715)_프리즘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15 광학기기	프리즘, 반사경, 그 밖의 렌즈 등	기타 제 9.01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광학 부품 (광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유리로 만든 부품은 제외)	900190	90019090.90	品目 9001 未列名的 其他光学元件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634,246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용도 (적용모델) 3:재질 4:박막필터인 경우 파장 신고 5:브랜드 6:모델명 7:광학가공여부 8:절단성형여부				
제도명		근거규정				
인증구분		GB/T 7660.1-2013 반사 프리즘 - 1 부 : 기하학적 특성 (反射棱镜 第1部分 : 几何特性)				
		GB/T 7660.2-2013 반사 프리즘 - 2 부 : 이미지변형 특성 (反射棱镜 第2部分: 像偏转特性)				
		GB/T 7660.3-2013 반사 프리즘 - 3 부 : 광 평행도 및 검사 방법 (反射棱镜 第3部分:光学平行度及其检验方法)				
임의		GB/T 31887-2015 자전거 반사경(自行车 反射装置)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콘택트렌즈: GB 19192-2003 콘택트 렌즈 관리 솔루션 위생 요구 사항 (隐形眼镜护理液卫生要求)				
		안경렌즈: GB 10810.1-2005 렌즈 1 부 : 단일 조명 및 다 초점 렌즈(眼镜片 第1部分:单光和多焦点镜片)				
		GB 10810.2-2006 안경렌즈 2 부 : 그라데이션 초점 렌즈(眼镜镜片 第2部分:渐变焦镜片)				
		GB 10810.3-2006 3 부 : 투과율 규격 및 측정 방법(第三部分:透射比规范及测量方法)				
		GB 10810.4-2012 안경 렌즈 4 부 : 반사 방지 필름 규격 및 측정 방법 (眼镜镜片 第4部分:减反射膜规范及测量方法)				
		GB 10810.5-2012 안경알 파트 5 : 렌즈 표면 마모 요구 사항(眼镜镜片 第5部分 镜片表面耐磨要求)				
		GB/T 14148-2011 광학 유리 렌즈 블랭크 표준(光学玻璃眼镜片毛坯标准)				
		선글라스: QB 2457 선글라스 테스트(太阳眼镜检测)				

<표3-91> 품목별비관세장벽: 44. 섬유 및 화학기계 (MTI 3단위: 721)_증류기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21 섬유 및 화학기계	증류기나 정류기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전기가 열 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841940	84194090.90	其他蒸馏或精馏设备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84194020.00	精馏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30,071	84194010.00	提净塔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용도 3:브랜드 4:모델명 5:원리 6:신구상태	9090: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전기기계제품 자동수입허가증 (지역별발급) 机电产品自动进口许 可证(地方签发) 20,10: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9090: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20,10: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卫检))	
제도명		근거규정				
CSEL(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증검역총국,公安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부분 소비상품 강제인증 시행 보고'(본 국가질검총국 제 2011-55 호 공고문) 중화인민공화국특종설비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 제 549 호령·특종설비안전감독조례(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549 号(特种设备安全监察条例)) 보일러 압력 용기 제조 허가 조건 (锅炉压力容器制造许可条件) TSG 21-2016 압력 용기 안전 기술 감독 규정(固定式压力容器安全技术监察规程)				
인증구분						

강제	GB 150.1-2011 압력용기 - 제 1 부 : 일반 요구 사항(压力容器 第1部分:通用要求) GB 150.2-2011 압력용기 - 제 2 부 : 재료 표준(压力容器 第2部分_材料 标准) GB 150.3-2011 압력용기 - 제 3 부 : 디자인(压力容器 第3分部分_设计) GB 150.4-2011 압력용기 - 제 4 부 : 제조, 시험 및 승인(压力容器 第4部分:制造、检验和验收)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92> 품목별비관세장벽 44. 섬유 및 화학기계 (MTI 3단위 721)_타이어 성형기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21 섬유 및 화학기계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847751	84775100.00	用于充气轮胎模塑或翻新的机器(包括内胎模塑或用其他方法成型的机器)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7,630			6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품명 2:용도 3:기능 4:브랜드 5:모델명 6:가공대상재질				
제도명		근거규정				
CQ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인증구분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11-449151-2009 고무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계 안전 인증 규칙 (橡胶塑料注射成型机安全认证规则)				
임의		GB 22530-2008 고무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안전 요구 사항(橡胶塑料注射成型机安全要求) GB 5226.1-2016 기계 및 전기 안전 - 기계 전기 설비 1 부 : 일반 사양(机械电气安全 机械电气设备 第1部分:通用技术条件)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93> 품목별비관세장벽: 45. 금속공작기계 (MTI 3단위: 723)_머시닝센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23 금속공작 기계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 터(machi ning centre)	수평형, 수직형, 문형 등	845710	84571010.00	立式加工金属的加工 中心	대상/비대 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84571020.00	卧式加工金属的加工 中心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84571030.00		
			149,927	84571099.00 84571091.00	龙门式加工金属的加工 中心 其他加工金属的加工 中心 铣车复合加工中心	4 단위 세번변경기 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 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용도 3:기능 (금속시추, 보링, 밀링 등) 4:CNC선반 공구대 설치가능한 경우, 공구대 용량과 옵션 명시할 것 5:공구 자동교환 가능여부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전기기계제품 자동수입허가증 (지역별발급) (机电产品自动进口许 可证(地方签发))		수입상품검사(进口商品检验(商检))	

		6:브랜드 7: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Q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인증구분		CQC11-442101-2009 금속 절삭 기계 안전 인증 규정(金属切削机床安全认证规则)		
임의		GB 15760-2004 금속절삭선반 안전방호통용기술조건(金属切削机床 安全防护通用技术条件) GB 5226.1-2016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식 전기 기기 1 부 : 일반 사양 (机械安全 机械电气设备 第1部分 通用技术条件) GB/T 15706-2012 기계 설계 위험 평가 및 바람의 안전을 위한 일반 규칙(机械安全 设计通则 风险评估与风)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94> 품목별비관세장벽 46.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MTI 3단위: 726)_금속용접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26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금속의 저항용접 기기 (전자동 식이나 반자동식)	산업용 고온에 용용되는 금속재료 등을 용해하여 부착하도록 하는 기능	851521	85152120.01	汽车生产线电阻焊接机器人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85152199.00	其他电阻焊接机器(全自动或半自动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81,1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원리 3:완전 자동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민용상품 입경검증(3C) (民用商品入境验证 (3C))	

		또는 반자동 여부 4:브랜드 5:모델명 6:신구상태	関单) 전기기계제품 자동수입허가증 (지역별발급) (机电产品自动进口许 可证(地方签发))	
제도명		근거규정		
NEPSI 방폭 전기제품 생산허가증 시행규칙 (The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xplosion-proof electrical products production license)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항'(국무원령 제 440 호) 및 '중화 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항실시방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 80 호)의 규정에 따라 본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함 GB 15578-2008 저항 용접기 안전 요구 사항(电阻焊机的安全要求) GB/T 19867.5-2008 저항 용접 공정(电阻焊焊接工艺规程) GB/T 32514.1-2016 저항 용접 - 전류 측정 1 부 : 측정 지침 (电阻焊 焊接电流的测量 第 1 部分:测量指南)		
인증구분				
강제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95> 품목별비관세장벽: 47. 농기계 (MTI 3단위: 728)_파종기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28 농기계	파종기· 식부기 (植付機)· 이식기	농업용·원 예용·임업 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	84323	84323	播种机、种植机及移 植机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5,539			6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3	13	1:품명 2:용도 3:브랜드 4: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AM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 验法实施条例)				
인증구분		GB 10395.5-2013 농림업 기계 안전성 5 부 : 농업용 기계(农林机械 安 全 第 5 部分:驱动式耕作机械)				
임의						

	GB 10395.9-2014 농림업 기계 안전성 9 부 : 종묘 기계(农林机械 安全 第9部分:播种机械) GB/T 6242-2006 감자 경작기계 시험 방법(种植机械 马铃薯种植机 试验方法) GB/T 20865-2007 경작 및 비료 파종기(免耕施肥播种机) GB/T 5668 - 2008 로타리 기계 표준(旋耕机 标准)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96> 품목별비관세장벽: 48. 기타 산업기계 (MTI 3단위: 729)_소화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29 기타 산업기계	소화기	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842410	84241000.00	灭火器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7,906			6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품명 2:용도 3:브랜드 4:모델명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민용상품 입경검증(3C) (民用商品入境验证(3C))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제도명			근거규정			
CSEL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CCCF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办法)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증검역총국, 공안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부분 소비상품 강제인증 시행 보고' (본 국가질검총국 제 2011-55 호 공고문)특종설비 안전법, 특종설비안전감찰 조례 CNCA-C18-03 : 2014 소화기 제품 강제인증실시규칙(灭火设备产品强制性 产品认证实施规则)			
인증구분			TSG 21-2016 고정 압력 용기 안전 기술 감독 규정(固定式压力容器安全 技术监察规程)			
강제			GB 4402-1998 휴대용 분말 소화기(手提式干粉灭火器) GB 5135.1-2003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제 1 부분 살수헤드 (自动喷水 灭火系统第 1 部分洒水喷头) GB 5135.3-2003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제 3 부분 분사노즐 (自动喷水 灭火系统_第 3 部分 : 水雾喷头) GB 4351.1-2005 휴대용 소화기 1 부 : 성능 및 구조 요구 사항(手提式 灭火器 第 1 部分 性能和结构要求)			

	GB 4351.2-2005 휴대용 소화기 2 부 휴대용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음매 없는 강철 병의 요구 사항(手提式灭火器 第2部分 手提式二氧化碳灭火器钢质无缝瓶体的要求) GB 5135.9-2006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제 9 부분 ESRF 헤드 (自动喷水灭火系统 第9部分:早期抑制快速响应(ESFR)喷头) GB 5135.12-2006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제 12 부분 스프링클러 적용 범위 확대(自动喷水灭火系统 第12部分 扩大覆盖面积洒水喷头) GB 5135.13-2006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제 13 부분 드렌처헤드 (自动喷水灭火系统第13部分 水幕喷头) GB 5135.15-2008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제 15 부분 가정용헤드(自动喷水灭火系统 第15部分:家用喷头) GB 50444-2008 건설 소화기 구성 승인 및 검사 사양(建筑灭火器配置验收及检查规范) GB 150.1-2011 압력 용기 1 부 : 일반 요구 사항(压力容器 第1部分:通用要求) GB 150.2-2011 압력 용기 2 부 : 재료 표준(压力容器 第2部分_材料标准) GB 150.3-2011 압력 용기 3 부 : 설계(压力容器 第3部分:设计) GB 150.4-2011 압력 용기 4 부 : 제조, 시험 및 승인(压力容器 第4部分:制造、检验和验收_百度文库) GB/T 4351.3-2005 휴대용 소화기 3 부 : 검사 규칙(手提式灭火器 第3部分 检验细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97>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전동축, 크랭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42 자동차부품	전동축, 크랭크 (crank)	캠샤프트 (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를 포함	848310	84831090.00	其他传动轴及曲柄 (包括凸轮轴及曲柄轴)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84831019.0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36,075	84831011.00	其他船舶用传动轴 船舶用柴油机曲轴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용도 3:브랜드 4: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Q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인증구분		CQC16-491295-2010 자동차 전동축 인증 실시규칙(汽车传动轴认证规则)				
임의		GB/T 23339-2009 내연기크랭크축 기술표준 (内燃机 曲轴 技术条件) QC/T 544-2000 자동차 엔진 캠축 기술표준(汽车发动机凸轮轴技术条件) QC/T 29082-1992 자동차 변속기 샤프트 조립 조건 (汽车传动轴总成技术条件)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98>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클러치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42 자동차 부품	클러치와 그 부분품	부분품과 부속품 (제 8701 호 부터 제 8705 호까 지의 차량용으로 한정)	870893	87089390.00	Clutches and parts thereof for Other vehicles, not specified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200,080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적용차종 3:미조립부품 또는 미완성부품 인지 명시 4:생산부품 (자동차용)의 통용부품번 호 뒤에 "/TY" 추가 5:부품조립후 완성품의 부품번호 6:브랜드 7:모델명 8:"S/","W/"또 는"WF/"중 하나가 앞에 적혀있는 부품완성번 호 (생산부품은" S/", 적용된 완성차 공장 브랜드와 브랜드가 일치하는 수리부품은" W/", 적용된 완성차 공장 브랜드와 브랜드가 일치하지 않는 수리부품은" WF/") 9:조립완제품	폐전기기계제품 수입금지 (旧机电产品禁止进口)			

		을 구성하는 특징에 대한 설명		
제도명	근거규정			
CQC 자율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인증구분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임의	CQC 16-491294-2010 자동차 건식 마찰 클러치 인증 규칙(汽车干摩擦式离合器认证规则) QC/T 25-2004 자동차 건식 마찰 클러치 조립 기술 조건(汽车干摩擦式离合器总成技术条件) QC/T 27-2004 자동차 건식 마찰 클러치 벤치 테스트 방법(汽车干摩擦式离合器台架试验方法)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99>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운전대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42 자동차 부품	운전대 · 스티어링 칼럼(steering column) · 운전박 스와 그 부분품	부분품과 부속품 (제 8701 호 부터 제 8705 호까 지의 차량용으로 한정)	870894	87089490.9	其他未列名机动车辆 用转向盘、转向柱及 其零件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260,358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적용차종 3:미조립부품 또는 미완 성부품인지 명시 4:생산부품(자동차용)의 통용부품번호 뒤에 "/TY" 추가 5:부품조립 후 완성품의 부품번호 6:브랜드 7:모델명 8:"S/", "W/" 또는 "WF/" 중 하나가 앞에 적혀있는 부품완성번호 (생산부품은"S/", 적용된 완성차 공장 브랜드와 브 랜드가 일치하는 수리부 품은"W/", 적용된 완성차 공장 브랜드와 브랜드가 일치하지 않는 수리부품 은"WF/") 9:조립완제품을 구성하 는 특징에 대한 설명		폐전기기계제품 수입금지 (旧机电产品禁止进口)		
제도명		근거규정				
CQC 자율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 验法实施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13-491276-2010 자동차 핸들 인증 규칙(机动车转向盘认证规则)				
인증구분		CQC16-469222-2010 점화 스위치가있는 자동차 조향 잠금 장치 인증 규칙(汽车用带点火开关的转向锁认证规则)				
임의		CQC16-491296-2010 차량 조종 인증 규칙(车转向器认证规则) GB 17675-1999 자동차 조향 시스템 기반 요청(汽车转向系基础请求) GB 15740-2006 자동차 도난 방지 장치(汽车防盗装置)				

	GB 11557-2011 자동차 조향 장치에 의한 운전자 부상 방지 규정(防止汽车转向机构对驾驶员伤害的规定) QC/T 563 자동차 핸들 시험방법(汽车转向盘试验方法)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00>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소음기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42 자동차 부품	소음기 (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부분품과 부속품 (제 8701 호 부터 제 8705 호까 지의 차량용으로 한정)	870892	87089200.00	机动车辆的消声器 (消音器)及排气管及 其零件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18,899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적용차종 3:미조립부품 또는 미완 성부품인지 명시 4:생산부품(자동차용)의 통용부품번호 뒤에 "/TY" 추가 5:부품조립 후 완성품의 부품번호 6:브랜드 7:모델명 8:"S/", "W/" 또는 "WF/" 중 하나가 앞에 적혀있는 부품완성번호 (생산부품은"S/", 적용된 완성차 공장 브랜드와 브 랜드가 일치하는 수리부 품은"W/", 적용된 완성차 공장 브랜드와 브랜드가 일치하지 않는 수리부품 은"WF/") 9:조립완제품을 구성하 는 특징에 대한 설명		폐전기기계제품 수입금지 (旧机电产品禁止进口)		
제도명		근거규정				
CQC 자율인증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 验法实施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인증구분	CQC 16-491293-2010 자동차배기소음기 인증실시규칙(汽车排气消声器认证规则)
임의	GB/T 4759-2009 내연 기관용 배기 머플러 측정(内燃机排气消声器测量方法) QC/T 631-2009 자동차 배기 머플러 조립 기술 조건 및 시험 방법(汽车排气消声器总成技术条件和试验方法)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01>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에어백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42 자동차 부품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부분품과 부속품 (제 8701 호 부터 제 8705 호까 지의 차량용으로 한정)	870895	87089500.00	机动车辆用带充气系 统的安全气囊及其零 件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2,875			5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적용차종 3.미조립부품 또는 미완 성부품인지 명시 4:생산부품(자동차용)의 통용부품번호 뒤에 "/TY" 추가 5:부품조립 후 완성품의 부품번호 6:브랜드 7:모델명 8:"S/", "W/" 또는 "WF/" 중 하나가 앞에 적혀있는 부품완성번호 (생산부품은"S/", 적용된 완성차 공장 브랜드와 브 랜드가 일치하는 수리부 품은"W/", 적용된 완성차 공장 브랜드와 브랜드가 일치하지 않는 수리부품 은"WF/") 9:조립완제품을 구성하 는 특징에 대한 설명			폐전기기계제품 수입금지 (旧机电产品禁止进口)		

제도명	근거규정
자율 테스트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인증구분	GB 11551-2014 차량의 정면 충돌에 대한 탑승자 보호(汽车正面碰撞的乘员保护)
임의	GB/T 19949.1-2005 도로 차량 - 에어백 부품 - 제 1 부 : 용어 (道路车辆 安全气囊部件 第 1 部分:术语) GB/T 19949.2-2005 도로 차량 - 에어백 부품 - 제 2 부 : 에어백 모듈 테스트 (道路车辆 安全气囊部件 第 2 部分:安全气囊模块试验) GB/T 19949.3-2005 도로 차량 - 에어백 부품 - 제 3 부 : 가스 발생기 조립 테스트 (道路车辆 安全气囊部件 第 3 部分:气体发生器总成试验)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02>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안전벨트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42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안전벨트	부분품과 부속품 (제 8701 호 부터 제 8705 호까 지의 차량용으로 한정)	870821	87082100.00	坐椅安全带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4,523			5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적용차종 3:미조립부품 또는 미완성부품인지 명시 4:생산부품 (자동차용)의 통용부품번호 뒤에 "/TY" 추가 5:부품조립후 완성품의 부품번호 6:브랜드 7:모델명 8:"S"/,"W"/"또는"WF/"중 하나가 앞에 적혀있는 부품완성번호 (생산부품은"S/", 적용된 완성차 공장 브랜드와		폐전기기계제품 수입금지 (旧机电产品禁止进口)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 通关单)		민용상품 입경검증(3C) (民用商品入境验证(3C))

		브랜드가 일치하는 수리부품은"W/", 적용된 완성차 공장 브랜드와 브랜드가 일치하지 않는 수리부품은"WF/") 9:조립완제품을 구성하는 특징에 대한 설명		
제도명		근거규정		
CCC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方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인증구분				
강제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03> 품목별비관세장벽: 50. 기계요소 (MTI 3단위: 751)_감압밸브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751 기계요소	감압 밸브	산업용파이프 · 보일러 동체 · 탱크 · 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 유입되는 불규칙한 압력을 감소시키고 일정수준으로 유지	848110	84811000.90	其他减压阀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4,34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용도 3:브랜드 4:모델명 5:스플밸브재질				
제도명		근거규정				
CCCF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Fire Products)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증검역총국, 공안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부분 소비상품 강제인증 시행 보고’ (본 국가질검총국 제 2011-55 호 공고문)				
인증구분		중화인민공화국특종설비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 제 549 호령·특종설비안전감독조례/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 549 号《特种设备安全监察条例》 보일러 압력 용기 제조 허가 조건 /锅炉压力容器制造许可条件				
강제		안전 밸브 안전 기술 감독 규정/安全阀安全技术监察规程(TSG ZF001-2006) 압력 파이프 부품 제조 허가 규칙/压力管道元件制造许可规则(TSG D2001-2006) 압력 파이프 부품 제조 감독 시험 규칙/压力管道元件制造监督检验规则(TSG D7001-2013)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공안부 소방제품합력평정센터(公安部消防产品合格评定中心) 국가소방장비 품질 감독검역센터(國家消防裝備質量監督檢驗中心) 국가소방전자제품 품질감독검역센터(國家消防電子產品質量監督檢驗中心) GB/T 12244-2006 감압 밸브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减压阀 一般要求) GB/T 12245-2006 감압 밸브 성능 시험 방법(减压阀 性能试验方法) GB/T 12246-2006 파일럿 형 감압 밸브(先导式减压阀) GB/T 21386-2008 비례 감압 밸브(比例式减压阀)				

<표3-104> 품목별비관세장벽: 51. 무선통신기기 (MTI 3단위: 812)_안테나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12 무선 통신기기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 용기기의 것, 항행용무선 기기· 무선 원격조절기용, 위성방송수 신용, 레이더기기용 등	852910	852910	各种天线或天线反射器及其零件	대상/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34,478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용도(적용 모델) 3:브랜드 4:모델명	전기기계제품 자동수입허가증 (지역별발급)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证(地方签发))			
제도명		근거규정				
CCC CHINA RoHS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办法) CNCA-C08-01 : 2014 오디오 및 비디오장비 제품 강제인증 구현 규칙 (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音视频设备)				
인증구분		GB 8898-2011 오디오, 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音频、视频及 类似电子设备 安全要求) GB 50922-2013 안테나 엔지니어링 사양(天线工程技术规范) GB 17625.1-2016 전자기 호환성 제한 고조파 전류 방출 제한(电磁兼容限值谐波电流发射限值) GB/T 9410-2008 이동 통신 안테나의 일반 사양(移动通信天线通用技术规范) GB/T 13837-2012 음성및 TV 수신기 및 관련 무선 설비 전자파방해 특성 제한값과 테스트 방법(声音和电视广播接收机及有关设备无线电骚扰特性限值和测量方法)				
강제						

	GB/T 17625.9-2016 전자기 호환성 제한 신호 전송 방출 수준, 주파수 대역 및 전자기장에 대한 저전압 전기 설비(电磁兼容 限值 低压电气设施上的信号传输 发射电平、频段和电磁骚扰)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종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에 대한 측정(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镉、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05> 품목별비관세장벽: 51. 무선통신기기 (MTI 3단위: 812)_무선기기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12 무선 통신기기	항행용 무선기기	자동차용, 항공기용 등	852691	85269190.90	其他无线电导航设备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85269110.00	机动车辆用无线电导航设备	
			98,809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용도 3:브랜드 4:모델명 5:동영상재생 기능 탑재여부				
제도명			근거규정			
CHINA RoHS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方法)			
			GB 6364-2013 항공 무선 항법 장치 전자기 환경 요구 사항 (航空无线电导航台(站)电磁环境要求) GB 17625.1-2016 전자기 호환성 제한 고조파 전류 방출 제한 (电磁兼容限值谐波电流发射限值) GB/T13837-2012 음성 및 TV 수신기 및 관련 무선 설비 전자파방해 특성 제한값과 테스트 방법 (声音和电视广播接收机及有关设备无线电骚扰特性限值和测量方法)			
인증구분			(声音和电视广播接收机及有关设备无线电骚扰特性限值和测量方法) GB/T 17625.9-2016 전자기 호환성 제한 신호 전송 방출 수준, 주파수 대역 및 전자기장에 대한 저전압 전기 설비 (电磁兼容 限值 低压电气设施上的信号传输 发射电平、频段和电磁骚扰)			
강제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T 12858-1991 표면 무선 항법 장비 - 환경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地面无线电导航设备 环境要求和试验方法)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 (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중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 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에 대한 측정 (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 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 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 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06> 품목별비관세장벽: 51. 무선통신기기 (MTI 3단위: 812)_레이더기기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12 무선 통신기기	레이더기기 항행용 무선기기 · 무선원 격조절기 , 라디오 방송용 · 텔레비전 송신기, 텔레비전 카메라, 텔레비전 수신기의 부분품	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 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852990	852990	电视发送、差转设备及 卫星电视地面接收转播 设备用 电视摄像机、视频摄录 一体机及数字照相机用 雷达设备及无线电导航 设备用 无线电收音机及其组合 机用 电视接收机用	대상/비대 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748,969			4 단위 세번변경기 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 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용도 3:브랜드 4:모델명 5:동영상재생 기능 탑재여부				
제도명		근거규정				
CCC CHINA RoHS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方法) CNCA-C08-01 : 2014 오디오 및 비디오장비 제품 강제인증 구현 규칙 (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音视频设备)
인증구분	GB 8898-2011 오디오, 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音频、视频及类似电子设备 安全要求) GB 17625.1-2016 전자기 호환성 제한 고조파 전류 방출 제한 (电磁兼容限值谐波电流发射限值)
강제	GB/T 13837-2012 음성및 TV 수신기 및 관련 무선 설비 전자파방해 특성 제한값과 테스트 방법 (声音和电视广播接收机及有关设备无线电骚扰特性限值和测量方法) GB/T 17625.9-2016 전자기 호환성 제한 신호 전송 방출 수준, 주파수 대역 및 전자기장에 대한 저전압 전기 설비 (电磁兼容 限值 低压电气设施上的信号传输 发射电平、频段和电磁骚扰) GB/T 14960-2017 TV 방송 수신기용 적외선 원격 제어 송신기의 기술적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电视广播接收机用红外遥控发射器技术要求和测试方法)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 (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종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 (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镉、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 (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 (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07> 품목별비관세장벽: 52. 전자응용기기 (MTI 3단위: 814)_방사선기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14 전자 응용기기	치과용 방사선 기기	의료 진단용 X-ray 를 방사하여 구강 내 구조를 비춤 입력부(X-ray 카메라, 키보드 및 마우스/트랙볼)와 출력부(LCD 디스플레이)로 구성	902213	90221300.00	其他牙科用 X 射线应用设备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8,2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용도 3:원리 4:브랜드 5:모델명 6:주요 구성 7:신구상태	폐전기기계제품 수입금지 (旧机电产品禁止进口) 전기기계제품 자동수입허가증 (지역별발급)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证(地方签发))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수입상품검사(进口商品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医疗器械管理条例)				
인증구분		GB 9706.1-2007 의료용 전기 장비 1 부 : 안전을위한 일반 요구 사항에 대한 전문 정보 (医用电气设备 第1 部分 : 安全通用要求 的全文信息) GB 4793.1-2007 측정, 제어 및 실험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 사항 1 부 : 일반 요구 사항 (测量、控制和实验室用电气设备的安全要求 第1 部分 : 通用要求)				
강제		GB 9706.15-2008 의료용 전기 장비 1-1 : 일반 안전 요구 사항 - 측면 표준 : 의료 전기 시스템 안전 요구 사항 (医用电气设备 第1-1 部分 : 通用安全要求 并列标准 : 医用电气系统安全要求)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08> 품목별비관세장벽: 53. 영상기기 (MTI 3단위: 821)_텔레비전 수신용기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21 영상기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천연색, 주로 디지털의 것)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방식 등	852872	8528721200	其他彩色的数字电视接收机,阴极射线显像管的	비대상
			수출량 (2016년, 단위: 천불)	8528722200		
			38,065	8528723200	彩色的液晶显示器的数字电视接收机	
				8528729200	彩色的等离子显示器的数字电视接收机 其他彩色的数字电视接收机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용도 3:현시원리 4:디스플레이 사이즈 5:브랜드 6:모델명	폐전기기계제품수입 금지 (旧机电产品禁止进口)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민용상품입경검증(3C) (民用商品入境验证(3C))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商检))	
제도명		근거규정				
CCC CHINA RoHS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办法) CNCA-C08-01 : 2014 오디오 및 비디오장비 제품 강제인증 구현 규칙 (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音视频设备)				
인증구분		GB 17625.1-2016 전자기 호환성 제한 고조파 전류 방출 제한(电磁兼容限值谐波电流发射限值)				
강제		GB 8898-2011 오디오, 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音频、视频及类似电子设备 安全要求)				
		GB/T 10239-2011 컬러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의 일반 사양(彩色电视 广播接收机通用规范)				
		GB/T 13837-2012 음성및 TV 수신기 및 관련 무선 설비 전자파방해 특성 제한값과 테스트 방법(声音和电视广播接收机及有关设备无线电骚扰 特性限值和测量方法)				
		GB/T 17625.9-2016 전자기 호환성 제한 신호 전송 방출 수준, 주파수 대역 및 전자기장에 대한 저전압 전기 설비(电磁兼容限值低压电气设施上的信号传输发射电平、频段和电磁骚扰)				
		GB/T 26683-2016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의 일반 사양(地面 数字电视接收器通用规范)				

	GB/T 14960-2017 TV 방송 수신기용 적외선 원격 제어 송신기의 기술적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电视广播接收机用红外遥控发射器技术要求 和测试方法)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종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镉、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09> 품목별비관세장벽: 54. 음향기기 (MTI 3단위: 822)_라디오 수신용기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22 음향기기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카세트형, 디스크형 등)	음성기록기 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852721	85272100.00	收录(放)音组合机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3,423			4 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용도 3:구조 4:디지털방송 데이터시스템 신호 수신, 변환기능구 비시 명시 6: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CC CHINA RoHS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方法) CNCA-C08-01 : 2014 오디오 및 비디오장비 제품 강제인증 구현 규칙 (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音视频设备)				
인증구분		GB 8898-2011 오디오, 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音频、视频及类似电子设备 安全要求)				
강제		GB 13837-2012 소리 및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 및 관련 장비 - 라디오 (声音和电视广播接收机及有关设备 无线电) GB 17625.1-2016 전자기 호환성 제한 고조파 전류 방출 제한(电磁兼容限值谐波电流发射限值)				

	GB/T 13837-2012 음성및 TV 수신기 및 관련 무선 설비 전자파방해 특성 제한값과 테스트 방법(声音和电视广播接收机及有关设备无线电骚扰特性限值和测量方法) GB/T 32401-2015 VHF/UHF 대역 용 무선 모니터링 수신기의 기술적 요구 사항(VHF/UHF 频段无线电监测接收机技术要求)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종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隔、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10> 품목별비관세장벽: 55. 가전용 회전기기 (MTI 3단위: 824)_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24 가정용 회전 (rotary electric 기기)	테이블용 · 바닥용 · 벽용 · 천장용 · 지붕용 팬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음. (출력이 125W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	841451	84145199.00	其他功率≤125w 其他风机、风扇 其他功率≤125w 的换气扇 功率≤125w 的台扇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84145120.0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295	84145191.00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용도 3:설치방식 (천장, 바닥, 벽 등) 4:출력파워 5:브랜드 6:모델명	검역검사 수입 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민용상품입경검증 (民用商品入境验证)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CHINA RoHS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 4706.27-2008 가정용 및 유사 전기 기기 - 안전 파트 2 : 팬 특수 요구 사항(家用和类似用途电器的安全 第2部分:风扇的特殊要求) GB 12021.9-2008 팬 에너지 효율 제한 및 에너지 효율 등급(交流电风扇能效限定值及能效等级)				
인증구분		GB 32049-2015 가정용 및 유사한 교환 환기 팬 에너지 효율 제한 및 에너지 효율 등급(家用和类似用途交流换气扇能效限定值及能效等级) GB/T 23174-2008 배기 팬(排风扇)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종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 (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강제						

	*민용상품입경검증(民用商品入境验证) *수입상품검사(进口商品检验)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11> 품목별비관세장벽: 55. 가전용 회전기기 (MTI 3단위: 824)_공기조절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24 가정용 회전 (rotary electric) 기기	공기조절기 (창형이나 벽형)	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	841510	84151021.00	独立窗式或壁式空气调节器(装有电扇及调温、调湿装置,包括不能单独调湿的空调器) 制冷量≤4 千大卡/时分体式空调,窗式或壁式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84151021.0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8,46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창문 또는 벽면 설치 여부 3:독립형 또는 분할형 여부 4:브랜드 5:모델명	검역검사 수입 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민용상품입경검증 (民用商品入境验证) 수입상품검사 (进口商品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CCC CHINA RoHS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方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CNCA-07-01 강제성제품인증 실시규칙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家用及类似用途设备) GB 4706.1-2005 가정용 및 유사용도전기기기기의 안전성 1 부: 통용요구				

	(家用和类似用途电器的安全 第1部分：通用要求) GB 4706.27-2008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기기의 안전 열펌프, 공기조절기, 제습기의 특수요구 (家用和类似用途电器的安全 热泵, 空调器和除湿机的特殊要求)
인증구분	
강제	GB 4343.1-2009 가전 제품, 전동 공구 및 유사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요구 사항 1 부: 방사(家用电器、电动工具和类似器具的电磁兼容要求 第1部分 发射) GB 17625.1-2012 전자 기적 호환성 제한 고조파 전류 방출 한도(설비의 상당 입력전류$\leq 16A$)(电磁兼容 限值 谐波电流发射限值(设备每相输入电流$\leq 16A$))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 (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중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 (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镉、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12> 품목별비관세장벽: 55. 가전용 회전기기 (MTI 3단위: 824)_진공청소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24 가정용 회전 (rotary electric) 기기	가정용 진공청소기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850811	85081100.00	电动的真空吸尘器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3,4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주행방식 3:집진기 용적 4:브랜드 5:모델명 6:출력	검역검사 수입 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민용상품입경검증(3C) (民用商品入境验证(3C)) 수입상품검사(进口商品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CCC CHINA RoHS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办法)			
인증구분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CNCA-07-01 강제성제품인증 실시규칙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家用及类似用途设备)			
강제			GB 4706.1-2005 가정용 및 유사용도전기기기기의 안전 1 부: 통용요구(家用和类似用途电器的安全 第1部分:通用要求) GB 4343.1-2009 가전 제품, 전동 공구 및 유사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요구 사항 1 부: 방사(家用电器、电动工具和类似器具的电磁兼容要求 第1部分 发射)			

	GB 17625.1-2012 전자 기적 호환성 제한 고조파 전류 방출 한도(설비의 상당 입력전류$\leq 16A$)(电磁兼容 限值谐波电流发射限值(设备 每相输入电流$\leq 16A$)) GB 4706.7-20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 2-2 부: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家用和类似用途电器的安全: 真空吸尘器和吸水式清洁器具的特殊要求) GB/T 25441-2010 진공 청소기 모터(吸尘器电机) GB/T 20291.1-2014 가정용 진공 청소기 - 제 1 부 : 건식 진공 청소기의 성능 시험 방법(家用真空吸尘器 第 1 部分: 干式真空吸尘器 性能测试方法)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종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镉、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13> 품목별비관세장벽: 56. 난방 및 전열기기 (MTI 3단위: 825)_전열용 저항체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25 난방 및 전열기 기	전열용 저항체	전기식의 즉식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 (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80	85168000.00	加热电阻器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0,37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용도 3:브랜드 4: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QC CHINA RoHS		CQ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11-448311-2012 시즈히터부품안전인증규칙(CQC11-448311-2012 日用管状电热元件安全认证规则) GB 5959.4-2008 전기 가열 장치의 안전성 4 부 : 저항 가열 장치의 특 정 요구 사항(电热装置的安全 第4 部分 : 对电阻加热装置的特殊要求) GB/T 10066.1-2004 전기 가열 장비 시험 방법 1 부 : 일반 사항				

인증구분	(电热设备的试验方法 第1部分_通用部分) GB/T10066.4-2004 전기 가열 장치의 시험 방법 4 부 간접 저항로
CQC: 임의 CHINA RoHS: 강제	(电热设备的试验方法第4部分 间接电阻炉) GB/T 10067.41-2013 전기 가열 장치의 기본 조건 41 부 : 메쉬 벨트 저항 가열 장치(电热装置基本技术条件 第41部分:网带式电阻加热机) JB/T 4088-2012 시즈히터부품 등(JB/T 4088-2012 日用管状电热元件)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중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 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 (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镉、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14> 품목별비관세장벽: 57. 조명기기 (MTI 3단위: 825)_램프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26 조명기기	전기램프 · 조명기구	가정용, 산업용 전광판·자동차실내등·간판·액정표시장치의 백라이트유닛(BLU)·일반조명, 자동차 계기판·휴대폰의 액정표시장치	940540	94054090.00	其他电灯及照明装置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94054020.00	聚光灯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54,996	94054010.00	探照灯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3	1:상품명 2:용도 3:브랜드	검역검사 수입 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민용상품입경검증 (民用商品入境验证) 수입상품검사(进口商品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强制性産品認證)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方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CNCA-07-01 강제성제품인증 실시규칙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家用及类似用途设备)				
인증구분		안전저압테스트 및 전자호환테스트				
강제		GB 700.12-1999 내장된 조명기구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嵌入式灯具安全要求) GB 26755-2011 휴대용 소방 조명장치(消防移动式照明装置) GB 17625.1-2012 전자기 호환성 - 한계 - 고조파 전류 방출에 대한 제한 (장비 입력 전류는 위상 당 16A 이하) (电磁兼容 限值 谐波电流发射限值(设备每相输入电流≤16a) 的全文信息) GB 7000.1-2015 램프 - 제 1 부 : 일반 요구 사항 및 시험 기준 (灯具 第 1 部分_ 一般要求与试验 标准)				

	GB 17743-2016 전기 조명 및 이와 유사한 장비의 무선 방해 특성의 한계 및 측정 방법 (电气照明和类似设备的无线电骚扰特性的限制和测量方法) GB/T 15043-2008 백열 전구의 광전 매개 변수 측정 (白炽灯泡光电参数的测量方法) GB/T 23140-2009 적외선 전구(红外线灯泡)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15> 품목별비관세장벽: 57. 조명기기 (MTI 3단위: 825)_자동차용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26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차량조명용, 신호용 전조기능 - 낮·밤에 관계없이 시야 확보, 차폭등 - 차의 존재와 너비 표시, 신호기능	851220	85122010.00	机动车辆用照明装置	대상
			수출량 (2016년, 단위: 천불)	85122090.00	其他照明或视觉信号 装置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71,0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용도 3:기능 4:생산부품(자동차용)의 통용부품번호뒤에"/TY" 추가 5:부품조립 후 완성품의 부품번호 6:브랜드 7:모델명 8:"S"/"W/"또는"WF/"중 하나가 앞에 적혀있는 부품완성번호 (생산부품은"S/", 적용된 완성차 공장 브랜드와 브랜드가 일치하는 수리부품은"W/", 적용된 완성차 공장 브랜드와 브랜드가 일치하지 않는 수리부품은"WF/"); 9:조립완제품을 구성하는 특징에 대한 설명				

제도명	근거규정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强制性産品認證)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方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GB 700.12-1999 내장된 조명기구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嵌入式灯具安全要求) GB 4599-2007 자동차용 필라멘트 램프 헤드 램프(汽车用灯丝灯泡前照灯) GB 15766.1-2008 도로 자동차 전구 크기, 광학 성능 요구 사항(道路机动车辆灯泡尺寸、光电性能要求) GB 17625.1-2012 전자기 호환성 - 한계 - 고조파 전류 방출에 대한 제한 (장비 입력 전류는 위상 당 16A 이하) (电磁兼容 限值 谐波电流发射限值(设备每相输入电流≤16a) 的全文信息) GB 18408-2015 배분 성능을 갖춘 자동차 및 트레일러 라이선스 플레이트 조명 장치(汽车及挂车后牌照板照明装置配光性能) GB 7000.1-2015 램프 - 제 1 부 : 일반 요구 사항 및 시험 기준 (灯具 第1部分_ 一般要求与试验 标准) GB 17743-2016 전기 조명 및 이와 유사한 장비의 무선 방해 특성의 한계 및 측정 방법 (电气照明和类似设备的无线电骚扰特性的限制和测量方法) GB/T 15043-2008 백열 전구의 광전 매개 변수 측정(白炽灯泡光电参数的测量方法) GB/T 23140-2009 적외선 전구(红外线灯泡) GB/T 15766.2-2016 도로 자동차 전구 성능 요건 (道路机动车辆灯泡 性能要求)
인증구분	
강제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16> 품목별비관세장벽: 58. 기타 가정용 전자 (MTI 3단위: 829)_고주파 증폭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29 기타 가정용 전자	고주파 증폭기		8543709 010	8543709200	其他高,中频放大器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3,794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용도 3:기능 4:브랜드 5: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HINA RoHS CCC		CCC: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方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CNCA-C08-01:2014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 음향, 영상 설비(强制性 产品认证实施规则音视频设备) GB 8898-2011 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유사 전자설비 안전요구(音频 , 视频及类似电子设备 安全要求)				
인증구분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 废物污染环境防治法)				
강제		폐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 管理方法)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 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종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6 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电 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汞、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 測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 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 使用期限通则) GB/T 14200-1993 오디오 앰프 최소 성능 요구 사항(高保真声频放大器 最低性能要求) GB/T 12060.3-2011 사운드 시스템 장비 - 제 3 부 : 오디오 앰프 측정 방법(声系统设备 第3部分:声频放大器测量方法)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	--

<표3-117> 품목별비관세장벽: 58. 기타 가정용 전자 (MTI 3단위: 829)_여과기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29 기타 가정용 전자	액체용이 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 마이크로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 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 (내경이 1.3cm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842199	84219999.90	其他过滤、净化装置 用零件	대상/비대 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75,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용도 (적용모델) 3:브랜드 4:모델명 5:여과필터의 경우 재질 명시할 것				
제도명		근거규정				
CQC CHINA RoHS		CQ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가전용 및 유사용도 전기안전 및 EMC 인증규칙 CQC12-448100-2009 (家用和类似用途电器安全) GB 4706.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기기의 안전 제 1 부분:통용요구 (家用和类似用途电器的安全 第 1 部分 : 通用要求) GB/T 13554-2008 고효율 공기 필터(高效空气过滤器) GB/T 26114-2010 액체 여과용 필터의 일반 기술 사양(液体过滤用过滤器 通用技术规范) GB/T 30176-2013 액체 여과용 필터의 성능 시험 방법(液体过滤用过滤器 性能测试方法) GB/T 17939-2015 핵 등급 고효율 공기 필터(核级高效空气过滤器) GB/T 18801-2015 공기 청정기(空气净化器) GB/T 34012-2017 환기 시스템용 공기 청정기(通风系统用空气净化装置)
인증구분	
CQC: 임의 CHINA RoHS: 강제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자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종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 (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镉、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18> 품목별비관세장벽: 58. 기타 가정용 전자 (MTI 3단위: 829)_마사지 기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29 기타 가정용 전자	마사지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90191020 00	90191010.00	按摩器具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3,1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용도 3:기능 4:브랜드 5:모델명	검역검사 수입 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수입상품검사(进口商品检验)	
제도명		근거규정				
CQC CHINA RoHS		CQ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가전용 및 유사용도 전기안전 및 EMC 인증규칙 CQC 12-448100-2009 (家用和类似用途电器安全) GB 4706.1 가정용 및 유사용도전기기기기의 안전 제 1 부분:통용요구 (家用和类似用途电器的安全 第 1 部分 : 通用要求) GB/T 33354-2016 건강 마사지 장비 서비스 사양(保健按摩器具售后服务规范) GB/T 33355-2016 건강 마사지 장비 안전 규격(保健按摩器具安全使用规范)				
인증구분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자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CQC: 임의 CHINA RoHS: 강제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 (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종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 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 (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镉、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 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19>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변압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41 전력용 기기	기타 변압기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431	85043190.00	额定容量≤1 千伏安的其他变压器 额定容量不超过 1 千伏安的互感器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85043110.0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3,0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액정용량 3:액체매질 여부 4:브랜드 5: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Q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인증구분		GB 19212.1-2008 전력변압기/전원/리액터와 유사한제품의 안전 (电力变压器、电源、电抗器和类似产品的安全第 1 部分：通用要求和试验)				
임의		GB 1094.1-2013 전력변압기 1 부：일반(电力变压器 第 1 部分:总则) GB/T 19212.1-2016 변압기, 원자로, 전원 장치 및 그 조합의 안전성 - 제 1 부：일반 요구 사항 및 시험(变压器、电抗器、电源装置及其组合的安全 第 1 部分通用要求和试验) JB/T 501-2006 전력변압기시험안내(电力变压器试验导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850434(기타 변압기: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

<표3-120>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유전체 변압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41 전력용 기기	액체 유전체 변압기	용량이 650 킬로볼트 암페어를 초과하고 10,000 킬로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422	85042200.00	650KVA<额定电压 ≤10MVA 液体介 质变压器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4,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액정용량 3:액체매질 여부 4:브랜드 5: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Q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인증구분		GB 19212.1-2008 전력변압기/전원/리액터와 유사한제품의 안전 (电力变压器、电源、电抗 器和类似产品的安全 第 1 部分：通用要求和试验)				
임의		GB 1094.1-2013 전력변압기 1 부：일반(电力变压器 第 1 部分:总则) GB/T6451-2015 오일식전력변압기술과 요구사항(油浸式电力变压器技术 参数和要求) GB/T 19212.1-2016 변압기, 원자로, 전원 장치 및 그 조합의 안전성 - 제 1 부：일반 요구 사항 및 시험(变压器、电抗器、电源装置及其组合 的安全 第 1 部分 通用要求和试验) JB/T 501-2006 전력변압기시험안내(电力变压器试验导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21>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개폐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41 전력용 기기	그 밖의 개폐기 (푸쉬버튼형, 회전형, 전자개폐형, 마이크로형 등)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	853650	85365000.00	电压≤1000 伏的其他 开关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75,717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용도 3:전압 4:브랜드 5:모델명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민용상품 입경검증(3C) (民用商品入境验证(3C))	
제도명		근거규정				
CCC CHINA RoHS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办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강제성제품인증 실시규칙 저전압기기 저전압부품 (CNCA-C03-02 : 2014 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低压电器 低压元器件) GB 14048.3-2008 저전압 스위치 및 제어 설비 제 3 부분: 스위치, dis-connector, Fuse Ass'y(低压开关设备和控制设备第 3 部分_开关、隔离器、隔离开关以及熔断器组合电器) GB 14048.5-2008 저전압 스위치 및 제어 설비 제 5-1 부분:제어회로 기기 및 스위치 전동기제어회로기기(低压开关设备和控制设备 第 5-1 部分: 控制电路电器和开关元件 机电式控制电路电器) GB/T 14048.10-2016 저전압 스위치 및 제어 설비 제 5-2 부분: 제어회로기기 및 스위치부품 proximity switch(低压开关设备和控制设备 第 5-2 部分: 控制电路电器和开关元件接近开关) GB/T 14048.11-2016 저전압 스위치 및 제어 설비 제 6-1 부분: 다기능 기기 Change-over switch(低压开关设备和控制设备 第 6-1 部分: 多功能电器 转换开关电器)				
인증구분						
강제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 (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중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 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 (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隔、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 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 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 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22>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계전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41 전력용 기기	계전기	전압이 60 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	85364	85364900.00	电压大于 60 伏的继 电器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3,068			4 단위 세 번변경기준 또는 계약 당사국내 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용도 3:전압 4:브랜드 5:모델명	검역검사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 关单)		민용상품 입경검증(3C) (民用商品入境验证(3C))	
제도명		근거규정				
CCC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 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方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강제성제품인증 실시규칙 저전압기기 저전압부품 (CNCA-C03-02 : 2014 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低压电器 低压元器件) GB 14048.9-2008 저전압 스위치 및 제어 설비 제 6-2 부분:CPS(低压开关 设备和控制设备第 6-2 部分 : 多功能电器(设备)控制与保护开关电器(设备)(CPS))
인증구분	
강제	GB 14048.4-2010 저전압 스위치 및 제어 설비 제 4 부분: 접촉기 및 전동기스타터(모터보호기 포함)(低压开关设备和控制设备第 4-1 部分 : 接触器和电动机起动器机电式接触器和电动机起动器(含电动机保护器))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종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 (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镉、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23>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자동차단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41 전력용 기기	자동 차단기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	853620	85362000.00	电压不超过 1000 伏 自动断路器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6,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용도 3:전압 4:브랜드 5:모델명	검역검사 수입 화물 통관신고서 (检验检疫入境货物通关单)		민용상품 입경검증(3C) (民用商品入境验证 (3C))	
제도명		근거규정				
CCC CHINA RoHS		CC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마크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识管理方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강제성제품인증 실시규칙 저전압기기 저전압부품(CNCA-C03-02 : 2014 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低压电器 低压元器件) GB 14048.2-2008 저전압 스위치 및 제어 설비 제 2 부분: 차단기 (低压开关设备和控制设备 第 2 部分 : 断路器)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자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자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인증구분						
강제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중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에 대한 측정(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24> 품목별비관세장벽: 60. 산업용 전기기기 (MTI 3단위: 842)_동축케이블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42 산업용 전기기기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도체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도체	854420	85442000.00	同轴电缆及其他同轴电导体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35,425			4 단위 세번변경기 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 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용도 3:구조유형 (동축, 이음새 등) 4:브랜드 5: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HINA RoHS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GB 31247-2014 케이블 및 광 케이블의 연소 성능 등급 분류(电缆及光缆燃烧性能分级)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종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 (铅、镉、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 的测定)
인증구분	
강제	GB/T 17738.1-2003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의 일반 사양(射频同轴电缆组件 总规范) GB/T 17738.2-2013 무선 주파수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 - 2 부 : 유연한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의 단면 사양(射频同轴电缆组件 第2部分 : 柔软同轴电缆组件分规范) GB/T 17737.201-2015 동축 통신 케이블 - 제 1-201 부 : 환경 시험 방법 - 케이블의 냉간 굽힘 시험(同轴通信电缆 第1-201部分 : 环境试验方法 电缆的冷弯性能试验)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 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25> 품목별비관세장벽: 61. 전기부품 (MTI 3단위: 849)_변압기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49 전기부품	변압기・정지형 변환기 (예 정류기) 와 유도자의 부분품	부분품	850490	85049019.00	其他变压器零件 稳压电源及不间断供电电源零件 其他静止式变流器及电感器零件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85049020.00		
			146,136	85049090.90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용도 (적용모델) 3:브랜드 4: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Q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인증구분			GB/T 16512-1996 RFI 억제 고정식 인덕터 제 1 부분 총규범(抑制射频干扰固定电感器 第 1 部分 总规范)			
임의			GB/T 16513-1996 RFI 억제 고정식 인덕터 제 2 부분 시험방법과 일반 요구(抑制射频干扰固定电感器 第 2 部分 分规范试验方法和一般要求 的选择)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26> 품목별비관세장벽: 61. 전기부품 (MTI 3단위: 849)_절연용 물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49 전기부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	854720	85472000.00	塑料制绝缘零件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54,4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상품명 2:용도 3:재질 4:브랜드 5: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QC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CQC 인증마크관리방법(CQC 认证标志管理方法) CQC13-036047-2009 비금속재질및부품안전인증규칙(CQC13-036047-2009 非金属材料及其零部件性能安全认证规则)				
인증구분						
임의		GB/T 19466.1-2004 플라스틱 DSC 시험 제 1 부: 통용방법(塑料差示扫描量热法 (DSC) 第 1 部分 : 通则) GB/T 5169.12-2006 전공전기제품불탈위험시험 제 12 부 글로잉와이어 기본실험방법: 재질의 글로잉와이어가연성시험방법(电工电子产品着火危险试验第 12 部分灼热丝基本试验方法:材料的灼热丝可燃性试验方法)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27> 품목별비관세장벽: 61. 전기부품 (MTI 3단위: 849)_전동기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49 전기부품	전동기, 풍력발전기, 회전변환기 등의 부분품	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850300	850300	专用于或主要用于税目 85.01 或 85.02 所列机器的零件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14,744			4 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용도 (적용모델) 3:브랜드 4:모델명				
제도명		근거정				
CHINA RoHS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자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인증구분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종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 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 에 대한 측정 (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镉、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강제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28> 품목별비관세장벽: 61. 전기부품 (MTI 3단위: 849)_개폐기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849 전기부품	개폐기, 자동차단기, 계전기, 제어반 등의 부분품	제 8535 호 · 제 8536 호 · 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853890	85389000.00	品目 8535、8536、8537 装置の零件(专用于或主要用于)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720,234			4 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7	1:품명 2:용도 (적용모델) 3:브랜드 4:모델명				
제도명		근거규정				
CHINA RoHS		CHINA RoHS: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오염환경 예방 및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电子电器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方法)				
인증구분		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물질의 함량제한요구(电子电气产品中限用物质的限量要求)				
강제		GB/T 26125-2011 전기전자제품의 6 중 사용제한물질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에 대한 측정 (电子电气产品六种限用物质(铅、镉、汞、六价铬、多溴联苯和多溴二苯醚)的测定) SJ/T 11364-2014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마크요구(电子电气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要求) 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환경보호사용기한통칙(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通则)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표3-129> 품목별비관세장벽: 62. 의료위생용품 (MTI 3단위: 950)_조제드레싱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950 의료 위생용품	조제드레싱과 습포제, 붕대, 거즈, 탈지면 등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300590	30059010.00 30059090.00	药棉、纱布、绷带(经药物浸涂或制成零售包装,供医疗、外科、牙科或兽医用) 其他软填料及类似物品(经药物浸涂或制成零售包装,供医疗、外科、牙科或兽医用))	대상/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3,037			4 단위 세 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상품명 2:용도 3:성분 4:약물침투, 소매포장 여부 5:브랜드 6:모델명 7:포장규격				
제도명		근거규정				
CFDA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주석령제 7 호(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主席令第 7 号)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국무원령제 650 호(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国务院令第 650 号)				
인증구분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제 4 호(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令第 4 号)				
강제		의료기기분류규칙: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제 15 호(医疗器械分类规则: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令第 15 号) 의료용탈지면(YY/T 0330-2015 医用脱脂棉)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3005(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				

<표3-130> 품목별비관세장벽: 62. 의료위생용품 (MTI 3단위: 950)_시멘트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중국 HS 코드	중국 HS 품명	FTA 특혜 대상여부
950 의료 위생용품	치과용 시멘트,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의료용품	300640	30064000.0 0	牙科粘固剂及其他牙科 牙科填充料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1,855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증치세	퇴세율	신청요소	감관조건		검역조건	
17	15	1:품명 2:용도 3:성분 4:브랜드 5:모델명 6:포장규격				
제도명		근거규정				
CFDA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주석령 제 7 호(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主席令第 7 号)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국무원령 제 650 호(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国务院令第 650 号)				
인증구분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제 4 호(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令第 4 号) 의료기기분류규칙: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제 15 호(医疗器械分类规则: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令第 15 号)				
임의		치과 수성 시멘트 - 제 1 부 : 분말 / 액상 시멘트 (YY 0271.1-2009 牙科水基水门汀 第 1 部分 : 粉/液酸碱水门汀)				
확대품목 (한국 HS 코드 기준)		3006(의료용품)				

제4절 비관세 장벽 관련 규제기관(regulation agency)

1. 종합

- (품질관리관련 중국 정부기관) 품질관리관련 감독기관들은 <그림3-12>에서와 같이 국무원의 직속산하기관으로 국무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그림3-13> 품질관리관련 중국 정부기관 조직도



자료: CCIC Korea

- 여기서 AQSIQ는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FDA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CNCA는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NHFPC는 국가위생및계획생산위원회를 의미한다.
- 동일 식품제품이라도 표와 같이 식품의 특성에 따라 관련 규제기관 및 규제내용이 다르다.
 - 가령, 유기농 식품의 경우 17자리 번호가 부여되며 국가사이트에 해당번호 입력 시 소비자가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후관리 감독을 시행한다.

<표3-131> 식품 종류 별 규제기관

종류	특성	규제기관
일반식품, 특수식품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 특정인에게 영양소를 제공하는 식품	AQSIQ
유기농식품	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 원료로 만든 식품	인증기관
보건식품	체내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식품 ¹⁰²⁾	CFDA
신식품원료	식용이력은 없으나 인체에 무해한 식품 ¹⁰³⁾	NHFPC
수산, 육류, 유제품, 삼계탕	특별관리 품목으로 작업장 등록 필요함	CNCA

자료: CCIC Korea

102) 질병치료 기능을 가지지 않는 것에 한정

103) 6년 근 이상의 홍삼. 5년 근 이하는 일반식품으로 분류

2.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http://www.aqsiq.gov.cn/>

- ☐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구로 약어로 AQSIQ(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라고 명칭 한다.
- ☐ (기능) 전국 상품의 품질 및 개량, 출입경상품검사, 출입경위생검사, 출입경동식물검역, 수출입물품¹⁰⁴⁾의 안전과 인증인가, 표준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 상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련 법률·법규 초안을 작성하고, 수출입 식품 등 동식물에 대한 위생검사·검역 및 제도정비 한다.
- ☐ (조직) 검사검역총국(AQSIQ) 본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3국, 15사, 1청, 1위, 1실로 구성되며 산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에서 인증 및 표준화 행정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31개 지역에 각 省 질량기술감독국이 있으며(자치구, 직할시)에 35개 직

104) 식품, 화장품 등

는데 ‘경고데이터’ 탭 ‘수입식품위험경고’에서는 중국으로 진입허가가 제한된 식품·화장품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¹⁰⁶⁾

<그림3-15> 수입금지 식품.화장품 목록

当前位置: 首页 > 质检数聚 > 警示数据 > 进境食品风险预警

2017年3月未予准入的食品化妆品信息	<2017-04-24>
2017年2月未予准入的食品化妆品信息	<2017-03-17>
2017年1月未予准入的食品化妆品信息	<2017-03-01>
2016年12月未予准入的食品化妆品信息	<2017-02-08>
2016年11月未予准入的食品化妆品信息	<2017-01-03>
2016年10月未予准入的食品化妆品信息	<2016-12-19>
2016年9月未予准入的食品化妆品信息	<2016-11-04>
2016年8月未予准入的食品化妆品信息	<2016-09-29>
2016年7月进境不合格食品、化妆品信息	<2016-08-25>
2016年6月进境不合格食品、化妆品信息	<2016-07-20>
2016年5月进境不合格食品、化妆品信息	<2016-06-13>
2016年4月进境不合格食品、化妆品信息	<2016-06-01>
2016年3月进境不合格食品、化妆品信息	<2016-06-28>
2016年12月进境不合格食品、化妆品信息	<2016-01-14>

- 해당 정보는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달 엑셀 파일 형식으로 공지가 이루어지며 당해 파일에는 2016년 말부터 최근까지 화장품 수입 식품 안전 위험 경고 통지 관련하여 해외 제조업체의 목록, 식품·화장품의 업체명과 국적, 수입된 입국항 그리고 수입 불합격된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대다수 수입통관이 불합격된 사유는 수입항검역기구에서 실시한 검역검사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에 의거하여 상품은 반품이나 소각 처리시킨다. 또한, 불합격된 식품·화장품은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금지할 것으로 공지하고 있다.
- ‘수입식품안전위험경고통보’는 중국이 수입하는 식품·화장품의 안전에 대한 위험 경고 조치를 공지¹⁰⁷⁾하고 있으며 경고를 받은 기업들이 미래에 중국 시장으로 다시 진출하고자 할 시에 받을 규제와 인증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106) <그림3-13> 참고, 경로: 首页 > 质检数聚 > 警示数据 > 进境食品风险预警

107) 경로: 首页 > 质检数聚 > 警示数据 > 进出口食品安全风险预警通告

3.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http://www.sda.gov.cn/WS01/CL0001/>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약어로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라고 명칭 하며, 2013년 3월22일 기존의 SFDA(State Food&Drug Administration)를 CFDA로 명칭을 변경하며 국(局)에서 부(部)로 격상되었다.

○ 격상 과정에서 공중보건 및 의료분야의 최상위 감독기관으로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기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¹⁰⁸⁾ 규제부서,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규제부서, 국무원(國務院) 식품안전위원회의 집행부서 기능을 넘겨받아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108) 국무원 소속으로 시장의 감독관리와 행정업무 주관, 기업 및 개인의 영업 등록 및 관리, 소비자의 권익보호, 시장경제행위 감독검사, 상표등록업무 관리 및 상표침해행위 조사처리(상표국)/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특허청에 해당, 상표권제의 나머지)

□ 현재 CFDA는 식품 안전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방 정부가 지도록 하고, 기업이 식품 안전의 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 지역별로 체계적인 식품의약품 안전에 중점을 두고 중요한 식품의약품 정보를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수립, 구현 및 감독을 목표로 한다.

□ (기능)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질량검사, 생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국의 대표기구이며 담당하는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보건식품 및 식음료 등의 식품감독과 관리에 관한 규정·조문의 초안 작성, 정책 기획 작성, 규제 만들기

○ 식품 관리 허가 관련 규정 입안, 구현 및 감독

- 식품 안전 위험완화체계의 구축, 연례 전국 식품 안전 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식품 안전 정보 홍보 시스템의 구축 및 중요 식품 안전 정보 공표, 식품 안전 위험 감시계획 수립 및 식품안전 기준 확립 시 참여, 식품 안전 위험 감시계획의 식품 안전 감시 업무 수행

○ 의약품·의료기기 기준 및 분류 관리 시스템의 제작, 출판 및 구현

- 의약품·의료기기 R&D, 제조, 유통 및 사용 관행을 만들고, 구현하고 감독, 의약품·의료기기 등록 및 감독·검사, ADR 및 의료기기 부작용 감시 시스템의 구축 및 구현, 등록된 약사 규제 시스템의 개선 및 초안 작성, 등록된 약사 레지스트리의 감독·지시,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 만들기에 참여, 국가 필수 의약품 시스템구현에 협력

○ 화장품의 감독 및 관리 규정 제안, 구현 및 감시

-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감독·관리에 대한 감사 체계 산출 및 구현중요불법 행위 대처방안 구조화, 의심 품목 리콜 시스템의 수

립, 구현 및 감독

○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 식품·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시스템 수립,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기술 개발 계획의 산출 및 구현, 식품·의약품 검사·전자감독 및 추적 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추진, 식품·의약품 안전 정보의 확산

○ 지방정부의 식품·의약품 감독 및 관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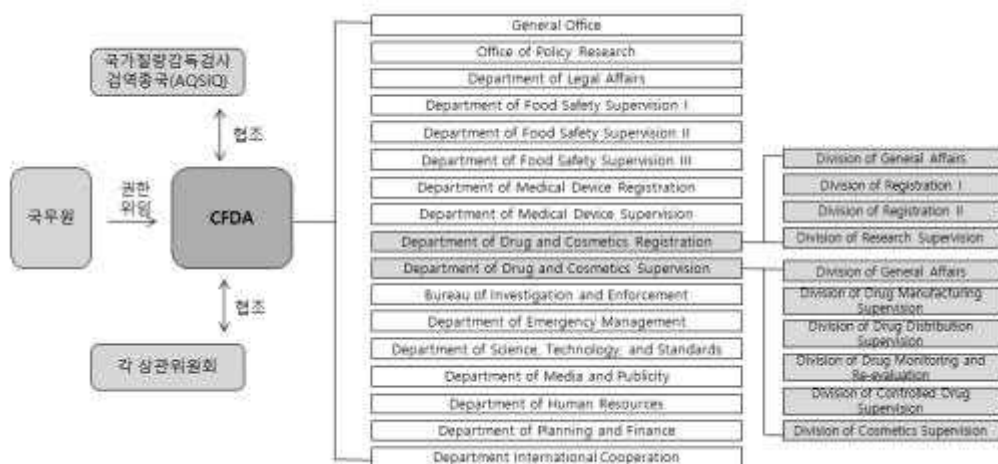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일상적인 작업

- 식품안전 감독·관리의 전반적인 조정, 감독/관리 체계 개선 추진, 식품 안전에 대한 지방 정부 행정 실태 감독

□ (조직) CFDA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AQSIQ와 각 상관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 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 49개 지역(북경시 등 4개 직할시, 3개 자치구, 22개 성)

<그림3-16>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자료: CFDA코리아

4.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http://www.cnca.gov.cn/>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 산하기관으로 약어로 CNCA(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라고 명칭 한다.

□ (기능) CNCA는 중국 인증 및 인가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또, 수출 입식품 (육류, 수산물, 유제품 등)의 생산, 가공업체의 위생등록 심사 및 합격업체 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하는 세부기능¹⁰⁹⁾은 다음과 같다.

109) 국제인증센터자료참고

- 목록 초안 작성·조정 및 AQSIQ와 공동으로 대외발표
- 목록상품 인증실시규정 지정발표
- 인증마크 제정과 발표, 인증 증서의 요구사항 확정
- 인증임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테스트기관, 검사기관, 인증마크 배포기관 지정
- 인증획득 상품 및 관련기업리스트 발표
- 지방품질검사기관이 강제성 인증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
- 특수용도 상품에 대한 심사비준부문에서 강제성 인증사항을 제외
- 강제성 상품 인증에 대한 기소, 제소의 수리

5. 국가위생및계획생산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http://www.moh.gov.cn/zhuz/index.shtml>

□ 국가위생및계획생산위원회는 약어로 NHFPC(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라고 명칭 한다.

□ (기능) NHFPC의 식품안전기준 및 검측평가부서(食品安全标准与监测评估司)¹¹⁰⁾에서는 식품안전기준의 작성 및 공개, 식품, 식품 첨가물, 신소재 및 새로운 종류 관련 제품의 안전성 검토한다.

- 식품안전기준 초안 작성, 식품안전위험의 모니터링, 평가 및 교환
- 새로운 식품성분, 식품첨가물 및 기타 관련식품의 안전성 검토
- 식품안전검사기관 자격인증을 위한 제도용어 및 검사규격 검토

¹¹⁰⁾ http://www.moh.gov.cn/sps/new_index.shtml

6.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

□ 중국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는 중국의 통관 행정을 담당하며, 1980년 2월 대외경제무역부에서 분리 독립한 국무원 직속의 기관이다.

- 법령 입안, 징수, 통관, 밀수 단속, 심사 등과 같은 전반적인 관세 업무는 국무원 직속의 독립기관인 중국 해관에서 담당하나, 관세율 등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기능) 「해관법 2조」에 언급된 해관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경을 출입하는 운송수단·화물·여행자휴대품·우편물품과 기타 물품의 감독 및 관리,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단속, 해관통계의 작성, 항만 관리, 보세 작업 관리, 지적 재산권의 관세 집행 및 국제 세관 협력 등

□ (조직) 해관기관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해관총서¹¹¹⁾ 및 직속해관¹¹²⁾과 예속해관 등 3단계로 하며, 예속해관은 직속해관의 지휘를 받으며, 직속해관은 해관총서의 지휘를 받는다.

- 해관총서 1분서, 46개 직속해관, 600여개 예속해관으로 구성되며, 밀수범죄조사 직원 10,000여명 포함 50,0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 중국 해관은 전국 267개 공항만 및 내륙철로 개항지를 관리하며, 15개의 보세구, 8개의 보세물류원구, 12개의 보세항구, 59개의 수출가공구, 4개의 종합보세구 등 총 98개의 감시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7.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http://www.chinatax.gov.cn/>

□ 국무원 소속으로 세금 징수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대외무역 관련하여 국제세무행정, 세금검사, 수출환급(수출퇴세) 관리 등을 수행한다.

111)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
112) 우리나라의 본부세관에 해당

- 국가세무총국은 2015년 수출세금 환급 및 면제에 관한 행정기준 (Version 1.0)을 채택하여 관련 행정절차의 규정, 검토품목의 확정, 운영기한 등을 명시하였다.
- 수출업체는 세계신용등급 및 준수기록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차별적으로 관리된다. 이러한 접근은 신용 우수기업에게는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8. 중국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http://www.safe.gov.cn/>

- 국무원 소속으로 중국인민은행이 관리한다. 수출입 외환관리통제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 외국환 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책임 이행과 관련된 표준 문서를 발표한다. 국가 외환 시장의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다. 외환 결제 및 판매 감독 및 관리를 수행한다. 법에 따라 외국환의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외환 관리를 위반하는 행동을 처벌한다.

제4장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제1절 도입

1. 베트남의 교역 현황

가. 베트남의 교역 현황

- 2016년 베트남 수출은 1,766억 달러, 수입은 1,741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였다.
 - 2015년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6년 1/4분기부터 이어져온 흑자 추세가 4/4분기까지 지속되었고, 2016년 베트남 수출은 전년 대비 9.0%, 수입은 5.2% 각각 증가하였다.
- FDI 기업들의 수출입 실적은 2,262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72.3%를 차지하며 베트남 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유지하였다.
 - FDI 기업 수출은 12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1%, 수입은 1022억 달러로 5.2% 각각 증가하였고, FDI 기업의 수출 및 수입비중은 각각 80.3%, 63.9% 차지했다.

<표4-1> 2014~2016 베트남 수출입 실적(억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증감률)	1,501.2	1,621.1 (7.9)	1,766.3 (9.0)
수입(증감률)	1,480.5	1,656.5 (12.0)	1,741.1 (5.2)
수지	20.7	△35.4	25.2

자료: 베트남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수출] 휴대폰이 2016년 베트남 수출 1위 품목 기록하였다. 휴대폰 수출은 전년 대비 13.8% 증가했으며, 컴퓨터 및 전자제품과 함께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 휴대폰 및 부품(13.8%), 섬유·의류(4.6%), 전자제품(21.5%), 신발(8.3%), 기계공구 및 부품(24.3%) 등 수출상위 5대 품목 전반적으로 수출이 호조세 시현
- 경쟁국들의 생산 부진으로 커피 가격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부진했던 커피 수출은 2016년 24.9% 증가하며 회복세 시현

<표4-2> 주요품목별 수출실적(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휴대폰 및 부품	23,607 (11.1)	30,176 (27.9)	34,317(13.8)
섬유·의류	20,949 (16.8)	22,815 (9.1)	23,841 (4.6)
전자·컴퓨터 및 부품	11,440 (7.9)	15,610(36.5)	18,959(21.5)
신발	10,340 (23.1)	12,011(16.3)	13,000 (8.3)
기계공구 및 부품	7,314 (21.4)	8,186 (11.7)	10,143(24.3)
수산물	7,836 (17.1)	6,573(△16.0)	7,053 (7.4)
목재 및 목제품	6,232 (11.5)	6,899 (10.7)	6,969 (1.1)
차량제외 운송수단 및 부품	5,627 (13.4)	5,844 (2.9)	6,058 (3.7)
커피	3,556 (30.9)	2,674(△24.8)	3,335 (24.9)
핸드백·지갑·여행가방	2,536 (31.2)	2,878 (13.5)	3,168 (10.2)

자료: 베트남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수입] 2016년 수입은 상반기 감소세를 보였으나 3분기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했다.
- 베트남의 전력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수입은 전년대비 7.3% 감소한 50억 달러 기록하였고, 저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석유제품 수입량은 전년대비 7.3% 감소하였다.

<표4-3> 주요품목별 수입실적(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기계공구 및 부품	22,500 (20.4)	27,594(23.1)	28,371 (2.9)
전자컴퓨터 및 부품	18,722 (5.7)	23,125(23.4)	27,874 (20.5)
휴대폰 및 부품	8,476 (5.3)	10,595(24.8)	10,559 (△0.3)
철강	7,775 (16.8)	7,492 (△2.9)	8,016 (7.2)
플라스틱	6,317 (10.6)	5,958 (△5.7)	6,256 (5.0)
섬유신발 원자재	4,692 (24.1)	5,003 (6.7)	5,066 (1.3)
기타금속	3,434 (17.4)	4,236 (23.5)	4,806 (13.5)
석유제품	7,665 (9.9)	5,34(△29.1)	4,944 (△7.3)
플라스틱 제품	2,576 (26.1)	3,760 (19.0)	4,396 (17.0)
화학제품	3,213 (14.4)	3,415 (6.3)	3,793 (11.1)

자료: 베트남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수출] 2016년 베트남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미국(385억 달러), 중국(220억 달러), 일본(147억 달러), 한국(114억 달러) 순으로 對美 수출은 對中 수출을 크게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2016년 베트남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중국(500억 달러)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320억 달러), 일본(150억 달러), 대만(112억 달러)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 베트남의 4위 수출 대상국이며, 2위 수입 대상국임

<표4-4> 2016년 주요국가별 수출입 실적(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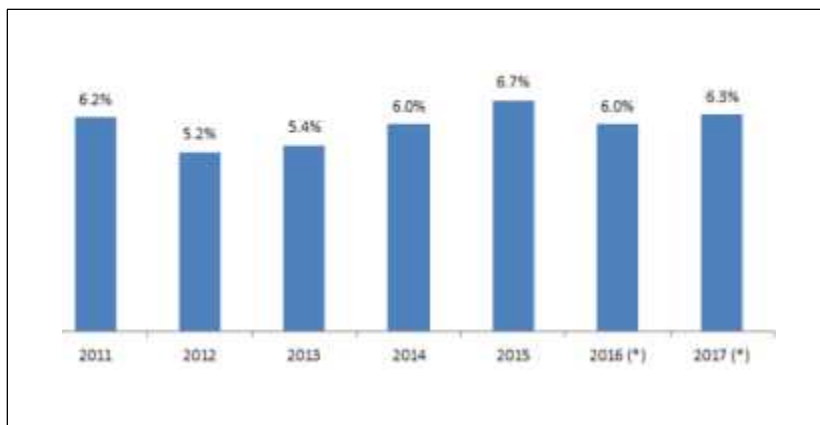
순위	수 출		수 입	
	국 가	금 액	국 가	금 액
1	미국	38,500	중국	50,000
2	중국	22,000	한국	32,000
3	일본	14,700	일본	15,000
4	한국	11,400	대만	11,200
5	홍콩	6,100	태국	8,800
6	네덜란드	6,000	미국	8,700
7	독일	6,000	말레이시아	5,100
8	아랍에미리트	5,000	싱가포르	4,700
9	영국	4,900	인도네시아	3,000
10	태국	3,600	독일	2,800
	합계	118,200	합계	141,300

자료: 베트남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2017년 베트남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GDP)]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2016년 6.0%, 2017년 6.3%로 기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농업 및 광업 분야의 부진이라는 내부 요인과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다.

<그림4-1> 2011~2017년 베트남 GDP 성장률(%)



자료: 2016년, 2017년 수치는 예상치,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나. 한-베트남 교역 현황

□ 2016년 베트남은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 8위 수입 대상국을 기록하였다.

○ 베트남은 2015년 4위 수출 대상국, 10위 수입 대상국이었으나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對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326억 달러, 수입은 27.4% 증가한 125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고, 20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¹¹³⁾

○ 이는 2015~2016년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전 세계 무역량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현지에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베트남 전체 수출량의 약 30%를 기여하고 있다.

○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은 최근 몇 년 간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5년 한-베 FTA 체결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흑자 폭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표4-5> 2012~2016년 對베트남 수출입 실적(백만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15,954(18.5)	21,088(32.2)	22,352(6.0)	27,773(24.3)	32,779(17.6)
수입	5,718(12.5)	7,175(25.5)	7,990(11.4)	9,803(2.7)	12,495(27.4)
수지	10,236	13,912	14,367	17,971	20,155

자료: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괄호 안은 수출입증감률)

113) 베트남은 중국, 홍콩,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 4위의 무역흑자 대상국

□ 품목별 교역 현황

- [수출] 최대 수출 품목군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센서 등 휴대폰 관련 부품으로 對베트남 수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對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9.3%, 98.4% 증가하여 전체 수출실적을 크게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의 對베트남 수출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18.9% 감소한 9.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 석유제품의 對베트남 수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231.2% 성장한 10.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4-6>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2,270	45	4,249	87.1	5,192	22.2
반도체	2,789	△3.87	2,871	2.9	4,574	59.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97	△46.71	1,266	85.1	2,512	98.4
기구부품	937	0.93	1,233	31.7	1,722	39.6
합성수지	1,188	4.58	1,110	△6.5	1,203	8.4
석유제품	600	△23.7	328	△45.3	1,088	231.2
편직물	978	3.86	977	△0.1	1,077	10.3
자동차	713	63.12	1,137	59.4	921	△18.9
플라스틱제품	508	26.5	740	45.6	864	16.9
철강판	917	△4.76	839	△8.4	822	△2.1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MTI 3단위 기준)

- [수입]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입품목은 휴대폰, 의류, 신발 등 현지 한국투자(FDI)업체로부터의 완제품 수입이 수위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목재, 영상기기, 기타 섬유제품, 기구부품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 2016년 對베트남 수입 1위 품목은 휴대폰으로 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한 31.5억 달러를 차지했고, 對베트남 수입 2위와 3위 품목은 의류와 신발로 각각 24.3억 달러와 6.3억 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7> 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292	55.6	1,470	403.4	3,145	113.9
의류	2,160	28.39	2,220	2.8	2,426	9.2
신발	506	34.22	526	4	628	19.2
컴퓨터	174	141.8	400	130.1	552	38
목재류	350	51.24	348	△0.7	428	23.1
영상기기	83	31.9	150	80.7	340	126.7
기타섬유제품	252	15.92	272	7.8	298	9.6
기구부품	104	167.2	205	97.2	268	30.7
갑각류	206	64.34	165	△19.9	195	18.1
계측제어분석기	136	185.5	201	48.6	172	△14.4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MTI 3단위 기준)

2. 한 · 베트남 관세행정조직 및 최신 비관세 장벽 현황

가. 베트남 관세행정 조직

□ 베트남 관세행정조직 변화 분석(2011 vs 2016)

- [상부조직 변화] 5 년 전과 다름없이 관세행정 상부조직은 재무부 (The Ministry of Finance)이며 , 재무부내 조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조직 변화] 관세총국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은 2017 년 1 월, 국무총리의 “ 결정 No.65/2015/QĐ-TTg ” 이행으로 운영효율성 제고 , 집중화 · 통일화된 관리 제 고를 목표로 총국 수준 에서부터 국과 지방사무소 수준에 이르기까지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
 - 총국단위에서 위험관리부 (Risk Management Department) 와 현대화 개혁위원회 (The reform to modernization reform Committee) 신설되었으며,
 - 지방 , 지방간 , 시에서의 유닛 단위의 약점을 보완하고 유닛 사이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과, 지방사무소 등의 수준에서 39개 유닛을 감축하였다.
 - VNACCS/VCIS,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와 ASEAN 단일창구 (ASEAN Single Window) 등의 개혁 및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표4-8> 베트남 관세행정조직 변화 주요 내용

구분	개편 전(2011년 전)	개편 후(2016년)
베트남 관세총국	<신설>	위험관리부(Risk Management Department)
	<신설>	현대화 개혁위원회(Thereform to modernizationreform Committee)

자료: 외국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_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7)

□ 관세 행정 중앙조직: 관세총국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 베트남 관세국은 주로 관세정책 집행업무를 수행하며, 상부기관인 재무부는 관세 관련 법 입안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 임무 (베트남 관세법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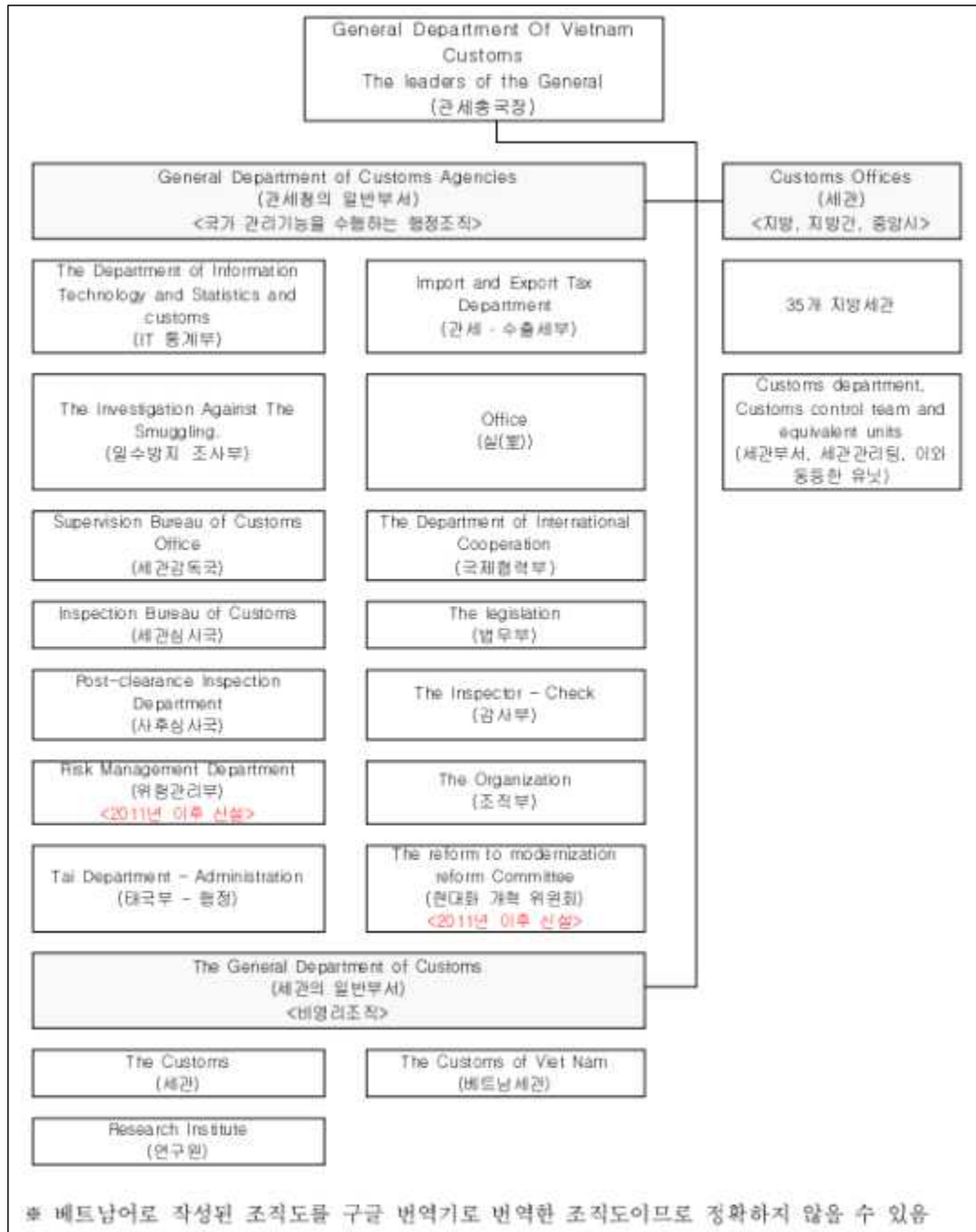
- 물품 ,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 감시
-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 불법운반의 예방
-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진행
-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물품통계
-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에 대한 제안, 지침, 국가관리 조치, 수출입 물품 에 대한 조세정책

○ 관세청의 조직체계 (베트남 관세법 제14조)

- 관세청 (관세총국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관세국 - 省級,성 연합, 정부 직속 직할시 (Customs Departments of provinces, inter-provinces and cities under central authority)

- 관세지국 , 세관단속팀 및 동급 단위부서 (Customs branches, customs enforcement units, and equivalent units)
- 관세청 임무 활동의 위험관리 (베트남 관세법 제17조)
 - 관세기관은 물품 ,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검사 , 세관감시를 결정하는데 있어 ,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운반 차단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위험관리를 적용
 - 관세청의 임무 활동의 위험관리는 통관정보 수집 , 처리 ; 세관신고인 법규준수 평가 , 위험 수준 평가의 기준 수립 및 조직 구성 , 적정 세관관리 조치방안 마련을 포함
 - 관세기관은 관세업무 활동 중에 위험관리를 적용하는 업무데이터 통합처리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업무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응용
 - 재정부 장관은 관세업무 활동중 세관신고인의 법률준수도 , 위험수준 분류 및 위험관리 적용 평가기준을 규정
- 관세공무원의 임무와 권한 (베트남 관세법 제19조)
 - 관세 법률, 업무 프로세스를 엄정히 집행하고, 본인의 임무, 권한 수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음
 -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수행
 -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관세기관이 검사기관에 분석 또는 감정을 요구하기 위해 물품 샘플을 채취
 - 세관신고인이 물품의 HS 코드 , 원산지 , 관세가격에 관련된 정보 , 입증서류의 제공을 요구
 - 운송수단의 관리자, 운전자에게 규정하는 경로, 시간, 계류장소로 이동하도록 요구

<그림4-2> 베트남 관세행정조직 구조



자료: 외국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_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7)

나. 베트남의 최신 비관세장벽 이슈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Doing Business”를 통해 대외 교역 환경을 비롯 11개 분야를 조사·분석하여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를 발표하고 있다.

○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시, 건설허가, 전력 공급, 재산권 등록, 세금 납부, 무역, 신용 취득, 투자자 보호, 계약 이행, 파산 해결, 노동시장 규제 등 11개의 지표이다.

○ 최근 발표한 「Doing Business 2017」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교역환경을 살펴보면 중국 보다 앞선 93위에 위치하고 있다.

- 미국(28위), 캐나다(46위), 한국(32위), 중국(96위)

○ 베트남의 ASEAN 내에서의 대외 교역 환경 순위를 보았을 때는 4위를 차지하였다.

- 싱가포르(41위), 태국(56위), 말레이시아(61위), 베트남(93위), 필리핀(95위), 인도네시아(108위) 순

<표4-9> 「Doing Business 2017」에 따른 교역환경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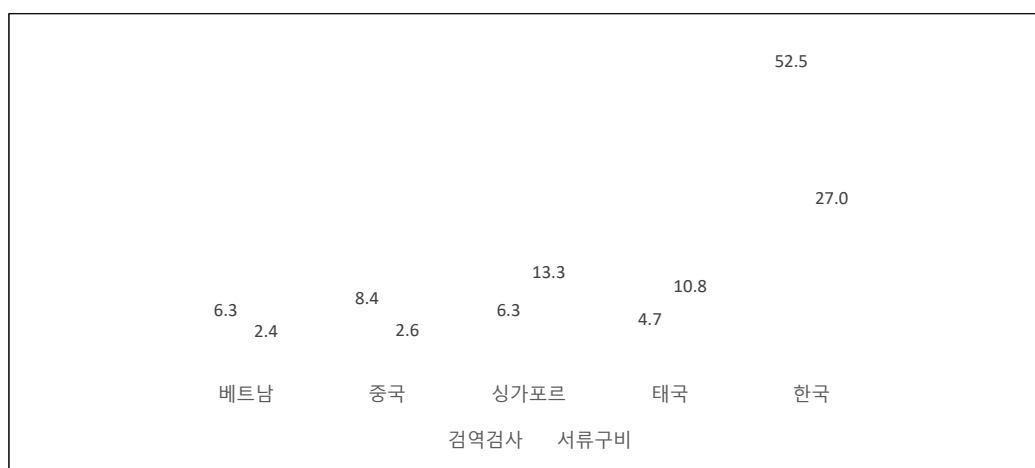
구분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태국		한국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수출	검역 검사	58	309	26	522	12	335	51	223	13	185
	서류 구비	50	139	21	85	2	37	11	97	1	11
수입	검역 검사	62	392	92	777	35	220	50	233	6	315
	서류 구비	76	183	66	171	3	40	4	43	1	27
교역환경 순위		93위		96위		41위		56위		32위	

자료: 「Doing Business 2017」 17.03.31 발간 토대로 저자 작성

○ 또한, 해당 국가들 간 수입 항목에서 시간당 비용(\$/hour)을 비교한 결과 검역검사의 경우 베트남이 6.3\$으로 나타났고 서류구비의 경우 2.4\$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다만, 절대적인 시간으로 비교한 결과 검역검사의 경우 베트남이 62시간으로 중국(92시간) 다음으로 오래 걸렸고, 서류구비의 경우 76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그림4-3> 「Doing Business 2017」에 따른 '수입'환경의 시간당 비용 비교



자료: 「Doing Business 2017」 17.03.31 발간 토대로 저자 작성

□ 베트남 비관세장벽 현황(2017. 05. 기준)

<표4-10> 아시아 주요 비관세장벽 국가 현황(2017. 5월 기준)

구분	베트남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반덤핑	1	13(2)	27(8)	8(3)	5(1)
세이프가드	4(1)	1(1)	5	4(1)	4
합계	5(1)	14(3)	32(8)	12(4)	9(1)

자료: 對韓 수입규제 월간동향_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3. 베트남의 법령 체계

- 베트남에서 품목별로 시행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이해를 위해서는 베트남 법령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베트남의 법령은 다음 <그림4-4>에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4-4> 베트남의 법령 체계



자료: 2017년 관세청 해외통관 설명회자료 참조

- 대표적인 관세법령 중 법률에는 관세법 (Luật Hải Quan)과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구성된다.
- 특히, 관세행정 관련된 중요한 실무사항은 재무부 감독 하에 관세청이 제정하는 각종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 또한 농수산물은 농업개발부, 우편물·소포는 우정통신부, 음반·책자는 문화정보부, 의약품·화장품은 보건부, 유해화학물질·FTA 특혜 원산지증명은 산업무역부, 중고기계·폐기물은 환경부 등에서 주요 수출입통관관련 법령을 고시한다.

제2절 유형(type)별 비관세 장벽

1. 분류기준 및 기준별 추이

□ WTO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베트남의 對세계 비관세조치의 개수는 2006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SPS와 TBT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2014년 이후 최근 3년간 비관세장벽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준다. 2016년에는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인 구제수단들의 사용도 눈에 띈다.

<표4-11> 베트남의 對세계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2016~2016년)

연도	SPS	TBT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 가드	수량 제한	저울관세 할당	계
2006							2	2
2007	2						2	4
2008	4	4					2	10
2009	16	9					2	27
2010	23	13					2	38
2011	28	18					2	48
2012	38	22			1		2	63
2013	51	36	4		1	14	10	116
2014	66	52	4		1		2	125
2015	73	78	4		3		2	160
2016	86	92	7		4		2	191

자료: WTO I-tip DB 자료가공. 수치는 발의 되거나 시행된 개수의 합계

- ERIA-UNCTAD에서는 2015년 특별 프로젝트로 아세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심층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해당보고서 보고된 2015년 베트남의 對 세계 비관세조치는 다음과 같다.

<표4-12> 2015년 베트남의 對세계 비관세조치 개수(UNCTAD)

코드	유형	비관세조치 개수	%
A	SPS	142	37.47
B	TBT	142	37.47
C	선적전 검사 및 기타	5	1.32
E	라이선스, 쿼터, 수량제한 등	9	2.37
F	가격통제 조치	7	1.85
G	금융조치	2	0.53
H	경쟁에 영향을 주는 조치	8	2.11
J	유통제한	1	0.26
P	수출관련 조치	63	16.62
종합		379	100.00

자료: ERIA-UNCTAD (2016), “Non-Tariff Measures in ASEAN”

- 앞선 WTO 자료에서와 같이 SPS와 TBT의 개수가 여타 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베트남은 수출관련 조치 유형의 비관세조치가 63건으로 전체의 16.62%를 차지하며 베트남 비관세조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 이는 베트남이 최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한 가공무역 발달기지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구조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베트남 현지의 투자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 TBT관련 법률 및 법령에는 68/2006/QH11(2006년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127/2007/ND-CP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조항의 구현 세부 법령)가 있다.

2. 조세제도

- 베트남의 조세규정 자체는 완성도가 높은 편이나 준법정신이 낮고 법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가. 베트남 주요세목에 따른 접근

- **[법인세(CIT)]** 정기의무로 법인세 정기신고 납부가 있으며 비정기의무로 은행계좌 등록 및 감가상각방법 등록이 있다.

- 정기의무: 정기신고 납부는 분기별 선납과 기말 신고납부로 이루어진다. 분기별 선납의 신고·납부 기한은 매분기별 익월 30일이내 이며 신고서 제출은 불필요하나 총 분기별 선납세액이 최종 법인세액보다 20%이상 적은 경우 지연이자 부과 가능하다. 기말 신고납부는 사업 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 비정기의무: 은행계좌 등록¹¹⁴⁾은 현지 신규 은행계좌 개설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감가상각방법 등록은 고정자산 감가상각 개시 전에 이루어지며 특정 법률서식 없이 세무서에 서면으로 사전통지 가능하다.
- 법인세율은 2013년분 25%, 2014~15년분 22%, 2016년분 20%로 인하되는 추세이나 법인세 인센티브 역시 줄어들고 있다.
 -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기존세율 28~50%에서 32~50%로 조정되었다.
 - 신설기업이 낙후지역에 위치하거나 economic zone 또는 high-tech zone에 위치하는 경우 적용받는 법인세 우대세율이 축소되었다.

114) 법인세 손금산입을 목적으로 현지에서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는 은행계좌 등록 필요

□ **[부가세(VAT)]**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품으로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금 생산,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는 용역, 베트남 에서 제조할 수 없는 기계 장치 등 일부 재화 및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¹¹⁵⁾.

○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월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일부재화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0%: 수출품 및 임가공수출, IT Software의 수출 등.

- 5%: 생활필수품, 서비스, 생수, 비료, 교육, 용지, 교과서, 음식물, 의약품, 의료용구 등

□ **[외국인 계약자세(FCT)]**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베트남에서 수익이 있는 외국 법인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2008년 12월 31일 134/2008/TT-BTC에 따라 최초 도입되었으며 현행시행규칙 FCT Circular 103/2014/TT-BTC는 2014년 10월 1일 이후에 적용되고 있다.

○ 도입취지 및 의의: 기존 외국인사업자에게 부과되던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당해 시행규칙을 통하여 외국인사업자의 납부절차를 단순 명료하게 재정비 한 데 의의가 있다¹¹⁶⁾.

○ 베트남 내 현지법인이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고 해외 송금할 경우에 FCT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거래상대방이 선택한 FCT 신고납부 방식에 따라 현지 법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전에 FCT 신고방식 및 부담주체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115) 베트남 생산가능 품목 확인: Circular No.04/2012/TT-BKHDT

116) 별도의 세목을 추가적으로 신설한 것은 아님

- 납부방식: 직접법(Direct method), 원천징수법(Withholding method), 혼합법(Hybrid method)있으며 외국인 계약자가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납부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설명한 것이다.

<표4-13> 외국인 계약자세(FTC) 납부 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신고 방법	직접법(Direct method)	원천징수법 (Withholding method)	혼합법 (Hybrid method)
장점	매입부가세 공제 가능	외국사업자를 대신하여 발주처에서 대금 지급 시 해당 FCT를 원천징수하므로 회계기록 및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감	직접법 보다 행정 부담이 덜함 (Simple VAS 사용) 매입 부가세에 공제 가능
단점	Full VAS 적용에 따른 행정 비용 발생 현지에 등록된 entity 설립 및 청산 절차 복잡	매입부가세 공제 불가(외국사업자 원가로 인식)	Simple VAS 도입 및 운용 관련 비용 부담 발생
실제 적용 사례	한국 사업자들의 경우, 많이 적용하지 않음	기계/설비만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없거나 제한적이며 베트남 발생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 선호함	베트남 내 매입부가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선호함 (EPC 사업 등)

자료: 2017년 Kotra 해외 비관세 장벽 대응 실무과정 참조

- **[개인소득세(ITT)]** 개인소득세 관련 사회연금번호 신청, 소득세 납세자 등록, 부양가족 등록, 개인소득세 정기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거주자는 5~35%, 비거주자는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나. 최신 베트남 세정동향

□ 제품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원자재 수책관리 신고서식 제출의무 폐지 (2015년 11월)

- 관련규정: MOF(재정부), OL16120/BTC-TCHQ, 2015년 11월 2일 공포
- 단, 수출가공기업(EPE), 임가공 수출업자, 자유무역구내 소재법인 등은 신고서식 제출의무 유지
- 베트남 세관 제품수출 시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및 면제관련 서류검사 강화 예정

□ 외자계기업 베트남 내 연락사무소 운영보고서 제출기한¹¹⁷⁾ 준수 필요 (2015년 12월)

- 관련규정: 산업통상부 지방청, Decree 72/2006/ND-CP, 위반 시 과태료

□ 세무당국, OECD BEPS Working Group 발족 (2016년 7월)

- 2016년 7월 11일 베트남 세무당국 내 OECD BEPS를 위한 Working Group 발족

□ 부가세 환급결정 세무조사 관리 강화 (2016년 8월)

- 국세청(본청)이 환급금을 이체하고 지방 국세청이 환급 결정 조사를 하는 이원화 체제 수립
- 부가세 환급결정 조사 시 유관부서(은행, 세관, 경찰청 등)와 연계한 고위험 부가세 탈루사례 집중점검 예정

□ 통관 후 세무조사 : 관세법(54/2014/QH) 제77조에 규정

- 실시 목적 : 수출입물품 화주, 통관 위임받은 자, 수출입 업체·개인

117) 다음연도 1월의 최종 영업일내

의 통관신고 정확성 및 진실성 확인

- 실시 사유 : 세액사기, 무역사기, 수출입 관리규정 위반 등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실시 제척기간 :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5년 (서류5년 보관), 조세법위반 시효 도과: 10년 소급 추정
- 실시 권한보유자 : 성급, 성 합동, 중앙직할시급 관세국장 및 관세총국장

<표4-14> 세무조사 및 가산세·지연이자 관련동향

항목	관련동향
세무조사	· 베트남 규정 모호 및 불분명한 해석 여지가 다수 → 특히, 지방국세청별로 동일 규정을 달리 해석 사례 多 · 최근 재정부(MOF)/국세청(GDT) 등 상위 기관이 엄격히 세법해석 및 적용 추세임에 주의 → 지방국세청 역시 고강도 세무조사 수행 예상 · 외자계 기업 위주로 공격적 과세 행태(동남아 특징) · 가산세/지연이자 등 징수 절차도 세무조사팀이 수행 · 주요 세무조사 수검 대상 - 대기업, 외투법인의 이전가격 영향으로 인한 결손법인 - 조세혜택 적용의 적정성, 로열티 등 원천징수 이슈 - 자동차 거래, 제약, 관광, 광고, 금 거래, 부동산, 전기, 석유, 통신, 광업 등의 분야
가산세/ 지연이자	· 가산세: 과소신고세액의 10%~20% (단, 조세포탈의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3배의 가산세 징수) → 조세포탈 수준은 각 세무조사팀이 사례별 검토 · 지연이자: 2015년 1월부터 세무조사에 의하여 적발된 미납부세금의 지연이자는 매일 0.05%(연 18.25%) 가산 · 동일 세목에 여러 종류 지연신고시 최고의 가산액 적용

자료: 2017년 Kotra 해외 비관세 장벽 대응 실무과정 참조

<그림4-5> 베트남 세무당국 조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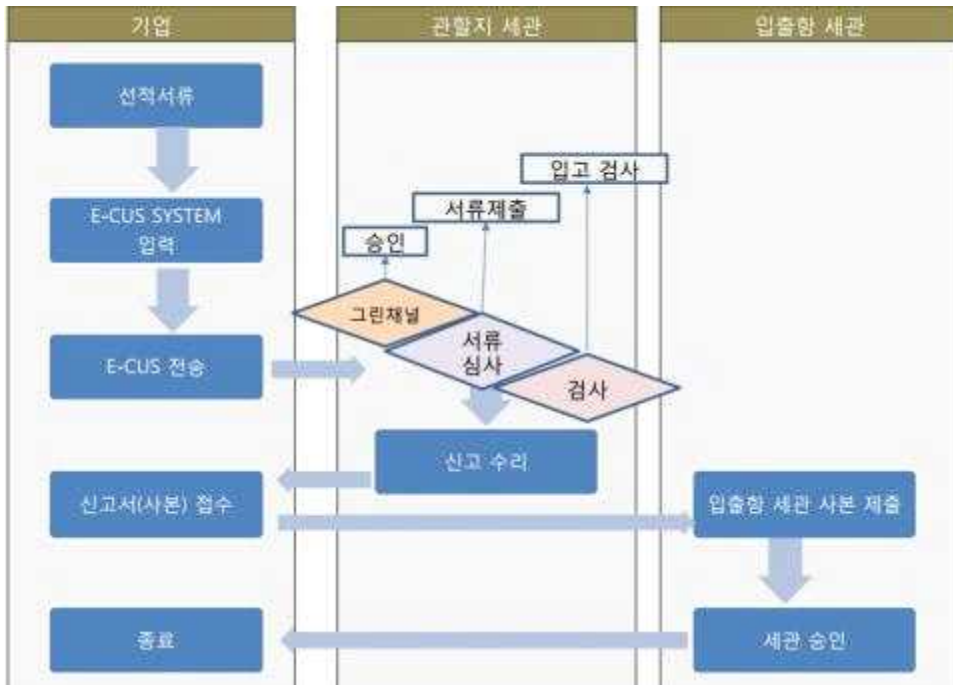


3. 통관절차

- 베트남 관세청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전자통관 시스템¹¹⁸⁾ 사용을 개시하였고 2020년까지 전국적인 E-Custom시스템 보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 베트남의 E-Custom 시스템 구축은 2011년 3월 통관체계 개발계획 승인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통관시스템 현대화, 절차 간소화, 투명화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수출입통관 전산화와 관련 E-Customs 시스템은 크게 자동화물승인 시스템(VNACCS: Vietnam Automated Cargo System)과 통관정보 DB시스템(NGS: Vietnam Customs Intelligent Database System) 두 가지로 분류된다.

118) E-CUS(VANCCS/VCIS)

<그림4-6> VNACCS 전자통관시스템 2014.4.1.개통



가. 베트남의 통관절차

□ (수입통관)

1. 물품 도착 및 수입 신고¹¹⁹⁾

- 수입물품이 입항지에 도착한 후 수입자는 물품에 대하여 상업적 계약에 의한 수입여부, 재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지 여부, 수출 물품 제조용 원재료의 수입 여부 등에 대해 수입 관련 증빙(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지 세관에 신고한다.

○ 구비서류

- 자동수입허가(Automatic Import Permit) 대상 물품은 수입 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119) 수입신고는 도착 후 30일 이내에 실시

받은 산업무역부는 5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행한다.

- 수입신고 할 때는 수입신고서, 수입계약서,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 (B/L, AWB)이 요구되며 수입 대상 물품에 따라 수입 허가, 라이선스(석유류), 원산지증명서, 면세허가(담배류) 등 통관에 필요한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육류 · 수산물 · 곡류 · 두류 · 동식물 수입 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고 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한다.
- 수입신고는 입항지 세관에 종이서류(Document) 제출 또는 e-Customs를 통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2. 심사 및 검사

- 세관 당국은 수입신고자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에 따라 서류 및 물품 검사를 실시한다.
-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해 세관은 신고 수리 여부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 전자신고(E-Customs)에 의한 신고 수리의 경우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전자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한다.
 - Green Flow(검사면제): 전자 신고(E-Customs)에 신고 된 내용을 그대로 수리하는 대상으로 약 56%를 차지한다.
 - Yellow Flow(전산검사, 서류검사): 수리 전 신고 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서면 심사하는 대상으로 약 38%를 차지한다.
 - Red Flow(서류검사, 실물검사): 수리 전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서면 심사와, 물품 검사 또한 실시하는 대상으로 약 6%를 차지한다.

3. 관세 납부

- 수입신고 수리 후 규정에 따라 관세 등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세 등은 물품 반출 전 즉시 납부 대상, 반출 후 납부 대상(납부 유예)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 E-customs를 통해서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한 경우는 월별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물품 반출

- 반출 전후 관세납부 대상에 따라 각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 반출이 허용된다.

5. (필요 시) 자진 수정신고

-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부족세액 및 지연이자 자진납부가 가능하다.
- 만약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도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부족세액 및 지연벌금 자진납부가 필요하다.
 - 관세당국의 사후조사에 의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음

□ (수출통관)

1. 수출 신고

- 구비서류
 - 수출신고 할 때는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허가서(필요한 경우), 면세 신청 및 면세대상 입증서류(면세 물품의 경우)가 요구된다.
- 수출신고는 출항지 세관에 종이서류(Document) 제출 또는 E-Customs를 통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2. 심사 및 검사

- 세관 당국은 수출신고자로부터 수출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에 따라 서류 및 물품 검사를 실시한다.
- 수출신고 된 물품에 대해 세관은 신고 수리 여부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 전자신고(E-Customs)에 의한 신고 수리의 경우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전자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한다.
 - Green Flow(검사면제): 전자 신고(E-Customs)에 신고 된 내용을 그대로 수리하는 대상으로 약 85%를 차지한다.
 - Yellow Flow(서류검사): 수리 전 신고 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서면 심사하는 대상으로 약 10%를 차지한다.
 - Red Flow(실물검사): 수리 전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서면 심사하고, 물품 검사 또한 실시하는 대상으로 약 5%를 차지한다.

3. 관세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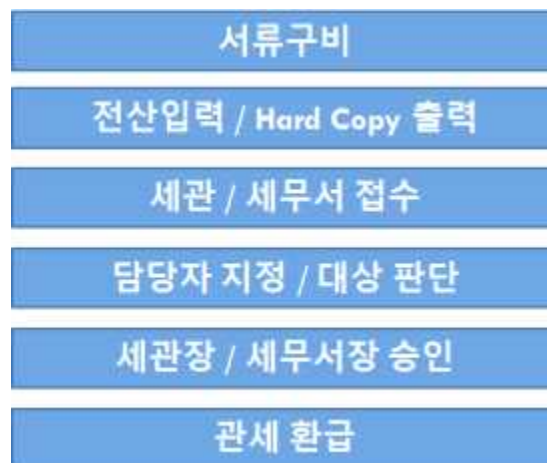
- 수출세 납부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세를 납부한다.
 - 수출세 납부대상은 원유(10%), 석재(30%), 석탄(10%), 원목(10%), 철광석(40%) 등 총 120여 가지 품목이다.

4. 선적

5. 관세 환급 및 정산절차

- (관세 환급) 수출 후 관세 환급 절차는 다음의 <그림4-7>과 같다.

<그림4-7> 관세 환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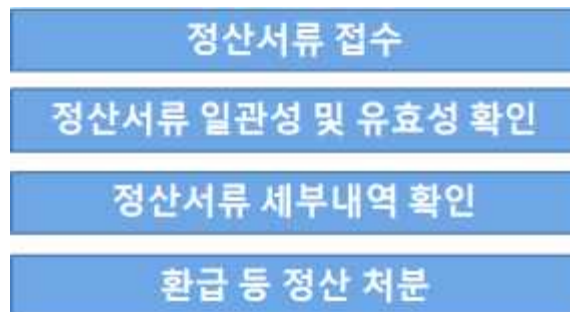


자료: 2017년 관세청 해외통관 설명회자료 참조

- 관세환급 신청 시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소요량정산서, 대급결제 확인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환급대상 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 특별징수세, 부가가치세이며 관세는 관세국에 부가가치세는 국세국에 신청한다.
- (정산절차) 한국에 없는 통관절차이나, 베트남에서는 필수절차로 시행 규칙 38/TT/BTC 에 규정되어 있다.

- 원료수입, 제조, 수출통관 후 수입신고서 정산이 이루어지며 원료 수입절차 진행한 세관지국에서 실시한다.
- 경제특구, 보세구역內 생산업체의 경우 정산보고는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기간 내의 수출·수입 물품, 반입·반출·재고 현황에 대해 세관에 보고한다. 관세총국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 수출업체에 원자재 공급, 일시 수출입, 임가공 수출입, 국내 보세공장 간 거래,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설비·기계·원재료·반제품 수입, 보세구역內 생산업체, 환급신청, 면세, 관세유예 등의 경우 해당 정산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산 의무가 있다.
- 정산절차(Liquidation)는 다음의 <그림4-8>과 같다.

<그림4-8> 정산절차



자료: 2017년 관세청 해외통관 설명회자료 참조

- 정산서류 접수 시 신청서, 정산대상 수입신고서 및 수출신고서, 납세 입증 서류, 계약서류, 기준소요량 등록 명세서, 수입-수출-재고표, 세액계산 보고 등을 구비하여 수출입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관세지국에 서류를 접수하고 관세지국 제출하여, 확인 받은 후 보관한다.
- 정산서류 일관성 및 유효성 확인은 보통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4 근무일내 완료된다.

- 정산서류 세부내역 확인 단계에서는 수출입 신고서 및 표준수량을 기업의 제출 서류와 대조, 확인하는 작업과 정산 명세표상의 계산결과에 대한 확인 그리고 세액계산 보고 서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
- 확인되어 문제 없으면, 관련서류에 “정산되었음”, “환급되었음”, 등 날인을 통해 환급 등 정산 처분이 이루어진다.

나. 베트남 수출입 통관의 특수성

- 베트남 통관은 관할지 세관과 입항지 세관 2회에 걸쳐 통관이 진행된다.
 - 단, 내수 판매 완제품, 무상수입물품, 샘플 등은 입항지 통관만 진행한다.
-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 Enterprise, EP기업) 제도, 관세유예 제도 등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보세공장 제도가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지만 상기의 제도들이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EP기업]** EP기업은 수출가공구 內 공업단지 또는 경제특구에 설립되어 생산품의 전부를 수출하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수출물품의 수출관세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단, 정산(Liquidation)절차 진행 및 Annual Report(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보고) 제출 의무가 있다.
 - EP기업의 재고는 EPZ¹²⁰⁾, IZ¹²¹⁾, EZ¹²²⁾ 등의 임대보세창고에 장치가 가능하나 제조가공은 금지된다. 면세 후 정기적으로 재고정산이 이루어지며 관세청의 실사가 가능하다.

120) Export Processing Zone, 수출가공구

121) 300여개의 Industry Zone, 산업공단

122) 15여개의 Economic Zone, 경제특구

- 일반적으로 EP기업은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수입한 원재료 등에 대해 통관절차를 진행(관세, 부가세 면세)한다. 단, 수입된 원재료는 수출물품의 제조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입출고 대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동일한 EPZ(Export Processing Zone) 내 EP기업 간 거래되는 물품 또는 사무용품이나 식료품, 소모품
 - 내수기업 → EP기업(내수기업 수출통관)/ EP기업 → 내수기업(내수기업 수입통관)
 - EP 그룹(본·지사, 계열사)간 거래 (단, 독립된 회계처리)
 - 수리, 분류, 포장, 재포장 작업을 위해 EP 기업이 입·출고하는 물품

<표4-15> EP기업 및 내수기업 간 거래에 있어 통관 진행여부

형태	통관 진행여부
EP기업 → EP기업	통관이 불필요하며 입출고 대장 관리만 요구
내수기업 → EP기업 ¹²³⁾	재화 및 용역을 내수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내수기업 수출통관 진행
EP기업 → 내수기업	내수기업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나 FTA 적용은 불가

- 또한 EP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Fence System, Gate와 출입문으로 외부 영토와 분리
 - 세관 및 관련 각 직능 기관의 감사가 가능하여야 함
 - EPE 기업은 베트남 내 유통이 아닌 해외 수출을 하여야 함

123) Domestic Export에 해당

□ **[관세유예제도]** 임가공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가공 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건부 관세면제(유예)를 적용한다.

- 2016년 9월 관련제도의 대폭 개정에 따라 수출목적 수입자재에 대해서 조건부 관세면제(유예)를 적용하였다.

□ 수출관세 부과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HS 코드 98류**」를 운용중이다.

- 특정 원재료의 관세율을 통한 관리를 위해 베트남 미생산 물품이나 장려산업의 부품 수입 등에는 혜택을 주고,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금속에 대해서는 0~40%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 해당 98류에는 4단위 41개의 HS 코드가 있다.

□ 환경오염 방지를 이유로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016년 7월 중고기계 수입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기존’ 5년 이내 잔존가치 80% 이상 → ‘변경’ 10년 이내 국가기술표준규정¹²⁴⁾에 의거해 생산된 제품

□ **[임가공수출]** 수입 전 임가공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가공 계약 품목과 수입예정 원재료를 관세청시스템(E-Customs)에 등록하여야 한다.

- EP기업과 같이 별도의 자격지위 득할 필요 없으며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무상으로 원부자재를 들여온다.

- 그러나 임가공비와 왕복운임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¹²⁵⁾

□ **[가공수출]** 수입 전 가공수출기업으로 등록한다.

- 수출목적으로 원재료를 유상수입 하며 수입 시 관세, 부가가치세를 유예 받거나 납부한 경우 수출 시 납부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24) 국가 기술 규정(QCVN), 베트남 기준(TCVN) 또는 G7 국가 표준에 의거하여 제조된 것으로 관련 제품 시험성적서나 제조자 확인서 구비해야 한다.

125) 한-베 FTA 적용 시 특혜관세 적용가능. 부가가치세는 과세

□ 베트남의 AEO(우대기업)제도

○ 관세당국이 인정한 성실한 무역업체에 대해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베트남은 DUNT라는 이름으로 2011년 5월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7년 6월 기준 베트남 내 총 60개¹²⁶⁾ 기업 공인되었다.

○ AEO 요건 :

- 최근 2년간 관세 및 기타 세법 규정을 준수
- 회계 관리 및 감사와 관련 규정 준수
- 내부통제체계 및 전산납부
- 직전 2년간 거래 실적 기준 - 연간 1억 달러(USD) 이상 수출입 실적 또는 연간 4천만 달러(USD) 이상 수출실적 보유 제조기업, 연간 3천만 달러 이상 농산물 수출실적 보유기업, 연간 2만 건 이상 신고실적 보유 통관대행업체

○ AEO 혜택 :

- 통관 시 서류 및 물품 검사의 면제로 신속통관 가능(불충분한 서류로도 30일 이내 보완조건으로 통관가능)
- 세관 통관절차에 있어 우선권 부여
- 관세 환급 신청 시 ‘先환급 後검사’ 가능
-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등으로부터 간접수입 시 ‘先수입 後신고’ 가능
- 통관 후 사후심사 면제(단, 3년에 1회 심사)
- 최대 40일까지 관세납부 유예(익월 10일까지 납부)

126) 한국기업 11개, 일본기업 13개 등

4. 원산지증명

□ FTA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 불일치 문제

- 한국에서 수출통관시의 HS 코드와 베트남에서의 수입통관시의 HS 코드가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수입국인 베트남이 기준이 된다.¹²⁷⁾
- 이를 예방하기 위해 품목분류사전심사(관세법 54/2014/QH 제28조)를 신청하거나 관련물품의 수입통관 이력을 살펴볼 수 있다.

□ FTA 사후적용의 어려움

- **[FTA 사후적용]** 수입통관 당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MFN 관세를 납부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추후 수입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FTA 사후적용을 신청함으로써 협정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다.
- 한-베트남 FTA 협정문에서는 수입일로부터 1년 간 사후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주로 FTA 사후적용(주로 한-아세안 FTA)을 통해 관세 환급을 받았으나,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연 처리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해왔고, 베트남 정부 역시 과거부터 FTA 사후적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 2016년 10월 4일 베트남 재무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FTA 사후적용 관련 지침은 사후적용 기한을 기존보다 단축시켰다. 표는 현재 적용되는 협정별 사후적용 규정이며 한-베트남 FTA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후 적용기간이 30일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127) 품목분류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 사용하는 AHTN 8단위 분류방식(HS 코드 ****.**.*) 사용

<표4-16> 베트남의 협정별 사후적용 규정

FTA	유효 기간	사후적용 가능여부	사후적용 기한	증명서 양식	비고
아세안 (AFTA)	1년	○	30일	Form D	사후적용 명시
중-아세안 (ACFTA)	1년	○	30일	Form E	사후적용 명시
한-아세안 (AKFTA)	6개월	○	30일	Form AK	사후적용 명시
일-아세안 (AJFTA)	1년	○	30일	Form AJ	사후적용 명시
아세안-호주-뉴질랜드 (AANZFTA)	12개월	○	30일	Form AANZ	사후적용 명시
인도-아세안 (AIFTA)	12개월	○	30일	Form Ai	사후적용 명시
일-베트남 (VJFTA)	1년	○	30일	Form VJ	사후적용 명시
한-베트남 (VKFTA)	1년	○	1년	Form VK	사후적용 명시
베트남-유라시아연합 (EAEU-VN FTA)	1년	○	30일	Form EAV	사후적용 명시

참고: Notice No. 13959/BTC-TCHQ

□ FTA 원산지증명서의 불인정 문제

- 서명의 진위여부를 이유로 정상적으로 발행 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5. 이전가격제도

□ 「이전가격과세제도」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 또는 거래이윤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거래가격(‘정상가격’) 또는 거래이윤(‘정상이윤’)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그 차이만큼의 거래가격이나 거래이윤을 경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이다¹²⁸⁾. 최근 베트남 현지기업들에게 비관세장벽관련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 베트남 정부는 2005년 말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Circular No. 117/2005/TT-BTC(Circular No. 117)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였고, 2010.7.6. 기존의 Circular No. 117을 대체하는 Circular No 66/2010/TT-BTC(Circular No. 66)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 Circular No. 66에서 이전가격거래로 규정을 적용 받는 특수관계거래는 지분을 20% 이상인 법인간의 거래로 특수관계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특수관계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관련 관계회사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회사거래명세서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하고 있다가 과세관청이 요구할 경우 30 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회사의 이전가격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전가격에 대한 소득조정으로 인해 법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Circular No. 66에 따른 협력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간주될 경우 소득 조정에 따른 법인세 및 가산세 외에도 경정세액의 100~300%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128) 198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유럽 등에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한국도 1996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을 제정하여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 베트남 이전가격과세동향

- 베트남 정부는 2015년 7월 베트남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내에 ‘이전가격전문조사부서’를 신설하였고 지방¹²⁹⁾에도 동일한 부서가 신설되었다. 또한, 2016년 3월 GDT 내에 ‘위험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는데, 이 부서에서는 각종 세무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이전가격전문조사부서의 조사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한편, 2016년 5월 베트남 정부는 월 정무회의에서 이전가격조사 강화 지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전가격조사가 강화된 상황이다. 정무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이전가격검토 대상은 건설, 수출, 의류·봉제·신발 등 제조업 그리고 지속적인 손실에 불구하고 사업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 등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위험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과거에 비해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제시하는 정상이익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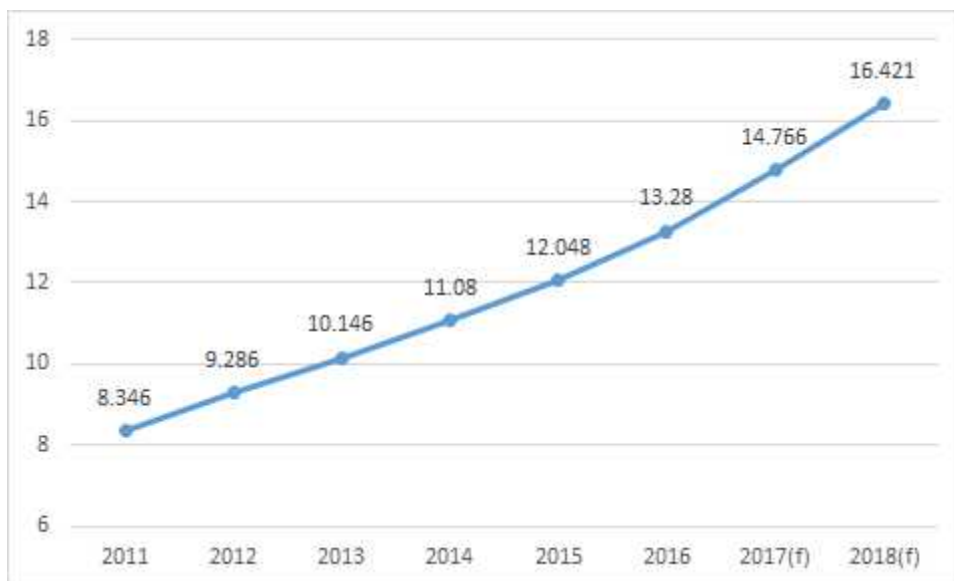
129) 하노이, 호치민, 빈증, 동나이

제3절 품목(product)별 비관세 장벽

1. 의료기기

- 베트남은 많은 인구와 보건분야 지출 확대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국가이며, 실제로 베트남의 보건분야 지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4-9> 베트남의 보건분야 지출 및 예상추이



자료: KOTRA, BMI

-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의료기기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 유지를 고려해 베트남 내 의료기기 수입에 있어 높은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의료기기 부문 베트남 수입규정에 따르면, HS 코드 9018~9022에 해당하는 모든 의료기기들은 중고 제품 수입이 불가하다. 새 제품을 수입

하는 경우,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의료기기·보건국(DMEHW)의 정부관리 대상에 속하게 된다.

- 특히 2011년 6월 21일자 보건부 시행령 Circular 20/2011/TT-BYT은 의료기기의 직접 수입, 품질, 수입절차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의료기기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투자등록증명서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전문 인력)** 위의 기본 요구조건 외에도 여러 비관세 장벽들이 존재하는데, 전문인력 부문에서 수입업체의 기술담당자는 반드시 생물전자학(Biomedical electronics), 생물물리학(Biomedical physics)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유자이거나 혹은 기술학(technical), 의학(medicine), 약학(pharmacy)을 전공한 학사학위자로서 수입 의료기기와 관련한 해외 혹은 현지 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증을 소유해야 한다.

- 만약 수입 의료기기와 관련해 합법적 의료 설립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기술업무 혹은 운영업무 경험이 있다면 이 교육 수료증은 필요치 않고, 또한 수입업체는 수입 의료기기의 설치, 수리, 유지를 가이드할 수 있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 해외 직구 상품들은 원래 통관신고서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상품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통관이 되고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 **(인프라 시설)** 기업은 의료기기를 적절하게 보존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보유해야 하며, 이 시설들은 제품의 파손·폭발·화재 방지 및 빛·온도·습도 등 기계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품질)** 해외의 적격기관이 발행한 품질 인증서가 베트남에서 인정되며,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다음의 서류들을 소유해야 한다.

- ① 해외 제조업체의 ISO 13485 혹은 ISO 9001 인증 사본 혹은 공증본
- ② 제조국 발행의 자유판매증명서(CFS) 혹은 미국 식품의약국(US FDA) 발행의 자유판매증명서 혹은 CE 마크 인증서

□ **(수입절차)** 일부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수입 라이선스(유효기간 1년)를 제품 선적 이전에 획득해야 한다.

-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기기의 수입 역시 수입 라이선스 획득이 요구된다. 이 경우 수입이 이행되기 이전에 보건부 과학기술위원회의 임상 실험결과 평가 및 감정도 요구된다.

□ **(수입 라이선스)** 수입업자들은 수입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 의료기기 · 보건국(DMEHW)에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① 사업자등록증 혹은 투자등록증 사본 혹은 공증본
- ② 해외 제조업체/해외의 합법적 유통업자가 현지 수입업자의 베트남 내 수입 및 유통을 위해 발행한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원본 혹은 사본 혹은 공증본
- ③ 수입 의료기기 카탈로그
- ④ 베트남어로 기술된 의료기기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

□ **(품질 의무검사)** 일부 의료기기들은 베트남 보건부의 수입 라이선스 획득 외에도 제품 도착 시 품질의무검사가 요구된다.

- 수입업자는 제품 도착 시 보건부 산하 의료기기·설비연구소(NIMEC)에 품질 검사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품질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완료된다.
- 품질 검사 대상에 속하는 의료기기 목록은 2006년 3월 7일 자 Decision 50/2006/QD-TTg에 명시됐으며, 아래 표 14개 종류의 의료장비가 이에 해당된다.

<표4-17> 품질 검사 대상 의료장비(신품) 목록

1. X선 진단 장비	8. 마취 장치
2. 의료용 주입 장비	9. 의료용 폐 호흡기
3. X선 차단 물질 - 납 고무 시트	10. 유독성 물질 흡수 컵보드
4. 소독 전기 오븐	11. 미생물 배양 캐비닛
5. 소독 압력솔	12. 수술용 조명등
6. 환자 호흡 모니터링을 위한 산소 모니터	13. 침술 장치
7. 의료용 산소 응축기	14. 범용 수술대

2. 중고기계

- 베트남은 기존의 중고 기계류 수입 시행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모호해 외투기업들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수입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개정된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세부 지침이 추가로 발표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본 시행규칙에서는 중고기계 수입 요건에 적용받지 않는 예외 상황을 명시했지만, 추가 세부 규정이 없고 예외 범위가 불명확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KOTRA 무역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 또한, 수입요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음. 본 시행규칙에 따르면, 베트남 내 중고기계 수입 시 베트남 표준규정(QCVN, TCVN)을 따른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표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 베트남 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검사기관 중 하나인 QUATEST3(호치민시 소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고기계 관련 검사 접수건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 이는 베트남 세관당국 및 수입자 모두 해당 시행규칙 적용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즉 베트남 세관당국에서 해당 건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 세부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통관을 연기시킬 가능성이 있고,
- 과거에도 신규 시행규칙 시행 초기에는 이러한 혼란이 야기돼 왔었다. 따라서 수입자 그리고 물류업체(통관대행업체) 역시 이러한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는 긴급 수입이 요구되는 중고 기계류의 경우, 신규 기계로 허위 신고하는 편법을 통해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신규 시행규칙 적용을 통한 수입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 시행규칙(Circular 23) 내 조항 6에서 중고기계 수입요건(제조연한, 표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증액 투자 시 중고기계 수입은 상기의 일반 중고기계 수입에 적용되는 수입요건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본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투자등록증(IRC) 내 수입 예정 중고 기계·설비 리스트가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등록증 발급 시, 신속한 투자등록 완료를 위해 기계·장비 리스트까지 포함시키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미 발행된 투자등록증(IRC)을 정정하는 절차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신규 투자 계획단계에서부터 중고기계·설비 수입 목록의 첨부이 요구된다.

□ (참고) 중고기계류 수입 관련 신규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중고기계 수입을 위한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에서는 적용대상 품목을 HS 코드 제84류, 제85류로 하며, 제조연한 10년 이내 및 제조표준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다.

<표4-18> 베트남의 중고기계 수입요건 및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대상물품	HS 84, 85류 해당 중고기계와 그 부속품(예비품 포함)
수입요건	① 제조년한 10년 이내인 중고기계(베트남 수입일 기준) ② 제조표준 기준부합-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과 관련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혹은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제출서류	제조년월 및 수입기계의 제조표준의 증명으로 다음 중 하나 ① 해외 제조업체가 발행한 인증서 ② 관할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인증서

3. 착색/도금 강판

□ 최근 베트남은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고, 착색강판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결정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2017년 3월 30일, 산업무역부는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고(Decision No.1105/QD-BCT), 2017년 5월 31일에는 수입 착색강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적용을 최종 확정하는 판정문(Decision No.1931/QD-BCT)을 발표했다.

○ **(착색강판)**수입 착색강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 발효일인 2017년 6월 15일부터 3년간 수입 착색강판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의 수입제한조치가 시행되었다.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최종 판정문을 통해 국가·영토별 착색강판 수입할당량을 공표했으며, 할당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0%, 할당 외 수입물량(할당량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는 19%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적용기로 결정하였다.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조항을 근거로 수입할당량, 즉 특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착색강판 수입량을 원산지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표4-19> 베트남의 원산지별 수입할당량 배정

구분	중국	한국	대만	기타 국가영토	특별관세 비적용수입 총량	할당 외 관세율*
1년차 2017.6.15.~ 2018.6.14.	323,120	34,451	14,428	8,680	380,679	19.00%
2년차 2018.6.15.~ 2019.6.14.	355,432	37,897	15,871	9,547	418,747	19.00%
3년차 2019.6.15.~ 2020.6.14.	390,976	41,686	17,458	10,502	460,622	19.00%
4년차 2020.6.15.~	0	0	0	0	0	0.00%

주 : 할당 외 관세율(outside tariff quota rate): 관세할당 초과 수입분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자료 : KOTRA 베트남무역관

-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15일 후부터 발생함. 즉, 최종판정 관세율은 오는 4월 14일(베트남 세관당국에서의 수입통관 시점 기준)부터 적용되며 5년간 적용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관련 법규 규정에 의거해 부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C/O)상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 홍콩 또는 한국으로 기재돼 있으며, 물품 거래 계약서상의 수출기업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기업들(생산·수출 기업 또는 거래 기업들) 중 한 곳과 일치할 경우, 세관당국은 생산자 품질검사증명서(Mill-test Certificate) 또는

제조사명을 입증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이하 ‘제조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 ① 제조사증명서상의 제조사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기업들(생산·수출 기업 또는 거래 기업들) 중 한 곳과 일치할 경우, 해당기업에 판정된 관세율이 적용되고,
- ② 제조사증명서상의 제조사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기업들(생산·수출 기업 또는 거래 기업들) 중 한 곳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중국 기업’ 또는 ‘기타 한국 기업’에 판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중국 원산지 물품 38.34%, 한국 원산지 물품 19.00%).
- ③ 수입업자가 제조사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②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세율이 적용된다.
- 수입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정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최고 반덤핑관세율(38.34%)이 적용

4. HS 코드별 비관세장벽

□ 본 장에서는 앞서 중국의 HS 코드별 비관세장벽 조사내용과 유사하게 다음의 세 가지 조건 『① 산업별(MTI 3단위 기준) ② 2016년 기준 우리기업의 베트남 수출실적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③ 관련 HS코드에 해당하는 비관세장벽이 Unctad ERIA에 보고된 경우』에 부합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해당품목들을 HS코드 별로 분류한 뒤 이와 관련된 품목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정리·체계화 하였다. 한·베트남 FTA대상 품목의 경우 해당 세 번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 : Products Specific Rules)을 제시하여 우리기업들이 수출시 FTA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다음은 산업별·품목별 비관세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다.¹³⁰⁾

130) 해당조사는 여러 정보를 조사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HS연계 등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근거규정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표4-20> 품목별비관세장벽: 1. 곡실류 (MTI 3단위: 011)_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011 곡실류	배	신선한 것으로 한정	080830	08083000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4,961	Quả lê	완전 생산 기준
관련법령		주요내용			
발효일					
규제기관					
55/2010/QH12 2011-07-01 의회		2010 년 식품안전법 (SPS, TBT) ¹³¹⁾			
38/2012/ND-CP 2012-06-11 정부		2010년 식품안전법 구현 세부 법령 (SPS, TBT)			
05/2007/QH12 2008-07-01 의회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132/2008/ND-CP 2009-02-01 정부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가이드			
26/2012/TT-BKHCN 2013-01-27 과학 기술부		과학기술부장관이 발행 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주 검사를 규정			
69/2010/ND-CP 2010-08-10 정부		유전자 변형 생물체, 유전자 표본 및 유전자 변형 생물체(이하 GMO) 에 대한 생물 안전성에 관한 법령 (SPS)			
108/2011/ND-CP 2012-01-15 정부		GMO에 관한 법령 69/2010/ND-CP를 개정하는 법령			
21/2012/TT-BKHCN 2013-01-04 과학 기술부		GMO와 관련된 연구 개발 기술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기관의 생물 안전성을 규제			
02/2014/TT-BNNPTNT 2014-03-10 농업 및 농촌개발부		농무부 장관이 발급 한 식품 및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식물의 허가증서 발행 및 허가 철회 절차를 규정 (SPS)			
06/2015/TT-BNNPTNT 2015-03-31 농업 및 농촌개발부		02/2014/TT-BNNPTNT 제 18 조 제 2 항 개정, 2016년 3월10일까지 유전자 변형 식품 및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 식물 인증서 제출의무 규정			
05/2012/TT-BYT 2012-01-09 보건부		보건부에서 발행한 식품의 미생물 오염에 관한 국립 기술 규정에 관 한 시행령 (SPS)			
41/2016/TT-BYT 2017-01-01 보건부		위험 그룹 및 생태학적 안전성 평가 시험에 의한 미생물학적 질병 목 록 공개			
46/2007/QD-BYT		보건부장관이 발행 한 식품의 생물학적 및 화학적 오염의 최대한도를			

	규제하는 결정
2008-09-18 보건부	
QCVN8-3:2012/BYT 2012-03-01 보건부	식품의 미생물 오염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 식품 중 비료 감염
12/2015/TT-BNNPTNT 2015-05-05	수입 된 식품의 식품 안전 검사 안내 (SPS, TBT)
농업 및 농촌개발부	단, 11/2017/TT-BNNPTNT : 12/2015/TT-BNNPTNT 개정 2796/QD-BNN-QLCL : 12/2015/TT-BNNPTNT 제2항 15조 중지
2219/GSQL-GQ1 2017-09-22 세관 감독 및 관리 부서	수입 식품의 식품 안전 검사에 관한 2017년 관보
08/2016/TT-BNNPTNT 2016-07-15 농업 및 농촌개발부	농림 수산 식품의 감독을 규제하는 시행령
05/2007/TT-BYT 2008-09-06 보건부	수입 식품의 질,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주정부 검사 기관 지정을 위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 한 시행령
58/2014/TT-BCT 2014-02-06 산업무역부	식품 안전 자격 인증서 발급 및 철회를 규정
125/QD-BYT 2015-01-16 보건부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상태 검사를 규정 (SPS)
805/QD-BYT 2016-03-09 보건부	수입 식품 및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상태 검사를 규정 한 52/2015/TT-BYT의 행정 절차를 공표하는 결정
1971/QD-BYT 2014-06-04 보건부	수입 식품 안전성에 관한 주 검사에 관한 결정
1380/QD-BCT 2011-03-25 산업 및 무역부	수입 제한 품목 목록에 관한 결정 (OTH)
17/2011/TT-BYT 2011-05-17 보건부	식품의 방사성 오염 수준을 규제하는 시행규칙 (SPS)
06/2007/CT-TTG 2007-04-23 국무총리	식품 위생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지침 (SPS)
19/2012/TT-BYT 2012-12-25 보건부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정 준수에 관한 발표 안내 (SPS)
41/2013/QH13 2015-01-01 의회	2013년 식물 보호 및 검역법 (SPS)
35/2014/TT-BNNPTNT 2015-01-01 농업 및 농촌 개발부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장관이 발행 한 베트남 식물 검역 대상 목록 (SPS)

58/2014/TT-BCT 2015-02-06 산업무역부	식품 안전 자격 인증서 발급 및 철회를 규정
08/2016/TT-BNNPTNT 2016-07-15 농업 및 농촌개발부	농림 수산 식품의 감독을 규제하는 시행령
41/2013/QH13 2015-01-01 의회	식물 보호 및 격리에 관한 법률 (EXP)
30/2014/TT-BNNPTNT 2015-01-01 농업 및 농촌개발부	베트남에 수입하기 전에 위험을 미리 유발할 수 있는 식물의 품질 목록
63/2010/TT-BNNPTNT 2010-12-15 농업 및 농촌개발부	수출입 제품에 대한 무료 유통 증명서 발행 안내 (TBT)
10/2010/QĐ-TTg 2010-05-01 국무총리	수출 및 수입 한 제품의 무료 유통 증서를 규제

<표4-21> 품목별비관세장벽: 2. 산식물 (MTI 3단위: 012)_채소(버섯)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012 산식물	그 밖의 채소 (팽이버섯, 큰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영지버섯 등)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070959	7095990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1,695	Loại khác	완전 생산 기준
관련법령		주요내용			
발효일					
규제기관					
55/2010/QH12 2011-07-01 의회		2010 년 식품안전법 (SPS, TBT)			
38/2012/ND-CP 2012-06-11 정부		2010년 식품안전법 구현 세부 법령 (SPS, TBT)			
05/2007/QH12 2008-07-01 의회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132/2008/ND-CP 2009-02-01 정부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가이드			
26/2012/TT-BKHCN 2013-01-27		과학기술부장관이 발행 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주 검사를 규정			

131) SPS, TBT 등 비관세장벽 유형은 Unctad ERIA에 보고된 분류기준을 따랐다.

과학 기술부	
69/2010/ND-CP 2010-08-10 정부	유전자 변형 생물체, 유전자 표본 및 유전자 변형 생물체(이하 GMO)에 대한 생물 안전성에 관한 법령 (SPS)
108/2011/ND-CP 2012-01-15 정부	GMO에 관한 법령 69/2010/ND-CP를 개정하는 법령
21/2012/TT-BKHCN 2013-01-04 과학 기술부	GMO와 관련된 연구 개발 기술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기관의 생물 안전성을 규제
02/2014/TT-BNNPTNT 2014-03-10 농업 및 농촌개발부	농무부 장관이 발급 한 식품 및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식물의 허가증서 발행 및 허가 철회 절차를 규정 (SPS)
06/2015/TT-BNNPTNT 2015-03-31 농업 및 농촌개발부	02/2014/TT-BNNPTNT 제 18 조 제 2 항 개정, 2016년 3월10일까지 유전자 변형 식품 및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 식물 인증서 제출의무 규정
12/2015/TT-BNNPTNT 2015-05-05 농업 및 농촌개발부	수입 된 식품의 식품 안전 검사 안내 (SPS, TBT) 단, 11/2017/TT-BNNPTNT : 12/2015/TT-BNNPTNT 개정 2796/QD-BNN-QLCL : 12/2015/TT-BNNPTNT 제2항 15조 중지
2219/GSQL-GQ1 2017-09-22 세관 감독 및 관리 부서	수입 식품의 식품 안전 검사에 관한 2017년 관보
08/2016/TT-BNNPTNT 2016-07-15 농업 및 농촌개발부	농림 수산 식품의 감독을 규제하는 시행령
05/2007/TT-BYT 2008-09-06 보건부	수입 식품의 질,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주정부 검사 기관 지정을 위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 한 시행령
58/2014/TT-BCT 2014-02-06 산업무역부	식품 안전 자격 인증서 발급 및 철회를 규정
125/QD-BYT 2015-01-16 보건부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상태 검사를 규정 (SPS)
805/QD-BYT 2016-03-09 보건부	수입 식품 및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상태 검사를 규정 한 52/2015/TT-BYT의 행정 절차를 공표하는 결정
1971/QD-BYT 2014-06-04 보건부	수입 식품 안전성에 관한 주 검사에 관한 결정
1380/QD-BCT 2011-03-25 산업 및 무역부	수입 제한 품목 목록에 관한 결정 (OTH)
17/2011/TT-BYT 2011-05-17 보건부	식품의 방사성 오염 수준을 규제하는 시행규칙 (SPS)
06/2007/CT-TTG 2007-04-23 국무총리	식품 위생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지침 (SPS)

19/2012/TT-BYT 2012-12-25 보건부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정 준수에 관한 발표 안내 (SPS)
33/2014/TT-BNNPTNT 2015-01-01 농업 및 농촌개발부	검역 대상 품목의 수입, 수출, 운송 및 수입을 위한 식물 검역의 순서와 절차를 규정 (SPS, EXP)
36/2014/TT-BNNPTNT 2015-01-01 농업 및 농촌개발부	식물에 대한 해충 위험 분석 과정에 관한 시행 규칙
41/2013/QH13 2015-01-01 의회	2013년 식물 보호 및 검역법 (SPS)
35/2014/TT-BNNPTNT 2015-01-01 농업 및 농촌개발부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장관이 발행 한 베트남 식물 검역 대상 목록 (SPS)
58/2014/TT-BCT 2015-02-06 산업무역부	식품 안전 자격 인증서 발급 및 철회를 규정
08/2016/TT-BNNPTNT 2016-07-15 농업 및 농촌개발부	농림 수산 식품의 감독을 규제하는 시행령
41/2013/QH13 2015-01-01 의회	식물 보호 및 격리에 관한 법률 (EXP)
30/2014/TT-BNNPTNT 2015-01-01 농업 및 농촌개발부	베트남에 수입하기 전에 위험을 미리 유발할 수 있는 식물의 품질 목록
63/2010/TT-BNNPTNT 2010-12-15 농업 및 농촌개발부	수출입 제품에 대한 무료 유통 증명서 발행 안내 (TBT)
10/2010/QĐ-TTg 2010-05-01 국무총리	수출 및 수입 한 제품의 무료 유통 증서를 규제
03/2007/QH12 2008-07-01 의회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 2007
187/2013/ND-CP 2014-02-20 정부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상법 시행 규칙
04/2015/TT-BNNPTNT 2015-03-29 농업 및 농촌개발부	법령 187/2013/ND-CP 의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12/2016/TT-BYT 2016-07-01 보건부	HS 번호에 따른 화학 물질과 살충제 명부

<표4-22> 품목별비관세장벽: 3. 기호식품 (MTI 3단위: 015)_홍삼추출물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015 기호식품	홍삼·인삼 등 추출물 (extract)	식물성 추출물(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음)	130219	13021990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2,783	Loại khác	2 단위 세번 변경 기준(소호 제 1211.20 호의 것은 제외)
관련법령 발효일 규제기관		주요내용			
55/2010/QH12 2011-07-01 의회		2010 년 식품안전법 (SPS, TBT)			
38/2012/ND-CP 2012-06-11 정부		2010년 식품안전법 구현 세부 법령 (SPS, TBT)			
68/2006/QH11 2007-01-01 의회		2006 년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127/2007/ND-CP 2007-09-03 정부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지침			
05/2007/QH12 2008-07-01 의회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132/2008/ND-CP 2009-02-01 정부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가이드			
26/2012/TT-BKHCN 2013-01-27 과학 기술부		과학기술부장관이 발행 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주 검사를 규정			
04/2015/TT-BNNPTNT 2015-03-29 농업 및 농촌개발부		농림 수산물 수입에 관한 지침 (SPS, EXP)			
12/2015/TT-BNNPTNT 2015-05-05 농업 및 농촌개발부		수입 된 식품의 식품 안전 검사 안내 (SPS, TBT)			
2219/GSQL-GQ1 2017-09-22 세관 감독 및 관리 부서		단, 11/2017/TT-BNNPTNT : 12/2015/TT-BNNPTNT 개정 2796/QD-BNN-QLCL : 12/2015/TT-BNNPTNT 제2항 15조 중지			
08/2016/TT-BNNPTNT 2016-07-15 농업 및 농촌개발부		수입 식품의 식품 안전 검사에 관한 2017년 관보			
05/2007/TT-BYT 2008-09-06		농림 수산 식품의 감독을 규제하는 시행령			
		수입 식품의 질,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주정부 검사 기관 지정을 위 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 한 시행령			

보건부	
58/2014/TT-BCT 2014-02-06 산업무역부	식품 안전 자격 인증서 발급 및 철회를 규정
125/QD-BYT 2015-01-16 보건부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상태 검사를 규정 (SPS)
805/QD-BYT 2016-03-09 보건부	수입 식품 및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상태 검사를 규정 한 52/2015/TT-BYT의 행정 절차를 공표하는 결정
1971/QD-BYT 2014-06-04 보건부	수입 식품 안전성에 관한 주 검사에 관한 결정
17/2011/TT-BYT 2011-05-17 보건부	식품의 방사성 오염 수준을 규제하는 시행규칙 (SPS)
06/2007/CT-TTG 2007-04-23 국무총리	식품 위생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지침 (SPS)
19/2012/TT-BYT 2012-12-25 보건부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정 준수에 관한 발표 안내 (SPS)
09/2016/ND-CP 2016-03-15 정부	식품의 미량 영양소 증진을 규제하는 법령
27/2012/TT-BYT 2013-02-01 보건부	식품 첨가물 관리 지침
34/2014/TTLT-BYT-BNNPTNT-BCT 2014-12-19 농업 및 농촌개발부, 보건부, 산업무역부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공급 표시를 위한 식품 표기 지침
QCVN4-8: 2010/BYT 2010-05-20 발행 보건부	식품 첨가물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TBT)
26/2012/TT-BYT 2013-01-15 보건부	강화 된 기능성 식품의 생산 및 거래하는 식품 안전을 위한 자격 인증 증서의 발행을 규제
43/2014/TT-BYT 2015-02-01 보건부	기능성 식품 관리에 관한 시행 규칙
58/2014/TT-BCT 2015-02-06 산업무역부	식품 안전 자격 인증서 발급 및 철회를 규정
08/2016/TT-BNNPTNT 2016-07-15 농업 및 농촌개발부	농림 수산 식품의 감독을 규제하는 시행령
63/2010/TT-BNNPTNT	수출입 제품에 대한 무료 유통 증명서 발행 안내 (TBT)

2010-12-15 농업 및 농촌개발부	
10/2010/QD-TTg 2010-05-01 국무총리	수출 및 수입 한 제품의 무료 유통 증서를 규제
82/2006/ND-CP 2006-08-25 정부	멸종 위기에 처한 귀중한 희귀 한 야생 동물 군과 식물 종 관리 (TBT, EXP)
04/2017/TT-BNNPTNT 2017-04-10 농업 및 농촌개발부	동물 무역,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식물에 관한 협약 부속서

<표4-23> 품목별비관세장벽: 4. 농산가공품 (MTI 3단위: 016)_비스킷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016 농산가공 품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파이와 케이크 등	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음	190590	19059020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5,538	Bánh quy không ngọt khác	2 단위 세 번 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관련법령		주요내용			
발효일					
규제기관					
55/2010/QH12 2011-07-01 의회		2010 년 식품안전법 (SPS, TBT)			
38/2012/ND-CP 2012-06-11 정부		2010년 식품안전법 구현 세부 법령 (SPS, TBT)			
68/2006/QH11 2007-01-01 의회		2006 년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127/2007/ND-CP 2007-09-03 정부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지침			
05/2007/QH12 2008-07-01 의회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132/2008/ND-CP 2009-02-01 정부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가이드			
26/2012/TT-BKHCN 2013-01-27 과학 기술부		과학기술부장관이 발행 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주 검사를 규정			

27/2012/TT-BYT	식품 첨가물 관리 지침
2013-02-01 보건부	단, 08/2015/TT-BYT : 27/2012/TT-BYT 의 수정, 보완
34/2014/TTLT-BYT-BNNPTNT-BCT 2014-12-19 농업 및 농촌개발부, 보건부, 산업무역부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공급 표시를 위한 식품 표기 지침
QCVN4-8: 2010/BYT 2010-05-20 발행 보건부	식품 첨가물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TBT)
25/2010/TT-BYT 2011-01-01 농업 및 농촌개발부	식품 첨가물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을 공포 한 시행령 (SPS)
12/2015/TT-BNNPTNT 2015-05-05 농업 및 농촌개발부	수입 된 식품의 식품 안전 검사 안내 (SPS, TBT) 단, 11/2017/TT-BNNPTNT : 12/2015/TT-BNNPTNT 개정 2796/QD-BNN-QLCL : 12/2015/TT-BNNPTNT 제2항 15조 중지
2219/GSQL-GQ1 2017-09-22 세관 감독 및 관리 부서	수입 식품의 식품 안전 검사에 관한 2017년 관보
08/2016/TT-BNNPTNT 2016-07-15 농업 및 농촌개발부	농림 수산 식품의 감독을 규제하는 시행령
05/2007/TT-BYT 2008-09-06 보건부	수입 식품의 질,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주정부 검사 기관 지정을 위 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 한 시행령
58/2014/TT-BCT 2014-02-06 산업무역부	식품 안전 자격 인증서 발급 및 철회를 규정
125/QD-BYT 2015-01-16 보건부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상태 검사를 규정 (SPS)
805/QD-BYT 2016-03-09 보건부	수입 식품 및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상태 검사를 규정 한 52/2015/TT-BYT의 행정 절차를 공표하는 결정
1971/QD-BYT 2014-06-04 보건부	수입 식품 안전성에 관한 주 검사에 관한 결정
1380/QD-BCT 2011-03-25 산업 및 무역부	수입 제한 품목 목록에 관한 결정 (OTH)
17/2011/TT-BYT 2011-05-17 보건부	식품의 방사성 오염 수준을 규제하는 시행규칙 (SPS)
06/2007/CT-TTG 2007-04-23 국무총리	식품 위생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지침 (SPS)
19/2012/TT-BYT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정 준수에 관한 발표 안내 (SPS)

2012-12-25 보건부	
26/2012/TT-BYT 2013-01-15 보건부	강화 된 기능성 식품의 생산 및 거래하는 식품 안전을 위한 자격 인증 증서의 발행을 규제
45/2012/TT-BCT 2013-02-20 산업무역부	식품 생산 과정에서 식품의 품질 관리와 안전을 규제하는 규칙 (EXP)
58/2014/TT-BCT 2015-02-06 산업무역부	식품 안전 자격 인증서 발급 및 철회를 규정
63/2010/TT-BNNPTNT 2010-12-15 농업 및 농촌개발부	수출입 제품에 대한 무료 유통 증명서 발행 안내 (TBT)
10/2010/QĐ-TTg 2010-05-01 국무총리	수출 및 수입 한 제품의 무료 유통 증서를 규제

<표4-24> 품목별비관세장벽: 5. 석유제품 (MTI 3단위: 133)_자동차 휘발유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133 석유제품	경질유와 (輕質油) 조제품	자동차 휘발유	271012	27101216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964,813	90 và cao hơn, nhưng dưới RON 97 không pha chì	6 단위 세번 변경
관련법령		주요내용			
발효일					
규제기관					
22/2015/TT-BKHCN 2016-01-01 과학기술부		가솔린, 연료유 및 바이오 연료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TBT)			
QCVN1:2015/BKHCN 2015-11-11 과학기술부		가솔린, 디젤 연료 및 바이오 연료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27/2008/QH12 2009-04-01 의회		특별 소비세법			
70/2014/QH13 2016-01-01 의회		개정 된 소비세법			
108/2015/ND-CP 2016-01-01 정부		특별 소비세법과 특별 소비세 법령에 관한 시행령			
83/2014/ND-CP 2014-01-11		가솔린 및 석유 거래에 관한 시행령			

정부	
38/2014/TT-BCT 2014-11-01 산업무역부	산업무역부 장관이 발급한 석유 사업에 관한 시행령
39/2014/TTLT-BCT-BTC 2014-11-01 재정부, 산업무역부	법령 83/2014/ND-CP 의 조항에 따른 유가 기본 가격 계산 방법
15/2015/TT-BKHCN 2016-04-01 과학기술부	과학 기술부장관이 발행 한 석유 사업의 측정 및 품질을 규제하는 시행령
43/2015/TT-BCT 2015-12-08 산업무역부	가솔린 및 석유에 대한 세부 규제
90/2016/TTLT-BTC-BCT 2016-08-15 재무부, 산업무역부	39/2014/TTLT-BCT-BTC 를 개정하는 공동 시행령

<표4-25> 품목별비관세장벽: 6. 비누치약 및 화장품 (MTI 3단위: 227)_두발용 제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227 비누치약 및 화장품	두발용 제품류	기타(헤어린스, 헤어크림 등)	330590	33059000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5,146	Loại khác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관련법령		주요내용			
발효일					
규제기관					
05/2007/QH12 2008-07-01 의회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132/2008/ND-CP 2009-02-01 정부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가이드			
187/2013/ND-CP 2014-02-20 정부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상법 시행 규칙			
43/2017/ND-CP 2017-06-01 정부		제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			
06/2011/TT-BYT 2011-04-01 보건부		화장품 관리를 규제 (TBT, PC)			

10/2010/QD-TTg 2010-05-01 국무총리	무료 유통 증서를 규제
1609/QLD-MP 2012-02-10 마약국	화장품 분류와 베트남 마약 국에 의해 공표 된 화장품 특성에 대한 공식서한
1380/QD-BCT 2011-03-25 산업무역부	가져 오기를 격려하도록 권유받지 않은 품목 목록 (OTH)

<표4-26> 품목별비관세장벽: 7. 플라스틱 제품 (MPI 3단위: 310)_의약품 포장용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310 플라스틱 제품	물품운반 ·포장용기, 뚜껑·마개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에틸렌 중합체 등)	392321	392321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2,462	polyme etylen: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관련법령		주요내용			
발효일					
규제기관					
187/2013/ND-CP 2014-02-20 정부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상법 시행 규칙			
47/2010/TT-BYT 2011-02-13 보건부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의약품 및 포장의 수입과 수출을 안내하는 시행 규칙 (TBT)			
06/2016/TT-BYT 2016-07-01 보건부		의약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 규칙			

<표4-27> 품목별비관세장벽: 7. 플라스틱 제품 (MTI 3단위: 310)_스크랩 등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310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waste) · 페어링 (paring) · 스크랩 (scrap)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1590	39159000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2,611	Từ plastic khác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관련법령		주요내용			
발효일					
규제기관					
187/2013/ND-CP 2014-02-20 정부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상법 시행 규칙			
01/2013/TT-BTNMT 2013-04-01 천연 자원 환경부		생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할 수 있는 스크랩 자재 (QC)			
36/2015/TT-BTNMT 2015-09-01 천연 자원 환경부		유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 규칙			
38/2015/ND-CP 2015-06-15 정부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 (OTH, QC)			
41/2015/TT-BTNMT 2015-10-27 천연 자원 환경부		생산 재료로서 폐기 된 물질을 수입 할 때 환경 보호에 관한 시행 규칙 (QC)			
73/2014/QĐ-TTg 2015-02-05 국무총리		생산 원료로서 해외로부터 수입 될 수 있는 폐기 물질 목록상의 결 정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목록 포함)			
7647/TCHQ-GSQL 2015-08-21 관세청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에 관한 2015 년 공식 서한			
08/2017/TT-BXD 2017-07-01 건설부		고체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38/2015/ND-CP 보완			

<표4-28> 품목별비관세장벽: 8. 철강판 (MTI 3단위: 613)_평판압연제품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613 철강판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	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	721129	72112910 72112920 72112930 72112990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볼)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4,111	Dạng lượn sóng Dạng dài và dài, chiều rộng không quá 400 mm Loại khác, chiều dày không quá 0,17 mm Loại khác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관련법령 발효일		주요내용			
규제기관					
68/2006/QH11 2007-01-01 의회		2006 년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127/2007/ND-CP 2007-09-03 정부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지침			
05/2007/QH12 2008-07-01 의회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132/2008/ND-CP 2009-02-01 정부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가이드			
26/2012/TT-BKHCN 2013-01-27 과학 기술부		과학기술부장관이 발행 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주 검사를 규정			
43/2017/ND-CP 2017-06-01 정부		제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			
58/2015/TTLT-BCT-BK HCN 2016-03-21 과학 기술부, 산업무역부		국산 철강 및 수입 철강의 품질 관리에 관한 공동 회칙 (INSP, TBT)			
1189/VPCP-KTTH 2016-02-25 관공서		강철 주물에 대한 HS 코드 적용 및 수입세 계산에 관한 2015 년 공 식 편지 번호			

<표4-29> 품목별비관세장벽: 9. 레일 및 철 구조물 (MTI 3단위: 615)_받침기구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615 레일 및 철 구조물	비계(飛階) · 차단기 · 지주 · 궤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특수용도차량 (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	730840	730840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9,451	Dạng cấu kiện tiền chế được lắp ráp bằng các khớp nối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관련법령		주요내용			
발효일					
규제기관					
68/2006/QH11 2007-01-01 의회		2006 년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127/2007/ND-CP 2007-09-03 정부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지침			
05/2007/QH12 2008-07-01 의회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132/2008/ND-CP 2009-02-01 정부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가이드			
67/2009/ND-CP 2009-09-22 정부		127/2007/ND-CP,132/2008/ND-CP 를 개정하는 법령			
24a/2016/ND-CP 2016-05-26 정부		건축 자재 관리에 관한 법령			
21/2010/TT-BXD 2010-12-31 건설교통부		건설 제품에 대한 인증 및 규정 적합성 공고를 안내하는 시행 규칙 (TBT)			
22/2016/TT-BXD 2016-07-01 건설교통부		2 건설 제품에 대한 인증 및 규정 적합성 공고를 안내하는 시행 규 칙 21/2010/TT-BXD 의 제 5 조 무효 (TBT)			

<표4-30> 품목별비관세장벽: 10. 자동차 (MTI 3단위: 741)_콘크리트 운반차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741 자동차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수용도차량 (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	870540	87054000	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19,196	Xe trộn bê tông	4 단위 세번 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관련법령 발효일		주요내용			
규제기관					
23/2008/QH12 2009-07-01 의회		도로교통법			
05/2007/QH12 2008-07-01 의회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132/2008/ND-CP 2009-02-01 정부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가이드			
187/2013/ND-CP 2014-02-20 정부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상법 시행 규칙			
31/2011/TT-BGTVT 2011-05-31 교통부		수입 자동차의 품질,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를 규정하는 시행 규칙 (TBT)			
19/2014/TT-BGTVT 2014-07-15 교통부		수입 차량의 품질 검사에 관한 새로운 규정			
55/2014/TT-BGTVT 2014-12-15 교통부		수입 자동차의 환경 보호의 품질 검사 안내 (TBT, EXP)			
QCVN86:2015/BGTVT 2015-07-24 교통부		새로운 조립, 제조 및 수입 자동차의 4 단계 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국가 기술			
QCVN35:2017/BGTVT 2018-04-01 예정 교통부		차량 전조등의 광학적 특성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54/2014/TT-BGTVT 2014-12-15 교통부		자동차의 제조 및 조립에서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를 규정			
13/2015/TT-BGTVT 2016-06-10 교통부		교통부의 전문 관리 대상 수입품 목록을 공표			

<표4-31> 품목별비관세장벽: 10. 자동차 (MTI 3단위: 741)_수송용 운반차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741 자동차	(운전자 포함) 10 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디젤이나 세미디젤(semi- diesel)]의 것 신차	870210	870210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59,509	Loại động cơ đốt trong kiểu piston đốt cháy bằng sức nén (diesel hoặc bán diesel):	
관련법령		주요내용			
발효일					
규제기관					
23/2008/QH12 2009-07-01 의회		도로교통법			
05/2007/QH12 2008-07-01 의회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132/2008/ND-CP 2009-02-01 정부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가이드			
187/2013/ND-CP 2014-02-20 정부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상법 시행 규칙			
31/2011/TT-BGTVT 2011-05-31 교통부		수입 자동차의 품질,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를 규정하는 시행 규칙 (TBT)			
19/2014/TT-BGTVT 2014-07-15 교통부		수입 차량의 품질 검사에 관한 새로운 규정			
55/2014/TT-BGTVT 2014-12-15 교통부		수입 자동차의 환경 보호의 품질 검사 안내 (TBT, EXP)			
QCVN86:2015/BGTVT 2015-07-24 교통부		새로운 조립, 제조 및 수입 자동차의 4 단계 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국가 기술			
QCVN35:2017/BGTVT 2018-04-01 예정 교통부		차량 전조등의 광학적 특성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54/2014/TT-BGTVT 2014-12-15 교통부		자동차의 제조 및 조립에서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를 규정			
QCVN82:2014/BGTVT 2014-11-07 교통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를 안내하는 기술규정			

13/2015/TT-BGTVT	교통부의 전문 관리 대상 수입품 목록을 공표
2016-06-10	
교통부	
27/2008/QH12	특별 소비세법
2009-04-01	
의회	
70/2014/QH13	개정 된 소비세법
2016-01-01	
의회	
108/2015/ND-CP	특별 소비세법과 특별 소비세 법령에 관한 시행령
2016-01-01	
정부	

<표4-32> 품목별비관세장벽: 11. 영상기기 (MTI 3단위: 821)_TV 수신기

MTI 코드 및 명칭	품목명	품목설명	한국 HS 코드	베트남 HS 코드	FTA 특혜 대상여부
821 영상기기	기타 텔레비전 수신기	유기발광·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천연색·흑색이 나 단색 튜너 등	85299096	85299054	비대상
			수출량 (2016 년, 단위: 천불)	베트남 HS 품명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
			265,304	Loại khác, dùng cho máy thu truyền hình	
관련법령		주요내용			
발효일					
규제기관					
41/2009/QH12		통신법 2009			
2009-11-25					
의회					
42/2009/QH12		무선 주파수 법 2009			
2010-07-01					
의회					
25/2011/ND-CP		텔레 커뮤니케이션 법령			
2011-06-01					
정부					
68/2006/QH11		2006 년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2007-01-01					
의회					
127/2007/ND-CP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지침			
2007-09-03					
정부					
05/2007/QH12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2008-07-01					
의회					

132/2008/ND-CP	제품 및 제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가이드
2009-02-01	
정부	
187/2013/ND-CP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상법 시행 규칙 (TBT)
2014-02-20	
정부	
04/2015/TT-BNNPTNT	법령 187/2013/ND-CP 의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2015-03-29	
농업 및 농촌개발부	
77/2016/ND-CP	상품, 화학 물질, 산업 폭발물, 비료, 가스 및 식료품 무역의 국제 거래 분야에서 투자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법령
2016-07-01	
정부	
30/2011/TT-BTTTT	상품 및 전문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에 대한 규정 (TBT, EXP)
2012-02-01	
정보통신부	
04/2014/TT-BCT	재화 및 상품 구매, 판매, 가공 및 운송 기관 활동에 관한 국제 무역에 관한 상법 시행 지침
2014-02-20	
산업무역부	

제4절 비관세 장벽 관련 규제기관(regulation agency)

1. 종합

<표4-33> 베트남 비관세조치 규제기관

	규제기관	비관세조치 건수	%
1	Ministry of Trade (무역부)	186	29.2
2	Ministry of Industry (산업부)	139	21.8
3	Ministry of Agriculture (농업부)	92	14.4
4	Ministry of Marine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70	11.0
5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	44	6.9
6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업무역부)	30	4.7
7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에너지광물자원부)	17	2.7
8	Ministry of Health (보건부)	23	3.6
9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식품의약품청)	10	1.6
10	State Secretariat (정부부처)	7	1.1
11	Others (그 외)	20	3.1
	합계	638	100.0

자료: ERIA-UNCTAD (2016), "Non-Tariff Measures in ASEAN"

- 베트남 비관세관련 대표적인 규제기관들의 2016년 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무역부, 산업부의 비관세조치 건수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농업부, 해양수산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정부는 농수산업 보호와 국내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대부분 엄격한 위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베트남은 식품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제를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규제기관 또한 다양하다.
 -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은 「식품위생령」 및 「식품위생령의 항목 실시를 서술하는 명령」을 통해 기본원칙 및 관계 기관의 책임에 관하여 보여주고 있다.
 - 그리고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식품의 안전·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 적용에 관한 수상의 결정」이 규정되었다.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의 공급사슬 각각의 단계를 중앙조직인 보건부(MOH), 농업 및 농촌개발부(MARD), 과학기술부(MOST), 산업무역부(MOIT), 천연자원환경부(MONRE)가 담당하고 있다.
 - 식품위생에 관한 법규제의 정비와, 정책수립 및 실시에 관해서는 보건부(MOH), 농업 및 농촌개발부(MARD), 과학기술부(MOST), 산업무역부(MOIT) 총 4곳의 기관이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http://www.moit.gov.vn>

□ 베트남의 산업무역부는 식품산업, 가공산업 및 국내 수출입시장 등 무역 관리 관할 관청으로서 산업안전과 보건 및 환경보호의 이행을 관리하고 검사한다.

○ 수출입, 재수입, 물품운송, 원산지 관리 등의 상품 무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대외무역활동의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발을 담당한다.

○ 법령 95/2012/ND-CP는 산업무역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제하고 있다.

□ 베트남 정부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무역부 산하의 베트남 경쟁관리국 (Vietnam Competi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과 상공회의소 산하의 무역구제위원회 (Trade Remedy Council)를 통해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 제도)에

나서고 있다.

- 우리나라는 아직 베트남 정부의 수입구제 정책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이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기업들에게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 제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농업 및 농촌 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https://www.mard.gov.vn>

- 베트남은 최근 농산물, 식품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표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한 자국 기준의 위생 및 검역 조치(SPS) 관련하여 농업 및 농촌 개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농업 및 농촌 개발부는 농림수산물품질관리국 (NAFIQAD), 작물생산국 (DCP), 식물방역국 (PPD), 동물건강국 (DAH), 수산자원관리국 (DFRM), 국제협력국 (ICD), 그리고 위생 및 검역 (SPS) 사무실 등 총 7개의 부서로 구성된 조직이다. 베트남 국내식품, 수출식품, 수입식품 (가공원료에 한해)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감시 및 조사를 담당한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방 63성의 각 성의 중앙정부산하의 지방국 (농림국 등)외에 안전위생관리국 (지방정부)에 의해 식품 위생 및 검역에 관한 감시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법령 15/2017/ND-CP는 농업 및 농촌 개발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제하고 있다.

4.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http://moh.gov.vn/sites/en-us/pages/home.aspx>

□ 베트남 보건부는 국민 보건 관리,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규제관리, 식품안전,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및 임상시험에 관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MOH) 산하의 의료기기 보건국(DMEHW, Department of Medical Equipment and Health Works)에서 관리 및 담당하고 있다.

○ 75/2017/ND-CP와 4062/QD-BYT는 보건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제하는 법령 및 결정이다.

□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사항은 「의료기기 수입을 가이드하기 위한 규칙」 24/2011/TT-BYT (11.6.21)의 규제를 따른다.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유통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베트남에 처음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 베트남 정부는 국민건강과 의료안전을 위해 의료기기 수입하는데 많은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자국 제조업과 부품소재 산업육성을 위해서 수입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부분의 베트남 수입 규정은 HS 코드 9018 ~ 9022에 해당하는 모든 의료기기의 중고 제품은 수입이 불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https://www.most.gov.vn/vn/Pages/Trangchu.aspx>

- ☐ 과학기술부는 베트남의 과학 기술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베트남 정부 부처이다. 과학 및 기술 잠재력 개발, 지적 재산권, 인증 및 표준, 도량형 및 품질 관리, 방사선 및 원자력 안전을 담당한다.
- 법령 95/2017/ND-CP는 과학 기술부의 기능, 직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6. 천연 자원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onre.gov.vn

- ☐ 천연 자원 환경부는 공식적인 환경보호의 책임을 가지며 환경보건관리 규정(Regul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management)을 담당한다. 천연 자원 환경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국가 환경 기술규정, 특히 대기 질에 관한 국가기술규정을 수립하였다.
- 법령 36/2017/ND-CP는 천연 자원 환경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제하고 있다.

7.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http://www.moc.gov.vn>

□ 건설부는 국가 건설 관리,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 도시 기반 시설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담당한다. 또한 무역관련 하역 수출입 건축 자재의 품질 및 표준을 관리한다.

○ 법령 81/2017/ND-CP는 건설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제하고 있다.

□ 이외에도 비관세 장벽 규제기관으로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¹³²⁾와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 & Telecommunications)¹³³⁾ 등이 있다.

132) <http://www.mt.gov.vn>, 12/2017/ND-CP 교통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정의

133) <http://www.mpt.gov.vn>, 17/2017/ND-CP 우정통신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정의

제5장 결론

□ 본보고서는 먼저 한국과 비관세장벽 조사 대상국(중국·베트남)간의 교역현황에 대해 국가 및 주요품목 단위로 살펴보았다.

○ 중국의 경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양국 간의 무역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무역총액 기준으로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의 제4위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최근 중국의 반한감정, 사드보복 등 각종 이슈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의 수출시장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 한국의 對중국 최대 수출 품목군은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센서·무선통신기기 등 휴대폰 관련 부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그리고 석유제품 등이나 2016년 기준 석유관련 제품을 제외하고는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감소세가 나타났다.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휴대폰, 컴퓨터, 철강, 산업용 전기기기, 의류 그리고 정밀 화학원료 등이며 2015년 이후에는 반도체 수입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무역액의 증가와 함께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374억 5,000만 달러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對중국 수출금액은 2014년을 기점으로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베트남의 경우 2016년 기준 FDI 기업들의 수출입 실적이 전체 교역의 72.3%를 차지하며 베트남 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2016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수출 대상국, 제8위 수입 대상국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對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326억 달러, 수입은 27.4% 증가한 125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여 20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5~2016년 글로벌 경기위축

으로 전 세계 무역량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현지에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베트남 전체 수출량의 약 30%를 기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은 최근 몇 년 간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5년 한-베 FTA 체결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흑자폭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 한국의 對베트남 최대 수출 품목군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센서 등 휴대폰 관련 부품으로 對베트남 수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對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9.3%, 98.4% 증가하여 전체 수출실적을 크게 견인하였다. 석유제품의 對베트남 수출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231.2% 성장한 10.9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반면 자동차의 對베트남 수출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전년 동기대비 18.9% 감소한 9.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對베트남 수입품목은 휴대폰, 의류, 신발 등 현지 한국 투자(FDI)업체로부터의 완제품 수입이 수위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목재, 영상기기, 기타 섬유제품, 기구부품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 본보고서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중국 및 베트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조사대상국의 비관세장벽을 유형별(Type)·품목별(Product)·관련 규제기관별(Regulation Agency)로 분류하여 최신의 관련 이슈들을 반영하고 중요 내용들을 포괄·정리하였다.

- 주요자료의 수집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SPS 및 TBT 관리 데이터베이스,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TRAINS, 중국 및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및 법령 정보 사이트, 유관기관의 既발행보고서 및 발표자료, 민간컨설팅기관, 기타 관세청의 품목별 수출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중국의 「유형별 비관세장벽」에서는 SPS, TBT, 통관절차, 품목분류, 지식재산권, 가격심사, 중고품 수입규제, 가공무역기업 세금추징, 원산지증명의 내용을 조사하였고, 베트남의 「유형별 비관세장벽」에서는 조세제도, 수출입 통관절차, 원산지증명, 이전가격제도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 중국의 「품목별 비관세장벽」에서는 주요 비관세장벽 이슈 품목인 화장품, 식품, 의약품에 대해 다루었고, 베트남의 「품목별 비관세장벽」에서는 의료기기, 중고기계, 착색/도금 강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중국의 「비관세장벽 규제기관」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中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국가위생및계획생산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등이며,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규제기관」은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농업·농촌 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과학기술부, 천연환경자원부 등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조사하였다.
 - 위와 같은 분류방식은 향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중국·베트남 이외에 다른 국가들로 비관세장벽 연구영역이 확장되더라도 관련형식을 표준으로 하여 수집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최근의 비관세장벽 관련이슈는 국가 간 교역에 있어서 그리고 그 교역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관세 외 여러 무역장벽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국외기관인 WTO, UNCTAD 및 국내기관인 무역협회, KOTRA 등 여러 유관기관들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여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 국제기구 등 국외기관의 경우 조사의 범위가 넓고 체계적이지만 보통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고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규제의 내용이 공식적이고 피상적인 경우가 많다.¹³⁴⁾ 또한 본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WTO, UNCTAD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보고된 비관세장벽 데이터들에 상당수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¹³⁵⁾ 따라서 해당 자료는 비관세장벽의 전 세계적 추세와 국가별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정확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 국내 여러 유관기관들의 경우 對한국 무역장벽의 사례나 최신동향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한국의 기업들이 수출시 직접 해당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분석이 특정 국가의 일부산업이나 상품 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자료정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 FTA 체결 및 발효의 확대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반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은 강화되어 FTA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각 국의 비관세장벽은 포괄 범위가 방대하며 관련정보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개별기업 차원에서 해당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본보고서의 가장 큰 공헌은, 중국과 베트남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HS 코드를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이를 상대국의 HS 코드와 연계하는 작업을 통해 **해당국의 비관세장벽을 HS 코드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對중국 및 베트남 수출기업과 수출관계자들이 해당품목 수출 시 일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FTA대상 품목의 경우 해당 세 번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을 제시하여 우리기업들이 수출시 FTA활용하는데 도움을

134) 따라서 개별국의 기업들이 가공 없이 해당정보를 직접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35) 해당 법령이 이미 폐지가 되었거나 부적절한 HS CODE와의 매칭 등

주고자 노력 하였다.

- 아직 조사의 초기단계로서 조사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정확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지만, 해당품목 수출 시 상대국 규제와 관련된 필수적 고려요소들을 하나의 형식에 포괄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본보고서의 활용방안으로써 HS 코드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관세청 FTA포털이나 관세정보법령포털에 게시하여 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 수출시 상대국의 수출품목별 비관세장벽 파악을 위한 일차적인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또한 본보고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對중국·베트남 수출기업들에게 현재 상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정보의 미인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관세청이나 유관기관 등의 담당자가 기업들의 중국 및 베트남 관련 비관세장벽 애로를 상담함에 있어 민원처리 지원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정인교(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양희·조병택(2002),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경쟁정책적 접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2002), 「일본의 대한(對韓) 비관세장벽 현황」
- 조세재정연구원(2013.12), 「신흥 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
- 조세재정연구원(2015.12), 「신흥 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 Kotra(2015), 「중소기업 8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 국제원산지정보원(2015), 「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정, PSR 등 활용방안 연구」
- 산업통상자원부(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연구(아시아, 대양주)」
- 대상상공회의소(2016.12),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 동향과 대응과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7), 「외국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2017.5), 對韓 수입규제 월간동향
- 대한화장품협회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기본교육 자료
- 2017년 관세청 해외통관 설명회자료
- 2017년 Kotra 해외 비관세 장벽 대응 실무과정(중국편, 베트남편)

<해외문헌>

- G. C. Hufbauer and K. A. Elliot (1994), Measuring the Costs of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 H. J. Wall (1999), "Using the Gravity Model to Estimate the Costs of Protection",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33-40.
- J. Harrigan and R. Vanjani (2003), "Is Japan's Trade (Still)

Different?”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17, 507-519.

- C. Sohn (2005),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FTA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Trade”,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Studies (CITS) Working Papers 2005-02,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 Yan, L., de Cordoba, S. F., & Cadot, O. (2016). Non-Tariff Measures in ASE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
- METI/經濟産業省, 2016年版不公正貿易報告書
- World Bank (2017), 「Doing Business」
- UNCTAD-OECD Report on G20 Investment Measures (18th Report, November 2017) (UNCTAD/OECD/2017/18)

<국내사이트>

- 한국무역협회통계
www.kita.net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https://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korea_ktr/uss/guide/info.jsp
- kotra 중국 베이징무역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7341>
- 해외인증정보 시스템 사이트
<http://www.certinfo.or.kr/index.do>
- IP-DESK
<http://www.ip-desk.or.kr/newhome/cmmn/main.do;jsessionid=B5B2C1270D6122A858689BFB64FC667D>
- kotra 해외시장뉴스: 전국 통관 일체화 개혁 실시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9917>

<해외사이트>

- CCC 인증품목 확인사이트
<http://www.cqc.com.cn/www/english/ProductCertification/CCC/CertificationScope/>
- 중국통관우수기업 검색: 全国优秀报关企业
<https://www.e-to-china.com.cn/ranking/>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http://www.aqsiq.gov.cn/>
-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http://www.sda.gov.cn/WS01/CL0001/>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http://www.cnca.gov.cn/>
- 국가위생및계획생산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http://www.moh.gov.cn/zhuz/index.shtml>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http://www.chinatax.gov.cn/>
- 중국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http://www.safe.gov.cn/>
- 베트남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http://www.moit.gov.vn>
- 베트남 농업 및 농촌 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https://www.mard.gov.vn>
- 베트남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http://moh.gov.vn/sites/en-us/pages/home.aspx>
- 베트남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https://www.most.gov.vn/vn/Pages/Trangchu.aspx>
- 베트남 천연 자원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onre.gov.vn
- 베트남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http://www.moc.gov.vn>
- 베트남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http://www.mt.gov.vn>
- 베트남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 & Telecommunications)
[http://www.mpt.gov.vn,](http://www.mpt.gov.vn)

부록: 비관세장벽관련 국내지원제도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입지원센터**: <https://www.exportcenter.go.kr>
 -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사업*, 해외시장진출정보, 해외규격인증정보, 해외조달시장정보 등
 - 수출지원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
 -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지역수출지원센터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 FTA1380상담 - 업종별상담, 협정별상담, 절차별상담, FTA활용애로 관련 제도·협정 개선 등
 - 지원사업 통합안내, 사후검증지원센터·차이나데스크·FTA활용지원센터 운영

- <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 무역규제(비관세조치DB, 기술장벽, 환경규제, 수출장벽, 수입규제 등) 관련정보 제공
 - 수출지원(전시회·사절단·자금·교육/연수 등 무역지원사업정보, 정부·기관의 무역통상진흥시책 안내) 관련정보 제공
 - 무역애로(Trade SOS, Trade Doctor, aT SOS 통합창구 운영) 관련 상담 진행

- <KOTRA> **IP-DESK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http://www.ip-desk.or.kr>
 - 지재권 상담 지원,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 지원, 침해감정서 작성 지원

- <KOTRA> Trade Doctor **무역투자상담센터**: www.tradedoctor.kotra.or.kr
 - 국가별시장정보, FTA 활용방법, 수출절차, 대금결제, 무역 분쟁, 투자 환경·법규, 규격인증 등 무역관련 전반적인 내용 상담가능(1600-7119)

- <관세청> **FTA포탈**: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 FTA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국번없이 125),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FTA기동대 운영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oreign>
 - 국가별통관정보자료실, 통관애로사례 및 대처법 안내, 해외통관 애로 해소 종합연락처 제공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사이트**: <http://www.certinfo.or.kr/index.do>
 - 국가별인증정보, 인증마크별 인증정보, 상담서비스(인증상담, 맞춤형정보 조사) 제공
 - 인증관련 정부지원 사업현황 안내(지역별 정보 포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 소개·문의(1670-1191), 수출지원사업 신청 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 농수산물수출관련 정보제공(품목·국가별), 제도소개(비관세장벽, 인증, 식품첨가물, 법률 등)